

연구보고 09-R05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성운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박병식(동국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박나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 요약

## 연구목적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유입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점 및 욕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영역과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함.
- 각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 현행 법·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성매매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및 재발방지 정책 등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의 개념과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 분석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 국내외 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현황 및 관련법제 분석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대책 및 정책 로드맵 제시

##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심층면접조사, 델파이조사, 관련법제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개최

## 연구결과

- 인터넷성매매를 경험하기 전 성관계 경험 여부는 응답 여자청소년 43명 중 33명이 있다고 응답하여, 10명의 여자청소년만이 인터넷성매매를 통해 첫 성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연령은 16세가 11명, 14세와 15세가 각각 9명, 17세가 7명, 13세 3명, 12세와 18세가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43명 중 38명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5명은 성폭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는 가출 후 생활비가 필요해서(23명), 용돈이나 유희비를 마련(8명), 친구의 권유나 압력(5명)으로 나타났다. 첫 성매매 연령은 16세와 17세가 각각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9명, 18세 5명, 14세 3명, 13세와 19세가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성매매를 한 횟수는 10회 미만(16명), 100회 이상 또는 셀 수 없다(9명), 10회 이상 50회 미만이 17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성매매를 하기 위해 주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는 버디버디(34명), 세이클럽(8명), 헬프몬(2명), 한게임(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인터넷성매매를 하기 위해 사용한 암호나 신호들은 직접적인 용어사용 보다는 ‘ㅈㅈ, ㅇㄹ, ㅈㄱ, ㄱㅈ, 1시간10, 지역이름’ 등 주로 단어를 완전하게 쓰지 않고, 자음만 사용하여 약자를 쓰거나 신속한 만남을 위해 지역이름을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들이 인터넷성매매를 하면서 경험한 피해사례는 돈을 받지 못함(16명), 변태행위강요(7명), 폭행(7명), 돈을 적게 받음(6명), 성병 감염(5명), 성폭행(3명), 협박(3명), 집단성행위(2명), 욕설(2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납치, 사기, 성매매 강요, 갈취, 수면제 복용, 임신, 조건사항 불이행, 키스알바 중 성관계 강요 경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은 취약단계, 혼돈단계, 안정화단계(탈성매매)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3단계는 앞뒤로 이동 가능함. 즉 취약단계에서 혼돈의 단계로 넘어가서도 다

시 취약성으로 복귀될 수 있음. 혹은 개인의 대처능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기관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는 가속화될 수도 있음. 취약단계에서 청소년들은 가정폭력, 학교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취약환경과 인터넷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터넷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인터넷성매매로의 진입방지를 위해 조기 개입과 예방이 중요함. 혼돈단계는 가출로 인해 잠자리와 재정적 수입이 없음으로 인해 인터넷성매매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가출반복, 학업중단, 사기·절도 등 비행이 심화되며 인터넷성매매로 인해 성병, 낙태 등 건강이 악화됨. 인터넷성매매로 쉽게 큰 돈을 벌지만 생활비나 유흥비, 과소비로 돈을 쉽게 쓰게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어 혼돈에 빠지게 됨. 안정화 단계로 성매매청소년들은 경찰이나 검찰조사를 통해 청소년위기센터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쉼터,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하게 되고 시설에서 교육상담·치료를 받으며 정서적 안정을 조금이나마 찾게 됨. 청소년들은 정서적 안정을 찾으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가정복귀, 시설입소, 학교복귀를 통해 탈성매매를 하게 되지만 성매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 잠정적인 것임.

-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방지에 관한 정책으로는 채팅 사이트의 폐쇄 또는 차단, 인터넷실명제, 처벌 및 단속 강화, 실질적인 성교육, 신고제도 개선 및 강화, 쉼터 개선 및 홍보, 가정교육 및 가정환경 개선 등이 나타났음.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유인행위처벌에 대한 생각은 처벌하는 것이 좋다(30명), 9명의 청소년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 조사결과, 비전은 “여성청소년이 성매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성매매 피해여성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교육 및 치료·선도함으로써 재유입 방지, 성매수 피해여성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의 전문성, 생계형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시설 마련, 처벌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수자의 재발방지, 인터넷 성매매 감시체계 확립,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놀이문화 형성의 순으로 나타났음.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영역을 예방정책(교육, 홍보, 단속), 보호정책(교육, 치료, 자활), 처벌정책(교육, 단속)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를 정책의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제시했음.

## ▮ 정책 제언

### ● 법·제도적 대책

- 긴급통신제한조치(즉, 감청) 근거조항 신설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를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법개정
- 만남사이트 사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와 벌칙으로 담보하는 신고제 도입
- 만남사이트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유인행위와 관련된 입력내용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삭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함.
- 사업의 정지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를 규제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결격사유(예컨대 청소년, 성범죄 관련 전과자 등)를 둘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 사업자의 필터링 의무화
- 채팅사이트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매수남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라는 영장을 사후영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 성매매청소년 업무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전담조직이 설치
- 인터넷성매매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시에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인터넷성매매 신고를 활성화
- 게임·채팅사이트에 ‘간편 신고창’ 구축 및 적발과 처벌광고 게재하고 신고창을 누르면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사이버수사대로 직접 연결이 되도록 하여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장치 마련

- 모텔, 여관 등 각종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 ● 사회적 지원 대책

-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 산부인과, 정신과 치료 등의 의료지원과 검정고시 또는 대안학교 입학과 학업지원, 취업지원 등 청소년에게 찾아가 지원하는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 맞춤형지원 확대
- 각 부처산하에 있는 기관의 실무자(경찰, 검찰, 법원, 사회복지 기관인 1388, 쉼터 등)들에 대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에 관련된 교육과 연계를 의무화와 활성화
- 인터넷 기업(ISP), 사이버 수사대, 학부모 정보감시단 같은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건전한 통신문화를 조성해갈 수 있는 인터넷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
- 학교(위기청소년일 경우는 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근로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 ● 기술적 대책

- 모든 게시물에 자신의 실명이 따라다니도록 하고 가명을 표시할 수 있게 한 다음, 가명을 클릭하면 본명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 인터넷실명제 확대실시
- ISP의 관련유해사이트 자정 노력 및 감시의무 등 책임 강화로 이용자들이 관련 인터넷 기업들의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 이용약관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설정하고, 신고센터 설치 및 불만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함. ISP가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록 정부 지원이 필요함. 인터넷이용자의 위법, 일탈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ISP에 보다 적극적인 인터넷성매매 감시인력 설치 의무화가 필요함. 인터넷성매매 관련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의무화와 감시의무 불이행시 법적 책임 강화해야 함. ISP ‘사이버윤리척도’ 문항에 인터넷성매매 퇴치노력을 반드시 삽입할 필요가 있음.

- '거름장치(filter)'의 확대 활용을 강화해야 함. 이는 검색창에 특정 단어, 이를테면 '야동(야한 동영상)', '조건' 과 같은 단어를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정보검색을 차단하는 장치인데 성매매 관련 단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함.

#### ● 교육·홍보대책

-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안전에 대한 교육과 최신 보안조치에 대한 조언 제공 및 인터넷성매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계도 운동 전개
- 학교에서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숙지하도록 성주체성 중심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내용 중 인터넷성매매의 위험을 알리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성매매 재유입예방 교육 대상을 검찰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기준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모든 청소년들로 확대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5
1)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의 개념 및 원인 선행연구 분석	5
2)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 분석	5
3)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6
4) 국내외 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 및 관련법제 분석	6
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대책방안 및 정책 로드맵	7
3. 연구방법 및 절차	7
1) 문헌연구	7
2) 심층 면접조사	8
3)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8
4) 국내외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사례 조사	8
5) 전문가 자문	9
6)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9
II. 이론적 논의	11
1.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13
1)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의 개념	13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14
2. 청소년 성매매 접촉 경로	16
3. 청소년 인터넷성매매의 원인	19
4.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이론	23
1) 피해자로서의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이해	23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이론	26

Ⅲ. 국내외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현황과 관련 법제 .....	33
1. 한국 .....	35
1)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 현황 .....	35
2) 한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 법제와 대책 .....	36
3) 한국의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	55
2. 일본 .....	69
1)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현황 .....	69
2)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법적 규제의 경과 .....	74
3) 만남사이트 규제법의 제정 .....	77
4) 만남사이트 관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대책 .....	82
3. 독일 .....	90
1) 서론 .....	90
2) 독일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현황 .....	93
3) 독일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법제 .....	94
4) 독일의 미디어 관련 청소년 보호기관 .....	102
5) 기관운영 .....	105
6) 유럽연합의 청소년 성보호 규범 .....	116
7) 소결 .....	120
4. 영국 .....	122
1) 영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현황 .....	122
2) 영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법제 .....	123
3) 영국의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	127
5. 미국 .....	130
1) 미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현황 .....	130
2) 미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법제 .....	133
3) 미국의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	136

IV.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	137
1. 조사개요 .....	141
1) 연구대상 .....	141
2) 조사도구 .....	143
2. 조사결과 .....	147
1)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 ..	147
2)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원방안 ..	265
3) 피해청소년이 생각하는 인터넷성매매 방지대책 .....	272
V.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 .....	291
1. 조사개요 .....	293
1) 전문가패널 선정 .....	293
2) 조사도구 .....	294
3) 조사방법 및 절차 .....	297
2. 조사결과 .....	299
1)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 에 대 한 중요도 .....	299
2)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	302
VI. 결론 .....	313
1. 요약 .....	315
1)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 분석 ..	315
2)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의견 분석 ..	319
2. 정책 제언 .....	322
1) 법·제도적 대책 .....	323
2) 사회적 지원 대책 .....	330
3) 기술적 대책 .....	338

4) 교육·홍보 대책 .....	341
<b>VII. 참고문헌</b> .....	353
<b>부록</b> .....	363
1.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365
2.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 한 법률과 시행규칙 .....	371
3. 독일의 형법 .....	385
4.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 .....	395
5.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	400
6. 1차 델파이 설문지 .....	408
7. 2차 델파이 설문지 .....	415

## 표 목차

<표 II-1>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및 비교 .....	16
<표 II-2> 청소년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	17
<표 II-3> 성매수자와 청소년의 접촉 방법 .....	17
<표 II-4>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와의 접촉방법 .....	18
<표 II-5> 성매매 유입에서 탈출까지 과정 .....	28
<표 II-6> 역할 변화 과정과 전환점 .....	29
<표 II-7> 욕구와 지지 모델 .....	30
<표 III-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	35
<표 III-2> 성매매 청소년 특성에 관한 통계 .....	36
<표 III-3> 빈곤 아동·청소년 용돈 조달 방법 중 원조교제나 성매매 비율 .....	37
<표 III-4>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	38
<표 III-5>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 관련 정부부처 및 주요업무 .....	55
<표 III-6> 청소년쉼터의 유형 및 기능 .....	65
<표 III-7> 성매매피해청소년 현장지원체계 비교 .....	69
<표 III-8>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	70
<표 III-9> 피해청소년의 특징 .....	71
<표 III-10> 위반형태별 적발건수 .....	72
<표 III-11> 청소년의 입력사례 예 1 .....	72
<표 III-12> 청소년의 입력사례 예 2 .....	73
<표 III-13> 청소년의 만남사이트 이용실태 .....	74
<표 III-14> 만남사이트의 법적 규제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76
<표 III-15> CEOP 조직 .....	128
<표 III-16> CEOP 예산구성 .....	130
<표 III-17> ICMEC 인터넷 아동성범죄 사건현황 .....	133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41
<표 IV-2> 심층 면접 질문 주요 내용 .....	144
<표 IV-3> 심층 면접조사 방법 .....	146
<표 V-1> 분야별 델파이조사 전문가 .....	294
<표 V-2> 1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	295
<표 V-3> 2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	296
<표 V-4>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	299
<표 V-5>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할 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	301
<표 V-6>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교육)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	302
<표 V-7>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홍보)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	303
<표 V-8>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단속)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	303
<표 V-9>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교육)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	304
<표 V-10>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치료)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	305
<표 V-11>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자활)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	307
<표 V-12>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처벌(교육)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	308
<표 V-13>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처벌(단속)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	309
<표 VI-1>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정책 영역에 따른 세부 정책 추진과제 .....	321
<표 VI-2>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세부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	343

---

##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절차도 .....	10
【그림 II-1】 성매매를 통한 아동 학대 .....	27
【그림 III-1】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	63
【그림 III-2】 독일 미디어 관련 청소년보호기관 조직도 .....	103
【그림 III-3】 독일 미디어 관련 청소년보호기관 권한배분 .....	104
【그림 VI-1】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과 탈성매매 과정 .....	318
【그림 VI-2】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비전과 목표 .....	320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절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0년 세계에서 아동 성매매가 활발히 성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권에 위치한 태국의 아동성착취실태조사를 위해 설립된 ECPAT(아동성착취반대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종 성매매형태에 주목하고 있다. 2006년 ECPAT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 중 가출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 발달로 성문화 확산이 빠르고 성상품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상업적 아동성착취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한국만의 고유 속박 형태인 '찜질방'에서 지내며,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자신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청소년 성매매의 80% 이상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치가 현저히 증가하는 가운데 성매매사범 중 20%정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2월 2일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34명의 성매매 사범을 검거했으며, 성매매 사범 다섯 명중 한 명꼴인 891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결과에서도 성범죄자와 대상청소년이 만나게 된 방법으로 인터넷이 82%나 차지하였다.

지금 우리사회는 성인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로,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활성화로 인한 청소년 삶의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업소를 통해 주로 유입되던 성매매와는 달리 인터넷 채팅과 핸드폰 사용 증가로 인한 성매매 관련 매체에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또한 경기 불황으로 인한 빈곤 가정의 가출청소년 증가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청소년 인터넷성매매가 급속히 유입·확대·재생산되어, 일부 비행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면 누구나 손쉽게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성매매는 해당 청소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근절되어야 할 매춘산업이다. 또한 성의 상품화로 인한 성매수자인 남성의 성도덕적 해이 및 가정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사회 전체의 성도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미래사회 건설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자를 만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성매매 현상은 성인남성이 어린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싶은 매춘욕구와 가출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들의 소비욕구, 그리고 인터넷이 주는 익명성과 편리성이 만난 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어떤 인구집단보다 범죄피해의 우려가 높은 인구층이며(Finkelhor & Asdigian, 1996), 특히 성매매청소년은 더욱 그러하다. 특히 성매매피해청소년은 성인보다 훨씬 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어떻게 성매매와 연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Cusick, 2002).

2007년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교육수강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당시는 물론 가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학대나 착취의 피해자이며 사회적 위험에 높게 노출되었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향락 아르바이트, 문제집단 등으로 부정적,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성매매의 단절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집행, 관련정책 및 서비스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남미애·홍봉선, 2009).

2001년을 기점으로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성매매 청소년의 욕구와 당면문제, 인터넷성매매 과정, 청소년 성매매를 인터넷 매체특성과 관련지은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인터넷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타인들에게 노출하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발견과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연구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인터넷성매매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인터

넷의 사회적 확산과 성개방 풍조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국가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유입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점 및 욕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영역과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 현행 법·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성매매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및 재발방지 정책 등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 1)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의 개념 및 원인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인터넷성매매 원인 및 문제점,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출이론,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현황 등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 2)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 분석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정 및 생활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한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는데 내용은 인터넷성매매 대상 청소년 일반 특성, 인터넷성매매 경험 실태, 인터넷성매매 과정, 인터넷성매매 전 생활, 인터넷성매매 후 생활변화, 탈성매매 및 재유입관련 요인, 인터넷성매매 관련 피해경험, 현재 및 미래생활 관련 사회적 지원 욕구, 인터넷성

매매 방지대책 등에 관한 것이다. 즉,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성매매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바탕으로 인터넷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재발 방지 및 원활한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3)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한다.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법체계 정비 및 개선방안 도출과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학계, 행정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인터넷성매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어떤 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간의 합의를 도출한다. 즉 델파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의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정책영역과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터넷성매매정책의 이슈와 방향에 대한 이해와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해야할 실천적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 4) 국내외 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 및 관련법제 분석

국내외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 현행 법·제도 및 외국의 관련 정책사례를 수집·분석한다. 성보호관련 법·제도에 관한 문헌,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와 관련된 정책적·법적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보다 먼저 인터넷성매매 유인행위처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인터넷성매매 현황, 인터넷성매매 관련 법·제도, 인터넷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기관 등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성매매 예방·근절 관련 ‘성매수유인행위’ 처벌 규정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터넷상 공개수사가 현행법과 충돌하는 한계를 지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성매매 청소년들의 주 활동공간인 채팅의 은닉성과 접근성 차단으로 인터넷성매매 사전 포착의 한계,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 자유에 위배되어 통신감청이 불가하고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전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사상 범행입증 곤란, 함정수사 등 과잉 단속 우려, 일부 청소년이 성매수를 유도한 뒤 공갈 및 금품갈취 등의 악용 우려가 있다. 수만에서 수십만 건으로 추정되는 동 행위의 효율적 감시방안, 감시의 범위 설정, 성매매에 대한 성인과 청소년의 비교형량의 이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인터넷성매매 관련 법제도 및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매수유인행위 처벌 규정 마련 및 인터넷성매매 대책마련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대책방안 및 정책 로드맵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예방과 지원 정책을 파악,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재발 방지 및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종합대책을 모색하고 단기,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그림 1-1】 참조).

### 1) 문헌연구

문헌연구로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의 개념 및 원인과 문제점에 관한 이론과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도에 관한 문헌,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와 관련된 정책적·법적 쟁점에 대하여 국내외 특히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의 문헌과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또한 경찰청의 경찰백서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부처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 2) 심층 면접조사

2009년 7~9월에 걸쳐 인터넷성매매를 경험한 43명의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인터넷성매매 유입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법체계 정비 및 개선방안 도출과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학계, 행정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인터넷성매매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어떤 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간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 4) 국내외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사례 조사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국내외의 법령 및 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개정안의 입법방법론에 관한 조언, 조문에 나타난 구성요건이나 형량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법률규정들이 어떠한 요건이나 절차, 방법 등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우리나라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현황 및 대응과 관련된 정책과의 비교 평가 및 문제점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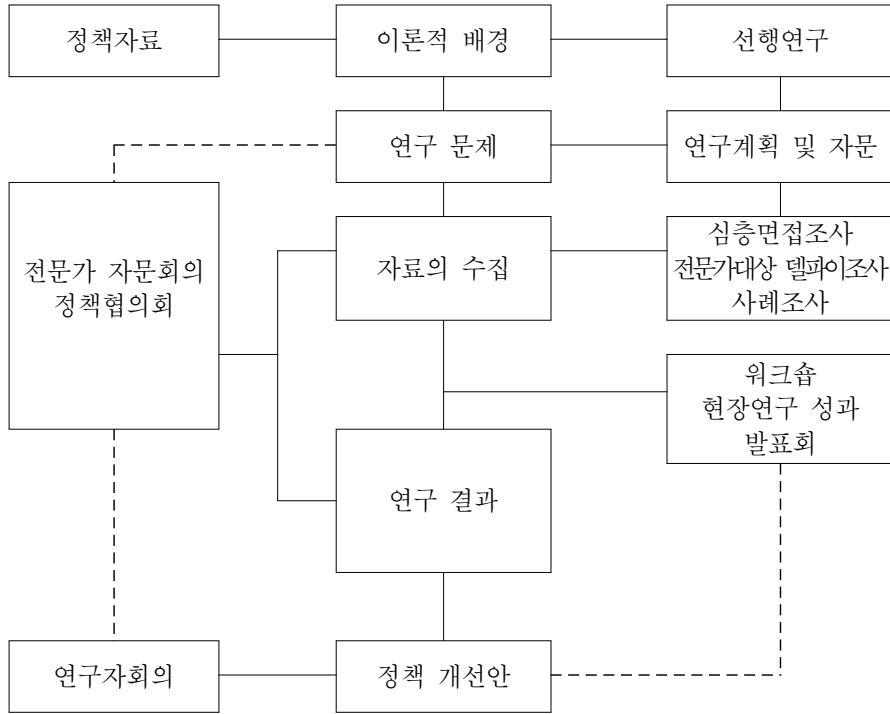
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5)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으로서 인터넷성매매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현장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전문가 집단토의를 실시하는 한편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대책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6)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인터넷성매매 관련 주무부처의 정책담당자와 실행계획서 검토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실시하는 한편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종합대책을 모색하는 워크숍과 최종결과물을 발표하는 현장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그림 1-1】 연구절차도

## Ⅱ. 이론적 논의

1.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2. 청소년 성매매 접촉 경로
3. 청소년 인터넷성매매의 원인
4.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이론



## II. 이론적 논의

### 1.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 1)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의 개념

일본에서 유행한 원조교제<sup>1)</sup>가 국내 청소년들에게서 인터넷을 이용한 매춘행위로 발전하면서 ‘청소년 성매매’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미화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는 2001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 성매매’로 명시되어 있다(조아미·이명화, 2001). 이전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원조교제, 청소년 매춘, 청소년 매매춘, 청소년 윤락, 청소년 성매수라는 말과 혼용하기도 했다(이민희, 2001).

일반성매매와 대별되는 인터넷성매매의 특징은 첫째, 성매매 제안 공간이 확대된다는 점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일상적인 공간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래 제안을 받고 있다. 둘째, 성매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으로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간에 접속이 가능한 채팅의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유형의 성적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인터넷이 사전정보 교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신분 노출이 염려되는 게시판이나 공고를 이용하기 보다는 개인간의 쪽지나 귓속말을 자주 활용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성에 대한 놀이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묘사되는 성은 놀이나 유희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청소년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박경래, 2008).

---

1)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원래 일본 쇼와 30년대 근로여성 원조교제 클럽이라는 용어사용으로 음란 전단지에서 처음 등장하였다"고 한다(박병식, 2001). 그런데 '여중고생 등의 미성년 여성이 성인 남성과 교제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언론에서 문자적 의미로 원조(도와준다)와 교제(서로 사귀다)의 복합어로 사용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청소년 성매매를 일컫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청소년 성매매는 곧 인터넷성매매라고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금액, 만날 장소 등이 협의가 되며 어느 수준까지 성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성매매는 인터넷채팅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매매의 유형으로, 여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타인을 청소년과의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대가의 제공을 나타내어 청소년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대가를 받을 것을 나타내어 사람을 청소년과의 성교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성교 등이란 성교 혹은 수음, 구음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 또는 자기의 성적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기, 항문 혹은 유두를 만지거나 혹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기, 항문 혹은 유두를 만지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는 여성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인터넷을 매개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현실 공간에서 만나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청소년 성매매는 갑자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일삼는 업자들을 고발하는 사건들은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은 시대적 상황과 매체의 발달에 따라 변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도 청소년들이 성매매자인 것을 제외하고는 성인들이 행하는 일반적 성매매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적인 성매매와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성인 대상의 성매매의 대표적인 특징은 성매매를 통해 ‘생계형 화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물건을 사기 위한 용돈 벌이나 가출 청소년들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표 II-1>은 청소년 성매매를 ‘개인형’과 ‘업소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청소년들의 경우도 유흥주점을 통해 업소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 전화와 같은 매개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하나의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은 ‘개인형’이며 ‘전자 알선형 성매매’ 형태 중의 하나인 ‘사이버 성매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성매매는 청소년 성매매의 한 유형인데 과거에 업소를 통해 유입되던 성매매 유형과는 달리 이제는 청소년 성매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소형 성매매는 업소에 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윤락행위를 하여 이루어지는데 반해, 개인형 성매매는 중간에 특정 매개체를 두어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가 성사된다.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이후 윤락업소 종사자들이 경찰들의 집중 단속으로 업소형에서 종사하다가 개인형으로 전환하는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방이나 유흥업소에서 행해지던 업소형 성매매가 인터넷을 통해 출장 서비스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sup>2)</sup> 업소형 성매매도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 자체가 청소년에게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업소형 성매매의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이 자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없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은 개인형 성매매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형 성매매는 용돈이 필요해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이 달

2) 이코노미스트 783호 (2005.04.11)

[http://magazine.joins.com/economist/article\\_view.asp?aid=243562](http://magazine.joins.com/economist/article_view.asp?aid=243562)

성되면 스스로 일시적, 장기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업소형에 비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화대갈취 등의 폭행, 협박이 없으므로 구속되지 않는다.

<표 11-1>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및 비교

구분	개인형	업소형	
개념	주로 10대 청소년이 성인남성들로부터 금품, 기타 대가를 제공받고 불특정 장소에서 갖는 1회성 성관계	청소년이 술집, 티켓다방, 숙박업소, 증기탕 등 성산업을 매개로 하여 업소내부 또는 외부에서 일정 대가를 받고 하는 성매매	
매매 형태	중간에서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없고, 청소년이 직접 성매매 상대자와 연결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 내에서 혹은 외부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행함	일정한 매개체나 매개장소가 있어서 성매매가 이루어짐
유형	거리 성매매, 채팅, 핸드폰, 원조교제	식품접객 업소, 이벤트사 성매매	전화방, 폰팅
내용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인터넷 채팅 또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성매매	- 티켓다방, 단란주점, 우흥주점, 대중음식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 이벤트사, 결혼상담소, 직업상담소 등에서 알선하는 성매매	전화방을 통해서 연결되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성매매
매개	전화, 인터넷 등	성산업 전반	
청소년 인권 침해	성매매 과정을 제외하면 인권침해 요인 거의 없음	성매매 강요, 화대갈취, 폭행, 협박 등 성인 성매매 수준의 인권침해	
자발적 중단 가능성	대부분 자발적 중단이 가능함	채무 증가 등으로 자발적 중단이 어려움	

출처: 홍봉선(2007).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효과성 검증 및 성과검증. 국가청소년위원회.

## 2. 청소년 성매매 접촉 경로

최초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로는 총 검거건수 839건 중에서 인터넷이 7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82건), 티켓다방(47건),



유흥단란주점(7건), 스포츠마사지(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07).

<표 II-2> 청소년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단위 : 건수)

연도별	계	인터넷	유흥단란	티켓다방	스포츠마사지	기타
2005	1,139	924	23	7	62	123
2006	744	590	1	5	50	98
2007	839	701	7	47	2	82

출처: 경찰청(2007), 아동·청소년백서(2008)에서 재인용함.

일반 성매매와 다르게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로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정부 단체의 감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는 인터넷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3>은 2008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에 수록된 성매수자와 청소년의 접촉방법에 관한 통계치이다. 주목할 점은 성매매의 93.6%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II-3> 성매수자와 청소년의 접촉 방법

접촉 방법	빈도	%
인터넷	440	93.6
이동통신	1	0.2
거리헌팅	1	0.2
아는 사람 소개	15	3.2
업소의 알선	5	1.1
기타	8	1.7
합계	470	10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a),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1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년도 성매수자와 청소년 간에 접촉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이 가장 높았다. 93.6%가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그 다음이 3.2%인 아는 사람의 소개로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접촉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자를 만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증가추세는 <표 II-4>와 같이 2000년 당시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비율은 44.8%였지만 2002년 68.3%에 이르러 2006년에는 90%를 넘어섰다. 반대로 전화방 이용률은 2000년 20.8%였는데 2006년에는 0.9%로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성매매 시 인터넷 이용률을 시계열로 분석해보면 2006년에는 2000년의 2배나 늘었다.

<표 II-4>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와의 접촉방법

단위: 명(%)

접촉 방법	사건연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인터넷	125 (44.8)	735 (53.5)	953 (68.3)	1,204 (80.8)	1,370 (86.2)	1,155 (86.3)	836 (90.9)	6,378 (76.0)
전화방	58 (20.8)	234 (17.0)	99 (7.1)	18 (1.2)	17 (1.1)	37 (2.8)	8 (0.9)	471 (5.6)
이동 통신	4 (1.4)	32 (2.3)	31 (2.2)	15 (1.0)	8 (0.5)	3 (0.2)	2 (0.2)	95 (1.1)
거리 헌팅	17 (6.1)	58 (4.2)	43 (3.1)	28 (1.9)	39 (2.5)	14 (1.0)	10 (1.1)	209 (2.5)
아는 사람	21 (7.5)	86 (6.2)	68 (4.9)	58 (3.9)	53 (3.3)	43 (3.2)	31 (3.4)	360 (4.3)
업소	32 (11.5)	164 (11.9)	141 (10.1)	109 (7.3)	79 (5.0)	25 (1.9)	13 (1.4)	563 (6.7)
기타	22 (7.9)	69 (5.0)	62 (5.0)	59 (4.0)	24 (1.5)	62 (4.6)	20 (2.2)	318 (3.8)
계	279 (100)	1,378 (100)	1,397 (100)	1,491 (100)	1,590 (100)	1,339 (100)	920 (100)	8,394 (1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b).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간 매개(체)를 통해 성매매 접촉시 연령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나타났다. 홍봉선(2007) 연구에 의하면 17세 미만에서는 성매매 접촉 경로로 채팅이 92.6%로 거의 대부분을 이루었고, 17세 이상에서는 채팅(78.3%), 아

는 사람 소개(8.7%), 아르바이트알선(7.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성매매 접촉 경로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청소년 인터넷성매매의 원인

#### 1) 사이버 범죄의 특성

2004년 5월 경찰청에서는 급증하는 인터넷성매매를 단속하고자 사이버 성매매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가동하였다. 원조교제의 형태에서 시작된 청소년 성매매가 매개체를 통한 개인과 개인 간의 성매매 형태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예방과 단속이 어려워진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인터넷 공간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는 인터넷의 특징은 익명성이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 수 없거나,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다. 익명성이란 상대방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며 커뮤니케이션 당사자의 신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Kizza, 1998).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특정 카페나 채팅 사이트는 1차적으로 이용자들의 실명을 보호하고 익명을 보장한다. 그래야만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대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촉함으로써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가짐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통상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시 스프팅(IP변조)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익명성은 행위자의 수치심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 각종 성범죄를 증가시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익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과거보다 수월하게 피할 수가 있다.

둘째, 시공의 초월성이다. 현대의 정보사회는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24시

간 활동이 지속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영역이나 범죄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인터넷의 피해자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실시간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마찬가지로 정보의 축적이 엄청나게 이루어져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분명한 구분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흐릿하게 다가 온다. 동일하게 지형을 가지고 판단하는 국경의 의미는 전자상거래 영역이나 성범죄영역에서는 무의미한 구분이 된지가 오래다. 청소년에게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를 찾거나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범죄는 수사기관에게 그에 어울리는 수사기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범죄에 따른 실시간의 대응은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새로운 형태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에 여론합의가 시급히 필요한 시기가 올 것으로 본다.

셋째, 즉흥성 및 신속성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음성 또는 한 번이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상대방에게 직접 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즉흥성은 이용자들에게 사회적 계급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나이, 성별, 국적, 직업 등과 상관 없이 모든 이용자들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이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선 현실세계에서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범위가 제한되는 변칙적인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성범죄가 별다른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다반사로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넷째, 범죄확정의 어려움이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결과는 고의에 의한 것이건 과실에 의한 것이건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야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결과가 일어나도 무방하다는 인용의 의도가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형법상의 고의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곤란하다. 성범죄 영역에서도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 2) 음란매체로 인한 성적충동 자극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란물에 노출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성적 충동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밝혀졌다(이한우, 1990; 이현규, 1996; 성윤숙, 1998; 조주영·김영희, 2004). 음란물 노출은 단순히 성적 호기심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모방적 성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현규, 1996).

인터넷 상에서 성인물을 검색하거나 다운로드할 경우, 주민번호를 통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성인물에 노출되고 있다.

2008년 대구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에서 이미 알려진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인 음란물에 노출되었을 경우, 일탈적인 성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성식(2004)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음란물, 특히 폭력적인 음란물에 접촉할 경우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성의식이 개방되어 순결의식이 낮고, 혼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이세용, 2000).

## 3) 개방적인 성의식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의 단속에 의해 조사되어진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 된 1순위 이유로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8c). 그런 대답의 원인을 상식적인 선에서 자신이 사용할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의식이라고 유추할 수도 있다. 혹은 청소년들의 성의식 개방에 맞물려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생긴 기형적 산물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성행위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을

순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중퇴를 했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의 대부분이 여자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성매매에 대해 개방적인 성의식과 허용적 태도를 보인다(김시업·김지영, 2002; 백혜정,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8c).

#### 4) 인터넷 채팅사이트 이용의 증가

컴퓨터 같은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도구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교육과 지침 없이, 편의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입시 위주의 교과목 수업으로 인해 정보통신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미디어교육은 오래 전부터 무관심했고,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단기적 대안 마련에 급급했다. 그로 인해 미디어는 우리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않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웹 2.0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인 참여, 공유, 개방의 특성을 표방하는 세대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필수품처럼 여기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없이 표현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오프라인 대화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윤정희(2005)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채팅경험률은 92%에 달했고, 남자 청소년이 91.9%, 여자청소년이 92.6%였고, 학교별로 중학생은 90.5%, 인문계 고등학생은 97.4%, 전문계 고등학생은 90%로 나타났다. 이춘화·성윤숙·조아미(2008) 연구에서는 청소년 채팅 경험률이 96.9%로써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채팅을 한 적이 있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들이 채팅을 하면서 성적 언어폭력, 성매매 제의, 성인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춘화·성윤숙·조아미, 2008). 특히 채팅시 음란물을 접하게 될 기회가 많아지고(서미정, 2001), 청소년위원회(2003)의 조사 결과, 채팅을 한 여학생의 39.6%가 성매매 제

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채팅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채팅 공간이 건전한 대화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성매매의 거래가 성사되는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5)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관련 온라인채팅 대화방 참여경험이 ‘자주’가 1.8%, ‘가끔’이 12.4%, 참여한 적은 없지만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가끔 19.7%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관련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아도 돈을 줄테니 만나자는 제안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22.2%, 주위 친구가 있음이 12%로 나타나 채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매매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이론

##### 1) 피해자로서의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이해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시각은 매우 다양하지만 성매매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간주해야 하며 성인과 차별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갖는다. 1990년대 말 *Whose Daughter Next?*(Barnardos, 1998)는 아동과 청소년이 매춘을 통해 학대받는 것을 보호하는 정책마련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매매청소년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at-risk) 사람이라는 점이다. 성매매청소년들은 성매매에 진입하기 전부터 경제적 궁핍은 물론 성적 괴롭힘, 교육적 박탈, 직업 차별, 가정폭력, 신체적, 성적 폭력에서의 취약성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다(Farley & Kelly, 2000). 반면 이들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곧 바로 빈곤한 상태가 되고 사회적,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나 결여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쉽다(Scamber & Scambler, 1995). 특히 구속과 사회적 경멸의 경험은 성매매 청소년 및 여성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찾거나 의료적 서비스를 찾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Weiner, 1996).

둘째, 성매매청소년은 학대 및 착취의 희생자이며 다양한 사회적 위협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매춘을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어린 매춘부라기보다 학대의 피해자로 인식(Scott, S. & Harper, Z., 2006)해야 하며, 성적으로 착취당한 청소년들은 범죄자라기보다 학대의 피해자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Department of Health, 2000; Home Office, 2004; Phoenix, J., 2002). 2004년 9월 24일 비준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Child Sales,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에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를 세 개의 CSEC 범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CSEC에 맞서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관련 조치들이 들어있다(이춘화 외, 2007).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기존 문헌연구에 따르면 여자청소년 또는 여자성인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에는 크게 경제적 불평등(O'Connell-Davidson, 1998), 남자의 폭력, 남자의 권력(O'Neill, 1997) 등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된다. 또한 성매매여성의 처벌 즉 범죄화가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자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린 청소년들이 사회적 스티그마로부터 고통을 받게 한다고 주장한다(Deren et al., 1996). 더불어 성매매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실무자나 전문가들도 청소년들을 학대된 희생자이며 성매매를 통해 학대된 또는 상업적 성적 착취에 관련된 사람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Barnardos, 1998; Pearce, Galvin & Williams, 2000; 홍봉선·남매애, 2009 재인용).

무엇보다 청소년집단은 사회복귀 및 치유 확률이 매우 높아 교육을 통해 완전히 정상인으로 복귀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집단이며 특히 연령이 적은 성매매청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은 연령이 많은 여성에 비하여 훨씬 크다. 따라서 비록 성산업에 유입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의지 및 사회 전체의 힘에 의해 효과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박미숙, 2000). 특히 성매매청소년들이 정상적 사회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으나 정상적인 사회화로 재편입 또는 통합이 가능한 자로



간주하여 통제 대상이 아닌 원조의 대상자, 청소년복지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파악하여야 한다(홍봉선·남매애, 2009).

셋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성매매의 유입 및 지속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진입하는 것은 한 가지 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도 상호 연관된 요인들이 작용한다(O'Neill et al., 1995; Melrose, Barrett & Brodie, 1999).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악한 청소년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단순히 청소년의 도덕적 문제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성을 상품화하고 이를 부추기는 환경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학대나 착취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학대나 착취의 희생자로 볼 수 있느냐하는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매매에의 참여가 학대, 빈곤 등 중요한 생활경험에 의해 만들어지고 길러진 낮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이루어진 참여(Melrose et al., 1999)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홍봉선·남매애, 2009).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성을 사고파는 윤락행위 혹은 성매매 행위는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관점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성을 사는 성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벌받는 자가 드물며 또한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로 보기보다는 행위의 자율성을 행사한 또 다른 가해자라는 낙인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의 많은 부분을 청소년에게 전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향락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하고 자발적인 경향이 높다는 보고를 통해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홍봉선·남매애, 2009).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구조적 제반요인에 의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강제되는 경향이 강하다(박미숙, 2000).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의 상품화는 단순한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청소년이 차지하는 지위의 변동과 위기를 의미한다(노혁, 2000).

##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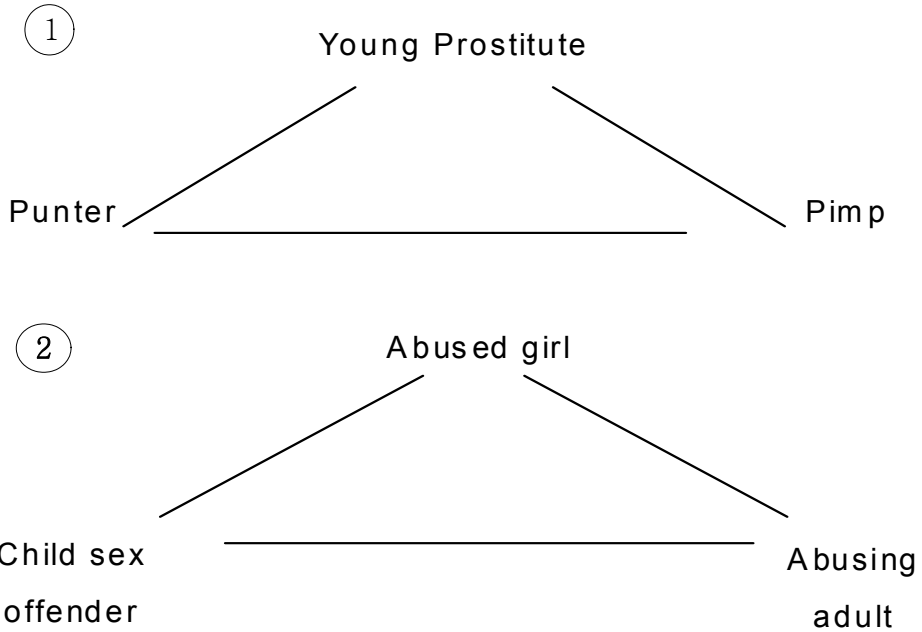
### (1) 청소년 성매매 유입 이론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를 설명하는 외국 이론에는 또래집단 네트워크를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모델(Cusick, 2002; Hester & Westmarland, 2004 재인용)과 성인에 의한 학대를 통해 성매매 청소년으로 길러지는 모델 유형(Barnardos, 1998)이 있다.

첫 번째 이론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결정하게 되는 동기가 친구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Jesson, 1991; Jesson, 1993; Crosby & Barrett, Melrose et al., 1999; Hester & Westmarland, 2004에서 재인용함). 빈곤과 같은 개인적 경험이나 지역적 상황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청소년의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어 성매매로 유입된다고 본다.

두 번째 이론은 성매매업자나 성학대를 하는 가족 중의 성인이 어린 시절부터 성적 학대를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을 학대하는 성인들이 자신을 사랑하거나 성인과 사랑하는 관계로 생각한다.

【그림 II-1】 중에 ①번 그림은 청소년이 성매수자(punter)가 성매매업자(pimp)를 통해 청소년이 성매매에 연결되는 그림이다. ②번 그림은 부모의 학대나 무관심 등에 방치된 여성청소년이 성범죄자(sex offender)에게 노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1】 성매매를 통한 아동 학대

출처: Children abuse through prostitution(Barnardos, 1998).

특히 Barnardos(1998)가 제시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 과정은 모두 4단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1단계에서 청소년을 유인하고, 2단계는 애착이나 의존을 형성시킨다. 3단계에서는 청소년을 조금씩 통제·조정하는 단계이고, 4단계에서 청소년을 완벽히 지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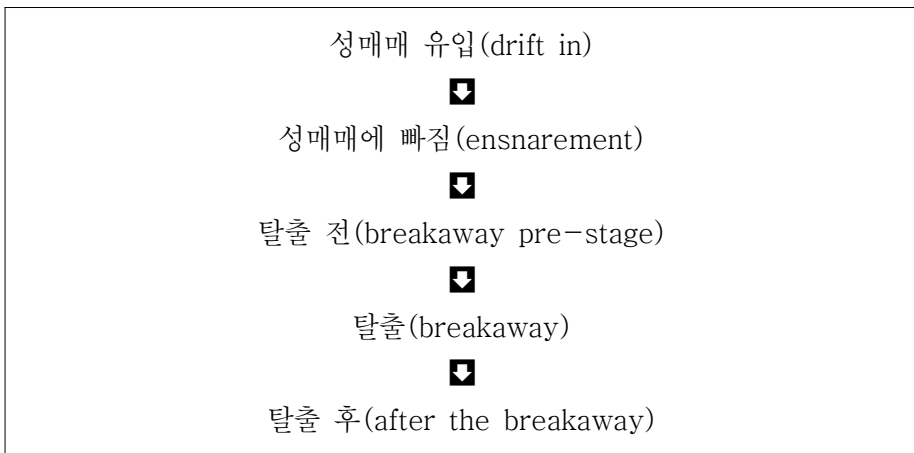
## (2) 청소년 성매매 탈출 이론

### ① Mansson & Hedlin의 탈출 이론

영국의 Home Office Research에서 2004년 거리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방지 프로젝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가지 유형의 이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그만 두거나 성매매업소에

서 빠져나오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연구의 바탕이 된 이론은 Mansson & Hedlin(1999)이 개발한 이론이다. 이는 스웨덴에서 1981년부터 1995년에 걸쳐 성매매에서 빠져나온 2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여성들의 변화과정을 집중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그 모델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어 탈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표 11-5> 성매매 유입에서 탈출까지 과정



출처: Mansson & Hedlin(1999); Hester & Westmarland(2004)에서 재인용함.

여성청소년들이 성매매에서 유입되는 과정은 하나의 계기 아닌 어린 시절의 경험, 경제적 상황, 성매수자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이루어지고 성매매에 빠지고 만다. 하지만 극도의 위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되면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여기서 탈출이라 함은 직업을 바꾸거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표 II-6> 역할 변화 과정과 전환점

성매매 청소년의 역할 변화 혹은 탈출	전환점
1. 의심 발생 : 고맙게 여기던 것에 의심, 실망과 불만족이 생김 ▼ 2. 대안 찾기 : 불명확했던 대안들이 점점 확실해지고, 신중히 계획을 세움 ▼ 3. 전환점 : 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점차적인 상황이 진행됨 ▼ 4. 역할을 다시 찾기: 새로운 정체성을 찾음	1. 눈을 뜨는 사건 :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알게 됨  2. 외상적 사건 : 폭력, 자녀를 잃어버림  3. 긍정적 경험 : 사랑에 빠짐, 아이를 갖게 됨, 새 직업을 찾음 등

성매매에 위기를 느낀 여성청소년은 자신의 역할 변화(role change) 혹은 역할 탈출(role exit)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전환점(turning point)이 필요하고, 전환점이 발생하면 탈출행동(exit behaviour)을 시도한다. 성매매 청소년들에게는 전환점이 있어야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전환점이 되는 유형에는 자신의 상황에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있거나 ‘외상적 사건’에 의해 충격을 입거나 특별한 ‘긍정적 경험’을 겪게 되면 성매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모든 성매매 청소년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지는 않는다고 Mansson & Hedlin은 이론의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다.

② Hester & Westmarland의 욕구와 지지 모델

Hester & Westmarland(2004)에 따르면 성매매는 유입에서 성매매 행위, 탈출까지 일련의 단계를 포함한다. 이들 단계에서 성매매 청소년들은 취약성, 혼돈, 안정화, 이동 등을 경험한다. 또한 탈출시도는 실제 성매매로부터 탈출이라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이며 이 시

기에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지지가 필요하다.

<표 II-7> 욕구와 지지 모델

취약성 (vulnerability)	혼돈(chaos)	안정화 (stabilisation)	탈출후/ 이동 (post-exiting/ moving 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 진입</li> <li>- 가족에서의 폭력: 신체적, 성적, 정서적</li> <li>-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li> <li>- 학대 남자 또는 이성친구</li> <li>- 동료 압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리스</li> <li>- 부채</li> <li>- 재정적 수입 없음</li> <li>- 약물, 알코올 의존</li> <li>- 보호 중인 아동</li> <li>- 동료압력</li> <li>- 학대남자/ 약물 의존 파트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 확보</li> <li>- 급여 받음</li> <li>- 약물/ 알코올 의존 감소</li> <li>- 아동의 보호를 얻기 위해 이동함</li> <li>- 파트너와 분리</li> <li>- 학대남자에 대한 사법절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li> <li>- 교육/훈련</li> <li>- 재정적 독립</li> <li>- 약물/알콜에서 벗어남</li> <li>- 원상태로 복귀</li> </ul>

출처: Hester & Westmarland(2004); 홍봉선(2007)에서 재인용함.

<표 II-7>은 욕구와 지지 모델이다. 4가지 단계는 앞뒤로 이동 가능하다. 즉 취약성에서 혼돈의 단계로 넘어가서도 다시 취약성으로 복귀될 수 있다. 혹은 개인의 대처능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기관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첫째, 취약 단계(vulnerability)에서 성매매로의 진입방지를 위해 조기 개입과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적 사업은 성착취 위험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개입으로 학교, 교회, 지역기관 등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고위험 청소년과의 실천 작업에서는 부모의 개입은 물론 다기관 계획 및 전략의 정보공유 및 실행에 대한 프로토콜을 포함해서 다기관간 작업과 기관 실무자 교육이 중요하다.

둘째, 혼돈(chaos)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웃리치, 드랍인 센터, 청소년 전담인력 등을 통해 청소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프로젝트 수행자와 안정된 작업관계를 형성하고 성인과 분리된 청소년에 맞는 개별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효과적 의뢰 시스템, 다기관 작업, 신속한 서비스 연결(track)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관련된 약물 의존자 파트너와 성착취하는 남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는 안정화(stabilisation) 단계이다. 이 시기는 성매매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기를 극도로 희망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존적 욕구를 드러나게 해야 하며 탈출을 위한 전단계로서 안정화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물 프로그램에의 의뢰, 건강 보호에 대한 쉬운 접근, 폭력적인 포주 또는 남자 친구로부터의 탈출, 새로운 주거 선택, 상담과 급여, 부채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1대 1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난폭한 남성에 대한 정보를 거리 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반면 안정화 이전에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환경에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것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은 이동(moving on) 단계이다. 이는 탈출 후 사회 복귀가 지속되는 단계로서 1대 1 지지와 같은 계속된 개입과 전문적 상담을 통해 부채, 폭력, 성폭행과 같은 위기요인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공공 및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전인적(holistic)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Ⅲ. 국내외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현황과 관련 법제

1. 한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미국



### Ⅲ. 국내외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현황과 관련 법제

#### 1. 한국

##### 1)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 현황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청소년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2007년도의 경우 청소년 성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검거된 건수는 839건으로 2,582명이 검거되었으며, 행위자는 1,835명, 업주 등 관련자는 242명, 절도협박 등으로 입건된 청소년은 505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 2007년 대상 청소년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수강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2006년 6월 30일)에 따라 청소년 전원을 입건하도록 한 대검찰청 수사지침에 따라 성매매 대상 청소년 숫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대상별			조치	
			행위자	업주 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5	1,139	1,946	1,611	305	30	295	1,651
2006	744	1,745	1,502	183	60	149	1,596
2007	839	2,582	1,835	242	505	126	2,456

출처: 검찰청(2007); 아동·청소년백서(2008)에서 재인용함.

2008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건수 중에 성매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5.1%로 절반 이상이 성매수가 차지하였고, 강제추행(33.4%), 강간(45.1%), 성매수 알선(2.2%)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8b). 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성매매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되고,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문제다.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의 2008년 12월 14일까지 2008년 1년 동안 73건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였고, 대상 청소년은 103명으로 나타났다. 103명 청소년들의 경찰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한 기초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III-2> 성매매 청소년 특성에 관한 통계

구분	특성 1	통계치	특성 2	통계치	특성 3	통계치
성별	남자	20명 (19.6%)	여자	82명 (80.4%)		
가출여부	가출	59명 (80.8%)	가출하지 않음	14명 (19.2%)		
장애여부	비장애	32명 (94.1%)	장애자	2명(5.9%)	-	-
과거 성매매 경험	있다	59명 (89.4%)	없다	7명(10.6%)		
성매매 대가	10만원 이상	49명 (75.4%)	5 - 10 만 원미만	7명(10.8%)	5만원 미만	8명 (12.3%)
학력 수준	학교중퇴	45명 (51.7%)	고등학생	18명(19.5%)	중학생	17명 (20.7%)
성매매 장소	숙박업소	56건 (78.8%)	실외지역	7건(9.8%)	가정집	6건 (8.4%)
성매매 접촉경로	인터넷	84명 (95.4%)	아는 사람	3명(3.4%)	기타	1명 (1.1%)
성매매 이유	생계비 마련	36명 (44.4%)	용돈 및 유흥비	31명(38.2%)	기타	9명 (11.1%)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항목은 응답(기대치)과 무응답(결측치)로 처리함.

출처 : 보건복지가족(2008c). 청소년성매매 단속 사례집.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위의 통계결과를 통해 성매매 청소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출을 했고, 과거에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로 생계비, 용돈, 유흥비 마련이 높은 빈도가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들의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

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빈곤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년 빈곤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용돈 마련 방법 중에 4%가 ‘성매매나 원조교제를 통해서 조달한적 있다’고 응답했고, 경제수준이 보통인 청소년보다 높은 성매매를 통해 ‘자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빈곤 아동·청소년 용돈 조달 방법 중 원조교제나 성매매 비율

구분		전혀 없음	가끔	자주	전체
원조교제나 성매매	경제수준 어렵다	96.0	0.5	3.5	100(200)
	보통	97.8	1.4	0.9	100(584)

$$\chi^2 = 7.384*$$

출처: 모상현(2009). 2008년 경제위기에서의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86-87.

보건복지가족부(2008b)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용돈, 유흥비를 벌기 위한 목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이 숙식해결, 생계비 마련, 물건구입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돈을 벌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은 절반 이상이 가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출한 청소년이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2000년 38.8%, 2001년 44.1%, 2002년 37.7%, 2003년 44.8%, 2004년 57.8%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정(200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의식과 행동 실태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자/여자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문항에 전문계 고등학교 남학생이 64.6%, 여학생은 78.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들 중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64.5%와 84.5%가, 그리고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은 각각 80.3%와 91.6%가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표 III-4>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

성별 학교	남	여
	질문 : “남자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부정적 응답	부정적 응답
전문계 고등학교	64.6%	78.9%
인문계 고등학교	64.5%	84.5%
중학교	80.3%	91.6%
평균	69.8%	85.0%
	질문 : “여자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	76.1%	86.1%
인문계 고등학교	71.4%	88.9%
중학교	78.9%	89.4%
평균	75.5%	88.1%

출처: 백혜정(2008)의 연구 결과를 재구성함.

백혜정(2008)의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높지만 대상이 청소년인 것을 감안하면 성매수에 대한 청소년의 허용적인 태도는 지금의 현 세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특히 남자 중고등학생들의 30% 이상이 “여자는 돈을 받고 성을 팔아도 된다” 라는 응답을 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 2) 한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 법제와 대책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속통신망 보급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용률이 대단히 높다. 인터넷 선진국 또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호칭을 모두가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밝은 측면과 함께 그 그늘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또한 빠르게 발전하여,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성매수가 지금은 중개알선자가 생겨나고 심지어는 사이버 포주까지 탄생하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에서는 호객행위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와 관련된 국내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법제도적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1) 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관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

현재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와 관련된 법률로는 크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sup>3)</sup>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유인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려할 경우, 이들 법률은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 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sup>4)</sup>은 ‘성매매’에 대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3)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됨에 따라 2009년 6월 종래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로 개명되었다.

4) 성매매처벌법 제5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매수나 성매수 목적의 유인·알선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그리고 이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련 처벌규정이 없을 경우에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된다.

성매매처벌법은 19세 이상의 남녀의 실제적인 성매매 등에 관한 행위 및 업주(포주)에 대한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의 규정을 통해 ‘성매매 없는 성적 권유 및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은 본래 집장촌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에 알선업자(포주) 등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때문에 일반 남녀가 인터넷에 대화방을 개설하고 문자·화상의 대화방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며 이성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형태로 실질적인 성매매를 행하고 있는 오늘날, 성적 권유·유인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업자(포주)만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처벌법의 규정은 문제가 있다.<sup>5)</sup>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5) 임규철 교수는 현재 법원이나 검찰 및 경찰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 포주 개념으로 상당히 좁게 한정하여 판단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그러한 이런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는 성매매처벌법의 효과를 달성하기가 극히 힘들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온라인상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적 규제 도입을 위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pp.57~58 참조.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를 예시하고 있다.

개정 이전의 청소년성보호법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그 이후의 등록·공개제도를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처벌에 그쳤으며 사전예방 차원의 제도적 장치는 아니었다.

나아가 개정 이전의 청소년성보호법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제11조 제3항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기는 했지만,<sup>6)</sup> 이 조항은 이른바 ‘포주’ 라고 불리는 성매매 알선업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성매수를 위한 권유 및 유인행위는 처벌되지 않았다.

사후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유인행위(grooming or internet luring)<sup>7)</sup>에

6) 개정법에서는 제11조 제5항임.

7)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채팅 또는 이메일로 접근하는 행위를 인터넷 루어링(internet luring)으로 명명하고 처벌하고 있다. 인터넷 루어링은 그루밍(grooming)행위의 하나로서 아동에게 성매매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믿음과 신뢰를 쌓는 행위(grooming)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루어링의 개념과 미국 각주의 법률에 대해서는 박병식, 온라인상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적규제 도입을 위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40쪽 및 104~137쪽 참조.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09년 6월 아동·청소년성 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를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며(동법 제10조 제2항),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당초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매수 등 정보통신 매체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동법 제4조 제2항 제7호)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sup>8)</sup>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유해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2조), 유해

8) 제1호에서 제6호, 제8호 및 제9호는 생략하였음.

매체물의 광고금지(제42조의2)와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청소년유해 정보의 차단, 관리, 보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제42조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7 제1항에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1호)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제5호), 그리고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제9호)의 유통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4조의7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sup>9)</sup>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 및 유인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러한 불법행위를 달성하고자 할 때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이의 협조를 거절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

물론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시적이며 일괄적 또는 획일적으로 감청 및 임시조치(접근차단)를 하는 것은 검열 및 불법감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과 약관을 통해 일정한 조건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실

9) 제2호에서 제4호, 제6호에서 제9호의 내용은 생략함.

행하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구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sup>10)</sup> 이후에 정보통신망법에 신설된 것이다.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舊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헌법재판소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요지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이다.<sup>11)</sup>

첫째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는 점이다. 즉,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

10) 헌재 2002.6.27 99헌마480(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11)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규철 교수의 분석이 상세함. 온라인상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적 규제 도입을 위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pp.57~58 참조.

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둘째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하려고 하지만,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셋째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넷째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제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및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위헌인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위헌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위헌성이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

첫째로, 구 전기통신사업법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온통신’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한 데 반해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정보’를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불법통신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도, 불법통신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온라인매체의 폐해를 방지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목적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절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

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도 불법통신의 취급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내린 다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형사 책임을 묻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 (2)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

### ① 통신매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행위는 특히 인터넷의 대화방을 통하여 행해진다.<sup>13)</sup> 먼저 통신매체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상대방(청소년)과 만나 대화를 시도하여 상호 의사를 확인하여 합의에 이르면 실행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자로부터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청소년의 성이 매수되는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성매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을 통한 대화에 국가가 개입하여 대화를 차단하거나 대화 자체를 범죄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그 일환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도 장치로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유인행위를 처벌하는 방법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형사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12) 이에 대해서는 임규철 교수의 상세한 분석을 참조 바람. 전계 보고서, 62~67쪽.

13)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매수에 관한 일본의 현황에 관해서는 박병식,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행위에 대한 외국의 대응”, 「인터넷성매매현황파악과 대책마련」, 다시함께센터, 2007, 55쪽 이하 참조.

유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매체에 직접 접속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검토하고 적발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화자의 대화에 국가가 개입하는 조치를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제한조치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국가의 작용을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감청은 필연적으로 헌법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감청은 대화자 간의 대화 내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 대화내용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에 해당한다. 이 감청이 이 내용을 지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이런 통신제한조치는 ‘지향성’ 이 인정되며, 또한 이 조치로 직접 의사교환의 내용이 지득됨으로 직접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청소년을 유혹하는 대화를 행함에 착안하여 처벌을 예고함으로써 아울러 명령, 강제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 매수 유인행위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속성도 아울러 가진다.<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감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

첫째로, 청소년 보호의 필연성 및 가치의 중대성이다. 헌법 제정자는 제34조 제4항에서 특별히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시행을 국가에 의무지우

14) 형사사법기관의 감청과 헌법적 논의에 대해서는 김경제 교수의 분석을 참조 바람. 온라인상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적 규제 도입을 위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95쪽 이하 참조.



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이 형성 과정에 있는 인격체라는 의미에서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청소년 보호의 일반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sup>15)</sup>.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둘째로, 이미 적발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주로 인터넷 대화방을 통하여 이루어짐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인터넷 대화방을 통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인터넷 대화방을 통한 접촉이 갖는 익명성, 신속성, 광범위성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국가가 인터넷을 통한 성매수 행위를 적발하고 결과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통제수단을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성매수 유인행위를 통제하고 이에 개입하는 것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행위를 억제하는데 적합한 조치이다.

셋째로, 인터넷을 통한 의사교환 과정에 국가가 감청을 행하면 이로 인하여 통신의 신뢰성과 그리고 사적 내용의 공개로 사생활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잃게 되는 통신의 신뢰성은 국가의 개입이 단지 ‘과거에 청소년 성 매수에 이용되었던 통신망이나 청소년 성 매수에 이용될 개연성이 있는 통신망’ 만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또 이런 통신망은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명칭상의 특성을 보임으로 잃게 되는 통신의 신뢰성은 미미할 것이다. 그 결과 설령 인터넷 대화방에 예정된 통신제한조치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실제로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의 신뢰성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방법

15) 김경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의 헌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2002, 16-2, 참조.

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으로 상황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개입하는 전통적인 수단이나 형벌을 예고함으로 얻어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제 더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통신제한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성의 의미나 성의 결과를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유인행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유인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자체 내의 정보통신망 및 회원가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웹 사이트 및 게시판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등 사전검열 및 사후검열과 불법적인 감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사전 및 사후검열과 불법감청이 공공연히 행하여진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와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에 포함되어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및 사후검열과 불법감청도 이를 허용하는 법률에 따라 행해진다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의 주체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 19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있어 그 행위방법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

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과 법인 등에 의한 검열 및 감청은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행위가 범죄수사 목적달성을 위해 보충적이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침해의 합법성은 인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의한 감청만을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를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16)**

제○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청소년 성 매수에 이용되었거나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기통신망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 매수를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정보통신법 제8조, 9조 및 9조의 2를 준용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3조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하 생략)

② OSP의 법적 책임

법률로 인터넷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지득할 수 있게 하고 범죄혐의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 신고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OSP(online service provider)<sup>17)</sup>는 가입 회

16)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신설조문이고, 밑줄친 부분은 추가된 부분임.

17) 인터넷은 KT, LG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등 2007년 9월 현재 112개

원에게 여러 방법의 통신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의 이용가능성을 제공하며, 자체 내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스스로 이용하기도 한다. 각 회원들은 OSP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송수신을 통해 의사소통을 행한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유인행위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OSP의 책임도 강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전에 회원과 승낙을 하여 이루어진 계약 및 약관을 통해, 즉 사전에 고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OSP가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 및 약관을 통한 통신의 자유 포기이자 공서양속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어떤 외형적 사실상황을 계기로 하는 개인적 권리의 처분내용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계약이나 약관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 및 관련 있는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거나 명백하게 권리침해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당사자에 의한 해결가능성이 힘든 경우에는 계약상의 일반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동일하게 내용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검열 및 감청을 긍정하는 입장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상의 일반조항 성격을 가진 조항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판례법의 형성을 통해 그 합법성은 가려질 것이다.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음란불법정보의 흐름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OSP의 일종인 포털이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음란불법정보에 대한 포털의 책임은 향후 더욱 가중될 것이다. 청소년의 불법적인 성매수는 인터넷상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up>1)</sup> 또는 IAP(Internet Access Provider)<sup>1)</sup>업체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ISP로부터 수를 셀 수 없는 웹사이트, 게시판, 개인 블로그(blog)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웹 사이트(web sites), 개인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자유 또는 폐쇄)게시판, Usenet, blog, 대화방 개설(chatting room) 등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하여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또는 불법적인 상호 의사소통을 행한다. 인터넷에서의 이러한 기능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를 OSP(Online Service Provider)라고 한다. 임규철, 전계 보고서, 70쪽 참조.

고 있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 상 사이트 운영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래 면책대상이 되어왔지만, 향후에도 면책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자신들의 통신선로나 웹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불법행위를 자기들만 모르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OSP에게는 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 이전에 자율적 규제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ISP를 포함한 OSP의 책임도 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의 발생에 있어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OSP와 관련해서는 그 역할과 비중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이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만남사이트 신고제의 도입이다. 만남사이트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으로 담보하는 것이 적당하다. 신고를 통해 만남사이트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지고 법률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두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사이트 개설자 전체에 위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널리 주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청소년에 의한 이용 삭제와 의무화이다.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청소년의 이용은 본래 인정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며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만남사이트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유인행위와 관련된 입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삭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과 관계되는 입력이 신속하게 삭제될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억제력이 발휘될 것이다.

넷째로, 사업의 정지명령과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정지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규제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를 규제하고, 부적결자를 배제하기 위해 예를 들어 결격사유(예컨대 조직폭력단의 구성원, 청소년, 일정한 전과자 등)를 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휴대전화 사업자의 필터링 의무화이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에서 만남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필터링은 청소년의 범죄피해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해외 사업자가 행하는 사이트의 청소년에 의한 이용방지에도 필터링은 효과적이다. 이에 법률로 휴대전화 사업자에 의한 판매계약이나 기종을 변경할 때에 필터링 서비스의 고지 권장을 피하여 필터링 이용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 3) 한국의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 (1) 성매매피해청소년 정부지원체계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안전과 및 아동청소년자립과를 중심으로, 여성부 권익증진국의 권익기획과, 그리고 법무부 인권국 내의 인권구조과, 대검찰청의 지원활동 중 소년선도보호, 범죄피해자 지원 등, 경찰청의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통합지원센터계 산하의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체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성매매피해청소년 관련 업무를 요약하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 관련 정부부처 및 주요업무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열람 및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 실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 나.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다.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비행, 폭력 등의 예방·선도 및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아 동 청 소 년 자 립 과	<p>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상담 및 자립 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p> <p>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p> <p>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가출 등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나. 비취학·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p> <p>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p> <p>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p> <p>아동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p> <p>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위기 아동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p> <p>나. 위기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통합적 지원을 위한 자원연계</p> <p>다.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위기관리 업무를 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p> <p>청소년 전화(1388) 운영</p> <p>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p> <p>청소년 모바일 상담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p>
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인기획과	<p>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p> <p>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p> <p>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p> <p>성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 계획 수립 및 지원</p> <p>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p> <p>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p> <p>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p>
법무부	인권국 인 권구조과	<p>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p> <p>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p> <p>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p> <p>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p> <p>법률구조법인의 지도·감독</p>
대검찰청	지방 검찰 청 및 지청	<p>검찰청 지원활동</p> <p>범죄피해자지원 - 피해자지원실 및 피해자상담전용전화(1301-95) 설치·운영</p>



		소년선도 보호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 결연사업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 통합 지원센터 계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성매매여성 인권침해사범 단속·지도 성매매여성 인권침해예방 치안대책 마련 성매매 신고접수사건 수사지휘 및 사건처리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 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의 아동청소년안전과이다. 아동청소년안전과의 주요기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열람제도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교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 양성·보급,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치료·재활, 아동청소년 성문화 개선 사업의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2008년 2월28일 시행)에 검사의 수감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18)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관련 내용은 홍봉선·남미애(2009)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동 규정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40시간 및 3주)을 개발하여 전국 7개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교육시설로 지정, 2006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현장지원체계는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현장지원체계인 위기청소년교육센터(2009년 현재 7개소)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자립과에서도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자립과의 주요기능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상담 및 자립 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가출 등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비취학·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 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아동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위기 아동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나. 위기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통합적 지원을 위한 자원연계, 다.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위기관리 업무를 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청소년 전화(1388)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모바일 상담의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다. 아동청소년자립과에서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를 기반으로 하여 현장지원체계인 가출청소년쉼터(2008년 12월 말 현재 77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 ② 여성부

여성부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은 권익증진국내의 권익기획과이다. 권익기획과의 주요기능은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 계획 수립 및 지원,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성매수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지원·육성하는 것이다.

주요업무 및 사업내용으로는 우선,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성매매불법성 및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매매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등 성매매방지업무 공무원 교육 실시,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양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방지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성매매 불법성 홍보 및 민·관 합동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연중 전개하고, 성매매 실태 파악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와 관련된 국민의식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치료·자활 프로그램 강화 및 보호시설 확대를 통한 성매수피해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재유입방지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의료·법률자문 지원 강화와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구출된 청소년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위한 일정기간 긴급 생계보호, 법적인료지원 및 직업훈련 기회보장, 성매매 노출정도에 따른 대상별 지원,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취학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부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현장지원체계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지원실(2009년 현재 14개소)을 운영중에 있다. 한편, 여성부 산하에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기획총괄팀에서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 조사, 점검계획안 수립 및 제도개선안 마련, 그 밖의 중앙점검단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을 하고 있으며, 조사분석팀에서는 신·변종 유해업소 수시 점검 및 시정조치, 피해자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 연계, 현장 실태 파악 및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 ③ 법무부

법무부 조직 중 성매매피해청소년업무를 추진하는 곳은 인권국 내의 인권구조과이다.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성매매피해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현장체계로서 중앙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2009년 현재 5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내용을 보면, 피해상담 및 응급조치를 위해 범죄발생 직후부터 전화, 방문, 인터넷, 서면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직면한 문제 상담, 범죄발생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병원 후송, 의료비 지원, 현장 정리, 청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 보호조치, 보호시설 입소 안내 등 신변보호 조치를 수행한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 주 업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담 및 응급조치를 통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업무를 주로 하며, 범죄가 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무료법률구조, 그리고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고용안정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위기지원의 성격이 강한 다양한 지원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는 성매매피해청소년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이기 보다 지원시설이나 다른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④ 대검찰청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교정에까지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면 검찰은 범죄자의 형확정까지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며 수사지휘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대검찰청<sup>19)</sup>에서는 성매매피해청소년과 관련하여 지원전담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청 지원활동 중 범죄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피해자 지원실과 피해자상담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

19) <http://www.spo.go.kr>

다. 전국의 모든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부담이나 불안을 덜어드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검찰청 안에 『피해자지원실』과 『피해자상담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상담 전용전화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01-95(구호를 의미함)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로 연결되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년선도 보호활동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 결연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매매의 실질적인 교정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구약식을 원칙으로 한 종전의 성매매사건처리지침을 ‘본인 동의하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 ⑤ 경찰청

경찰청 생활안전국에서는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여성청소년과를 두고 있으며, 여성청소년과의 통합지원센터계 산하에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성매매여성 인권침해사범 단속·지도, 성매매여성 인권침해예방치안대책 마련, 성매매 신고접수사건 수사지휘 및 사건처리 등의 업무를 ONE-STOP센터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계는 소년관련 경찰업무에 관한 주요 계획·연구, 소년비행방지 및 소년범죄수사업무 지도,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는 동계방학기간 중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채팅사이트, 성매매 정보공유사이트, 해외원정 성매매사이트 등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여 인터넷 성매매 단속을 지속하며, 유흥업소 등에서의 2차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의 중심이 성매매집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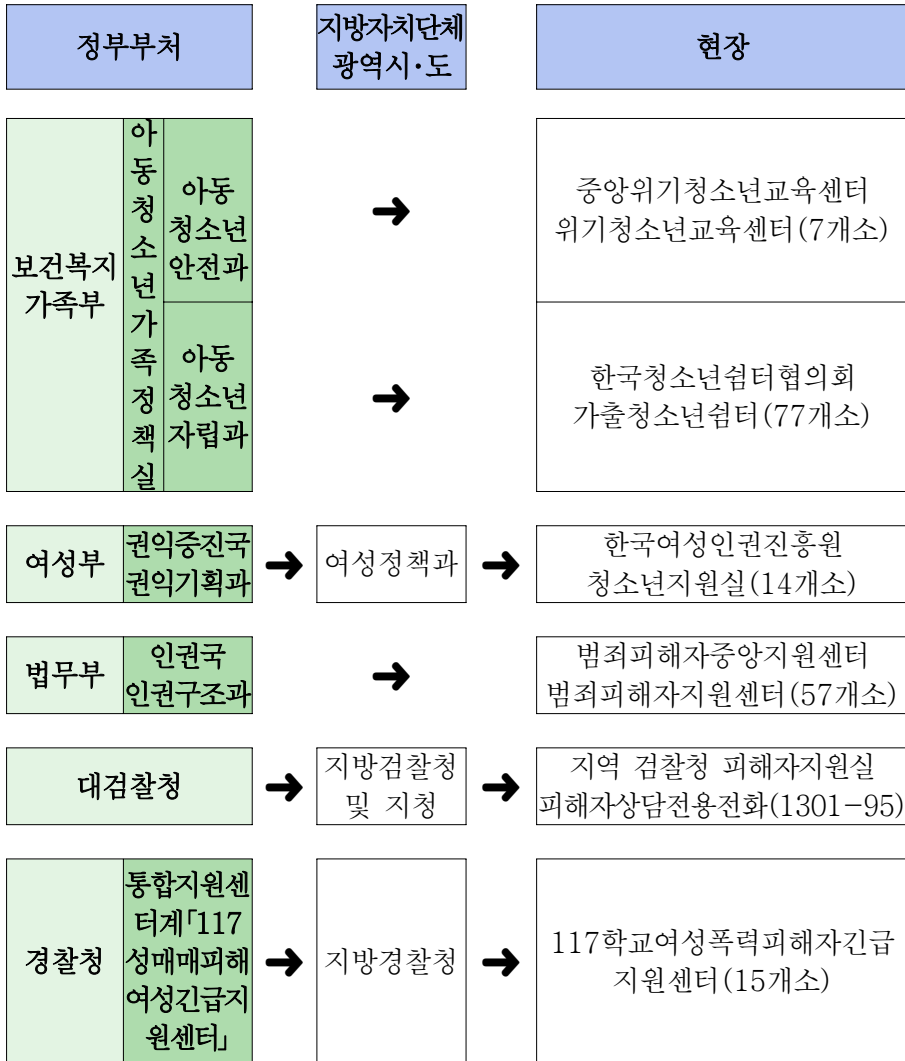
에서 유흥업소 등에서의 2차성매매로 장소가 바뀔에 따라 그 정책방향도 바뀔 것이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및 신종 변종 업소에서 청소년 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인권유린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대상청소년은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2009년 현재 15개소)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신속 구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찰청에 설치된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 8월 개소한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와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학교여성폭력피해자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에 온라인<sup>20)</sup> 상담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가족부는 교육 및 임시생활시설 지원위주로, 여성부는 교육 및 생활시설지원으로, 법무부는 긴급지원 및 관련 기관 정보제공 위주로, 검찰청은 범죄피해자 지원 위주로, 경찰청은 단속 및 지도 중심으로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간의 관련 업무들이 중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의 경우, 중점 지원대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문과 생활시설지원 등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경찰청의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역할은 [청소년전화 1388] 및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등과 업무중복성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부처간의 업무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업무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여, 각 부서의 고유한 업무는 차별성과 특성을 부각시키고 중복업무는 통합·축소하는 방안들이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의 전달체계를 그림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20) <http://www.117.go.kr>



【그림 III-1】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2) 성매매피해청소년 현장지원체계

성매매피해청소년 관련 현장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가출청소년 쉼터, 그리고 청소년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으며 설립근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지원에 두고 있다. 주된 서비스 내용은 전문가가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 활동, 진로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수료 후 의료·법률·학업·자립·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전국에 8개 위기청소년교육시설(중앙,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평화)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매매대상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검찰수강명령부과자 혹은 경찰의 대상청소년발견 통보자에 의해 발견된 성매매피해청소년으로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40시간)을 개발하여 5박6일 동안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 동안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 교육기관에 총 94명의 대상청소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05명의 대상청소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서비스 목표는 청소년들이 ‘미래 가능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써,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발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며, 그들이 탈성매매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다.

## ② 가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쉼터<sup>21)</sup>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가 주무부처로 청

---

21) <http://www.jikimi.or.kr>



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쉼터의 유형은 일시쉼터와 단기 및 중장기가출쉼터로 구분된다. 이용대상은 9세~24세까지로 일시쉼터는 이용대상자는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청소년이며 24시간 이내 일시보호를 하며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을 주로 담당한다. 단기쉼터는 집을 떠나 있는 가출청소년으로 가족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상실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를 행한다. 서비스의 주된 기능은 적절한 보호를 행하고 가족 및 사회복귀를 돕는다. 중장기쉼터는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 청소년 중 자립의 의지와 동기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중장기보호하는 곳으로 서비스의 주된 기능은 자립지원이다.

<표 III-6> 청소년쉼터의 유형 및 기능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 간	24시간이내 일시보호	3개월내외의 단기보호	3개월이상 중장기보호
이용 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 특별지원 가출청소년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li> <li>-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li> <li>-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li> <li>-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제공</li> <li>-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li> </ul>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 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출처: 홍봉선·남미애(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가출쉘터의 전국 시설현황은 일시쉘터가 9개소, 남자단기 쉘터가 14개소, 여자단기쉘터가 23개소, 혼성단기쉘터가 5개소이다. 남자중장기 쉘터는 12개소, 여자중장기쉘터는 14개소로 2008년 12말 현재 전국 77개의 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용기간은 일시쉘터의 경우, 24시간 이내의 일시보호를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후 3시에서 오후 12시(9시간)까지, 주 6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장소, 운영방법 및 특성 등에 따라 시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단기쉘터의 경우는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가능(쉘터운영위원회 승인사항)하다. 중장기쉘터는 최대 2년 이내 보호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내에서 지체가 중기(12월)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최대 1년의 단위 내에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관당 보호인원은 단기쉘터는 25명 이내이고, 중장기쉘터는 7~10명 이내이다.

### ③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부 산하의 시설로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비영리법인, 그리고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사업운영주체의 형태는 국비보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내용으로 운영된다. 청소년지원시설의 운영목적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대상은 성매수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은 전국에 14개소(2009년 현재)로 청소년지원시설이 운영 중이며, 서울 5곳, 부산 2곳, 대구 1곳, 대전 1곳, 울산 1곳, 전남 1곳, 경남 2곳 등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sup>22)</sup>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매매 방지와 예방교육, 상담가 및 전문가 양성, 현장단체 활동의 지원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과거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종이학)로 시작된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여성인권의 외연을 확대하고 더욱 실질적인 여성인권보호에 앞장서기 위하여 2009년 3월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과 접근이 요구된다. 여성의 빈곤, 가정폭력, 성폭력은 모두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불어 여성인권에 대한 일반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현장 활동지원, 이론개발, 정책 및 이슈개발 등을 통해 대표적인 국내·외 여성인권의 구심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로 성매매피해상담소,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중 성매매피해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청소년지원시설이 운영중에 있다. 성매매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숙식과 각종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학을 위한 교육과 교육 기관에의 취학 연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입소 기간은 19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가능하다. 또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위기 상황에 있는 성매매 여성에게 의료,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의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시설 등의 관련 시설에 여성들을 연계하는 곳이다. 현장방문 서비스,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하여 성매매 현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성매매를 예방하는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전국 11개 지역에서

22) <http://www.stop.or.kr>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의 동기와 조건 마련을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처럼 청소년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 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 자립자활교육, 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며,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청소년지원시설의 이용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자가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 또한 고교 재학 또는 진학을 위한 교육훈련 중인 입소자는 19세가 되더라도 재학(훈련)기간 동안 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인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의 기관운영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7> 성매매피해청소년 현장지원체계 비교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주무부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여성부 권익기획과
근거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 자보호에관한법률
목적	치료재활교육으로 탈 성매매 및 자립지원	청소년 가출 및 비행 예방, 건전한 사회복 귀를 위한 복지지원	숙식제공 및 취학 교육 등을 통한 자 립지원
주요 기능	성매매피해청소년치 료재활교육 및 CYS-net연계를 통 한 사후관리	일시보호,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 업직업훈련지원,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CYS-net연계, 1388 및 상담지원센터연계	숙식제공, 자립자 활교육, 기술교육, 취업정보제공, 상 담치료, 의료법률 지원, 진학지원 및 취학연계
이용대상	19세미만성매매피 해청소년	9-24세 가출청소년	19세미만성매매피 해청소년
시설 수	7개소	77개소(단중장기포함)	14개소
이용기간	5박6일(40시간) 3주	단기3개월(+3개월) 중장기2년이내(+1년 1회연장)	1년(19세에달할때 까지연장가능)
기관당 보호인원	7-10명(회기당)	단기: 25명이내 중장기: 7-10이내	5인 이상 20인미만

출처: 홍봉선·남미애(2009) 참고로 작성

## 2. 일본

### 1)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현황

#### (1) 일본의 만남사이트에 의한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또 그 대부분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컴퓨터나 가정용 게임기로부터

일상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가정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초중학생이나 고교생 사이에 휴대전화 보급이 늘어나 인터넷 사회에 쉽게 참가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뿐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범람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남사이트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의 이용을 계기로 청소년성매매 등 범죄피해를 입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어, 2004년 만남사이트의 이용에 기인하는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4년을 경과한 지금,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일단 감소하였지만 2006년 이후 재차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만남사이트에 의한 피해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8>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청소년 성매수	1,630 726 (44.5%)	1,546 719 (48.5%)	1,596 616 (38.6%)	1,504 548 (36.4%)	1,325 573 (43.2%)	651 304 (46.7%)
청소년 음란물	60 14(23.3%)	71 3(4.2%)	82 8(9.8%)	246 14(5.7%)	253 36(14.2%)	122 18(14.8%)
청소년 보호조 례위반	1,798 377 (21.0%)	2,012 396 (19.7%)	2,102 334 (15.9%)	2,442 403 (16.5%)	2,579 421 (16.3%)	1,398 210 (15.0%)
청소년 복지법 위반	665 57(8.6%)	590 58(9.8%)	737 75(10.2%)	753 46(6.1%)	613 72(11.7%)	293 44(15.0%)
합계	4,153 726 (17.5%)	4,219 719 (17.0%)	4,517 616 (13.6%)	4,945 548 (11.1%)	4,770 573 (12.0%)	2,464 304 (12.3%)

주) 아랫줄의 숫자와 비율은 윗줄의 수치에서 차지하는 만남 사이트에 의한 피해를 나타냄.

그리고 만남사이트에 접속하는 수단은 컴퓨터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있으나, 피해청소년의 95% 이상이 접속 수단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표 III-9> 피해청소년의 특징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휴대전화	1,046	(96.4%)	1,023	(96.4%)	1,114	(96.6%)	577
컴퓨터	39	(3.6%)	38	(3.6%)	39	(3.4%)	27	(4.5%)
계	1,085		1,061		1,153		604	

또한 2007년 7월에서 9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만남사이트 규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나 대가를 수반하는 이성교제의 유인행위」가 10%를 차지하여, 만남사이트 규제법 시행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sup>23)</sup>

## (2) 만남사이트의 운용실태

필터링 서비스 제공회사가 보유한 URL 중에 카테고리 「만남」(出会い)으로 분류되는 URL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만남사이트의 비율을 산출하고 동일한 카테고리의 총 URL 수에 곱하여 만남사이트의 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집계한 결과, 만남사이트의 수는 약 5,000개 사이트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유인행위의 적발건수가 증가되고 있다. 경찰은 만남사이트 규제법 시행 이후에 위반한 178개 사이트에 대해 경고를 내린 결과, 경고 대상의 모든 사이트가 개선조치를 취하

23) 성교나 대가를 수반하는 이성교제의 유인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되는 행위(10.0%), 성교나 대가를 수반하는 이성교제의 유인으로서 청소년과 무관한 행위(32.0%), 성교나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이성교제의 유인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되는 행위(10.8%), 성교나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이성교제의 유인으로서 청소년과 무관한 행위(4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나 경고를 계기로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표 III-10> 위반형태별 적발건수

	2004	2005	2006	2006	2007
				상반기	상반기
제1호 위반	12	8	18	19	39
제2호 위반	6	4	15	10	14
제3호 위반	12	6	8	2	15
제4호 위반	1	0	6	5	5
합 계	31	18	47	2	5

- 주) 제1호: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의 유인 및 알선  
 제2호: 성인에 대한 청소년과의 성매매 등 유인 및 알선  
 제3호: 청소년에 대한 대가제공 이성교제의 유인 및 알선  
 제4호: 청소년과의 대가 수수 이성교제의 유인 및 알선

<표 III-11> 청소년의 입력사례 예 1

[조사개요]							
대형 만남사이트 2곳의 입력내용 1,000건(각 사이트 500건)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이용실태 등에 대해 조사함. 상기한 71건 중에 3건이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입력임(전체의 0.3%).							
합계	청소년의 입력	성인의 입력	연령 미상				
1000	71	99	830				
(100.00%)	(7.1%)	(9.9%)	(83.0%)				
* 입력내용으로 18세 미만의 고교생이라 판단.							
합계	원조교제	암묵적인 원조교제	놀이 대상	친구/애인	메일 친구	자기소개	기타
71	1	2	31	19	15	0	3
100.0%	1.4%	2.8%	43.7%	26.8%	21.1%	0.0%	4.2%
주) <원조교제>와 <암묵적인 원조교제>는 부정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가능한 것임.							



(3) 청소년의 만남사이트 이용실태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재)사회안전연구재단이 조사할 결과에 의하면, 대형 만남사이트 2곳의 입력건수 1,000건 중 71건이 청소년에 의한 입력이며, 그 71건 중 3건이 이른바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입력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18세 여성으로 만남사이트에 교제 대상을 요청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에 대한 답신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시간 사이에 2개 사이트를 통틀어 남성이라고 추정되는 자료부터 138건의 답신이 있었으며, 그 중 64건(46.4%)이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표 III-12> 청소년의 입력사례 예 2

[조사개요]								
18세 여성으로 대형 2개 사이트에 놀이상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에 대한 답신내용에 대해 조사함.								
입력내용: “지금 신주쿠에 있는데, 만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2개 사이트를 통틀어 남성이라고 판단되는 자료부터 138건의 답신이 있었으며, 그 중 64건이 원조교제 목적이었음.								
<A 사이트> 1시간에 87건 답신. 이 중 34건 (39.0%)이 원조교제 목적	A사 합계	원조교제	임목적인 원조교제	놀이 상대	친구/애인	메일 친구	자기 소개	기타
	87	5	29	44	0	2	0	7
	100.0%	5.7%	33.3%	50.6%	0.0%	2.3%	0.0%	8.0%
<B 사이트> 1시간에 51건 답신. 이 중 30건 (58.9%)이 원조교제 목적	B사 합계	원조교제	임목적인 원조교제	놀이 상대	친구/애인	메일 친구	자기 소개	기타
	51	6	24	18	1	0	0	2
	100.0%	11.8%	47.1%	35.3%	2.0%	0.0%	0.0%	3.0%

조사에 의하면, 10개 도도부현의 중학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3,0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44명(7.9%)이 만남사이트

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 (4) 청소년의 일반사이트에서의 피해실태

2007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만남사이트가 아닌 사이트에 관계된 사건의 청소년 피해자수를 조사한 결과, 124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청소년의 만남사이트 이용실태

		만남 사이트	기타 사이트
청소년성매매/청소년 포르노 규제법 위반	청소년성매매	115	24
	청소년포르노	6	15
청소년복지법 위반(음행시키는 행위)		7	5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		71	75
강간		4	3
강제추행		1	1
기타		2	1
합계		206	124

## 2)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법적 규제의 경과

### (1) 일본의 원조교제의 변화

일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원조교제가 등장한 것은 1982년에 만들어진 ‘애인 뱅크’<sup>24)</sup>가 직접적인 계기이다. 그 후 원조교제는 ‘텔레폰클럽’ (telephone club)<sup>25)</sup>에서 사용되다가 일반 매스컴이 크게 다루

24) 남성과 여성의 교제를 중개하는 조직으로서 1982년에 ‘황혼족(夕ぐれ族)’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는데, 1984년 매춘방지법에 의해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25)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트 클럽은 1990년대 전반에 등장하였다. 주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클럽이다. 업자가 이들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남성 고객은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실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타입의 여성이 있으면 데이트 요금을 지불하고

면서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었다.<sup>26)</sup>

그러나 일본에서의 원조교제는 우리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왜냐 하면 원조교제라는 명목으로 성을 매매하고 있는 당사자가 반드시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10대부터 50대 여성에 달하며, 18세부터 22세의 여성이 40%를 점하고 있고 직업도 여고생, 회사원, 대학생, 프리터(free arbeiter), 기혼여성까지 다양하다. 또한 원조교제가 반드시 매매춘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매매 외에 커피숍에서 대화의 상대방이 되거나 노래방에 함께 가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게 하는 것 등 다양한 행태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원조교제라 하면 남성이 사고 여성이 파는 형태이지만, 여성이 남성을 사는 ‘역원조교제(逆援助交際)’나 동성간의 원조교제도 있다.<sup>27)</sup>

원조교제는 당초 텔레폰클럽과 전언(傳言) 다이얼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미디어를 ‘전화풍속(電話風俗)’이라고 부른다<sup>28)</sup>. 이 전화풍속의 이용형태는 텔레폰클럽에서 점차, 전언다이얼, 다이얼 Q2(투샷), 다이얼 Q2(Q전언), 투샷 전송시스템으로 변천되어 왔다.

그러나 전화풍속의 수는 근래 급격하게 줄고 있다. 2002년 4월 1일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풍속적정화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전화풍속을 ‘전화 이성소개 영업’으로 취급하여 규제를 하게 되었고 각 도도부현에서도 ‘텔레폰클럽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를 했기 때문이다.<sup>29)</sup> 특히 연령확인 의무는 텔레폰클럽에 출입하는 남성에게 신

---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데이트의 내용은 교섭에 따라 다르다.

26) 원조교제라는 말이 전국 일간지에 등장한 것은 1994년 9월 20일자 마이니찌신문(毎日新聞)이 최초이다.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매스컴은 ‘여고생의 매춘’과 같은 의미로 원조교제를 대대적으로 다룸으로써 원조교제 붐을 일으켰으며 매스컴 보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園田浩二, 「援交少女とロリコン男」, 洋泉社, 2006, 30쪽.

27) 1999년 1월 11일자 'AERA', 朝日新聞社, 58호, 60쪽; 伏見憲明, ‘性の倫理学’, 朝日新聞社, 2000, 64쪽.

28) 전화풍속이라는 말은 사회학자 미야다이(宮台真司)가 만든 조어로, “불특정 남녀의 만남을 중개하는, 전화회선을 사용한 서비스를 지칭한다”. 宮台真司「テレクラの民族誌」上野千鶴子‘色と欲’小学館, 1996, 123-166쪽.

분증명서 제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전화를 거는 여성에게도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sup>30)</sup> 오늘날 텔레폰클럽은 거의 직업화된 성인여성과 남성이 신속하게 매매춘을 하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원조교제 목적의 이용자는 이른바 ‘만남 사이트’로 옮겨 간다(<부록1> 참조).

## (2) 원조교제를 일상화시킨 ‘만남 사이트’

일본 경찰청의 ‘인터넷상의 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 대책 연구보고서’는 ‘만남 사이트’를 ‘일반적으로 면식이 없는 자끼리 만날 것을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설치된 사이트’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1)</sup> 즉, 서로 모르는 남녀가 익명으로 만나 대화와 교제를 즐길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만남 사이트’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자의 요구에 응하여 그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이를 전달하고, 이 전달을 받은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PC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웹사이트에서 대화나 교제를 목적으로 이성교제 등 연락을 하는 행위이다. 전화풍속이 원조교제의 매체로 규제를 받아 쇠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익명의 이성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남 사이트가 등장한 것이다. 만남은 처음에는 무료로 PC를 통해 접속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9년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오늘날 만남 사이트에는 ① PC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 ② 휴대

29) 규제의 주된 내용에는 ① 관할 경찰서예의 신고 의무, ② 관공서나 학교, 병원 등 공공 시설로부터 주위 200미터에서의 영업금지, ③ 영업금지 구역에서의 광고·선전의 금지, ④ 연령확인 조치 의무, ⑤ 오전 0시부터 일출까지의 영업금지 등이 있다.

30) 園田浩二, ‘沖繩テレクラ社会史: テレクラ規制がもたらしたもの’, 沖繩大学地域研究所所報, 제30호, 2003, 122-132쪽.

31) 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会, 「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報告書」, 2003, 4쪽.

전화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 ② 두 방법 공히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몇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만남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만남사이트를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도 증가하였다.

### 3) 만남사이트 규제법의 제정

#### (1) 제정 경위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눈부신 보급과 이용자의 확대에 따라 청소년이 이를 이용할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동의 건전육성에 장래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도 많이 있다. 특히 이른바 「만남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이 범죄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텔레폰클럽 영업에 대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1년의 풍속영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심의에서, 만남사이트가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 검거된 아동성매매사건 904건의 약 5할이 텔레폰클럽의 이용에 관한 것이었던 반면에 만남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것은 39건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만남사이트가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온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 상의 이른바 만남사이트가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새로운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그 규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박멸을 위한 조치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결의(2001년 6월 13일)가 이루어졌다.

이에 경찰은 만남사이트와 관련된 청소년 대상 성매매사건 등의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정부는 2002년 10월 만남사이트와 관계되는 아동성매매 등의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당면의 조치를 합의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홍보 계몽활동을 추진하며 인터넷 및 휴대전화 관련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만남사이트를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의 범죄피해가 2002년 1,273명에 달하였다.

2002년 10월 경찰청에 「소년유해환경대책연구회」가 설립되어 만남사이트를 이용한 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방법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2월 「만남사이트에 관계되는 아동의 범죄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설문조사의 내용이다.

만남사이트의 법적 규제방법에 대한 의견조사	
1) 만남사이트를 이용한 다음 행위(부정권유행위)를 청소년(18세 미만의 자)에 의한 이용을 포함해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청소년과의 성교 등을 수반한 교제를 권유하는 것	
② 금전 등을 수수할 것을 조건으로 청소년과의 교제를 권유하는 것	
2) 아동이 휴대전화로 만남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별칙 없음)	
3)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한 만남사이트에 대해, 만남사이트 측에서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4) 1)의 금지행위에 대해 일정한 벌칙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년에게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등 적절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III-14> 만남사이트의 법적 규제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 체 적 의견제시	부정권유 행위금지	대가교제 권유금지	아동의 부 정 권 유금지	휴대전화 로의 사 이 트 이 용금지	사 이 트 운 영 자 의 책무	벌칙설정	아 동 의 금지위반 에도 벌 칙설정
찬 성	70 (66.0)	187 (89.0)	184 (88.0)	174 (83.7)	49 (34.3)	46 (29.9)	191 (92.7)	107 (49.3)

규제 강화	15 (14.2)	2 (1.0)	1 (0.5)	1 (0.5)	56 (39.2)	87 (56.5)	1 (0.5)	56 (25.8)
소 계	85 (80.2)	189 (90.0)	185 (88.5)	175 (84.1)	105 (73.4)	133 (86.4)	192 (93.2)	163 (75.1)
반 대	13 (12.3)	17 (8.1)	20 (9.6)	29 (13.9)	34 (23.8)	19 (12.3)	11 ( 5.3)	52 (24.0)
효과없 음	8 (7.5)	4 (1.9)	4 (1.9)	4 (1.9)	4 (2.8)	2 (1.3)	3 (1.5)	2 (0.9)
소 계	21 (19.8)	21 (10.0)	24 (11.5)	33 (15.9)	38 (26.6)	21 (13.6)	14 ( 6.8)	54 (24.9)
계	106	210	209	208	143	154	206	217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아울러 청소년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작성하여 2003년 3월 14일 내각 결정을 거쳐 제156회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의원 청소년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자유당, 공산당, 사민당으로부터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정의가 불명확하며 아동을 처벌해서는 안되고,<sup>32)</sup> 아동의 교육과 치료를 중시해야 한다는 반대 토론이 있었으나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되었다. 또한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도 공산당으로부터 아동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나,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135, 반대 97로 가결되어 2003년 6월 13일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

32) 청소년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기여한다는 법률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가가 주된 논점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또는 대가를 수반하는 이성교제의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의 유인 문구를 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청소년이 여기에 응했고, 이것을 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청소년이 이것을 흉내 내어 동일한 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특정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에게 범죄피해를 미칠 위험한 행위이므로 청소년을 포함하여 누구의 행위이든 불문하고 이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제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83호)로 공포되고 동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 (2) 개정 경위

본법의 제정 후 일단 감소하던 만남사이트 관련사건의 청소년 수는 2006년 1,153명으로 재차 증가하였다. 또한 본법 시행 전인 2002년 이후 일관되게 피해 청소년 수는 1,000명을 넘고 있었다. 나아가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자 이외의 사이트의 이용에 기인한 청소년의 범죄피해도 상당정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10월 경찰청에 유식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만남사이트 등에 관계되는 아동의 범죄피해방지연구회가 설치되어, 만남사이트 등에 관한 청소년의 범죄피해방지책에 대해 검토를 행하였다. 2008년 1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대한 신고제의 채택,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가 아동과 관계되는 입력을 알게 된 때의 삭제, 아동피해의 방지 활동을 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8가지의 제언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sup>33)</sup>가 만들어졌다.

이를 받아 경찰청에서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청소년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안이 작성되어, 2008년 2월 29일 각의결정을 거쳐 제169회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심의에서는 개정사항 뿐 아니라 성인인증방법, 사이버 범죄의 단속, 인터넷 상의 위법정보·유해정보대책, 필터링, 정보윤리교육, 만남사이트 외의 사이트에서의 청소년피해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공히 전회 일치로 원안 그대로 가결되어, 2008년 6월 6일 개정법으로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33)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の係り方について」(2008. 1. 10),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研究会 (<http://www.npa.go.jp/cyber/deaimeeting/index.html>).



### (3) 만남사이트 규제법의 특징과 한계

만남사이트 규제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정한 권유를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여자 청소년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한 권유를 하는 글을 입력한 청소년도 처벌 대상으로 한 점이다. 부정 권유의 내용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글은 물론이고 성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금전수수를 수반한 데이트 권유 등도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휴대전화를 통한 만남 사이트의 이용이 많은 현실에서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만남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벌칙을 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로,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한 만남사이트의 운영자로 하여금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도록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지운 점이다.

넷째로, 부정 권유의 금지효과가 제고되도록 벌칙을 정한 점이다. 청소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부정한 권유 행위를 하고 있는 이상, 이것을 단지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불충분하다. 이에 18세 미만 청소년의 기입도 처벌대상으로 하였다.<sup>34)</sup>

그러나 만남사이트 규제법은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만남사이트의 특징은 이용자 수가 다수라는 점과 익명성에 있다. 어떤 만남사이트는 등록자가 무려 약 180만 명에 달하며 하루에 약 20만 명이 접속하고 있다고 한다. 입력한 내용 중에는 매매춘의 권유도 적지 않다. 만남사이트 측은 매매춘 권유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매춘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이 두려워 매매춘 관련 입력을 삭제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접속 때문에 전부를 삭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만남 사이트 규제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남 사이트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로, 만남 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34) 다만, 소년법의 절차에 따라 호보처분이 될 가능성이 크며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는 없다.

있는 점

둘째로, 연령을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점

셋째로, 청소년 자신이 매매춘을 유혹하고 있는 점

또한 만남사이트 규제법을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 즉, 처음에는 만남사이트를 통해 메일친구로 사귀다가, 나중에 만남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메일을 주고받아 원조교제와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

만남사이트 규제법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부록2> 참조).

#### 4) 만남사이트 관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대책

만남사이트를 이용하여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만남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sup>35)</sup> 특히 청소년이 만남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현행 청소년의 이용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새로운 규제와 대책이 준수되도록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만남사이트를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대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만남사이트 사업자의 책임」 「청소년의 이용 방지」 「부적격자의 배제」의 세 가이다. 이를 중심으로 신고제의 도입, 청소년 관련 입력 삭제, 청소년의 연령확인 강화 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sup>36)</sup>

##### (1) 만남사이트 사업자의 책임 강화 대책

---

35)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웹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이른바 호스팅 서비스)의 서버 관리자 또는 타인이 관리하는 웹서버에 인터넷 접속서비스만 제공하는 자(이른바 액세스 프로바이더)는 모두 만남사업트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고 의무의 대상밖에 있다(이들 자가 만남사이트를 겸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

36) 아래의 대책에 대해서는 福田正信·難波正樹·渡辺幸次·津村優介·村上健司, 『逐條出会い系サイト規制法』, 立花書房, 2009.5, 143~155 참조.

### ① 만남사이트 신고제 도입

만남사이트 규제법은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규정하고 있지만, 만남사이트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공개정보로 판명하는 액세스 프로바이더와 서버관리자에 대해 만남사이트 사업자의 정보개시를 요구하게 되지만, 2005년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고조되어 액세스 프로바이더와 서버관리자의 임의 협력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만남사이트 사업자가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외서버 관리자와 프로바이더의 협력을 얻기란 대단히 곤란하며, 무료 렌탈 게시판(서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료 렌탈 게시판의 관리자는 상대방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남 사이트 사업자가 중개업자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상대가 만남사이트 사업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법령에 위반하는 사업자(사이트 개설자)가 판명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경고나 행정처분도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만남사이트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만남사이트 사업자에게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별칙으로 담보하는 것이 적당하다.

신고를 통해 만남사이트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해소됨과 아울러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리 사업자를 파악할 수가 있으므로, 임의의 수단인 행정지도 등에 의해 세심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sup>37)</sup>

37) 신고제 대신에 필요한 때에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는 자에게 협력을 의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고제가 보다 상당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로 관계자의 협력을 구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프로바이더), 렌탈서버 회사, 금융기관, 광고주 등 만남사이트에 의한 청소년의 범죄피해와의 연관성이 희박한 제3자에게까지 부담을 주게 된다. 둘째로, 단지 만남사이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만남사이트 사업자를 특정하는 비용을 이들에게 부담해서는 안 되며, 그 비용은 본래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책임이 보다 큰 자, 즉 만남사이트 사업

신고제를 채택한 경우에 SNS<sup>38)</sup>라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취급을 비롯하여, 그 사이트가 만남사이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면 결과적으로 사이트 개설자 전반에 대해 위축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제의 도입에 소극적인 의견도 있다.

만남사이트는 법 제2조의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법 제6조(부정유인죄)에서 엄격한 정의가 요청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가 만남사이트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상 충분히 명확해졌다.<sup>39)</sup> 이것을 전제로 하여 만남사이트 규제법도 만남사이트 사업자에게는 청소년의 이용 금지의 명시 의무 등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을 이유로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신고제를 채택함으로써 새롭게 이러한 위축효과가 발생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② 만남사이트 해당 여부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는 법 시행 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나오므로 서비스의 유형별로 현행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정의에 비추어 그 해당성을 판단하기 쉬운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제를 실효성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는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두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사이트 개설자 전체에 위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널리 주지할 필요가 있다.

### ③ 청소년에 의한 이용 삭제와 의무화<sup>40)</sup>

---

자가 부담해야 한다. 셋째로, 관계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사이트 개설자가 특정되지 않지만, 신고제라면 파악이 가능하다.

38)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 일반적으로 회원제를 취하며, 참가자가 상호 친구를 소개함으로써 공통성을 갖는 새로운 친구관계를 확대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39) 경찰청에서는 법 제정에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그 사이트가 만남사이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40) 이른바 호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버관리자 및 액세스 프로바이더는 만남사이트 사

만남사이트는 만남사이트 규제법에 의해 청소년의 이용이 본래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만남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며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이 피해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만남사이트 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청취조사를 한 결과, 9개사가 청소년의 입력에 대해 자율적으로 삭제를 실시하고 있었다.<sup>41)</sup> 이들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사이트를 감시하여 청소년과 관계되는 입력 등의 부적절한 입력을 삭제하고 있으며 사업자 스스로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사업자에 의한 이러한 자율적인 조치는 피해방지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배제의 정도는 사업자마다 각기 다르다. 때문에 자율규제에만 기대하는 것에는 자연히 한계가 있다.<sup>42)</sup> 또한 피해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만남사이트 중에는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는지 불확실한 사업자도 있다.

만남사이트 사업자는 본래 18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는 만남사이트 안에서 청소년과 관련되는 입력임을 알게 된 때에는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삭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과 관계되는 입력이 신속하게 삭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입력해도 삭제된다면 만남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청소년에 대한 억제력이 되므로, 청소년과 관계되는 입력을 계기로 발생하는 청소년피해에 대한 미연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이미 만남사이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의무화해도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부담은 실질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업자가 아니므로 삭제의무의 대상밖이다. 또한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의한 삭제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들 호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버관리자 및 액세스 프로바이더에게 삭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41) 경찰청이 청취 조사한 만남사이트 사업자의 자율규제 내용은 본 제언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삭제대상보다 광범한 입력을 삭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았다.
- 42) 자율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는 만남사이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만남사이트에서도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령 자율적인 조치가 없다면 입력이 더욱 다수 방지되어 보다 많은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만남사이트는 법률상 청소년의 이용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의무화하는 입력은 「청소년과 관련되는 입력」으로 한정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청소년이 이성을 유혹하는 입력과 ② 성인이 청소년을 유혹하는 입력으로 하여야 한다.

삭제 대상은 가능한 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판단을 위한 요소를 크게 「청소년」 및 「유인」의 두 가지로 좁히면, 「청소년」의 개념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인」의 개념은 만남사이트 규제법 제6조의 부정유인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 한편, 만남사이트 사업자가 삭제해야 할 입력과 삭제하지 않아도 될 입력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삭제 대상이 되는 입력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주지시키는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남사이트의 입력에 대해 사업자에게 삭제를 의무화하는 것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법에서 만남사이트는 청소년의 이용이 인정되지 않는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에서 청소년에 의한 입력과 청소년을 유혹할 입력을 삭제하는 것은 입력자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입력을 한 성인의 정당한 권리의익(표현의 자유)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만남사이트 규제법 제6조가 부정유인에 해당하는 입력을 형벌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만남사이트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이미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투고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종래의 제약의 틀을 초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실효성의 관점에서 삭제의 의무화에 소극적인 의견도 있다. 따라서 삭제 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가 위반한 경우(인지하면서도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43)</sup>

#### ④ 부적격자의 배제를 위한 행정처분 및 결격사유의 신설

현재는 만남사이트 사업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명령의 전단계인 경고로 위법상태를 개선하고 있지만, 향후 위반행위를 반복하

43) 다만, 1건 삭제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까지 즉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는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사업의 정지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시정명령의 틀만으로는 규제를 안 따르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령의 준수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적결자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결격사유(예컨대 조직폭력단의 구성원, 청소년, 일정한 전과자 등)를 두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남사이트 사업자에게는 사업폐지를 명령하는 제도를 두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벌칙을 두는 등 정지명령·폐지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경찰청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 ⑤ 민간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의 지원체제 구축

만남사이트 사업자가 청소년과 관계되는 입력을 알게 된 때에 그 입력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실제로 삭제대상이 되는 입력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가급적 신속히 그 존재를 파악하여 삭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민간단체로서 청소년과 관련되는 입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와 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경찰이 신고 받은 만남사이트 사업자의 URL과 청소년의 피해와 관련된 범죄의 발생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 사업자에게 청소년과 관련되는 입력의 존재를 신속히 알려서 삭제의무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sup>44)</sup>

### (2) 청소년의 이용 방지 대책

#### ① 성인인증의 확인 의무화

현행법은 만남사이트 사업자가 성인 인증의 방법으로 자율신고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sup>45)</sup> 연령 사칭으로 청소년의 이용이 용이하게 행해지고 있고

44) 현재 이런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 일본에는 인터넷 핫라인센터와 (사)전국소년경찰 자원봉사자협회가 있다.

45) 법 제정시에는 인터넷 상에서 간편하고 확실하게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이 보

청소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성인 인증의 방법이 불충분하다. 이에 청소년에 의한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 성인 인증 방법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찰청은 휴대전화의 개체 식별번호에 연령식별 기능을 부가하는 방법, 휴대전화의 속성인증기술의 서비스 실현 예정 등을 조사하였으나, 기술적으로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다. 현재 이용 가능한 확인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논의되고 있다. 첫째로, 신용카드에 의한 지불 등 18세 미만이 사용 불가능한 수단으로 이용요금 등의 지불을 요구하는 방법이며, 둘째로 FAX 등으로 운전면허증 등의 생년월일을 기재한 부분을 송부하게 하는 방법

## ② 청소년 퇴실 시스템의 필요성

현행법은 만남사이트 사업자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음을 사후에 인지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그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남사이트 사업자 중에는 이용자가 청소년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용규약에 따라 퇴실 절차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곳도 있다.

이에 청소년에 의한 이용을 가능한 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이용방지에 관한 만남사이트 사업자의 조치가 실효성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남사이트 사업자의 책무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을 유인하는 입력을 한 성인 이용자에 대해서도 만남사이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보호자 및 휴대전화 사업자의 필터링<sup>46)</sup> 의무화

---

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자가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자율신고방식(사이트에서 “18세 이상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아니오” 를 클릭하는 등)을 인정하였다.

46) 인터넷의 웹 서비스 중에 특정한 조건이 합치하는 페이지 및 특정한 조건과 합치하지 않는 페이지(블랙리스트 방식 및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라고 부른다)의 열람을 차단하는 소프트 또는 서비스



현행법에서는 만남사이트를 이용할 때의 연령확인 방법으로 자율신고방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쉽게 만남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실태에 있다. 또한 가령 성인 인증이 강화되더라도 대면하여 확인하지 않는 이상 청소년의 이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에서 만남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필터링은 청소년의 범죄피해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해외 사업자가 행하는 사이트의 청소년에 의한 이용방지에도 필터링은 효과적이다.

하지만 필터링이 효과적이라고 할지라도 필터링을 이용할지 안할지는 결국 청소년을 감독하는 보호자의 의향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보호자에 대한 이용촉진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휴대전화 사업자에 의한 판매계약이나 기종을 변경할 때에 필터링 서비스의 추천 장려가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법률로 보호자 및 휴대전화 사업자의 책무로서 필터링 서비스의 고지·권장을 피하여 필터링 이용의 활성화를 피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필터링의 효과를 높이고 이용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필터링 서비스에 관한 기술적·방법론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 ④ 청소년 대상 광고메일의 발송 금지

만남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는 중고생 중에 광고메일을 보고 접속을 해서 만남사이트를 알게 된 청소년이 3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청소년 중에 광고메일을 계기로 만남사이트에 접속한 경우도 9.2%였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광고메일의 발송금지 대책으로서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청소년에게는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sup>47)</sup>

47)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만남사이트의 광고메일을 포함한 스팸메일의 규제방법으로 총무성은 특정전자메일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특정상거래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 (3) 일반사이트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만남사이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이용을 법적으로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는 일반사이트에서도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상당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다.

향후 만남사이트의 청소년 이용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일반사이트로 청소년의 피해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현재도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일정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이트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만남사이트와는 다르므로 만남사이트 사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즉시 요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겠지만, 일정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트를 이성교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사이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취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적당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경중효과 및 유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심리적인 억지효과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피해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 3. 독일<sup>48)</sup>

### 1) 서론

독일에서의 여성청소년<sup>49)</sup> 성매매를 포함한 성적 학대의 적절한 통제를 위한 중요 관련 규정과 해당 통제 및 보호기관의 조직구성과 권한을 중심으로 쓰고자 한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청소년의 성매매문제를 ‘성적 학대’(sex abuse in internet, sexuelle Belästigung oder Behandlung oder

---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동 42조의2).

48) 위 원고는 임규철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가 집필하였음.

49) 이 글에서 청소년은 아동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글을 썼다.

Missbrauch der Kinder im Internet)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형법을 포함한 관련 규범에서도 그렇다. 현재 관련 영역의 뜨거운 현안은 cyber-grooming<sup>50)</sup>인 듯하다. 영국이 유럽연합쪽에서는 관련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선도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2009년 5월 달에 관련 처벌규정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아시아권에서는 현재 일본과 한국이 규정도입 및 시행의 선두에 서있다.

정보사회 성숙기에 접어 든 국가들은 인터넷의 부작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어쩌면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은 부정적인 면에 압도되어 애기도 못할 수도 있겠다.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그 부작용의 배제 또는 최소화 정책의 모범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도 모르기에 무수한 시행착오 과정 중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문제해결의 최소한의 답은 현장에 있기에 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최소화의 답을 빨리 찾고자 할 뿐이다.

인터넷에서는 어떠한 위험들이 잠복하고 있을까? 참 많을 것이다. 유형별로 보자면 인터넷 전반적으로는 인터넷 중독 및 개인정보 남용문제<sup>51)</sup>가 있다. download 방향에서는 P2P를 통한 파일공유와 저작권 침해 그리고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의 유통(Mobbing, Cyber-Bullying/Grooming)문제, 온라인게임에서는 폭력과 게임중독증, 인터넷 쇼핑에서는 Phishing 및 Pharming 등이 문제가 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 관련 규범에서 관련 행위 처벌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루밍 처벌규정은 아직 없다.

인터넷의 발전은 어색하지만 섹스산업과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섹스가 인간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든 본능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그 주장이 옳다면 부작용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해당 영역에 있어서의 통제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있

---

50) '성범죄행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Annährungsversuch via Internet als Straftat einstufen)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해당 처벌조항이 효력을 발휘한다.

51) [www.archive.org](http://www.archive.org) 참조

어 그 영역은 실제로 사회의 인간에 대한 통제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 지금도 그렇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섹스에 대한 사회의 일방적인 통제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단언하기가 힘들다. 그 국가마다 해당 영역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강도의 범위가 뚜렷하게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제의 강도가 완전히 다른 네덜란드 및 덴마크와 이슬람 국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성정체성이나 자기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섹스영역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배제 또는 최소화하려는 것은 인권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공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웹, 웹캠, 메신저, 트위터, 채팅 등의 인터넷을 이용한 문명이기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유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60년대 또는 70년대의 성개방 풍조로 인한 성혁명 자유를 향유한 것처럼 청소년의 성생활을 이끌고 있다. 방학 중 청소년들은 매일 3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sup>52)</sup> 또한 그들의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어 중 섹스 및 유사단어 검색의 상위배열(sex, porn, pussy, naked girls, nude etc.)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지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신매체를 통한 성지식 획득 및 성생활은 주로 텍스트와 사진 및 동영상의 교환을 통한 성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발생한다. 남자 10대의 25%와 여성 10대 청소년의 20%가 cyber sex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up>53)</sup>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인터넷의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충고만 자녀들에게 줄 뿐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러한 생활은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영위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으며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불러 올 수 있다고도 한다. 이는 규범정리만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52) <http://www.webnews.de/kommentare/471847/0/Stars-und-Sex--was-Kinder-im-Internet-suchen.html> (2009.8.13 기사)

53) [www.futurezone.Orf.at](http://www.futurezone.Orf.at) 참조

## 2) 독일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현황

2008년 12-18세의 독일 청소년의 70% 이상은 메신저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2009년 지금은 더 증가되었을 것이다. 업체의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됐고 청소년의 관련 기기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아졌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메신저에 대한 업체의 보호대책이 미약한 곳에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 내용의 전송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그대로 청소년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청소년보호기관에서는 MS 및 FSM과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한 메신저를 만들어 배포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 동일 및 유사한 기기보다 성능 및 편리성에서 떨어지고, 민간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경쟁저해 또는 사실상의 검열인식이라는 사용자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그 활용은 상당히 적다. 게임, 오락, 검색 등의 기능이 주어지고 연령심사를 통한 접근 통제를 동 메신저는 실행하고 있다.<sup>54)</sup>

2008년 독일 청소년의 비자연스런 성적 결합 형태의 성적 학대(예: 수간)는 2007년과 비교하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보호기관, 특히 jugendschutz.net과 KJM, 검찰청이 충실하게 그 역할을 그 영역에서는 수행했다고 2009년 관련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sup>55)</sup> 그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관련 기관의 동 영역에서의 그러한 자료의 전송 및 배포 발생을 배제 또는 억제하려는 노력 못지않게 그러한 특정형태의 성적 학대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에 대한 청소년들의 비호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반면에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희롱 및 모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법으로 통제가 어려운 외국 서버를 통해 거의 2배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Google, YouTube를

54) 위의 글, 9쪽 참조.

55) Jugendschutz im Internet, Ergebnisse der Recherchen und Kontrollen Bericht 2008, jugendschutz.net 2009, 12쪽 참조.

통해 2008년 1,400여개의 동영상 삭제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56)</sup>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 내용의 배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대책의 하나인 필터링(filtering)의 역할은 예상 외로 미미했다.<sup>57)</sup> 서비스제공자들이나 BPjM이 각자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 필터링 금지목록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영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는 이러한 목록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고 민간 및 공공영역의 통일화된 목록이 존재하지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핸드폰(손전화)을 가지고 있고 6-13세 이하에서는 절반정도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역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보인다. 법이 기술을 따라 가지 못한 전형적인 영역의 예라고 볼 수 있다.

### 3) 독일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법제

#### (1) 독일의 청소년 성보호

현재의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 성인에 이르지 못한 일정한 연령대의 구성원(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성을 가진 강제규범인 법의 통제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보호방법에 있어 침해방법이 다르니까 그 보호방법이 다를 뿐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서적, 영화, 연극 등의 제한된 매체를 통해 성의 전파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통제대상이 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편이었다. 물론 그 통제에 대한 성공의 확신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반면에 정보통신기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현대의 정보사회는 산업사회 그 당시의 통제대상 외에 인터넷이라는 천하무적의 존재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 및 매체내용에 대해 주요 통제수단인 법이 빠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을 따라 가지 못한 것도 이

---

56) 위의 글 17쪽 참조.

57) 위의 글 13쪽 참조.

유가 될 것이고, ‘규제는 선이다’ 라는 맹신하에 조급한 나머지 다른 쪽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제영역의 설정은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 유무, 사전검열 및 과잉금지 논란을 충분히 불러 올 수 있기에 통제하고 자 하는 쪽에서는 힘겨울 수가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 및 매체내용으로부터 독일 청소년들은 관련 법을 통해 분명히 보호를 받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와 구별되는 몇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 불법 또는 유해한 인쇄물 및 미디어와 그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독일에서는 거의 없다. 대부분 처벌규범에 있어 일반법 기능을 하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다르다. 물론 규범의 내용이나 입법기술상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즉, 적용 대상이 특정한 사람이거나 특정한 내용 또는 특정한 기간으로 한정하는 경우, 상황에 즉시적인 대응이 필요한 일정한 행정적인 조치를 전제로 하여 그 위반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일 경우가 그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입법의 편의나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은 피해야 한다. 이는 수범자가 금지된 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어 규범준수를 적절히 하겠구나라는 기대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청소년을 남녀로 구분해서 보호하지는 않는다. 동일하게 보호대상으로 잡아 그 적용기준이 성구분 없이 동일하다. 아마도 남녀유별 또는 남녀차별의 강도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적 유인 또는 권유행위’ (cyber-grooming)의 처벌쪽으로는 방향은 비슷하다. 피해대상자가 주로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의 제10조 제2항의 추가 규정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2010.1.1부터 처벌한다. 결과범이 아닌 거동범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sup>58)</sup> 성범죄행위자의 신상공개제도까지 포함하면 더욱 더 그렇다. 명예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회분위기에서 그 파괴력은 짐작하기가 힘들다. 그 만큼 행위의 위법성을 입법자는 크게

58) 제10조 제2항: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것이다. 반면에 독일은 2008년 12월 처음으로 ‘cyber-grooming’ 이 재판정에 섰을 정도이다.<sup>59)</sup>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아직 없다. 때문에 그 사건에서 grooming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형법상의 아동유인 및 약취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전체 유럽이 비슷비슷하게 그렇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영국은 “성범죄법” (sexual offense act 2003) 제15조를 통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다.<sup>60)</sup>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도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 (2) 독일의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산업시대와 정보시대와는 다르다. 한정된 인쇄매체와 상영장소의 특정성으로 시공초월을 산업시대에는 할 수가 없었으나,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시대에는 산업시대의 그러한 제한을 너무도 손쉽게 넘어섰다. 따라서 보호를 위한 통제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산업시대와 정보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법들의 공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독일에서의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 및 매체내용으로부터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는 우선적으로 “형법” (Strafgesetzbuch: StGB)이 있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JuSchG) 그리고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JMStV)이 있다. ‘보안처분’ 도 형법전에 규정하여 양벌규정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다.

### ① 형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처벌법규에 있어 일반법 역할을 수행하

59) <http://www.heute.de/ZDFheute/inhalt/11/0,3672,7514635,00.html> 참조

60) 이 부분에 있어 더 자세한 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온라인상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적 규제 도입을 위한 연구, 49쪽 이하 참조.



고 있는 형법은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성적미디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예전부터 존재했었다. 현재도 그렇다. 형법 제173조의 근친상간의 성교처벌, 제174조의 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남용처벌, 제174a조의 피구금자, 관청에 감호된 자, 시설 내 피치료자와 요부조자에 대한 성적 남용처벌, 제174b조의 공무원 직위악용한 성적 남용처벌, 제176조의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처벌, 제176a조의 아동에 대한 중대한 성적 남용의 처벌, 제176b조의 죽음에 이르게 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처벌, 제177조의 성적 강요 또는 강간처벌, 제178조의 성적 강요 및 강간치사처벌, 제179조의 항거불능자에 대한 성적 남용처벌, 제180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조장처벌, 제180a조의 매춘자에 대한 착취처벌, 제181a조의 음행매개처벌, 제182조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 제183조의 음부노출행위의 처벌, 제183a조의 공연음란죄, 제184조의 음란문서 배포처벌, 제184a조의 폭력적 또는 수간내용의 음란문서의 배포처벌, 제184b조의 아동음란물의 배포, 취득 및 소유와 제184c조의 라디오, 미디어 또는 전신업무를 통한 음란공연의 배포 등이 그렇다.

여기서 공통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성적 행위’ 이나 ‘문서’ 인데 형법 제184f조에서 규정하기를 ‘성적 행위’ 는 ‘각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행위’ 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서’ 는 동 법 제11조 제3항에서 ‘음성, 영상매체에 의한 기록, 전자기록 및 기타 표현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성적으로 치근거리는 언어라든지 동영상을 통한 성행위 권유 및 유인 모두 문서개념에 포함된다(<부록3> 참조).

그러나 이러한 많은 형법상의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성적행위 및 미디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조항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신매체물로 인한 청소년의 보호법익과의 침해의 경합 경우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법조항을 배제하고 ‘특별법 우선 원칙’ 에 따라 관련 된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 특별법인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이 그렇다. 따라서 형법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된다.

## ② 보안처분

보안처분이란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의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형사제재를 의미한다. 형벌이 과거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부과되는 형사제재라면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부과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이 된다.<sup>61)</sup> 범죄의 습벽이 있는 상습범죄자에게 유효한 제재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형벌에서는 책임주의와 관련되어 정당성여부가 문제가 되지만, 보안처분에서는 재범가능성의 예측과 비례성의 원칙 등이 그 정당성여부와 문제가 된다.

보안처분의 1차적 정당성은 목적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즉 보안처분은 어디까지나 범죄자의 사후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개선목적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보호적 목적을 보안처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은 있을지라도 사회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보안처분은 자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보안처분의 제재의 범위는 비례성의 원칙과 맞아야 한다. 그 처벌의 정도는 사회방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형법 제62조는 “보안처분이 행위자에 의해 범해졌고 또 예견되는 행위의 의미와 아울러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이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그런 규정은 없으나 일관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보안처분의 근거는 “헌법의 제 12조 제1항, 치료감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향한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래의

---

61) 보안처분의 최초의 종류로는 Stoss에 의해 스위스 형법에 도입이 되었다. 위험성이 있는 책임무능력자 EH는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한 치료 및 감호처분, 일몰중독자에 대한 교정소수용 및 음식점 출입금지처분, 노동혐오자에 대한 노동소수용처분, 누범자에 대한 교정 및 감치처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 및 감호처분, 직권 및 친권남용자에 대한 권리박탈처분, 위험물 소각처분, 예시처분(위법행위 없이 과해지는 처분 등이 있었다.

성범죄행위자가 되는 자의 경우 재범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영역에서는 기초 상식에 속할 것이다. 그러한 형사정책에 딱 어울리는 것이 보안처분이다. 단지 응보 또는 속죄의 관점으로 형사제재를 행하는 것은 그 효과면에서 보안처분을 따라오기가 힘들다. 한국의 200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 (재형 2003-9) 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했다.

그 종류로는 독일 형법 제61조에 따라 정신병원 또는 금단(치료)시설 수용을 통한 치료감호, 보안감호, 보안감찰(Führungsaufsicht), 운전면허 박탈, 직업 금지가 있다.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제공자 또는 실행자인 성범죄자에게 병원의 수용을 통한 치료감호는 효과적인 재범방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독일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범한 경우에 행위자의 그러한 상태에 기인하여 상당히 위법한 행위가 예견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시민에게 위협하다는 점이 행위자 및 행위의 종합평가에서 나타나는 경우 법원은 정신병원 수용을 명한다. 제64조에서는 습벽, 알콜 또는 다른 각성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고 중독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 또는 습벽에 기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책임무능력을 증명했거나 책임무능력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습벽에 기인하여 현저히 위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단시설 수용을 명한다. 금단시설에서 처치를 통해 치료되거나 또는 습벽 내에서의 재범을 상당 기간 방어하고 습벽에 기인하여 현저히 위법한 행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가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70조의 직업금지명령 또한 성범죄자의 확장차단을 위해 상당히 유효한 정책이다. 제70조 제1항에서는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을 악용하여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거나 또는 단지 책임무능력이 증명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않아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와 행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직업, 직업 일부, 영업 혹은 영업 일부의 계속되는 수행 중에 규정된 유형의 현저한 위

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직업, 직업 일부, 영업, 영업 일부의 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 법정 상한이 예상되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업금지를 여구히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행위자에게 직업, 직업 일부, 영업, 영업 일부의 수행이 잠정적으로 금지된 경우 금지기간의 하한은 유효했던 잠정적인 직업금지 기간만큼 단축한다. 제3항에서는 직업금지 기간 동안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직업, 직업 일부, 영업, 영업 일부를 수행하거나 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위해 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사회봉사명령, 네트워크범죄에 사용된 컴퓨터와 관련기기 등의 소유 금지 또는 제한, 접속금지 또는 제한 등의 정책도 병행하면 그 정책적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본다.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벌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 ③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형법은 시대의 흐름에 유연성을 가질 수가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법의 한계이기도 하다. 때문에 새로운 매체에 의한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특별법을 통해 부작용을 배제 또는 최소화하려는 입법자의 노력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당연하다. 한국도 동일한 입장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법으로의 수용은 불가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이 더 문제이다. 이에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을 2003년에 발효시켜 독일연방 각 주가 인터넷을 비롯한 신매체의 부작용에 대해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협정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처럼 기존의 정보통신영역을 주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디어서비스협약” (Mediendienstestaatsvertrag: MDStV)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조항들을 따로 떼어내 만든 법이다. 헌법상의 청소년 특별보호 조항때문이었다. 동 협정은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고전 및 신 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 기능을 한다. 규정에 따라 ‘민간 및 공영방송, 라디오와 인터넷’ 이 보호영역에 속한다.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에 영향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는 방송 및 인터넷의 내용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통일적으로 보호하고 인터넷과 라디오같은 통신미디어가 제공하는 내용 중 인간존엄 또는 그 밖에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내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협정 제1조). 동 협정에서 아동이란 14세 미만의 자,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18세 이상은 성인)를 말한다. 한국은 12세에서 18세까지를 말한다. 동 협정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 언급 될 제4조, 제5조, 제11조를 들 수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Portalanbieter)들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제공자가 자체 매체 내에서 불법정보의 흐름을 인식했을 때 즉각(sobald) 이를 제거해야 한다. 부모들도 이를 설치된 신고기관에 신고를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법적인 의무성은 없으나 그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결코 없다. 또한 관련 기술 및 자율규제에 의한 통제 및 보호의 효율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에 따라 2001년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자율규제에 의한 성인인증협정(AltersverfifikationSSYSTEM: AVS)이 중소대형 서비스제공자간의 이해득실로 인하여 무산된 이후 입법가는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을 개정하여 서비스제공자 또는 사업자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 내용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삽입했다. 성인인증도 그러한 수단에 속한다고 KJM은 판단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협정은 미디어세계가 내용면에 있어 유사하거나 통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방송통신의 융합현상)는 것에 주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부작용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 오프라인 세계에서 적용되던 규제된 자율규제 형식을 적용이 가능한 영역이라면 큰 개정 또는 제정 없이 그대로 인터넷 세계에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통제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위법상태에 있는 미디어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를 보장하고 있다. 차단, 삭제 및 일시정지 등이 그렇다.

#### 4) 독일의 미디어 관련 청소년 보호기관

인터넷상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적인 희롱 및 모욕 그리고 성행위까지 포함하는 성적 학대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보호기관의 주요한 업무에 속한다. 보호기관들은 공통적으로 게시물 삭제권고와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전송중지권고권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권고를 거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중재절차로 넘어 간다. jugendschutz는 2007년 60건, 2008년 85건을 중재절차로 이송시켰다.<sup>62)</sup>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인터넷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업계에서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강한 이의제기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청소년 보호기관은 수사권이 보장된 수사기관이 아니다. 때문에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신고서(Beschwerdestelle))에 신고된 사항은 검찰청(Bundeskriminalamt; BKA)에 이첩을 한다.

독일 각 주는 주에 속한 미디어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장소) 또는 시간을 벗어나 활동하는 새로운 매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각 주마다 다른 대응방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북부독일은 통제의 중심을 법령보다는 자율규제 중심으로 두고 있는 반면,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남부독일은 자율규제보다는 강제력이 강한 법령 중심의 통제를 하고 있다. 이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어 그 대처방법이 달라 전체적인 효율의 극대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독일에서 불법 및 유해미디어로부터 자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들은 연방과 각 주 사이에 유기적 관계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감독 및 통제는 연방헌법(기본법)에 따라 각 주의 고유사항에 속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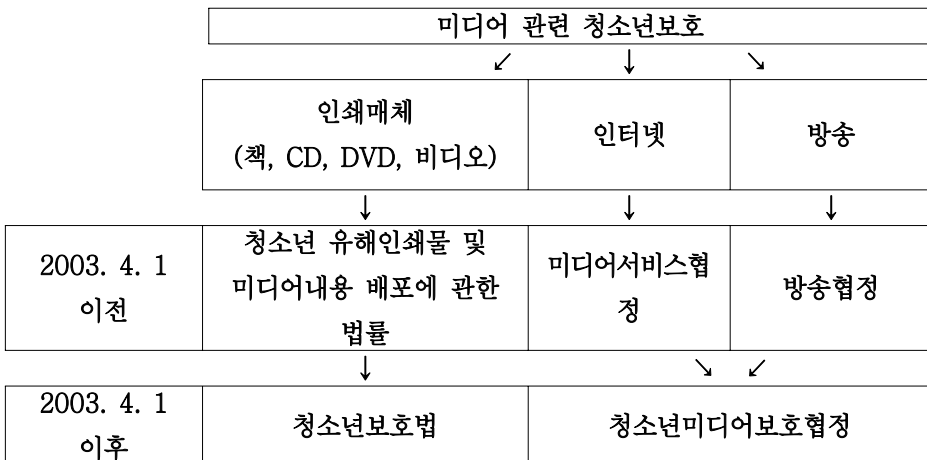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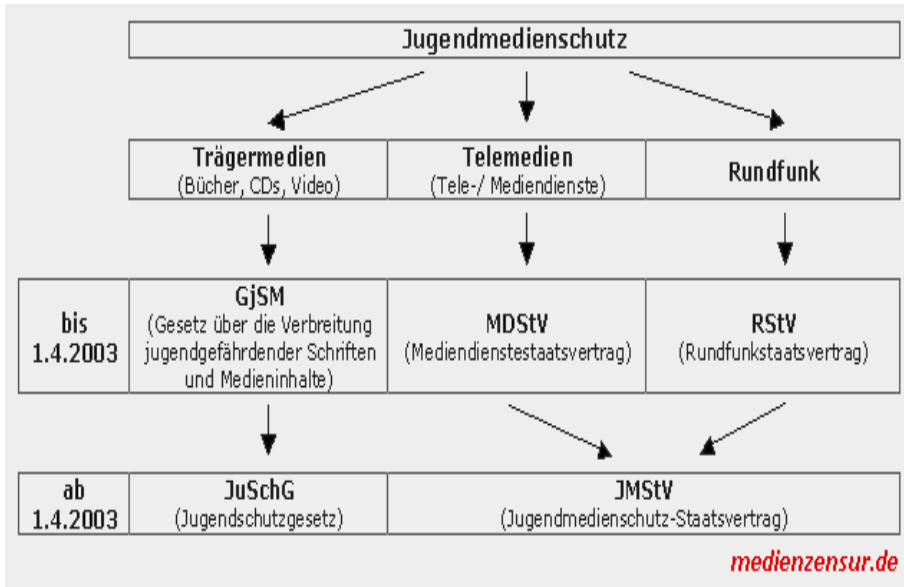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 중국의 중앙집권성을 띤 통일국가와는 달리 연방국가의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그러한 특성 때문에 현재 새롭게 등장하여 의사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신매체의 부작용 방지를 위

---

62) 위의 글 1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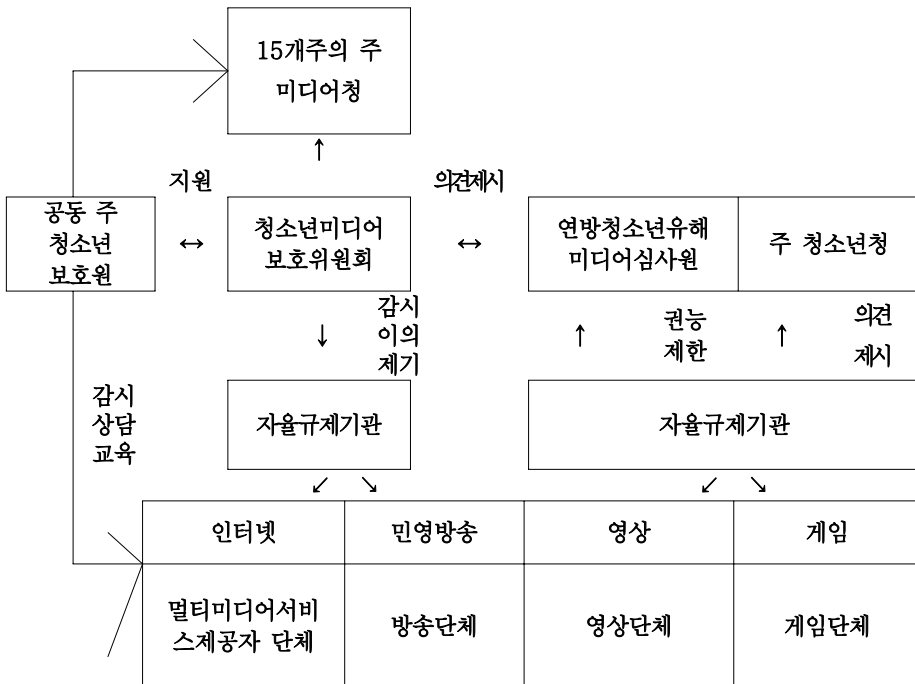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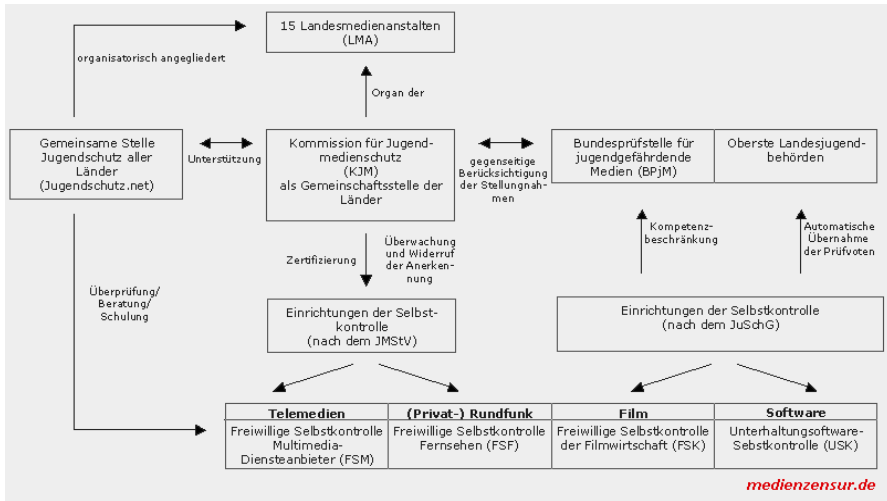
한 극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은 연방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각 주와의 협정을 통하거나, 각 주에 대한 예산배분 및 통제, 상호 정보교류 등을 통해 효율성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1) 조직도



【그림 III-2】 독일 미디어 관련 청소년보호기관 조직도

(2) 기관권한 배분



【그림 III-3】 독일 미디어 관련 청소년보호기관 권한배분



## 5) 기관운영

독일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미디어에 관한 통제 및 미디어 관련 청소년 보호기관은 우선적으로 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BpJM)와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KJM), jugendschutz.net GmbH 그리고 미디어 서비스제공자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관이 있다.

### (1) 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BpJM)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원’ (BpJM)은 독자적 예산을 갖춘 연방 독립기관이다. 1954년에 설치되었다. 조직상으로는 ‘연방가족노인여성및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의 과거의 여성가족부,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로 생각할 수 있다.

2003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위 기관에 청소년보호영역이 추가되었다. 동 심사원의 임무는 청소년에 유해한 문서, 영상물 및 인터넷의 웹사이트를 심사원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목록에 등록케 하여 이러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동을 제한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다(청소년보호법 제17조 내지 제25조).<sup>63)</sup> 25년간 목록등제가 가능하다. 검열관청이 아니다. 성인대상 웹에 대한 목록작성은 하지 않는다.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여 해당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기능을 독일에서는 위 기관이 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상호 공동으로 주제제한 없이 동일한 사안에 있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 의견제시는 일반적으로 권고적 수준이지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63) 동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아동 및 청소년의 발전에 해가 되는 아동 매체 및 인터넷 매체는 BpJM의 의해 제기된 해로운 내용의 목록을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단을 위한 주요 내용은 국가사회주의(Hitler)의 찬양, 인간에 대한 불평등조장 특히 여성 및 호모, 마약 등의 약물 찬양, 자살 등이다. 중한 청소년유해 매체내용은 목록등재 없이도 통제가 가능하고(청소년보호법), 방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형법상의 제86조, 제130조, 제131조, 제184조, 184a조, 제184b조, 제184c조가 여기에 해당된다. 폭력 및 청소년에 대한 포르노 규정은 당연히 위 규정들에 규정되어 있다.

유해매체 내용 통제숫자는 2008년 비디오 및 CD와 DVD 2821건, 컴퓨터 게임 536건, 음반 또는 녹음물 835건, 인터넷 게시물 1,806건이다.<sup>64)</sup>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4명의 각 주에서의 관련 공공기관의 당연직 참여와 학계, 종교계, 출판계, 인터넷서비스업체의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구체적인 업무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2008년에 폭력적이고 잘못된 자가사법적인 구제내용(Selbstjustiz)을 담고 있는 인터넷매체에 대한 통제내용이 추가되었다.

## (2)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KJM)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는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 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의 불법 또는 유해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을 하는 의사결정과 집행의 이원적인 체계와 유사하다. 다른 점은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나,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주 미디어청’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기능상의 독립은 보장된다. 그러나 국내의 다른 청소년보호기관들과 유기적인 운용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

독일국민에게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성인들은 자기 판단에 따라 인터넷 게시

---

64) [www.bundespruefstelle.de](http://www.bundespruefstelle.de)의 'aktuell' 참조.

판의 어떤 내용을 올리고 읽고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의 중요성도 일방적으로 간과할 수가 없으므로 인터넷상에 불법적이거나 유해적인 내용이 흐르고 있다면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성인들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때문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또한 허용이 된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보호기관의 상호 유기적 연결에 있어 통일적으로 중심을 잡아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포괄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다.

동 위원회는 아래의 ‘공동 주 청소년보호원’ 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충분한 능력 및 식견을 가지고 있는 ‘공동 주 청소년보호원’ 의 업무협조를 많이 받고 있다. 특히 감독권 행사 때 그러하다. 또한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원’ (BpjM) 과도 그렇다.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불법 및 유해정보의 목록에 대한 의견제시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가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원’ (BpjM) 에 제시하면 심사원은 이 의견제시에 구속을 받아 목록에 올려야 한다.

당연직은 아니지만 관행에 따라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원’ (BpjM) 의 의장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의 위원이며, ‘공동 주 청소년보호원’ 의 의장 역시 법령에 따라 모든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에 참석권한이 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6명은 상급기관인 ‘주 미디어청’ 의 각 주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4명은 ‘주 청소년보호청’ , 나머지 2명은 ‘연방청소년청’ 에서 파견이 된다. 의장은 상호 호선에 의해 결정이 된다. 2009년 8월 현재 동 위원회의 의장은 ‘바이에른의 신매체 관청’<sup>65)</sup> 의 의장인 Dr. Wolf-Dieter가 맡고 있다.

---

65) Präsidnet der Bayerrischen Landeszentrale für neue Medien(BLM)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민영방송과 인터넷매체의 내용에 관한 감독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권한은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독일 각 주의 미디어 관련 영역을 주 영역으로 삼고 있는 ‘주 미디어청’ (Landesmedienanstalt: LMA)에 소속된 기관이다.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위반의 경우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심사절차 및 조치의 내용은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제14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승인권과 이 기관들에 의해 제기되는 이의제기를 받을 수가 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은 ‘주 미디어청’이 담당한다. 동 위원회는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의 위반을 결정하기 위한 상응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칙규정<sup>66)</sup>을 가지고 있다.

동 위원회는 청소년 및 성인에게 인터넷 접속 그 자체를 불가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성인인증제도(AVS)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술적 보호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 집단은 그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sup>67)</sup> 행정법원도 광범위한 개인인증번호와 함께 사용되는 성인인증제도는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적절한 보호수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한적인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sup>68)</sup>

동 위원회는 민간방송과 인터넷 내용에 있어 ‘불법정보’에 대한 게시물의 게시(unzulässige Angebote)금지를 명령하여야만 한다(당위성). 그러나 유해 정보에 속하는 ‘청소년의 성장위해정보’ (entwicklungsbeeinträchtigung)는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실시 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용자의 접근제한을 실행할 수 있다(단계별 실행 가능성). 한국의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와 그 역할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66) Kriterien für die Aufsicht im Rundfunk und in den Telemedien(<http://www.kjm-online.de/public/kjm> 참조). 그 기준은 처음에는 ‘최상위의 주미디어청’의 오프라인상의 방송프로그램의 감독을 위한 평가기준에서 시작하여 2004년 말에 인터넷의 영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67) Alterskontrollierte geschlossene Benutzergruppen im Internet, MMR, 4. 2004.

68) BVerwG 6 C 13.01(20.02.2002)

① ‘불법정보’의 게시(unzulässige Angebote)금지

전쟁찬양 또는 폭력적인 포르노 등의 절대적인 불법정보 내용의 흐름은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유통되어 질 수가 없다. 그 금지사항의 열거는 청소년 미디어보호협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되어 있다. 동 협정 제4조(금지되는 내용)는 인터넷 및 방송미디어에서 청소년보호와 관련되는 내용을 통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이 심리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과 같다.

제4조(금지되는 내용)

- (1)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1. 제공되는 내용이 형법 제86조의 선전수단을 묘사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것일 경우.
  2. 제공되는 내용이 형법 제86a조의 위험적 조직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3. 제공되는 내용이 국민의 일부 또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으로 특정되는 집단 자체의 일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폭력적 조치 또는 자의적 조치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일부 또는 앞에서 기재된 집단이 모욕을 당하거나, 악의적으로 경멸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식으로 타인의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경우.
  4. 제공되는 내용이 국가사회주의(히틀러 시대)의 지배 하에서 범해진 국제형법전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기재된 유형의 행위가 공공의 평화를 교란, 부정 또는 경시하기에 적절한 경우.
  5. 제공되는 내용이 사람에 대한 잔혹하거나 그 밖에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예찬하거나 경시하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그 과정의 잔혹성이나 비인간성을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묘사하는 경우. 이것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6. 제공되는 내용이 형법 제126조 제1항에 기재된 위법행위를 하도록 지도하는 경우.
  7. 제공되는 내용이 전쟁을 예찬하는 경우.

8. 제공되는 내용이 표현이나 보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사건을 재생하면서 특히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인 고통에 놓여있거나 있었던 사람들을 표현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9. 제공되는 내용이 비자연적인 성을 강조하는 신체상태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표현하는 경우. 이것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10. 제공되는 내용이 음란적인 내용 및 아동 또는 소년에 대한 간음 또는 인간과 동물간의 성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를 담고 있는 경우. 이것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11. 제공되는 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청소년유해미디어 목록 B부와 D부 수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 목록에 수록된 저작물과 내용상 전부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례는 형법 제86조 제3항이 준용되고, 제5호의 사례는 형법 제131조 제3항이 준용된다.

(2)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제공되는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1. 제공되는 내용이 그 밖의 방식으로 음란적인 경우.
2. 제공되는 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청소년유해미디어 목록 A부와 C부에 수록되어 있거나 이 목록에 수록된 저작물과 내용상 전부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3. 제공되는 내용이 배포범위의 특별한 작용형식을 고려해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또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책임적이고 공동체에서 생활할 능력을 갖춘 인격성에 대한 교육을 매우 위태롭게 하기에 명백하게 적합한 경우.
4. 인터넷의 경우 서비스제공자 측에서 제공되는 내용이 성인에게만 접근하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한 경우(폐쇄적 이용자그룹)에는 그 제공되는 내용은 허용된다.

(3) 제공되는 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청소년유해미디어 목록에 수록된 이후에는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원이 결정할 때까지 제1항과 제2항의 금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제4조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배

포할 수 없다. 즉, 제4조에 기재된 내용들은 절대적으로 그 배포가 금지된 내용들이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2문의 경우, 성인 이용자가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한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 배포가 허용된다.<sup>69)</sup> 동 협정 제4조 제2항 제1문 제3호 및 제2문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 협정 제23조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효과적인 연령인증체계<sup>70)</sup>를 충분하게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그 밖에 제4조를 위반한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가 된다.

## ② ‘성장위해정보’ (Entwicklungsbeeinträchtigung) 금지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제5조는 동 협정 제4조에 해당하는 내용보다 그 강도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수 있는 위험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단계별로 법적인 조치<sup>71)</sup>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정보 유통금지의 강제력과는 달리 유통 가능 또는 금지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단계별로도 그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선택하는데 있어 판정의 주된 기준은 ‘폭력 또는 선정성(섹스)의 강도, 자기책임성 또는 공동체 위해의 강도’ 이다.

동 협정 제5조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미디어 내용(contents)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협정 제4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만, 제5조는 방송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장에 유해한 내용을 걸러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추게 하거나 특정한 방송시간대에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4조와 차이가 난다. 청소년미디어협정 제5조 제1항에 대

69) 인터넷상에서 ‘폐쇄적인 사용자그룹’ (geschlossene Benutzergruppe)에서의 단순 포르노 영상 및 중하게 청소년을 위협에 빠트리거나 금지된 게시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다.

70) Altersverifikationssysteme (AV-Systeme) 또는 Altersprüfssysteme 등

71)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http://www.kjm-online.de/public> 참조.

한 위반은 동 협정 제2조 제1항에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가 된다. 협정 제5조의 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5조(성장위해정보)

- (1) 방송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자기책임적이고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격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배포 또는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연령층의 아동 또는 청소년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당해 내용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각각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일 경우에는 당해 내용은 제1항에서 기재된 성장을 저해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평가된 내용이 내용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3) 방송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의무를 다음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
  1. 제공자가 기술적 수단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관련되는 연령대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본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
  2. 제공자가 당해 내용이 반포되거나 접근될 시간을 관련되는 연령대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선택하는 것
- (4)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1항에서 기재된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밤 11시와 아침 6시 사이에만 반포되거나 접근되는 때에는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만 배포되거나 접근되는 때에도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는 12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상연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 그 방송시간을 선택할 경우에는 12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복리를 고려한다.
- (5) 제1항에서 기재된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아동에 대해서만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는 내용과 분리하여 제공하거나 끊을 수 있는 때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자



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6) 방송미디어가 뉴스나 정치적 사건을 전송하거나 인터넷이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형식의 표현이나 보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제11조는 동 협정 제5조 제3항 제1호에 기재된 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 의무(즉 제공자가 기술적 수단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관련되는 연령대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본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를 구체화하고 있다. 제11조 제5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동 협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가 된다. 제11조의 규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청소년보호프로그램)

-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적합한 것으로 승인된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을 위하여 아동과 소년의 청성장과 교육을 저해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계획하거나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제5조 제3항 제1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 (2) 제1항에 규정된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은 그 적합성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한다.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대한 승인은 관할 주 미디어청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승인은 주 미디어청에 신청한다. 주 미디어청의 승인은 5년간 효력이 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 (3)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이 연령대별로 그 접근을 가능하게 하거나 비교적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서 승인된다.
- (4)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애초의 승인조건이 추후에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5) 영업적으로 인터넷의 내용을 배포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배포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는 기대가능하고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에는 승인된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을 위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는 내용을 계획하여야

한다.

- (6)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을 승인하기 전에 청소년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 예방조치 또는 기술적 가능성을 가진 한시적 모델을 허용할 수 있다.

### (3) jugendschutz.net GmbH

‘공동 주 청소년보호원’ (jugendschutz.net GmbH<sup>72)</sup>)은 전통적 그리고 신매체(인터넷)상에게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 내용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감시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인터넷활용 정책개발과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방청소년부에 의하여 1997년에 각 주의 미디어 관련 최상위 공동기관인 ‘주 미디어청’에 설치된 기관이다.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이 2003년 4월 1일자로 발효되면서 ‘공동 주 청소년보호원’ (jugendschutz.net)은 인터넷의 주 감독기관 기능을 하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와 조직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up>73)</sup>

‘공동 주 청소년보호원’은 정기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공간을 상대로 희롱 등을 포함한 성표현 등 아동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규범위반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 및 감시하고 있다. 그 심사 및 감시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통지제도를 이용해 관련 기관끼리 특히 KJM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INHOPE-Hotline, INACH, YPRIT 등의 국제적인 자율기구들과 선도적으로 위 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조를 통한 영역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강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74)</sup>

또한 ‘공동 주 청소년보호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또는 사업자들이

72)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유한회사).

73) jugendschutz.net은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그 활동범위가 실시간으로 상호의사소통기능을 하는 게시판의 게시물, 채팅, 파일공유 등 상호 대화를 나누는 통신으로 확대되었다(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제18조).

74) 위의 글 19쪽 참조.

상호의사소통을 둘러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조치, 기술적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지원해주고도 있다. 2008년 10개의 인터넷서비스업체에게 실행하고 있는 안전대책의 평가를 해 주었고 몇 개의 관련업체에게는 보호수준의 강화를 실질적으로 시행해 주었다.<sup>75)</sup> 현재 표준화된 최소보호수준의 이행을 인터넷서비스업체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부모, 교육자 등이 상호의사소통에 있어 위험을 규명하고 보다 안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기 위한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Medienkompetenz). 이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공동책임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규제의 효용성만큼이나 사회 및 부모들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력 및 억지력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포털 등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동 기관은 주어진 권한인 심사, 교육, 상담권을 활용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 (4) 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

##### ① 대륙법과 영미법의 융화현상

독일의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또는 유해한 내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미디어서비스법 체계에서 ‘자율규제’라는 사상이 현대에 들어 환영을 받고 있다. 미디어통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강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신매체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했었다. 이는 전형적인 독일법의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은 강한 지속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유연성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의 이러한 특징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신축적으로 반응하는 기술적 영역에서는 집행에 있어 그 뚜렷한 한계를 가

---

75) 위의 글 19쪽 참조.

진다. 반면에 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하여 문제해결을 우선적으로 당사자에 맡기는(자율규제 원리) 영미법은 대륙법과 달리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위법행위가 지속적이고 견고한 구조속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영미법도 법령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자율규제 규범에 내포된 미디어 관련 규정도 근본적으로는 영미법의 문제 해결 방식을 대륙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지만 대륙법과 영미법에 따른 구별의 실익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상호 통제의 실효성을 가지고 문제의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동일하다.

## ② 순수한 및 의무적(규제적)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국가의 감독이 없거나 적은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와 법령에 따라 자율규제의 내규속에 국가의 감독권이 포함된 의무적(규제적) 자율규제가 있다.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는 현대의 자율규제의 영역에서 예외적인 자율규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적 자율규제가 주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법에도 법치주의 때문에 의무적 자율규제를 하고자 할 때 근거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다. 논란이 많은 미디어영역에서는 규제의 견고성 및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더욱 더 그렇다. 국가기관이 강제로 단속하거나 규제하기 전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게 하고 그 자율성의 한계일탈유무를 국가가 감독하는 것이 규범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규제 원리에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지원된 자율규제기구들은 그 회원 기관 내지 하부 회원기구들이 사전에 약속된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기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타당한 것인지를 다시금 심사한다. 자율적 자기규제기구의 결정이 법적인 허용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는 청소년미디어위원회는 감독권 행사의 차원에서 각종 제재조치를 행사한다. 당연히 결정된 제재조치에 대해 당사자들은 이의제기와 행정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한 항변권을 인정한다.

### ③ 자율규제기관

미디어와 관련한 자율규제기구로는 ‘영상물자율규제’ (FSK), ‘게임프로그램자율규제’ (USK), ‘방송자율규제’ (FSF),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 자율규제’ (FSM)가 있다.

영상물과 게임프로그램의 민간업체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자율규제기구의 설치가 의무적이다(청소년보호법 제14조).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원’ (BpJM)는 자율규제기구의 권한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 자율기구 내규에 그 제한근거를 규정하게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영상물과 게임프로그램에 비속어 제한을 명한다거나,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 등에 관한 표현을 걸러 낼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하게 한다거나 특정영역에 있어 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주 청소년청’은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위의 자율규제기구는 관련 된 사항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민간방송과 인터넷에 관련된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승인 및 내용에 대한 사후규제는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에 따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가 담당한다(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제19조).

이 중에서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 자율규제기관’ (FSM)이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단체는 1997년에 창립되었다. 그 주된 임무는 온라인 미디어의 영역에서 불법내용 또는 청소년 유해적이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 자율규제’ (FSM)의 회원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 검색서비스 제공자, 모바일통신매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당히 광범위하다. 2007년 11월에는 이 단체로 인기 있는 웹사이트에서 채팅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흡수 통합되었다. 이 기관은 다른 기관과 유사하게 모든 회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고, 각 특이성을 가진 하부 기관들에게만 적용되는 개별적인 행동강령을 또한 가지고 있다. 양자의 관계는 특정 정부부서처럼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고 병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매체자율적인 정화능력(Medienkompetenz)의 효율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자율기구의 통합적 효과를 중요시 하여 saferineternet.de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는 관련 학술대회를 열어 보호기관들의 상호 정보교환의 확대를 결의하기도 했다. 중요 계획안에는 공동의 모니터링소(Monitoringstelle)의 설치도 들어 있다.

## 6) 유럽연합의 청소년 성보호 규범

유럽연합(EU)은 개별 국가의 강력하고 일관된 법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고유한 규범체계를 정밀하게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 규범의 종류들을 명령(Regulation), 준칙(Richtlini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 guideline etc.)라고 번역되어 사용되곤 한다. 교과서마다 용어번역에 대한 통일성은 아직 없다. 명령과 준칙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범자는 한국의 법률 공포 후처림이를 준수해야만 한다. 통합의 분위기가 짙어 질수록 ‘결정’ 까지도 직접적인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도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내용의 부작용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는 단언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정책의 적시성 및 적절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보기도 힘들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역에서 그렇다.

유럽연합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4개의 포괄적인 영역설정을 하여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내용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려는 의지표명을 하고 있다(찬성: 672명, 반대: 9명, 기권: 19명). 여론을 통한 주의환기, 참여와 예방책 강구, 인터넷상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내용에 대한 싸움, 기술적 대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학부모의 경각심 고취와 예방책 마련, 정보의 축적 및 교환 확대, 공공기관의 담당부서 설치 및 핫라인 개설, 좋은 정보의 배포확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동기부여 자율규제의 지원확대, 불법정보 또는 유해정보의 온라인상의 결제차단,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교류 확

대,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전경고 시스템 구축, 섹스여행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성범죄자에 대한 행정시스템 구축과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대책강구<sup>76)</sup>, 학부모 및 교원을 포함한 학교교육담당자들에 의한 신고시스템 확충, 학교교육을 통한 예방책 교육 등이다.

유럽연합은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를 증대한 인권침해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대에 의견이 모아 지고 있는 와중에 2009년 1월 말에 이탈리아 출신의 유럽의회 여성의원인 Roberta Angelilli는 유럽의회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학대로부터 잠재적인 성범죄행위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sup>77)</sup> 유럽의회를 활용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였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욕구 충족을 위한 계산된 접근작업의 새로운 형태”<sup>78)</sup>로 cyber-grooming을 개입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적시성 있는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79)</sup> 적시성의 요구에 가장 충실한 것은 각 국의 관련 입법제정 및 개정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sup>80)</sup>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의 내용(illegal und harmful contents)의 적극적인 제한의 통제필요성을 실행하는데 있어 자율규제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유럽연합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서버에서 작동하는 매체 내용에 대한 자국으로의 방지의 필요성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나 아동 및 청소년의 포르노그래피의 통제영역에서 그렇다. 대표적인 자율기구로는 INHOPE, INACH, YPRT가 있다. 이러한 기구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실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율기구의 통합적 효과를 중요시 하

76) 신체적 또는 육체적으로 성인일지언정 생체나이에 대한 기준으로 미성년 판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도 대법판례에서 실제 나이로 미성년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77) <http://www.kurzreporter.de/internetportale-wollen-mehr-sicherheit-cyber-grooming-soll-unterbunden-werden/> 참조.

78) <http://www.kurzreporter.de/internetportale-wollen-mehr-sicherheit-cyber-grooming-soll-unterbunden-werden/> 참조.

79) <http://www.stern.de/panorama/cyber-grooming-im-chat-gefaehrliche-anmachere-im-internet-648531.html> (2008.12.13 기사).

80) [http://www.carechild.de/news/politik/kampf\\_gegen\\_sexuelle\\_ausbeutung\\_von\\_kindern\\_und\\_kinderpornographie\\_555\\_120.html](http://www.carechild.de/news/politik/kampf_gegen_sexuelle_ausbeutung_von_kindern_und_kinderpornographie_555_120.html) (2009.2.4 기사).

여 ‘saferinternet.de’ 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INHOPE(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 Provider)<sup>81)</sup>는 1999년 설립되어 유럽에서 인터넷 핫라인의 공조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천영역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 포르노의 축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 내용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가 있다. 이는 ‘공동신고서’ 신설 및 성범죄자에 대한 활발한 정보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그 효과는 분명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정책으로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 객관성의 지표인 통계적으로 밝히는 것은 무리이다. 현재 18개국의 19개의 연락소가 존재한다.

INACH(International Network Against Cyber Hate)<sup>82)</sup>는 2002년 설립되었다. 인종차별적인 표현 및 아동과 청소년의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를 존재근거로 삼고 있다. 실제로는 인종차별 금지로 주방향을 정하고 있다. 해당 영역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YPRT(Youth Protection Round Table)는 유럽위원회로부터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행동계획’ (Safer Internet Action Plan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sup>83)</sup>

## 7) 소결

인터넷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릇된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이 현 인터넷 세계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고 그 욕망은 쉽게 작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 못지 않게 그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전 단계에 대한 그 통제강도는 높아 질 것이다. 성적 학대를 위한 권유 또는 유혹이 대

---

81) [www.inhope.net](http://www.inhope.net) 참조.

82) [www.inach.org](http://www.inach.org) 참조.

83) [www.yprt.de](http://www.yprt.de) 참조



표적이다. 여기에 있어 대륙법과 영미법에 따른 시행의 차이는 거의 없다. 통제의 효율성쪽으로 주된 방향이 잡혀지기 때문이다.

독일도 아동 및 청소년 정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져 있지는 않다.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G. Orwell의 강한 영향을 받아 인터넷 기술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약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침해의 강도와 사회구성원의 충격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때문에 2008년 이래로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의 보호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과 보안처분을 포함한 “형법”의 관련 부분의 개정을 통한 강한 공조속에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 자율규제’ (FSM)를 한층 더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 내규에 법률보다 더 자세하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매체 내용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의무규정 및 한층 더 간단한 신고규정과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규정 강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있어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금지’가 유럽연합의 입장이라는 것은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적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단순하게 법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해결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의 운동 및 음악시설 이용확대, 범죄행위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 등을 청소년 보호와 관련이 깊은 공공기관 주도로 민간영역과의 협동을 통해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민간영역이 새로이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 및 설립 당시부터 활동을 했던 영역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고 자율의 힘이 미약하거나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형법 등의 규범개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조도 강화하고 있다.

## 4. 영국

### 1) 영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현황

2008년 영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영국 내 성매매 청소년(18세 이하)은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sup>84)</sup>(BBC 2008. 3. 27). 하지만 이 통계치는 업소형 성매매(pimping)이므로 ‘개인형 성매매’를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2009년 뉴캐슬의 한 법정에서 파트너 소개소(escort agency)를 통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15세 여학생이 두 달 동안 14,000파운드(한화 약 3,000만원)를 벌었다고 진술했다. 적발된 이유도 경찰의 조사가 아닌 담당 교사가 우연히 학생의 가방에서 콘돔과 성관계시 사용되는 윤활제를 발견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sup>85)</sup>(BBC 2009. 2. 26).

영국의 ICF(Internet Crime Froum)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채팅룸에서 20%의 청소년(kids)들이 소아성애증 환자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접근을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Gold, 2000). 미디어교육이 공교육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청소년 성매매는 우리나라보다 일찌감치 사회적 문제가 되어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럽의 개방된 성의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는 학대와 성착취의 문제로 여겨, 청소년 관련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참여하여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성매매 청소년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다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홍봉선, 2007).

---

84)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west\\_midlands/7317595.stm](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west_midlands/7317595.stm)

85)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tyne/7912485.stm](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tyne/7912485.stm)

## 2) 영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법제<sup>86)</sup>

영국은 인터넷 내용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자유주의적인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국가답게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역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도 높은 규제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아동포르노에 대한 규제가 그것이다. 영국은 네덜란드와 함께 1996년 인터넷상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자율규제단체가 조직하였다. 이들 단체는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핫라인'(Hotline)을 설치하여 유럽 여러 나라의 NGO들과 협력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 기관들에 의해 영국은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 기관으로는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이다. 인터넷 내용규제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순수단체들로 파악된다. 특이한 점은 인터넷 콘텐츠의 등급을 정하기 위한 등급조차 이들 단체와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조율과 지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 규제 방식은 최근 들어 매우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영국은 9.11 사태 이후 미국과 함께 이라크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테러 위협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결국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정책이 발표되었고 인터넷 상의 자유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sup>87)</sup>

영국에서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하여 고려되는 법률들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아동보호법, 성범죄법, 스코틀랜드의 시민정부법, 음란물출판규제법 등의 아동과 관련된 음란 내용에 관한 규제법률과 인종차별적 내용을 규제하는 공중질서법이 있다. 이 법률은 영국내의 소위 인종차별범죄(hate crime)를 금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관련 지침(Liability of Intermediary

86) 이춘화·성윤숙·주아미(2008).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7) 개인의 정보자유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다. 장일(2000) p. 89 이하; 유사한 분석으로 곽수일(1999) 참조.

Service Providers Directive 2002) 역시 중요한 법규정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은 소위 자율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나 등급제를 관장하는 단체의 권한도 결정적이지 않다. 영국이 고안한 이와 같은 자율규제 체계는 현재 유럽 연합의 표준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규제 대상은 주로 아동포르노물이나 청소년 유해정보이며, 방식은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또한 유럽사회의 또다른 문제인 인종 차별적인 정보에 대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동포르노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력한 형사법적인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소지나 배포 등의 행위도 처벌한다. 인종차별적인 정보의 게시나 배포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불법 내용은 삭제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사업자, 정보제공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1) 1978년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1978, 잉글랜드와 웨일스 주)

이 법률이 규제하는 아동에 관한 성적 표현물의 금지대상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저속하거나 음란한 광고물이나 영상표현물, 또는 출판물을 모두 포함한다. '음란'(indecent)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차용하며, 아동은 18세 미만자를 뜻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 표현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본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 제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아동에 대한 음란하거나 음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진을 촬영 또는 촬영을 허용, 제작하는 행위; 이와 같은 제작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이와 같은 제작물을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이와 같은 제작물을 광고하려고 하거나 광고에 기여될 것을 알면서도 광고제작자에게 제공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이 법과 별도로 형법 제160조는 아동포르노물의 단순 소지 역시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영국은 아동포르노물의 단순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가장 강한 처벌정도는 가중된 형태의 위반으로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소지와 제작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컴퓨터 내에 저장(download)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컴퓨터 저장물을 프린트하는 행위도 포함된다.<sup>88)</sup>

## (2)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의 성범죄법은 2004년 5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1978년의 아동보호법의 일부 수정법률로 제안되어 제정되었다. 1978년의 아동보호법상의 아동의 연령기준은 16~17세였다. 이와 같은 연령 규정을 이 법률 제45조에서는 18세로 상향시켰다. 위에서 설명한 아동보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예외 규정이 이 법률의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예외규정에 따르면 아동보호법 제1조 제1항의 위반 사항(단순 소지, 배포, 전시행위 금지 등)은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사건의 예방이나 수사목적 등으로 이와 같은 대상물을 소지, 배포, 제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에서 상향시킨 아동의 연령규정은 일반 형사법에도 적용된다(section 1A(1)). 다음으로는 사진에 촬영된 아동이 촬영시에 16세 이상이거나 촬영에 완전히 이해된 동의를 포현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section 1A(4)). 마지막으로 예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촬영된 아동의 음란한 사진이 동의한 아동 이외의 다른 아동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촬영된 자와 사진소유자가 혼인이나 동거 등의 가족 또는 준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도 예외가 된다. 이 법률은 또한 브라운 판결에서 확립된 '제작행위'(making)에 컴퓨터에 음란표현물을 저장 또는 프린트 등의 행위로 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사항은 대검찰청(CPS)과 경찰청장연합회(ACPO)는 이 법률 제46조에 규정된 내용이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중요한 규정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차후 사건처리에 핵심적인 규정으로 간주할 것에 대해 상호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다.

88) 이 같은 해석의 근거는 Regina v. Brown[1993] 2 All ER 75(호모섹슈얼간의 상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 (3) 스코틀랜드 시민정부법(Civic Government Act 1982)

스코틀랜드의 시민정부법 역시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잉글랜드와 웨일스주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거의 유사한 등급물에 대한 인터넷내용게시나 배포 등이 금지되어 있다. 이 법률도 종전의 아동의 연령을 16~17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였다(제52조A). 예외 규정으로 단지 16~17세 이상의 아동을 촬영한 경우나 그 해당 사진의 소지가 서로 혼인한 관계나 동거 중인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된 아동의 완전히 이해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서 잉글랜드 웨일스의 규정과 일치한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Longmuir v. H.M.A 판결로 컴퓨터내의 자료를 다른 저장장치에 담는 행위도 '제작행위'로 해석하고 있다.<sup>89)</sup>

### (4) 공중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인터넷의 내용 규제에 관한 중요한 법률은 1986년의 공중질서법이다. 이 법률은 영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적인 표현물을 통신 또는 기타 미디어 매체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인종차별이 담긴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요 금지되는 내용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stir up) 의도를 담거나 그로 인하여 인종차별적인 행위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표현물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이 금지된다. 인종차별의 문제는 영국 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전체 인구의 상당한 비율이 인도나 파키스탄 등의 구 식민지 출신인 경우가 많으며, 아시아계의 이민자도 상당한 비율인 영국은 경제적인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노골적 차별집단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유럽 내에 불기 시작한 인종차별적 범죄(hate crime)의 여파 때문에 이 문제는 점차 심각해질 전망이다.

---

89) Longmuir v. H.M.A. 2000 S.C.C.R. 447

### 3) 영국의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 (1)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

영국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 특히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법을 신설하여 아동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 유린, 학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11월 20일 제정된 ‘성범죄법 2003(Sexual Offense Act 2003)’에 의하여 만 18세 이상인 성인이 만 16세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grooming)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를 운영하여 인터넷의 성적 유인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아동들의 문제를 어디에서든지 책임진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 센터는 아동의 성적 학대를 근절시키고 영국 국내 및 국제경찰의 협조를 얻어 전과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를 단속하며, 아동보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 어린이자선단체, 기업체, 정부, 기타 어린이 성폭력문제 관련 단체들의 전문성을 접목시키고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센터의 직원 일부는 어린이자선단체, IT기업체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의 조직을 살펴보면, 2008년 정보부(29명), 운영부(24명), 위험관리부(24명), 개발지원부(20명), 정보통신기술부(7명), 통신부(5명) 총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5> CEOP 조직

부서 및 담당	배치인원	비고
정보부(Intelligence)	29	
운영부(Operation)	24	
위험관리부(Harm Reduction)	24	
개발지원부 (Development and Support)	20	CEO, COO, 기타 부서를 포함한 인원
정보통신기술부(ICT)	7	
통신부(Communications)	5	

몇몇 주요부서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부(Intelligence Faculty)

정보부에서는 주로 기관의 허브 역할과 범죄가능성 행동에 대한 신고 접수부터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분석이 완료된 정보는 지역 경찰서나 그 밖에 관할 부서에 전달하거나 내부 부서에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아동학대에 대한 CEOP의 향후 역할과 기능을 보완한다. 또한 범죄자 관리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국내외 수배자 위치를 파악하여 그런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 및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부에서는 통계분석, 연통계보 제작과 기타 정보에 대한 결과 정리에 대해 담당하고 있다.

② 위험관리부(Harm Reduction Faculty)

아동, 청소년이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분석과 정보부와 운영부의 수행결과를 토대로 위험관리부에서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교사, 경찰, 아동보호종사자들과 같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실무자들에게



정부 주관의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용 시 유익함과 위험에 노출되었을 시 어떻게 하는지 등 아동,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청소년고문패널(YAP; Youth Advisory Panel)에서 해당 내용을 제공한다.

- 경찰, 보호부서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와 같이 전문 인력들을 위한 연수 과정들을 제공한다. 본 과정은 UCLAN에서 인증하며, 연수 참가자들은 과학수사행동분석학의 대학원 연구생 자격이 주어진다.
- 기업체를 비롯하여 여러 영역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해 강화되어진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영국아동인터넷안전회의(UKCCIS), 경찰공무원협회의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매매 관련 데이터에 대한 사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영국 정부부처와 아동보호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 협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외에서 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 단체와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한다.
- 아동매매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평가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의 경찰과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공한다.
- 성범죄자 면담 시 인터뷰 방법 등 그 밖에 충고사항들을 알려줌으로써 아동 성범죄자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다.

### ③ 운영부(Operation Faculty)

운영부(작전부)에서는 전문가의 지원과 조언을 통해 아동 학대를 포함한 여러 범죄에 대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경찰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운영부에서는 사례 분석을 하여 초기에 전들을 지조언을 한다. 이런지조언은 아동t지조사 대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략에 기본을 지위험에 대해 알려준다. 본 부서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인터넷 조사를 전개하기 위한 수용능력 극대화(전문가들이 아동학대 네트워크에 침투하거나 더 뛰어난 기술을 사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활동함)
- 아동학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범죄자 리스트를 세밀화하는 재정조사 자원
- CEOP 피해자 신원확인팀(Victim Identification Team)에서는 정교한 사진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도록 돕는 팀임
- 이 분야에 최고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언과 지침에 의한 준비

한편,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의 2008-200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국고 지원 75%, 프로젝트 수입 6%, 내부사업 수입 19%로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많은 부분이 국고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표 III-16> CEOP 예산구성

구분	비율
국고	75%
프로젝트	6%
내부 사업	19%

## 5. 미국

### 1) 미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현황

2009년 3월 19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Detroit)에 있는 연방지법의 로렌스 재트코프(Lawrence P. Zatkoff)판사는 인터넷에서 일명 “Motor City Mink”로 알려진 로버트 다니엘(Robert C. Daniels, 29세)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생산, 판매, 유통 및 아동 성매매 범죄행위에 대하여 3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다니엘은 9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적어도 89명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모집해서 포르노그래피와

성매매를 위해 성착취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결은 2006년 미국 의회가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안전법 또는 아담 왈시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이 판결은 또한 미국 법무부가 2006년부터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 “안전한 어린시절 프로젝트(Project Safe childhood)”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검찰, FBI 등 정부기관들과 미아 및 어린이 착취방지센터와 같은 아동권리보호기구, 그리고 주 및 지방검사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터넷을 통한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이다.

2008년 9월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안전한 어린시절 프로젝트(Project Safe childhood)” 추진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아동 성범죄건수는 2218명의 피고를 대상으로 2118건이나 된다. 이는 2006년 1760명의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1657건이 기소된 것에 비해 무려 27.8%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에 따라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미국 전역에 걸쳐 59개 지역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인터넷 범죄예방 프로그램(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ICAC)”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2350명 이상의 아동 성범죄자들이 체포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었다.

미국 법무부 청소년 정의 및 일탈방지 사무국(Dept. of Justice'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지속적으로 “안전한 어린시절 프로젝트”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를테면, 2008년에만 하더라도 1,7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인터넷을 통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의 10세에서 17세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명 중 1명이 “인터넷 상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 40%의 청소년이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받았고, 단지 5%만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Finkelhor, Mitchell, & Wolak, 2000). 채팅룸에서 손쉽게 성적 유혹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정도만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일부 청소년들에게서 인터넷성매매가 이루어지만 인터넷 상에서 성적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의 형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을 직접 파는 결정권을 갖고, 돈을 벌기 위한 형태가 아니다. 아동 성착취반대협회(ECPAT)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이 CSEC(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즉 아동을 이용한 성 착취이다. 포주(pimp)나 매음굴(brothel) 주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노동을 시키고, 노동의 대가를 모두 착취한다. 일반적으로 섹스 여행을 동남아시아나 남미, 서유럽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Spangenberg(2001)에 의하면 뉴욕시에서만 대략 5,000명 정도의 아동들이 매춘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0년에 발간된 미국 청소년에 관한 Online Victimization 보고서에 의하면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중에 대략 5명당 1명은 ‘인터넷 상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0)</sup> 이런 통계치는 인터넷 상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성적 유혹을 통해 오프라인 상에서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에서도 점차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채팅이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유인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형태가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미국에서의 청소년인권침해 관련 인터넷범죄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워싱턴 소재 Inter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ICMEC)이 일종의 인터넷범죄수사대인 Cyber Tipline에 신고한 사건수를 집계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병식·김경제·임규철·이혜리, 2007: 41).

---

90) 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s Website [www.ncmec.org](http://www.ncmec.org)

<표 III-17> ICMEC 인터넷 아동성범죄 사건현황

범죄의 종류	주별사건수 (2007.11.26 ~ 2007.12.2)	집계개시일 (1998.3.9 ~ 현재)
아동포르노	1,397	475,781
아동성매매	38	6,077
아동 성관광	12	2,591
아동 성희롱 (가정밖)	40	13,399
인터넷루어링	244	32,024
아동에의 음란물전송 (2002.9.1~)	34	5,961
도메인활용 아동유혹 (2004.4.20~)	49	6,173
총계	1,814	542,006

## 2) 미국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관련법제

### (1) 인터넷루어링 금지

미국에서는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채팅 또는 이메일로 접근하는 행위를 인터넷루어링(Internet Luring)으로 처벌하고 있다. 인터넷루어링은 그루밍(Grooming) 행위 중 하나로서 아동에게 성매매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인터넷상으로 그루밍(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병식·김경제·임규철·이혜리, 2007: 40).

가령 어떤 아동이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거나 한 경우 고민상담 등을 통하여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자연스레 언급하는 등 아동의 경계심을 없애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동이 피의자에 대한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해사례를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점은 인터넷루어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sup>91)</sup> 물론 인터넷루어링은 굳이 친분관계를 포함하지 않아도 호기심 많은

미성년자에게 단순한 성행위 주제의 이야기나 포르노를 보여주겠다는 유인 등을 한 경우 범죄 요건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다.

① 1998년 아동보호와 성관련 범죄자 처벌법(Child Protection and Sexual Predator Punishment Act of 1998)

미국 연방법 18장 2425조는 성관련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성범죄로 정하고 있다. 주에 따라서는 특히 플로리다 주의 경우에는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컴퓨터 사용"과 같이 온라인으로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령을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 연방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가 실행되기 전 단계에서 범죄인을 체포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 성범죄에 희생되는 아동의 수가 정확하게 집계된 바는 없지만, 연방 경찰과 지역경찰에서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점차 본격적인 컴퓨터시대를 맞이하면서 경찰들은 더욱 새로운 신종범죄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98년 아동보호와 성관련 범죄자 처벌법은 컴퓨터로 인해 조장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위협, 특히 끔찍한 성폭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신종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지원과 방법을 제시하여 미국의 아동들이 성범죄자들의 성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있다.

② 아담 왈시 어린이 보호 및 안전 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sup>92)</sup>

91) Danica Szarvas-Kidd(2006). Electronic Luring Statue Under Fire, American Prosecutors Research Institute, Volume 3, Nov.1 at Part I of II.

92) <http://www.ncsl.org/IssuesResearch/CivilandCriminalJustice/HR4472AdamWalshChildProtectionandSafetyAc/tabid/12699/Default.aspx>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의회가 2006년 7월에 입안하고 2009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이 연방법안에 대한 수정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아동 학대, 유괴, 음란, 아동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등의 유통을 위한 인터넷 이용을 포함하여 아동 성착취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아동의 성착취를 위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유통행위를 하거나 아동 성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하여 등록하고 성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들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연방에 보고하여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성피해 아동에게 15만달러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플로리다주 2007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관련법(The Cybercrimes Against Children Act of 2007(SB 100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로리다주는 2007년 6월 20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범죄에 대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sup>93)</sup>

이렇듯 신종범죄를 겨냥한 법률은 주 경찰과 검찰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인터넷상에서 아동을 노리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더욱 필요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고 강경한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는 현재 아동 포르노와 아동 성범죄에 대하여 가장 엄중하게 대처하는 주의 하나가 되었다.

미아 및 아동착취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93) 예를 들어 2007년 6월 기준으로 그루밍, 특히 인터넷루어링(인터넷상 피의자가 범죄 아동피해자의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점에서 미국의 유일한 주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피해자에게 그루밍 행위(믿음을 형성함)를 하고 그 해당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따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다. 박병식·김경제·임규철·이혜리(2007) pp. 43~44 참조.

Exploited Children)의 보고서에 따르면 7천7백만 명의 아동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10세부터 17세까지의 인터넷 사용아동 중 7명 중 한 명이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 플로리다주는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상(웹카메라, 채팅룸과 비디오 포함) 아동포르노의 규모가 미국 전체의 4위이다.<sup>94)</sup>

#### ④ 기타 주

미국의 주법 중에는 연방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그루밍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조지아주법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아동을(심지어는 성인을 포함)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또는 지역계시관 등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기타 알라바마주, 아리조나주 등 30여 개 주에서 인터넷루어링을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다.<sup>95)</sup>

### 3) 미국의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 (1) 실종 및 착취 아동신고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

아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가운데 하나인 ‘실종 및 착취 아동신고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CMEC는 1984년에 미국 버지니아의 알렉산드리아의 외곽에 본부를 두

---

94) McCollum 검찰총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연방법에서 ‘그루밍’을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연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방적인 차원에서 국회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국회에 보내기도 하였다. 박병식·김경제·임규철·이혜리(2007) p. 44 참조.

95) 상세한 주의 명칭과 법률 근거는 박병식·김경제·임규철·이혜리(2007) pp. 44~46.



고, 유괴를 당했거나, 위협에 처하고,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동 범죄를 예방에 대한 가족과 전문가들에게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설 비영리 기구로 설립되었다. NCMEC의 임무는 아동 유괴와 성적 착취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실종 아동 찾기, 유괴 아동 피해자와 성적 착취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는다.

NCMEC는 154,161명의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법무성을 도와 그 중 138,506명의 아동을 가족으로 돌려보는데 기여했다. 또한 지금까지 670,500개의 아동성착취 보고서를 처리하면서 256,386명의 법무성 직원과 관련 전문가들을 훈련시켰다. 무료 핫라인 1 - 800 - THE - LOST(1-800-843-5678) 전화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NCMEC의 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실종 아동, 예방책, 기타 자료에 대해 다국어 지원을 하고 있다.

NCMEC는 미국 내에 유일무이한 기관이다. FBI의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국가법집행통신시스템(National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 System, NLETS), 연방아동지원서비스(Federal Parent Locator Service, FPLS)<sup>96)</sup>에서 제공하는 실종 명단, 수배 명단과 미확인 명단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아동보호 비영리 기구이다.

## (2) FBI

FBI는 FBI의 사이버 범죄방지 프로그램의 하나인 ‘범 국가적 무죄이미지운동(Innocent Images National Initiative, IINI)’은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동포르노와 아동성착취를 막기 위해 정보수집, 사전예방활동, 다기관협력 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IINI에서는 주, 지역, 국제 정부 기관과 FBI 현장사무소와 법수행관들의 이전에는 없었던 협력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에 걸쳐 수집한 사례에 대한 정보 분석과 집중화된 협력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96) <http://www.acf.hhs.gov/programs/cse/newhire/>

IINI의 임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착취와 학대 행위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혹은 여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혹은 사업적으로 아동성착취를 하는 성범죄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훈련 프로그램과 연구지원을 통해 연방, 주, 지역, 국제 등 사법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조하고 있다. IINI는 최근 그 활동영역을 넓혀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올리는 인터넷 웹사이트, 인터넷 뉴스그룹, 인터넷 채팅, 파일서버, 온라인 그룹, P2P 파일공유프로그램, 게시판 및 기타 온라인 포럼 등 인터넷과 온라인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IV.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IV.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1. 조사개요

#### 1) 연구대상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터넷성매매 경험 청소년들 5명과의 예비면접 자료를 분석한 후,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주 체보자들을 선정하였다. 주 체보자의 선정과정은 인터넷을 매개로 성매매를 하여 청소년위기센터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쉼터에 있는 청소년 중에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며, 심층면접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43명의 청소년을 주 체보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주 체보자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	가족구성	가정 형편	장래희망
1	17세	중3 중퇴	고시원	새엄마, 아빠, 오빠, 동생	중	없음
2	16세	중졸	집	부모님, 언니, 남동생	중	엄마
3	16세	중3 재학	친구 집	엄마, 아빠, 언니	중	유치원선생님, 청소년들 보호해주는 일
4	17세	중학 중퇴	고시원	고모, 고모부, 사촌언니	중상	미용사, 유치원선생님
5	19세	중졸	모텔	동생	중	일러스트

6	19세	중졸	모텔 자취방, 업소, 친구집	새아빠, 엄마, 동생들	무응답	건축디자인, 상담사, 사회복지사, 뮤지컬배우
7	17세	초졸	모텔 조건 강한 남자 집, 친구 집, PC방, 찜질방	아빠, 동생	하	행복하게 사는 것
8	18세	초졸	컴터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하	사업, 일반 직장인
9	17세	중졸	컴터, 친구집	할머니, 동생, 아빠	하	가수
10	17세	중졸	집	엄마, 아빠, 작은 언니	중	건축디자이너, 작가
11	16세	중3 중퇴	컴터	아빠, 할머니, 오빠	하	없음
12	18세	고2 휴학	컴터	부모님, 오빠	중	한식조리사
13	17세	고1 재학	집	아빠, 엄마, 오빠	중	헤어디자이너, 파티쉐, 바리스타
14	17세	중3 휴학	친구 집	엄마	중	개그우먼
15	19세	고1 재학	집	엄마, 오빠	중하	간호사
16	16세	고1 재학	집	아빠, 엄마, 언니 2명	중	요리사
17	15세	중2 재학	집	오빠, 엄마	하	모름
18	16세	중2 중퇴	모텔 고시텔 오피스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하	패션디자이너
19	19세	고1 자퇴	컴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엄마, 동생	하	사회복지사
20	19세	고3 재학	집	할머니	하	벨리댄스강사
21	18세	중졸	컴터	아빠	중	헤어디자이너
22	16세	중3 중퇴	집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하	미용사
23	18세	고1 중퇴	집	엄마, 동생	중	결혼해서 자녀양육
24	18세	중졸	친구 집	아빠, 동생, 새엄마	중	사회복지사
25	16세	고1 재학	고모 집	고모, 고모부,	하	없음
26	17세	중졸	모텔, 자취방	아빠, 오빠, 오빠 여자친구	중상	패션디자이너
27	17세	중2 휴학	친구 집, 찜질방	엄마, 아빠, 할머니, 동생	하	헤어코디
28	18세	고졸	성매매피해 청소년지원 시설	할머니, 동생	하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장유치원선생님

29	20세	고1 자퇴	자취방	시댁식구들	하	헤어디자이너
30	18세	중졸	남자 친구 집	할머니, 고모	하	사회복지사
31	19세	고졸	집	엄마, 동생	하	애견미용사
32	17세	고1 재학	집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동생	하	모름
33	19세	고2 재학	집	부모님, 동생	중	없음
34	16세	중3 재학	집	엄마	하	가수
35	18세	중3 재학	집	엄마, 동생	하	유치원선생님
36	16세	중3 재학	찜질방	부모님	하	가수
37	18세	고1 중퇴	친구 집	고모, 고모부, 사촌오빠, 할머니	하	없음
38	15세	중3 유예	친구 집	아빠, 고모, 고모부, 동생	중	없음
39	17세	중3 재학	집	할머니, 아빠	하	경찰
40	17세	중3 재학	집	아빠	하	요리사
41	17세	고1 자퇴	친구 집	보모님, 오빠	중	헤어디자이너
42	18세	고1 재학	집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동생들	하	가수, 재즈피아노선생님
43	17세	고1 자퇴	밖	부모님, 언니, 동생2명	중하	돌고래조련사

## 2) 조사도구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성윤숙·이춘화·유의선, 2008; 홍봉선·남미애, 2008) 분석과 성매매대상 청소년 위탁교육기관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성매매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질문지를 만들고 인터넷성매매 관련 전문가 7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질문지 내용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성매매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질문지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2> 심층 면접 질문 주요 내용

번호	조사영역	세부항목
1	인터넷 이용의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li> <li>- 이용 대화명</li> <li>-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는 목적</li> <li>- 하루 평균 이용시간과 횟수</li> <li>- 인터넷 이용의 문제점</li> </ul>
2	인터넷 성매매 경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인터넷 성매매 경험 나이</li> <li>- 자발성과 비자발성</li> <li>- 첫 성경험 나이</li> <li>- 인터넷 성매매 계기</li> <li>-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접촉 경로</li> <li>- 성매매 횟수</li> <li>- 상대방 나이</li> <li>-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li> <li>- 성매매 대가</li> <li>-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li> <li>- 돈의 사용처</li> <li>- 피임 여부 및 방법</li> <li>- 성매매로 인한 피해경험</li> </ul>
3	성매매 관련 인터넷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를 위해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 이름</li> <li>- 성매매를 위한 인터넷 접속 장소</li> <li>- 상대방과 만나는 과정</li> <li>- 성매매관련 쪽지나 대화에 대한 대처</li> <li>- 쪽지나 대화가 걸리는 시간</li> <li>- 채팅에서 성매매에 관한 암호나 신호</li> <li>-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근한 경험</li> <li>- 화상채팅을 통한 성경험</li> <li>- 성매매 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li> <li>- 인터넷 성매매의 장점</li> <li>- 인터넷 성매매의 단점</li> </ul>
4	성매매 전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검찰 조사 경험</li> <li>- 성매매 전 어려웠던 점</li> </ul>
5	탈성매매 및 재유입 관련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의 중독성</li> <li>- 성매매 후 생활의 변화</li> <li>- 탈성매매를 위한 노력</li> <li>- 성매매로 인해 어려웠던 점</li> <li>- 향후 성매매로의 재유입 의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성매매에 가장 도움이 된 것</li> <li>- 이용 시설의 유무 및 이용기간</li> <li>- 이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li> </ul>
6	성매매 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성매매 방지와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li> <li>- 성매수 유인행위처벌에 대한 의견</li> <li>- 성매수자의 처벌</li> </ul>
7	현재 및 미래생활 관련 사회적 지원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및 미래의 받고 싶은 지원</li> <li>- 장래희망</li> <li>- 앞으로의 계획</li> <li>- 자신의 미래상</li> </ul>
8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년도</li> <li>- 최종학력</li> <li>- 거주지</li> <li>- 가족구성</li> <li>- 가정형편</li> <li>- 부모님과의 관계</li> <li>- 학교생활</li> </ul>

### (3) 연구 절차

문화기술적 접근은 인터넷성매매를 한 여성청소년들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과 청소년들 자신의 의미 창출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는 여성청소년들의 인터넷성매매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면담조사와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09년 7월 9일부터 시작하여 2009년 9월 1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취한 본 연구자는 ‘있는 그대로’ 최대한 일상적인 생활 장소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 제보자들의 심층면접은 주 제보자들의 사정에 따라 1~2회 개별면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면접 내용에 대해 녹취하는 것을 승낙 받아 녹음을 하였다. 주 제보자들에 대한 참여관찰은 1회에 걸쳐 주 제보자들이 생활하는 청소년위기센터, 쉼터 등에서 이루어졌고,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교사를 통해 청소년의 평상시 모습에 대해 듣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시작 전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식사를 같이 하거나 다과를 먹으며 한 시간 정도 그들 옆에서 행동을 관찰하였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이나 모습, 표정 등을 현장노트에 적었다. 이렇듯 체보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 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연구자는 각 개인의 개인적 관심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고, 면접 내용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새로운 느낌들을 현장노트에 정리하여 기록하고 이것을 자료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V-3> 심층 면접조사 방법

주요 요소	인터넷성매매 대상 청소년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성매매 대상청소년 위탁교육기관, 컴퓨터 대표 및 실무 담당자 접촉
면담참여자 수	43명
표집방법	눈덩이표집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학업성취도, 가족결손, 가출경험, 비행경험, 가정 경제적 수준이 낮음
면담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반구조화 질문지, 개별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2시간, 1~2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자료 기록 및 녹취 실시
면담자	연구자

#### (4) 자료 분석

현장 노트를 읽을 때마다 연구지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연구자의 생각, 느낌, 연상되는 비유나 속담을 포함한 일차적인 해석들을 적고 검토하였다. 범주화(coding category)를 하기 위하여 현장노트를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상

황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핵심단어들을 적는 한편, 단어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웹(web)을 만들었다.

자료의 범주화에서 주제영역 분류를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행태(빈도, 이용장소, 계기), 인터넷성매매 동기, 인터넷성매매 청소년의 심리, 주변 환경, 가정체계, 지역사회체계,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상·하위 범주들을 정하고 이를 부호화 범주로 전환한 뒤 현장노트에 이를 적용시킴으로써 코딩작업을 완결하였다. 마지막으로 표기된 부호와 범주의 수대로 현장노트를 복사해서 범주별로 정리한 뒤 동일 범주의 사례들을 읽어가며 해석하였다. 연구자는 다양하고도 심층적 해석을 위하여 자료 분석을 하는 동안 ‘좋은 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인터넷성매매 관련 청소년복지 전문가 5인에게 의뢰하여 자료와 분석결과를 재검토하였다. 즉 제보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관점, 시간, 공간, 상황 등을 달리하여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Denzin, 1978; Goetz & LeCompte, 1984).

## 2. 조사결과

### 1)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과 탈성매매 과정

#### (1) 취약단계

##### ① 취약한 환경

##### 가. 열악한 가정환경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43명 중 14명이 가정환경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편애로 힘들었다는 경우와 부모님의 부재나 가족의 폭력으로 힘들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한테 남녀 비교 당하는 거.”, “부모님 편애요.”와 같이 편애로 인해 힘들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있었고,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혼해서 나가고 할아버지만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80세정도 되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모랑 고모부랑 사촌오빠한테 맞았어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집 나갔었는데 이번에 지금은 연락 되서 연락하고 있고요. 아빠는 몸이 되게 안 좋아서 못 움직여요.”와 같이 부모님의 부재나 같이 사는 친척들의 폭력으로 인해 힘들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응답청소년들이 가정환경의 열악성, 부모역할의 부재, 빈약한 가족지원체계 등의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너무 관심 갖는 것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야 되고 그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가출하고. 가출하고 조건하기 전에 번개로 먹고 살만큼 살았는데, 필요한 것 생기고 하니까 조건하게 된 거예요.
9. 저는 조건만남은 집을 나와서 돈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집에서요? 할머니한테 남녀 비교 당하는거.
12. 부모님 편애요. 오빠랑. 학교문제랑. 그냥 이유 없이 따돌림 당하는 거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했어요. 부모님이 싸우면. 싸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우는게 더 이상하잖아요. 싸우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지고 심지어는 아빠가 칼까지 드세요. 자살한다고 하고 또 아빠가 칼 가지고 같이 나가서 죽자고 저보고. 전 죽기가 싫어요. 저도 팔 그으려고도 해봤고, 일부러 교통사고 나려고도 해봤고, 심

지어는 유서까지도 썼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리 내 부모지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까지 하는 게. 그리고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한테도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엄마 필요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싫대요. 근데 오빠가 가서 얘기 하니까 바로 알았다고. 아빠 한 번 봐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다 안 되고, 오빠가 말하는 것만 들어요. 오빠가 지금 성인이에요. 말 통한다는 것 저 아는데, 무작정 제 의견은 무시하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늘목장 쉼터에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 안하고 있다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찾아왔는데, 그때도 엄마한테 불만 있는 거 말도 못했어요. 속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그걸 내뱉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무조건 틀리다고 하니까 그런

것 자체를 꺼내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 직업을 싫어하는게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노래방 도우미세요 직업이. 엄마가 그 직업에 대해서 당당해 졌으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식당에 다닌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중2 때 가출했을 때 아빠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노래방일 다닌다고. 그거 들었을 때 충격이 큰 거예요. 엄마가 일하는데 불만이 하나도 없는데. 오빠한테 속으면 모를까 딸한테도 같은 여자한테도 속였다는게 싫었어요. 엄마가 노래방 갔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오면 꼭 그날만 아빠랑 싸워요. 근데 문 밖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웃집 다 깨게. 들어오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와서 계속 싸우다가 자고. 계속 반복이 되고. 사람들이 엄마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솔직히 그 직업이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 엄마처럼 가정주부도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도 아니고, 요리사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니까 사람들이 엄마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 노래방도우미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식당에서 일해요. 아니면 그냥 집에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식당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딸이 돼서 어떻게 엄마 직장 한 번도 안 가보냐고. 그런 말하면 속으로 자기들이 내 입장이 되어보라고.. 땃땃하게 노래방도우미한다고 말할 수 있나

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13. 제가 가출한 이유가 중학교 때 기말고사를 너무 맡아 먹었어요. 퍼센트가 원래 낮았는데, 거기서 더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자체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아무학교라도, 공고나 실업계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내달라고.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근데 아빠가 검정고시 봐서 공부해서 인문계 들어가라고 가서 반에서 평균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 때 제가 울면서 지금도 컨트를 못하는데, 학교 안 다니면 더 컨트를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컨트를 못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검정고시보라고 그래서 결국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는데, 검정고시 간다고 학생들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닌 데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얼마 안 지나서 검정고시를 안 갔어요. 출석체크만 하고 맨날 PC방가고, 친구들 만나고. 아빠가 또 공부만 하라고 핸드폰도 정지시켰었거든요.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어떤 여자애를 만났는데, 개가 집을 나왔었어요. 번개를 하자고 해서 번개를 했는데 외박을 하게 됐어요. 저희 집은 외박을 하면 엄청 맞거든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솔직히 나가서 살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런 제지 없이. 그래서 한동안 집나가 있는게 편하고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아빠한테 잡혀서 집 들어오고. 그 전에는 학교 못 들어가서 좀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다 교복입고 학교 가는데, 저는 평범한 사복입고, 아줌마 아저씨들 있는 검정고시학원을 간다는 게.

19. 집에서 관심 못 받은 것.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생긴 것, 먹는 것, 취미, 행동 하는 것. 아빠도 운동했는데 저도 유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 다녔으니까 아빠랑은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엄마랑은 말을 하고 싶어도 엄마한테 말하면 ‘그래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아빠랑은 말이 통하니까 비밀도 없이 터놓고 얘기 했는데, 외가 쪽에서는 저를 아빠 닮았다고 되게 싫어해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 한 것도 17살 때예요. 이혼하고, 저 자퇴하고, 집 나오고. 그게 5월8일이예요. 아빠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네서 있었고, 나는 아빠가 주소지가 없으니까 아빠 밑으로 못하고, 엄마 밑으로 있었어요. 그 집에서 저만 보면, 물건 던지고, 쌍욕하고, 아빠한테 가지 왜 여기에 있냐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20. 이런 말 하기는 창피한테 저의 할머니가 경마장에 다녀요. 제가 기초수급대상자로 90만원이 나오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핸드폰료가 밀리고, 밀리고 제가 먹기만 하면 체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회복지에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나와서 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제가 후원 받았던 500만원도 경마장과 바다이야기에 다 썼어요. 밤새도록 잠도 안자고 계속 잠도 안자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박스를 줌는 일을 하는데, 할머니가 도박하러 가면 제가 주워요. 그럼 사람들이 할머니는 어디가고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래요. 근데 경마장 갔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냥 할머니 아프세요. 말해요. 할머니가 다리가 다치셨는데도 경마장 다니시고요.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아빠는 제 기억으로는 5살까지는 같이 산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쪽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IMF때 건축일을 하셨는데 힘들셨대요. 저랑 할머니를 버리고 새엄마랑 이복동생 둘이랑 인천으로 갔어요. 저는 이천에 할머니랑 있었고. 거기에 할아버지가 새할머니랑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드디어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러워서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아빠가 다시 데리러 왔어요. 할머니랑 저랑 인천에 둘이 살고, 아빠는 새엄마랑 이복동생들이랑 따로 살고. 근데 아빠의 사업 실패로 연락이 안됐어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뭘 사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연락만 해요. 또 새엄마랑은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살아요.

22. 중3때요 집에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친구집에서 몇 달 생활을 했어요. 아빠랑 살게 된 거는 제가 중3때였어요. 집이 싫은 거예요. 아빠가 때리니까.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발로 밟고 그래가지고요. 오토바이 사고 나서요. 집나갔는데, 아빠가 용서를 해주셨대요. 오토바이도 다시 사주셨대요. 집에 들어가서 또 맞고 오토바이 갖고 나오고 집 나오고, 집에 정착하다가 애들이 집 얻었다고 나오라고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정향에서 살았어요.

24. 집 얻을 수가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숙식제공 되는 곳도 많이 알아봤거든요 숙식제공 되는 곳도 없어요. 여자니깐 거의 조건하는 애들

은 보면요 하루 벌어서 그거 가지고 모텔 가고 찜질방 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없고 또 구해서 하고 집 있는 애들도 여러 명에서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집 얻어서 몇 개월 이상 사는 애들 못 봤어요. 집 얻는 다 해도 대행해서 대행한 남자가 도와줘서 얻는 거요. 가출 왜 했어요? 가족들이 짜증났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요. 가정 불화, 가정 폭력 그런 거요.

26. 배고픈 건 참을 만 했어요. 근데 잘 데가 없는거, 아빠가 집 들어오는 거 규칙적으로 했어요. 근데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요.

27. 제가 부모님이 안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혼해서 나가고 할아버지만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80세정도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못 해준 건 아는데 제가 고등학교 되니까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세대차이도 나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혼나고 그래서 나갔어요.

34. 금전 쪽으로 그 때는 돈을 잘 몰랐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되는데 엄마가 용돈을 잘 안 주세요. 아빠랑 살았는데 옷 산다고 돈 달라고 아빠한테 못 하겠어요. 옷 같은 것도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제가 알아서 아르바이트해서 사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문제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 하셨는데 5학년 때 이혼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 계속 만나지 말라고 하고 엄마는 계속 찾아오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이 왔죠. 6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빠랑

같이 살다가 졸업하기 한 달 두 달 전에 가출해서 성매매 시작하면서 엄마랑 같이 살았죠. 지금은 엄마랑 사는데 기관 들어왔죠. 아빠랑은 연락해요? 그때 아빠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가출했었던 거요. 제가 육상부 한다고 했는데 그만 뒀다고 아빠한테 맞았죠. 그럼 아빠하고만 살았어? 오빠랑요. 그때 아빠가 칼 들고 죽으라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오빠 자는 줄 알았는데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OO이 어떻게 하냐고. 아빠가 찌르려고 했어? 그거 가지고 밟히고 그랬어요. 거짓말 했다고요. 제가 육상부 그만 뒀는데도 그만 뒀다고 말 하지도 않고 가출해서 합숙훈련이었는데 제가 빠져나와서 혼날까봐 밖에서 지내고 그게 탈로 난거죠 그만 뒀다고 하는 거까지 괜찮았는데 제가 거짓말 하고 택시 타고 갔는데 제가 지갑 잃어 버려서 집 주소 알려줘서 내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빠한테 들켜서 혼났죠. 그때는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섭지 않아요. 저도 생각하는게 있으니까요.

37. 중학교 3학년 때 고모랑 고모부랑 사촌오빠한테 맞았어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집 나갔었는데 이번에 지금은 연락 되서 연락하고 있고요. 아빠는 몸이 되게 안 좋아서 못 움직여요. 제가 고모 집에서 할머니도 병간호 지내는데 아빠는 부산에 계세요. 새 엄마랑요. 고모는 자주 안 때리는데 특히 사촌오빠는 기분과라서 자기 기분 나쁘면 때리고 고모부도 술 취해서 들어오면 자고 있는데 떡살 잡고 때리고 3년 동안 살았는데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춘기까지 와서 결국 나

<p>가버렸어요.</p> <p>39. 그냥 집도 가난했고 엄마도 안 계세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사는 건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아빠는 정신병원에 갔고 매일 술 먹고 집에 있어서 그게 싫어서 집에서 나왔어요. 돈도 없고 집에. 그럼</p>	<p>집에서 돈 번 사람이 없었겠네? 네.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간신히 버티는 거예요. 그걸로 생활비하고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는 이혼 한 거였어? 태어나자마자요. 그럼 기억이 없겠네? 조금 있어요. 4학년 때까지 만났어요.</p>
--	--

### 나.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응답한 청소년 43명 중 29명이 좋지 않았거나 애정이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안 좋았어요. 아빠랑 거의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 “아빠랑 말도 안하고 뭐 잘못하면 아빠한테 맞고.”, “어색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접촉은 안해요. 애정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운 게 아니니까요. 고모가 키웠어요.”

그리고 43명 중 14명의 청소년은 좋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나쁘진 않았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요.”, “저는 엄마 아빠랑 사이 좋았어요.” 그 외에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응답 청소년 대부분이 부모와 원만한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을 갖고 있으며,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p><b>□ 부정적 관계</b></p> <p>3. 아빠랑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즘 들어 좋아졌고, 엄마랑은 원래 친했어요. 아빠가 용돈 주시면서 먼저 다가왔어요.</p> <p>5. 안 좋았어요. 아빠랑 거의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p> <p>6. 별로 안 좋았는데</p> <p>7. 안 좋았죠. 말을 잘 안 했어요.</p> <p>9. 아빠랑은 안 친해요 마음에 안 들</p>	<p>어요.</p> <p>10. 엄마랑은 친한데요, 아빠랑은 싫어요. 맨날 막 시켜요. 저도 밖에 나갔다오면 되게 피곤해요. 근데 아빠 저녁을 제가 차려드린단 말이에요. 차려드리고 제 방에서 선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절 불러요. 그래서 가보면 상 치우라고. 진짜 싫어요. 리모콘 가져와라 물 떠와라 이런 것도 시켜요. 그리고 아빠는 돈도 안 줘요. 아빠한테 용돈</p>
---	--



-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11. 어색해요.
  12. 그렇게 다 제 속마음을 말 못 할 정도로 불편 했어요.
  13. 아빠랑은 좀 안 좋죠. 엄마랑은 잘 지내는 편이에요. 엄마가 요즘은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15. 그냥 그랬어요. 조금 싸우고 아빠랑 거의 말 안해요. 오빠랑은 좋아요.
  16. 그냥 딱히 없는 데요, 중 3때 엄마랑 아빠 사이가 안 좋았어요.
  17. 엄마하고는 얘기 잘 안 해요. 이해는 해주는데 자유를 잘 안 주는 거 같아요.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아요.
  18. 아빠랑 말도 안하고 뭐 잘못하면 아빠한테 맞고.
  19. 아빠랑은 너무 좋았어요. 엄마는 너무 떨어져 있고. 엄마는 자기 들 어올 때 눈만 마주쳐도 재수 없다고 때렸어요.
  20. 아빠는 별로 그다지 좋지 않아요. 할머니랑은 거의 맨날 싸워요.
  21. 안 좋아요. 아빠 폭력이 좀 심해요. 엄마는 안 친했어요.
  22. 아빠랑은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아빠도 화나면 때리는 성격이고 저 도 화나면 집에 나가는 편이죠.
  23.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안 좋았고 너무 많이 때렸고 할머니랑도 친했는데 가출하고 나선 어려워 졌어요.
  24.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부모님이 정이 없었어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서로 살기 바빠서요.
  25. 괜찮았는데 아빠와는 좀 안 좋아요. 아빠를 싫어해요. 아빠가 때려요. 구구단 못 외웠을 때 외울 때 까지 때렸어요. 아빠가 무서워서 돈 달라고도 뭐 사달라고도 말 안 해요. 아빠랑 안 친해요. 가까이도 안가요.
  28. 아빠는 별로 연락 안 해요. 아빠는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밀어내니까 아빠가 기대에 못 미쳐주니까 아빠가 이성교제 하는거 싫어 해요. 그래서 혼나고 할머니랑 싸웠어요. 그래서 집 나왔어요.
  31.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접촉은 안해요. 애정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운 게 아니니까요. 고모가 키웠어요.
  32. 좀 엄마랑 그런 게 있어요. 아빠는 얘기 지운 거 몰랐거든요. 엄마 친구 이모랑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아빠랑은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같이 안 살았거든요. 가정형편 때문에. 아빠랑은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연 상태예요.
  35.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엄마가 말 걸면 짜증나요. 이유 없어요.
  36. 멀다.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이 아예 안 나와요. 안 걸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춘기 때부터 중2요. 컴퓨터 때문에 엄마가 잔소리하고 엄마가 걱정하는데 잔소리로 생각하고 멀어진 거 같아요.
  38. 아빠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하고요. 잘해 줄때는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다른 애들이랑 차별하고 그리고 폭력어요. 너무 짜증나죠. 좋은 때는 아빠랑 떨어져 살았는데 잠시 만났을 때요. 근데 술만 먹으면 싫어요.
  39. 할머니랑은 좋은데 아빠랑은 별로 가깝지가 않아요. 할머니랑도요. 따로 사는 느낌이에요.
  41.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제가요. 두 분다 일하셔서 대화 할 시간이 없었어요.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잘 해주시려고 하는

데 일하러 가야하니깐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43. 새 아빠랑은 안 좋고 엄마랑은 좋고요. 엄마랑은 사이좋았어? 새 아빠 때문에 가출 한 거야? 네. 그냥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옛날에는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맞고 나가고 맞고 나가고요. 요새는 안 때려? 자기는 잘 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가식 같아요.

#### □ 긍정적 관계

1. 그냥 그래요. 짜증나게 해요. 엄마는 착해요.
2. 지금보다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철이 없어서 엄마한테 때만 부렸어요. 엄마가 옛날보다 철은 많이 들었대요.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좀 그래서 그렇지.
4. 어쩔 때 힘들면 큰아빠네 가서 있거든요. 큰아빠는 딸이 없고 큰엄마는 중국사람이어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대로 그냥 놔둬요. 떨 하던 신경을 안 써서.
8. 저는 엄마아빠랑 사이좋았어요.
14. 보통이었어요. 근데 엄마 술 먹는 거 싫었어요. 술 마시면 눈빛부터 변해요. 그래서 싫었어요. 술 먹으면 표정이 싹 바뀌어요.
26. 좋았죠. 화목했죠. 우리 막 넷이

팬티만 입고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변했어요.

29. 좋은데, 이런 얘기는 안해요.
30. 잘 몰랐어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가끔 가다 엄마랑 싸운 정도요.
33. 대체적으로 좋아요. 아빠는 엄청 좋고요. 엄마는 제가 싫어해요. 엄마가 절 아껴 주는 거 아는데 너무 참견하는 게 싫어요. 아빠랑은 어느 정도 만나? 3개월에 한번 정도요.
34. 나쁘진 않았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요.
37. 지금은 좋아요. 엄마랑 옛날에는 아무 연락이 안 났었니까 좋다 안 좋다 말 할 수 없고. 아빠랑은 친구 같아요. 되게 좋아요. 지금은 만나지도 못하니까 멀어졌어요. 사교가 심하게 낮아요.
40. 의견이 잘 안 맞아요. 싸우지는 않는데 아빠는 제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공부 관심 없거든요. 요리사 되는 거 반대하고요. 의견이 많이 달라요.
42. 친하긴 한데 둘이 뭔가 안 맞으면 엄청 싸워요 피아노 안 간다고 하면요.

#### □ 기타

27.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 다. 가출경험

가출 경험에 대해서는 43명 중 38명의 청소년은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5명만이 가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출경험이 있는 38명의 청소년 중 13명의 청소년이 가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

답하였다. “가출을 했는데, 돈도 없고, 먹고 잘 데도 없고.”, “가출해서 그냥 밖에서 계단에서 쪼그려 잤어요.”, “가출했을 때 대책이 안 섰어요.” 와 같은 응답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인터넷성매매에 쉽게 노출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할 게 없었어요. 가출해서. 조건사기 하고나서 성격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매일 싸우고.</li> <li>5. 딱히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없는데. 들어갈 집이 없었어요. 잘 곳도 없고 돈에 쪼달리고 있고.</li> <li>6. 가출을 했는데, 돈도 없고, 먹고 잘 데도 없고.</li> <li>7. 가출을 했는데 잘 데도 없고, 밥도 못 먹고.</li> <li>8. 가출하고, 잘 데가 없었어요. 친구들과이랑 같이 있는데. 컴퓨터로 오게 되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항상 같이 지내다가. 이런 것 까지 의지하고 지냈던 친구들인데.. 떨어지게 될 바에야 차라리 같이 나와서 있자 그런 생각 많이 해요.</li> <li>11. 가출해서 잘 데 없는 거랑 먹을 것 없는 거랑 씻을 데 없는거요.</li> <li>18. 가출해서 그냥 밖에서 계단에서 쪼그려 잤어요. 겨울예요. 친구 셋이랑 같아요. 처음에는 집에서 아빠가 때려서 가출했는데 그게 버릇이 됐어요. 처음 가출은 언제 했어? 중학교 1학년 때요. 또 다른 힘든 건 없었어? 노래방 도우미도 했어요. 3달 정도. 술 먹고 사람들 비위 맞춰주고.</li> <li>21. 돈도 없고 잠 잘 데도 없고 마땅히 휴식 취할 공간도 없고요.</li> <li>23. 자는 게 문제였고, 돈도 항상 문제였고 제일 큰 거는 돈이었고, 잠자는 거요. 알바를 하면 돈을 벌잖아</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 알바를 해서 방을 잡고 싶었는데 방을 잡으려면 알바를 하면서 잘 데가 필요하잖아요. 계속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생활하면서 자기는 생각이 이만큼 차 있었는데 막상 몸으로 못하는 거예요. 조건 안하면 언니들이 집에 없었을 땐 번개를 하고 다녔으니까 제가 하루하루를 자려면 맨날 맨날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 알 게 되고 조건 하게 됐어요.</li> <li>37. 조건만남 했을 때 가출 했을 때 대책이 안 섰어요.</li> <li>38. 돈 때문예요. 돈이랑 잘 데 없고 일해서 힘드니까요. 주유소 알바요. 잘 때는 있었어요. 사촌 언니랑요. 그런데 알바하면서 몸은 힘들잖아요. 근데 가치가 없잖아요. 돈도 조금 주고요. 하루에 12시간 16시간 해도 4만5천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30분이나 1시간하면 10만원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몸을 버려서 그 만큼 가치를 얻은 거잖아요. 조건만남은 안 좋은데요. 내 몸을 다 버리잖아요. 근데 좋은 점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거 급할 때는요. 그래도 내 몸이 망가진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네.</li> <li>41. 잘 때도 없고 막 그럴 때요. 친구네서도 자고 밖에서 날 밤도 까고요. 가출은 왜 했어요? 친구들이랑</li> </ol> |
|--|---|

높고 싶어요. 43. 밖에서 자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그런 거랑 밥 못 먹는 거 괜찮은데 같이 애들 붙는 건 되게 싫었거든요.
-----------------------------------	---

#### 라. 학교 부적응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에는 43명 중 26명의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좋았어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하고 머리 뜯고 싸운 적도 있어요, 화장했다고.”, “안 좋았죠. 맨날 복장가지고 뭐라고 하고, 짜증나요. 친구들하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와 같이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있었고, “학교를 거의 안 나왔어요. 가출하고 나서는요.”, “학교 가면 그냥 자요. 수업 듣기 싫어요. 학교 친구는 없어요. 제가 애들이랑 어울리는 거 잘 못 해서요.” 와 같이 사이가 나빠지는 않지만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 17명의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했다고 응답하였다. “재밌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몰려다니잖아요. 그런 것 재밌어요. 선생님도 좋았는데 앞에서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무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도 안 깨웠으니까. 교과서 안 가지고 가면 다른 애들은 때리는데 나는 안 때려요. 길거리나 복도에서 만나면 조언 같은 것 해주고 그래요. 불쌍해 보였나 봐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장난도 치고 잘 지냈어요.”, “적응 잘 했어요. 근데 집 때문에 나왔어요.” 와 같이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우관계가 원만한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학교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에 실패하였고, 특히 학업에의 무관심과 학교에서의 품행문제로 인한 교사와의 갈등 및 부정적 관계형성이 학교생활 중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b>□ 부정적 측면</b> 1. 좋았어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하	고 머리 뜯고 싸운 적도 있어요. 화장했다고. 3. 친구들이랑은 다 좋은데, 선생님들
---	---

이랑은 많이 싸웠어요. 화장한 것, 치마 짧은 것, 담배 이런 것 때문  
 예요. 전 원래 선생님들이 너무 싫  
 어요. 2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화  
 장하고 다닌다고 저한테 똥걸레라  
 고 했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선생  
 님들한테는 저도 잘 해주는데.

5. 중학교생활이요? 그냥 편하게는 살  
 았어요. 학교가면 재미는 있었어요.  
 2학년까지는 잘 다니고, 3학년 때  
 어떻게 되면서 잘 못나갔죠. 담배  
 피다가 걸리고, 친구들도 담배를 피  
 는데, 안 피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런 애들이 안 좋게 보고 하면서 싸  
 웠는데, 어떤 애가 좀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있었  
 는데, 되게 안 좋은 선생님이었어  
 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학교도  
 들락달락 거리고, 막 빠지고, 이런  
 거랑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이랑, 다  
 합쳐서 이렇게 된거죠.
6. 그것도 안 좋았어요. 제가 성격이  
 원래 그렇죠 뭐.
7. 결석 많이 하고, 학교 가는데 싫었  
 어요. 그리고 공부 안하고, 잠만 자  
 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9. 학교에서 왕따 당한 것.
10. 친구가 없었어요. 제가 친구를 안  
 사귀려고 안 사귀 게 아니고요, 중  
 1때 좀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렸어  
 요. 중1 끝나갈 때 개네랑 안 어울  
 리겠다고 부모님께 약속을 드리고,  
 진짜로 안 다녔거든요. 다음 학년  
 올라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  
 귀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학교 끝  
 나고 집에 바로 오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잘 못하게 하고, 학교, 집,  
 학교, 집 이렇게 학원도 안 보내주  
 고 그렇게 한 거예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같이 논 얘기들, 학원 다

니면서 남자애기 이런 것들 나오  
 는데, 저는 길 수가 없잖아요. 계속  
 친구들 사이에서 걸도는 느낌을 받  
 았어요. 애들하고 있을 때 말도 잘  
 안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서도  
 반복이 될까봐 진학을 안했던 말이  
 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학교 친구  
 들 이렇게 없어요.

11. 안 좋았죠. 맨날 복장가지고 뭐라  
 고 하고. 짜증나요. 친구들하고 그  
 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12. 중학교 때는 진짜 다니기 싫었  
 는데 의무교육이니깐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진짜 다니  
 기 싫었는데, 지금 남자친구 만나  
 서 남자친구 때문에 변해서 조금씩  
 다닐까 했는데. 지금 남자친구 사  
 킨게 지들이 도와준 것도 아니면서  
 그것가지고 또 놀리는 거예요. 아  
 예 학교 자체가 나가기 싫은 거예  
 요. 그래서 남친한테 나 진짜 학교  
 다니기 싫고 집도 들어가기 싫다  
 고. 그래서 가출했어요. 선생님하  
 고도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어요. 중  
 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좋았어요.
13. 재미없어요. 애들이랑 처음에는  
 못 지내서 학교 들어간지 얼마 안  
 돼서 자퇴해야 되나, 전학가야 되  
 나 그랬는데, 애들이랑 잘 지냈다  
 가 또 잘 못 지냈다가 그러는데.  
 제가 인문계 다니거든요. 근데 인  
 문계는 복학생이 드물잖아요. 복학  
 생은 왜 다 공부를 못 할까. 자기  
 들은 공부 잘 한다고 무시하는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랑은 안 친해요. 담임선생님이랑도  
 별로 안 좋아요. 맨날 지각하고, 치  
 마 걸리고. 지각을 많이 했어요. 지  
 각 한 20번하고, 결석 6, 7번 하  
 고, 조퇴 3번인가 4번했어요. 그

- 정도면 성적 좋은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안 나가요. 학교 다니고 싶어 했는데 딱 1주일 다니고 다니기 싫더라고요. 인문계라 그런지 규정이 너무 세요. 답답해요. 맨날 저만 걸려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학을 한거고.
14. 싫었어요. 친구들이랑 싸우고 그랬어요. 말썹피우고 말 안 듣고.
16. 가출을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있고 안 다닐 때도 있었어요. 걸레 소릴 들을 때도 있어요. 그거 때문에 학교 잘 안다니다가 진짜 일주일만 버티고 졸업했어요.
19. 제가 운동을 해서 체육고를 갔거든요 인천체육고요. 고등학교 시설에도 매점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빙 둘러서 가야 돼요. 걸어서 10분은 돌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1학년은 엘리베이터를 절대 탈 수 없는데 교실이 11층이에요. 핸드폰은 항상 켜놔야 돼요. 선배들이 숙소가 1층인데, 숙소 가서 뭐 가져와라 그러면 막 뛰어가서 9층까지 갔다가, 매점 가서 뭐 사오라고하면 또 1층까지 막 내려가서 사오고. 학교로만 보면 학교는 너무 좋았고, 운동하는 애들이니까 아침도 나오고, 후식도 있고. 선생님과 친구들과는 좋았어요. 근데 왜 자퇴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싫었어요. “1학년 집합”, 그 소리가 제일 싫었어요. 선배한테 야구배트로 맞고, 싸대기 맞고 밟히고 선후배사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20. 그냥 그러저럭 괜찮은데, 제가 저번에 애들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싸우기 싫었는데 괜히 부반장이 때렸어요.
21. 별로 즐겁지는 않았어요. 아빠가 학교에도 오니까요. 교무실에 계속 불러 가니까요 안 좋았죠.
22. 그냥 친구들하고는 좋았는데 6명하고는 좋았는데 개네들 빼고는 서로 싫어하고 싸웠죠. 선생님은 많이 신경 써주고 잘 해 줬어요.
25.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학교에 있는 애들도 친하긴 한데 밖에 있는 애들이 더 친해요.
28. 제가 잘 못하겠어요.
35. 학교생활은 그냥 자는데요. 학교 가면 그냥 자요. 수업 듣기 싫어요. 학교 친구는 없어요. 제가 애들이랑 어울리는 거 잘 못 해서요.
36. 중 1때는 안 좋았어요. 학교 친구랑 만나는 것도 적응 못 하고 선생님들도 절 못 믿어 주고 때리고 안 했는데 계속 했다고 때리고 염색하고 치마 줄인거요.
37. 학교를 거의 안 나왔어요. 가출하고 나서는요.
38. 전학가기 전에는 잘 지냈죠. 전학가서부터는 적응을 못 했죠.
39. 복학해서 별로요. 그냥 조용해요. 아무도 말 안 걸어요. 말 걸면 ‘네’ 그리고 어렵게 느껴요.
40. 학교 가서 잠자고 학교 늦게 가고요. 친구들은 잘 안 만나요. 친구들 만나봤자 좋은 일도 없고 몰려다니면 안 좋은 일 생길까봐 혼자 다녀요. 그럼 선생님들 하고는 잘 지내요? 네
41. 학교 다닐 때도 잘 안 나왔어요. 지각도 하고요.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 잘 안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질이 안 좋았어요. 물들었어요. 4달 정도 가출 했어요. 2달 정도 남자친구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42. 학교 다니는 거요. 초등학교 1학

년 때부터 왕따였어요. 친한 애들이 있어도 남자애들한테 얘기 한건데 싸가지 없다고 괜히 여자애들이 말도 안 걸어요. 요새 별로인데요. 저희 학교가 양아치가 많아요. 째질이랑 놀았어요. 조용하게 살려고. 그러니깐 애들이 절 깔보는 거예요. 말도 안 걸어요. 지금은 왕따라고 봐야 하나. 1년 쉬고 와서 애들이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조용했거든요. 성격이 여기 와서 고쳐진 건데 만약에 막상 나가도 친하지도 않는데 말 걸면 그렇잖아요. 근데 학교 가기가 싫어요. 친구도 없어요.

#### □ 긍정적 측면

2. 재밌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몰려다니잖아요. 그런 것 재밌어요. 선생님도 좋았는데 앞에서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무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도 안 깨웠으니까. 교과서 안 가지고 가면 다른 애들은 때리는데 나는 안 때려요. 길거리나 복도에서 만나면 조연 같은 것 해주고 그래요. 불쌍해 보였나 봐요.
4. 공부 같은 거요? 처음에 가출 한 것은 친구네서 허락 받고 갔거든요. 부모님이 없어서, 버디버디 채팅을 했는데 그때 버디버디 처음 해봤거든요. 남자애 2명이 목동역으로 오라고 했다고 해서 나왔어요. 친구랑. 아무 것도 몰랐을 때 술을 먹었거든요. 먹고, 하지는 않았어요. 방문을 열고 갔는데 친구가 아는 오빠랑 막 하려고 했는데. 제가 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혼자 나오래요. 그 사람이 노래방에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안하고, 다음날 학교가기 전에 자기를 보러 오래요.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지하철 처음 타봐서 길 헤매고, 도착하니깐 9시였어요. 학교로 돌아가는데 고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눈치 까고 전화 안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이 당연히 혼내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늦었다고 변명을 했는데, 집에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출을 했어요.

8. 괜찮았어요.
15. 그냥 다닐 만해요. 공부보다 졸업 하려고요.
17. 친구랑은 좋아요.
18. 학교생활 아무 문제없었어요.
23. 적응 잘 했어요. 근데 집 때문에 나왔어요.
24. 학교는 문제없었고 제가 자퇴한 거죠.
26. 학교생활은 그냥 그랬어요. 공부 하는 것도 그냥 그래요.
27. 문제는 없었어요. 친구들도 시골 애들이라 순했어요.
29. 가출 했는데 고모 딸이 제 친구 번호를 알거든요. 제가 남자 친구의 친구 집에 있었잖아요. 제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알려줬어요. 제가 남자친구의 친구랑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더러운 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랑 계속 만날 거냐고요. 너 안 나오면 집 두드린다 절 때릴 걸 어떻게 알았냐면 싸이월드에서 그 친구 때리기 전에 절 밟을 거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보니깐 남자 친구랑 또 다른 친구랑 온 거

<p>예요. 그래서 고모한테 저 없다고 하라고 했어요.</p> <p>30.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장난도 치고 잘 지냈어요.</p> <p>31. 좋았어요. 학교는 귀찮아서 그만 뒀어요. 친구들이랑 좋고, 선생님하고도 다투다가 다시 들어가구요.</p> <p>32. 친구랑 한 번 싸웠어요.</p>	<p>33. 좋아요. 친구들이랑 다 친하고 관계도 원만하고 공부도 그렇고요.</p> <p>34. 사고도 안치고 잘 지냈어요.</p> <p>43. 재미있었는데요. 좋았어요. 근데 남자친구랑 놀러 다니다가 학교 일수 다 빼먹어 가지고 퇴학당하려고 했는데 담임선생님한테 말씀 드려서 자퇴서 내달라고 했어요.</p>
---	--

### 마. 비행경험

청소년들의 비행경험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 성매매 이외의 비행으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3명 중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2번, 특수절도 2번이요.”, “폭행으로요. 애들 때려서요.”, “성매매 알선으로.” 등의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성매매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경험은 없다고 한 청소년은 43명 중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의 응답으로는 “전 맞아서 간적은 있어요, 후배한테. 그리고 이거(조건만남) 말고는 거의 다 피해자로 갔었어요.”, “제가 피해자로 많이 받아 봤어요. 폭력으로요. 아는 동네 언니들이 절 때려 서요.” 와 같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응답자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이외의 다른 다양한 비행사건들과 연루되어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폭력이나 폭행과 연관된 사건들이 많았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하여 애인 대행이나 조건만남으로 조사받는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다수 있었다.

<p><b>□ 성매매 이외의 조사경험</b></p> <p>1. 네. 성매매 알선이랑, 절도.</p> <p>2. 네. 폭력 2번, 특수절도 2번이요.</p> <p>3. 성매매 알선으로.</p>	<p>4. 네. 절도랑 폭행 때문에.</p> <p>5. 조건으로는 없는데, 같이 살려고 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개가 좀 그런 애였어요. 바다가야기에서 일 한 애였어요. 개 돈을 들고 췌 생각을 하</p>
--	---



고 있었어요. 근데 개가 제 돈을 들고 쩐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고했는데 그거 안 해주더라고요.

7. 2008년에 버디 경찰단속에 걸려서 조사 받았고, 이번에는 조건하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때리고 강제로 시키고 그것 때문에 잤었어요.
8. 성매매는 아니고, 특수절도, 금품절도.
11. 이번에도 그거 성매매 때문에 조사 받았고요, 제가 개네를 신고했어요. 그리고 본드 때문에 조사 받고. 술 먹다가요 밖에서 술 마시다가 중3때 경찰한테 걸렸어요. 경찰서 가서 아빠 불러서 나왔죠.
14. 택시비 안내서 가봤어요.
16. 집단폭행 2번.
17. 성매매하고 오토바이 작물 무면허하고 폭행이요.
19. 2번이요. 경찰이 손님처럼 쪽지하면서 만나자고. 그리고 폭행. 제가 때렸어요. 17살 때요.
22. 네. 폭행도 있었고요. 차 털이요. 7명에서 2명 때렸어요. 차 털이는 어떻게?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새벽에 심심한 거예요. 차하나 있길래 그 사람이 바로 나왔어요. 남자 애들이 유리창 벽돌로 깨려다가 제가 장난으로 문을 열었는데 열리는 거예요. 지갑 같은 거 털고 내비게이션 떼고 핸드폰이랑. 그거해서 어떻게 했어? 다 썼죠 결정적으로 걸린 게 지갑에 현금이 대개 많았어요. 돈 나누고 10만원짜리 나눠야 되잖아요. 편의점에서 그거 바꾼다고 새벽에 10만원짜리를 만원짜리로 바꿨죠. 그 아저씨가 신고 할 줄 몰랐고 쓴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그래도 애들 때려서 형사 입건 걸린 상태였는데 그거까지 해서 얼굴 수배

털리고 그래가지고요.

25. 조건만남으로는 없어요. 폭행으로요. 애들 때려서요.
32. 가출 때문에. 남대전지구대 거기서 두 번 잡혔었고 하나는 가출했을 때 엄마가 불안하니깐 신고 했었고. 두 번째는 가출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갈 데가 없었을 때니까 남자친구랑 여관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관 주인이 신고 했어요.
34. 필이 안 좋은 거예요. 저와 같이 있던 애가 걸렸어요. 그 앤 쉼터로 갔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현금지급기에서 돈 빼온다고 해서 기다리래요. 골목에서 기다리는데 검은 옷 입는 남자가 한두 명씩 나오는 거예요 큰 일 났다 어쩐지 필이 안 좋다. 성매매 말고는 조사 받은 적 있어? 알선한 거 때문에 그건 집행유예로 끝났는데 작년도 해보고 이번에도 해보고요. 어떤 여자애가 인터넷에서 키스알바를 한테요. 제가 남자인 척하고 오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친구라고 개한테 설득시키고 성매매 시켰어요. 얼마 받았어? 몇 대 몇으로 나뉘어? 거의 반반씩 나뉘었어요. 몇 명이나 시켰어요? 3명이요. 얼마 받았어? 그때그때 써서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당 몇 백씩 받았어요.
36. 가출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매매 때문이에요.
37. 네. 특수 절도도 있고요. 친구가 반지를 훔쳤는데 공범 돼서요. 성남이었나. 어느 아는 오빠 집에 갔는데 가출했을 때였어요. 친구가 반지를 훔쳤어요. 집에 가는 도중에 반지 있다고 반지를 팔아 달래요. 금

은방에 갔는데 형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친구거라고 그렇게 의심 받다가 결국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렇게 됐어요. 그건 어떻게 보호 관찰 잘 받았어? 지금 수탁기관에 있는데 여기 교육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폭력이요. 제가 때린 거예요. 어떤 동생이요. 왜? 거짓말을 해야 했다고 해야 하나. 그때는 친구들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기분 나빴는데 개까지 그러니까 화나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성매매 2번이요.

39. 폭력이요. 왜? 때렸어요. 그냥 지나가는 남자요. 갑자기 짜증나서요. 뭐 때문에? 그냥 그래요.
40. 지난 9월쯤에 강도상해. 버디버디로 여자 한명을 그냥 불러내서 친구들끼리 때린 다음에 핸드폰 뺏었어요. 그냥 모르는 애인데? 네. 왜 그랬어? 그냥 핫김이에요. 뭐가 그렇게 화났어? 모르겠어요. 그냥. 그 친구는 어떻게 나왔지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같이 놀자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때렸어? 많이 다치지 않았어? 전치 2주밖에 안 나왔어요.
43. 네. 사기 친 거랑 절도요. 무슨 사기? 중고나라에서 물건 팔고나서 돈 받고 물건 안줬어요. 지금 재판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았고요.

#### □ 성매매로 인한 조사경험

10. 이번에 조건 걸린 거 말고는 없어요.
13. 이것 때문에 받은 적은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받은 적은 없어요. 1년 전예요. 제가 걸린게 아니고요, 제 친구가 구했는데 그게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 경찰이 친구도 있나

고, 그 친구도 조건 하냐고. 제 친구는 진짜 조건하는 사람인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착하고 그래서 다 얘기 한 거예요. 친구 예쁘냐, 얼마냐 그런 얘기 했나봐요. 그래서 나 경찰이라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PC방에 있는데 오더니 이게 '니 아이디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랑 싸운 애 번호를 조건하는 사람한테 팔았던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경찰이 왔나 했는데 친구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15. 애인 대행하다가요 한 사람 오래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한 달 정도 만나다가 한동안 연락 뜸하다가 또 이렇게 또 한 세 달 정도 만나다가 스폰서는 아니었어요. 개가 빨리 사정해요. 편하잖아요. 개만 쪽 만난 거예요. 사장님이예요. 그렇게 만나다가 개 업소 하는 게 있거든요. 햄플업소라고 손으로 남자 성기를 해주는 거예요. 손이냐 입으로. 그런 것들 그런 카페로 운영 하나 봐요. 사장님이야? 그런 사장님도 되고 옷가게 신발가게 사장도 있어요. 애가 돈이 좀 있어요. 나중에 한참 만나다가 언니가 하나 빠졌는데 급하데요.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어차피 애인대행 그런 것도 하고 별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두 달 정도 했어요. 종류가 두 개 인데요. 원래는 햄플업소인데요, 손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돈 조금 더 내면 성관계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을 텐데 동대문에 극동 오피스텔 뭐 있어요. 오피스텔 방 4~5개 잡아놓고 언니들이 한명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예약을 해서 전화로 사장님이 예약 해가지고 들

어오는 거예요. 햄플은 7만원이고 성관계는 12만원이요. 7만원 받으면 제가 4만원 갖고 12만원 받으면 7만원 갖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두 달 정도 하다가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그 업소가 걸린 거예요 단속이 뒀는데 손님인줄 알고 받아줬다가 걸린 거예요 경찰 조사 받다가. 근데 저는 미성년자잖아요 개는 제가 미성년자인거 알았거든요. 처음부터 만날 때 알았는데 자기 죄 이렇게 없애려고 제가 민증 보여줬다 미성년자인거 몰랐다 꽤 씹해 가지고요 저한테 다 떠넘기려고 해서 그때요 업소 왜 일하게 됐는지 말하다가 사장 어떻게 만났냐 예전에 애인대행해서 만났다 그렇게 해서 싹 다 조사 받았어요.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구속 됐어요. 지금. 조사하는데 좀 2달인가 걸렸어요. 조사 한참 받다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조사 끝날 쯤에 경찰한테 이런데 이런 데가 있는데 갔다 와야 될 거 같다고 해서 왔어요.

- 21. 조건만남을 하려고 했는데요, 조건만남 할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제가 어리다고 미성년자라고 조건만남 하려고 한다고 데리고 가라고 경찰한테 신고 했어요. 경찰 아저씨가 왔어요.
- 23. 있어요. 조건만남은 한 번 있고요 다방 갔던 일 한번요 두 번이요.
- 26. 네 최근에 모텔에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개가 거짓말 채팅 프로인거예요. 키스도 안하고 몸도 안 만지고 하기로 해서 나갔는데 강제로 했어요.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했는데 쌍방이래요. 너도 성매매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무죄래요.

27. 네. 여관에서 있었던 일로 갔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pc방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pc방에 달려갔어요. 남자 친구한테 얘기 했죠. 남자 친구랑 경찰이 함께 그 남자한테 가서 경찰이 잡았어요. 경찰이랑 남자친구가 도와줬어요.

- 31. 네. 조건만남 사람 구하고 만나러 갔는데 형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 38. 조사만 받아 봤어요. 성매매 때문이에요. 다른건 없어요.
- 42. 네. 조건 할 때요. 한 명하고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했는데 두명이 다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강간당했다고 경찰한테 말해서 그 사람들 벌 받게 하고 저도 여기 왔어요.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했어? 엄마가 집요해요. 제가 가출하면 어떤 지 다 알아요.

**□ 피해자입장에서의 조사경험**

- 20. 전 맞아서 간직은 있어요. 후배한테. 그리고 이거(조건만남) 말고는 거의 다 피해자로 갔었어요.
- 35. 제가 피해자로 많이 받아 봤어요. 폭력으로도요. 아는 동네 언니들이 절 때려 서요. 언제요? 중학교 2, 3학년이요. 그 외는 없었어요.

**□ 조사경험 없음**

- 9. 아니요 없어요.
- 12. 없어요.
- 18. 아니요.
- 24. 없어요.
- 28. 없어요.
- 29. 없어요.
- 30.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엔 영등포에

서 신림역에서 형사한테 잡혔어요. 경찰서 간적은 없고요, 제가 미성년자니까 그냥 풀어주셨어요. 미성년	자니깐 어쩔 수 없다고. 조사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41. 없어요.
--	--

바. 성폭행 경험

성폭행 경험에 대해 43명 중 15명의 청소년이 성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 먹고 따 먹혔죠. 선배 친구 아는 선배요.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몸을 하지를 못하겠고 방에 들어갔는데 옷 벗기고 하던데요.” 처럼 주위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반면, “성매매 때문에 성폭행 당한 적도 있었어요.”, “돈을 벌려고 또 나갔어요. 차에 탔는데 저를 갑자기 막 때려요. 일단 남자랑 둘이 차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으면서 했어요.” 처럼 성매매를 위해 만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응답청소년들의 성폭행 경험은 주로 지인(남자친구, 선배 등)에게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집단성폭행을 당한 여자청소년도 있었으며, 성매매 중 당한 성폭행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b>□ 남자친구 및 주위사람</b></p> <p>11. 술 먹고 따 먹혔죠. 선배 친구 아는 선배요.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몸을 하지를 못하겠고 방에 들어갔는데 옷 벗기고 하던데요.</p> <p>12. 중1때 학교 선배였어요. 제가 먼저 좋아해서 고백해서 사귀게 됐는데 어느 날 선배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혼자 있는 줄 몰랐어요. 놀러가고 나서 놀다보니깐 혼자 있는걸 알았어요. 같이 컴퓨터하다 피곤해서 같이 누워있었는데 오빠가 억지로 했어요.</p> <p>14. 성폭행. 한 5명인가. 동갑이었어</p>	<p>요. 화장실에서. 한명씩 돌아가면서. 이거는 그냥 용서해줬어요. 엄마들이 자려고 하는데 찾아와서 막 울면서 빌어요. 학교에서 혼나고 전학가고 그냥 끝났어요.</p> <p>25. 한번은요 강제로 몰라요 모르는 오빠인데 선배인데 저만 남겨놓고 그냥 나가래요 강제로 했어요.</p> <p>28. 16살 겨울방학정도에 당했어요. 제 친구 남자친구한테 강제로 당했어요. 그 후로 한번 더 당했어요. 제 남자친구 친구예요. 관계가 조금 이상한데 남자 친구 후배한테도 당한 적 있고 동네 오빠한테도 당했어요. 당한 오빠네 집에서 술을</p>
---	--

먹다 보니까 한 명 오빠가 도중에 집에 갔다 온대요. 저도 무서워서 간다고 했는데 저 붙잡는 거예요. 그 오빠는 가고 그래서 당했어요.

35. 이번년도 7월에요 한번 강간당한 적은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한테요. 처음에 술을 먹재요. 그 오빠가 저한테 손끝 하나 안 건 드리거든요. 믿고 따라갔어요. 술에 약타고 일어나니깐 저희 집이었어요.
36.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친 집이었어요. 갑이었어요. 동갑이요. 남친 집에 있었는데 누웠어요. 개랑 수다를 떨다가 침대가 있었는데 옆에 누웠어요. 기분이 조용하니깐 할머니도 엄마도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그런 거 몰랐어요. 개랑 때리고 장난치다가 했는데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남자가 손을 잡는 거예요 가슴 만지고요.
40. 남자친구는 아니었는데 동네 오빠요.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집에 놀러갔는데요. 그 오빠가 거의 반강제로요. 처음이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반강제로 했어요.

#### □ 성매매로 인한 성폭행

2. 15살 겨울쯤이에요. 돈을 벌려고 또 나갔어요. 제가 그 때 겁이 없었어요. 차에 탔는데 저를 갑자기 막 때려요. 일단 남자랑 둘이 차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 핸드폰은 차에 타자마자 뒤로 던져버리고. 아무 것도 못하는 데 욕을 하면서 계속 때려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뭘 시켜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양이 산골 같은데 있잖아요. 거길 올라가더니 저보고, 제가 차 안에서 옷을 다 벗었었거

든요. “여기서 버려줄까 우리 집에 갈래” 라고 물었어요. 근데 버려달라고 하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갔다가 맞으면서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원래 변태취향이라고. 여자가 무서워해야 자기가 흥분이 된대요. 그래서 때린 거라고 미안하대요. 개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걸요 이런 얘기하면. 그 이후로 저는 죽는다는 말을 쉽게 안해요. 저는 그 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조금만 힘들면 나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니까 죽기가 싫어요. 어디다 판다고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신고는 안했어요.

26. 최근에 모텔에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는 거예요. 개가 거짓말 프로 채팅 프로인거예요. 키스도 안하고 몸도 안 만지고 하기로 해서 나갔는데 강제로 했어요.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했는데 쌍방이래요. 너도 성매매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무죄래요.
27. 성매매 때문에 성폭행 당한 적도 있었어요. 조건만남 하려고 서대전역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려고 했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끌고 가서 그 안에 허름한 여관이 있었는데 장기 기간 있는 여관인데 위협당하고 등 뒤에 칼 대고 사람들 안 보이게 당했어요. 당하긴 당했는데 안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사달라고 해서 그 남자가 밖에 나간 사이에 신고 했어요. 어떻게든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법원에 갔었어요.

<p>그래서 이젠 남자를 못 믿어요.</p> <p>37. 이걸로 만나기로 해서 만났어요. 아침에 돌아 다녔는데 그때가 주말이었나봐요. 방이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앞에 모텔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도망가는 줄 알고 때리고 어떤 화장실에서 저랑 친구랑 때리고 강간하려고 하고 근데 이분은 신고해서 지금은 구치소에 있어요. 제가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어서 하기 쉬웠나 봐요. 저 먼저하고 친구 벗으라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친구가 바지 벗으면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는 줄 알고 도망갔어요. 옷 벗고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요.</p> <p><b>□ 기타</b></p> <p>6. 초등학교 6학년 때. 길가다가요 막 예쁘다면서.. 그 말에 또 혹 해가지고.. 개가 자꾸 우리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색즉시공이라는 비디오를 보러 가세요. 나는 그거 뭔지도 모르고 갔</p>	<p>는데 그렇게 된거죠.</p> <p>19. 그리고 그런 적있어요. 끝나고 왔는데 번개를 잡은 거예요. 술을 마시고 싶어서. 그 때 처음에 그 언니랑 있을 때.. 그 언니랑 친구는 잘 안 마시려고 하고 다 나한테 마셔달라고 하고.. 안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짱으로. 제가 다 마시고. 그 때 처음으로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 때 언니랑 친구는 자기네끼리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었고, 나는 헤롱헤롱한 상태에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거예요. 소파에 누웠는데. 누가 옷 벗기려고 하는 것까지 기억나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떴는데 버스정류장인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아저씨가 재워줄까?’ 그러면서 모텔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나한테 했어요. 먹을거라도 사줄게 하고 안 돌아왔어요.</p> <p>24. 초등학교 5학년 때요. 강간당했는데요.</p>
--	--

## 사. 성경험

응답한 청소년 43명 중 33명의 청소년이 인터넷성매매 전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남자친구랑요.”, “네. 술 먹고 엄청 취해서 길 가다가 만난 남자하고요.” 등과 같이 응답하였고, 43명 중 10명만이 인터넷성매매 전 성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성매매로 연결되기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다. 이는 어렸을 때의 성경험이 인터넷성매매를 촉진하는 계기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인터넷성매매 전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33명의 첫 성관계 시기는 16세와 14세가 각각 9명, 15세가 6명, 17세가 4명, 13세 3명, 12세 2명, 18세가

1명으로 나타나, 첫 성경험 연령층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성매매가 첫 성경험의 장으로 연결되는 경우(10명)도 다수 있었다.

<p><b>□ 있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있죠. 16살 8월</li> <li>2. 음. 남자친구랑요. 중1때요.</li> <li>3. 있었어요. 두 번인가 세 번. 15살 여름에요.</li> <li>4. 네. 중3, 5월에요. 선배랑.</li> <li>5. 네. 16살에.</li> <li>6. 네. 초등학교 6학년 때.</li> <li>7. 네. 15살 때 남자친구랑</li> <li>10. 네. 작년 10월(17살).</li> <li>11. 처음 할때요? 중2요.</li> <li>12. 중1때 선배한테 당한 거 밖에 없어요.</li> <li>13. 네. 17살 때요.</li> <li>14.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짬. 중1 올라갈 때.</li> <li>15. 네. 15살이요.</li> <li>16. 한 번 있어요. 중3 중반이요.</li> <li>17. 한 번 있었어요. 14살 때요.</li> <li>20. 네 남자친구랑.</li> <li>22. 네. 중3 때요.</li> <li>24. 네. 초등학교 5학년 때요.</li> <li>25. 네. 15살이요.</li> <li>26. 네. 중3 여름방학.</li> <li>27. 네. 17살.</li> <li>28. 네. 16살.</li> <li>29. 네. 14살.</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 남자친구랑. 처음으로. 그 때 17살</li> <li>31. 네. 중학교 1학년이요. 14살.</li> <li>34. 네. 12살이요.</li> <li>35. 네 중 1때요. 인터넷 채팅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번개인지 몰랐어요. 그때 모르는 남자랑 했어요.</li> <li>37. 네. 중3 때요.</li> <li>38.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요.</li> <li>39. 네. 중학교 1학년이요.</li> <li>40. 네 남자친구랑요. 중1 때요.</li> <li>41. 네. 중3때 16살이예요.</li> <li>42. 네. 술 먹고 엄청 취해서 길 가다가 만난 남자하고요. 14살이요.</li> </ol> <p><b>□ 없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아니요 없었어요.</li> <li>9. 아니요.</li> <li>18. 아니요.</li> <li>19. 아니요.</li> <li>21. 아니요.</li> <li>23. 아니요.</li> <li>32. 없었어요.</li> <li>33. 없어요.</li> <li>36. 아니요.</li> <li>43. 아니요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울었어요.</li> </ol>
---	--

아. 경제적 빈곤

인터넷성매매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의 취약점으로 경제적 빈곤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힘들었던 거는 돈이 없었던 것.”, “돈 없는 거요. 돈이 없으니깐 답답하고 나는 이 물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깐 그냥 지나쳐야

할 때요.” 와 같이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은 어린 청소년들이 인터넷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2. 힘들었던 거는 돈이 없었던 것. 그리고 저는 누가 아르바이트하면서 돈 버는 것도 되게 부러웠는데,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안됐던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나이어려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결국 생각해 낸 게 이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일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만 남 하게 된건데, 친구들이랑 놀려고 한 것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계속 손 벌리는 것도 미안하고, 저희 집 자식이 저까지 3명이거든요. 저만 빼고 다 공부를 해요. 다 돈 안 받아 가는데, 저만 받아 가면 좀 그렇잖아요. 매일 밖으로 돌고, 엄마 얼굴도 잘 안 보는데, 미안해서 돈을 벌자고 생각했는데 아르바이트는 나이가 어려서 안되고,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p> <p>3.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누구 만나러 갈 때도 창피했어요.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 2~3만원인데, 처음에는 안 창피했어요. 그 돈에 맞게 살았으니까요. 엄마한테 돈 많이 받기 미안했고, 옷 사고 싶은 거, 비싼거 못 살 때 좀 그랬어요.</p> <p>10. 돈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p> <p>15. 아르바이트를요 제가 한 가지를</p>	<p>오래 못하는데 알바를 했다가 안했다가 하면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잖아요. 제가 학교를 다시 다니려고 혼자 힘으로 통장에 돈 모으려고 했었거든요. 제 혼자 힘으로 하려고요. 교복 사려고. 그러니까 불규칙하니까 돈을 조금씩 모아야 하니까.</p> <p>16. 사고 싶은 건 많고 쓰고 싶은 건 많죠.</p> <p>28. 돈이 없으니깐 답답했던 거.</p> <p>30. 우선은 돈이 없으니깐 돈벌이를 찾았어요. 제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깐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p> <p>31. 돈 없는 거요. 돈이 없어서 생활하기 힘들었어? 그런 건 아닌데 돈이 없으니깐 답답하고 나는 이 물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깐 그냥 지나쳐야 할 때요.</p> <p>40.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이 못 하잖아요.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용돈은 부족하고 아르바이트는 못하고요. 고기집에서 서빙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거보다 조건만 남하면 돈 금방 벌 수 있잖아요. 서빙하면 몇 시간해도 2~3만원밖에 벌 수 없잖아요.</p>
---	---

#### 자. 정서적 불안전성

인터넷성매매 청소년들의 취약점으로 심리정서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우울중이요” 와 같은 응답에서와 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감, 두려움 등의 심리적인 불안정성으로 정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10. 친구문제랑, 남자친구 문제도 있고요. 공부스트레스도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검정고시 때문에 집에서 압박을 하니까. 언니들도 둘 다 검정고시를 봤는데요. 공부를 되게 잘해서 놀면서도 다 붙어요. 근데 전 안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도 그래야 된다면 압박을 주는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p>	<p>17. 제가 걸레 같다는 느낌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25. 조금은 두려웠어요. 처음 조건 한다는게 두려웠어요. 떨렸죠. 33. 진짜 아빠뻘 되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었어요. 35. 언니들이 이유 없이 때렸어요. 몇 명은 어릴 때부터 아는 언니고 다른 언니는 모르구요. 36. 우울증이에요.</p>
--	---

#### 차. 충족되지 않은 욕구

청소년들이 인터넷성매매를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는 주로 생활비(잠자리와 끼니 해결), 옷, 속옷 구입, 유흥비였다. “옷 사고, 밥 먹으러 다니고, 택시타고. 돈 모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20~30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솔직히 돈을 쓰다보면 한 게 없는데 영화보고, 노래방가고 PC방가고, 밥 사먹고, 택시비 하고 그러면 하루에 거의 20은 그냥 없어져요.”, “신발 사고, 화장품사고, 술 먹고. 술 먹고 노는데 많이 썼어요.”, “모텔 가서 자고 밥 먹고 PC방 가고요.”

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를 한 청소년 중에는 “저는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개네가 썼어요.” 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명품사고요. 루이비통 지갑하고 샤넬 선글라스 샀어요.” 와 같이 명품을 샀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성매매에 따른 경제적 수입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두 생활비와 사치품 구매 등으로 소비되며, 계획되지 않은 충동적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인터넷성매매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침에 친구랑은 택시비나 화장품 사고, 오빠들이랑 했을 때는 오빠가 구하고, 내가 나가니까 돈을 나눠 써야 되잖아요. PC방비랑, 노래방비, 찜질방비 반씩 나눠 내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반복됐어요.</li> <li>2. 놀러 다니면 10만원이 돈이 아니에요. 머리카나 옷 살 때는 더 있어야 되고, 하루에 생활비만 10만원이었어요. 근데 10만원도 모자라요.</li> <li>3. 생활비. 옷 사고, 밥 먹으러 다니고, 택시타고. 돈 모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20~30 쓴다고 생각하면 되요. 솔직히 돈을 쓰다보면 한 게 없는데 영화보고, 노래방가고 PC방가고, 밥 사먹고, 택시비하고 그러면 하루에 거의 20은 그냥 없어져요.</li> <li>4. 밥 먹고, 화장품 필요한 것 사고, PC방비 내요.</li> <li>5. 옷 사고, 사고 싶은 것 사고, 술 마시고.</li> <li>6. 생활비로 써요. 자취방, 모텔, 밥 사먹고, 옷 사고.</li> <li>7. 밥 먹고, 옷 사고, 찜질방.</li> <li>8. 그걸로 밥 해먹기 귀찮으면 밥도 많이 사먹고, 담배 값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쓰면 그렇게 하다보면 없어요.</li> <li>9. 옷 사고, 먹고 PC방 가고.</li> <li>10. 신발사고, 화장품사고, 술 먹고. 술 먹고 노는데 많이 썼어요.</li> <li>11. 밥 먹고 노래방 가고 염색약 사고.</li> <li>12. 제가 그때 필요한 물건도 사고 애들이랑 놀 때 쓰고. 잠을 자는 거나 생리대나 옷이나 아니면 밥 먹을 때.</li> <li>13. 먹고, 자고, 필요한 것 사고 하다</li> </ol> | <p>보면 하루 만에 다 쓰고. 모텔비, 담배비, 밥비 하고 나면 3,4만원 남아요. 그럼 그걸로 옷 사고, 구두 신발 같은 것 사고, 조금 남겨서 그 다음날 PC방 가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옷, 화장품, 신발, 머리, 렌즈. 밥도, 술, 담배.</li> <li>15. 애들이랑 만나서 놀 때. 술 먹고 놀러 갈 때 자기 치장할 때 거의.</li> <li>16. 그냥 뭐 먹고 자고 하는데 썼어요.</li> <li>17. 저는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개네가 썼어요.</li> <li>18. 집 나와서, 잘 때랑 먹는거랑, 옷 사고 사우나가고 PC방 가는거요.</li> <li>19. 친구 옷사주고, 밥 사먹고, 핸드폰비 내고, 방값 내고, 전기세 내고요.</li> <li>20. 후배 여관방 잡아주고, 먹을 거 사주고, 필요한 거 속옷 같은 것 사주고, 저한테 쓴 건 차비밖에 없어요.</li> <li>21. 잠자리나 밥 먹는 거, 옷 갈아입는 거요.</li> <li>22. 그냥 술 먹거나 생활비 약간 보태고 담배 값 하고요. 반찬 사고 밥 사고 전기세 내고요. 주로 밥 사먹었어요.</li> <li>23. 모르죠. 기억 잘 안 나는데 밥 먹고 옷 사구요.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그 다음에 돈 생기면 술 마시고요.</li> <li>24. 생활비. 먹는 거랑 이상하게 공과금 같은 건 안 낸 거 같고 PC방, 노는 거, 술이랑 담배. 담배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li> <li>25. 옷 사고요, 먹을거 사고요, 잠자리, 머리하고, 화장품 사요.</li> <li>26. 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친구 머리 딱 한번 해줬어요.</li> <li>27. 먹고 자는 거요. 생활비요.</li> </ol> |
|---|---|

- |   |  |
|---|--|
| <p>28. 조건에서 만난 남자들이 먹을 거 사달라면 사주고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거 사달라면 사주기도 해요. 그 친구가 조건해서 받은 돈으로 같이 써요. 자기가 즐겨요. 돈 때문만은 아닌 거 같아요. 먹을 것도 사주고 그리고 그 남자가 원룸을 잡아줬어요. 그 남자랑 2~3번 했나봐요. 저희가 저희 또래 남자 애들을 데리고 오면 화를 내요. 나이는 38살 정도요. 여자 친구도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저희 방에 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랑 하려고 했는데 전 안했어요. 그래서 집을 다 싸들고 나갔어요. 강제로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화장실에 간다고 했죠.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죠. 아저씨 저희 나이 애들 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저씨가 상관없잖아 말했어요.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아저씨랑 연락을 끊었어요. 제 친구는 돈줄이라고 해서 남자가 많아요. 지금은 그 친구랑 연락 안해요.</p> <p>29. 옷 사거나 연예인 물품 사거 나요.</p> <p>30. 친구들이요 제가 하고 오면 돈이 생기잖아요. 씻고 자려면 모텔을 주로 이용했구요. 밤에나 새벽에 모텔을 가요.</p> | <p>31. 유희비요. 나이트나 술집, 명품사고요. 루이비통 지갑하고 샤넬 선글라스 샀어요.</p> <p>32. 그때는 가출했었으니깐 모텔비하고 밥 사먹고 속옷 같은 거 필요한 거 사구요. 하루하면 돈 다 쓰고요.</p> <p>33. 옷 사고 PC방 갈 때 쓰고요.</p> <p>34. 일단 가출을 해서 하는 거니까 생계유지로 먹고 자고 방 잡아 놓은 거 월세 내고 유희비로 놀러 다니고 집값 내고요.</p> <p>35. 거의 pc방이요. 제가 학교 가는데 학교 일찍 가기가 힘들어서 pc방에서 점심시간까지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사 피고요 옷 사 입고요.</p> <p>36. 가출했을 때라 친구들 연락해서 먹을 거 다 사 먹고 옷 사 입고 술 먹고 담배 피고요 pc방가서 다시 구하고요.</p> <p>37. 방비랑 밥 사 먹고 옷 사는 거요.</p> <p>38. 제가 사고 싶은 거 샀어요. 옷이랑 속옷이요.</p> <p>39. 숙식이죠.</p> <p>40. 제가 필요한 물건들 샀어요.</p> <p>41. 담배사고 먹을 거, 밥 사먹고 애들이랑 놀 때 쓰고요.</p> <p>42. 옷이나 화장품, 담배요.</p> <p>43. 모텔 가서 자고 밥 먹고 PC방 가고요.</p> |
|---|--|

## ② 인터넷 접근의 용이성 : 인터넷성매매 강화요인

### 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로, 포털사이트는 네이버(7명), 네이트(5명), 다음(3명)이라고 응답하였고, 채팅사이트는 버디버디(26명),

네이트온(11명), 세이클럽(6명)이라고 응답하였다. 많이 접속하는 블로그나 카페로는 싸이월드(24명)가 가장 많았고, 오토바이관련 카페, 가출카페, 얼짱카페, 친목카페 등이 있었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게임은 러브비트, 테트리스, 바람의 나라, 크레이지 아케이드, 알투비투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애인대행사이트인 플레이메이트, 나과라에 접속하는 청소년이 있었고, 네이버폰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p><b>□ 포털사이트</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li> <li>6. 네이트</li> <li>10. 다음</li> <li>11. 네이트</li> <li>12. 네이트, 네이버</li> <li>16. 네이버</li> <li>20. 네이트</li> <li>24. 네이버, 다음</li> <li>27. 네이버</li> <li>29. 네이버</li> <li>30. 네이버</li> <li>31. 네이트</li> <li>35. 네이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버디버디</li> <li>16. 버디버디</li> <li>17. 버디버디</li> <li>18. 버디버디</li> <li>19. 네이트온</li> <li>20. 버디버디</li> <li>21. 버디버디</li> <li>22. 네이트온</li> <li>23. 버디버디, 세이클럽</li> <li>25. 세이클럽</li> <li>26. 네이트온.</li> <li>31. 버디버디, 세이클럽</li> <li>32. 세이클럽</li> <li>34. 버디버디</li> <li>35. 버디버디, 네이트온</li> <li>36. 버디버디</li> <li>37. 버디버디</li> <li>38. 버디버디, 네이트온</li> <li>40. 네이트온, 버디버디</li> <li>41. 네이트온, 버디버디</li> <li>42. 버디버디</li> </ol>
<p><b>□ 채팅사이트</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버디버디</li> <li>2. 버디버디, 네이트온</li> <li>3. 네이트온</li> <li>4. 네이트온, 버디버디</li> <li>5. 버디버디, 세이클럽</li> <li>6. 세이클럽, 버디버디</li> <li>7. 버디버디</li> <li>8. 네이트온</li> <li>9. 버디버디</li> <li>10. 버디버디</li> <li>11. 버디버디</li> <li>12. 버디버디</li> </ol>	<p><b>□ 블로그나 카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싸이월드</li> <li>2. 싸이월드</li> <li>3. 오토바이샵, 싸이월드</li> <li>4. 싸이월드</li> <li>5. 오토바이샵</li> <li>6. 싸이월드</li> <li>7. 싸이월드</li> </ol>

8. 싸이월드	2. 테트리스
9. 싸이월드	6. 피망, 한게임, 넷마블
11. 싸이월드	7. 피망
13. 싸이월드	8. 넷마블
14. 싸이월드	16. 넥슨
16. 싸이월드	18. 한게임 테트리스
18. 싸이월드	30. 바람의 나라, 러브비트
19. 싸이월드	38. 알투비투
20. 싸이월드	39. 알투비투, 크레이지 아케이드
24. 싸이월드	42.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
27. 싸이월드	43. 러브비트
28. 싸이월드	
30. 싸이월드, 게임천목카페	<b>□ 애인대행 사이트</b>
32. 싸이월드	6. 플레이메이트
33. 싸이월드	15. 나파라
38. 싸이월드	<b>□ 기타</b>
39. 싸이월드 베스트라인요. 얼짱 카페	8. 네이버폰
40. 싸이월드	19. 네이버폰
43. 가출 카페	
<b>□ 게임사이트</b>	
1. 러브비트	

#### 나. 주로 이용하는 대화명

채팅이나 게임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대화명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은 특별히 대화명을 쓰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것, 실명, 자신이 있는 지역이름, 대화가 잘 걸릴 수 있는 것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첫째로 특별히 대화명을 쓰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아무것도 안 써요. 아이디 알면 됐죠.”, “대화명 없어요. 아이디는 제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냥 이름이니깐요.”

둘째로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나 실명을 쓴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제 이름 따서 ‘유하’ 하던가.”, “내 이름으로요.”

셋째로 지역이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채팅할 때 만약에 목동역에 있으면 목동만남 이렇게 써놓고. 그냥 만남이라고 하면 서울인지 부산인지 경기도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지역을 얘기하면 근처사람들이 쉽게 오고 더 빨리 오고 그러니까.”

넷째로 상대방과 대화를 빨리 하기 위한 대화명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대화걸어줘.”, “섹시 뭐 이런 거.”, “몇 대 몇 ㅈㅈㅈ.”

그 외의 응답으로는 친구와 관련된 것, 그날 기분에 따라, 별명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영이랑 관련된 숫자 같은 것. 할 게 특별히 없으니까.”, “대화명은 기분에 따라. 아 기분 안 좋다, 화난다, 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점쟁.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요.”

따라서 채팅이나 게임을 할 때, 청소년들이 인터넷성매매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대화명은 대부분 기분 내키는대로 그때 그때 달랐으며, 좀더 용이한 만남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역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1. 아무것도 안 써요. 아이디 알면 됐죠.	6. 아이잉, 그리고 섹시 뭐 이런 거.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2. 다 다른데, 테트리스는 한글로 쓰고, 네이트는 영어로 쓰고.. dw5882요. 뭐 의미 있겠어요. dw는 ㅇㅈ을(이름) 영어로 친거고..	7. 그때그때 달라요. 그냥 아이디를 쓰거나, 지역 써놓거나.. 더 잘 들어오니까
3. 네이트온은 그냥 실명을 써요. 예전에는 주민등록생성기로 만들어서 썼는데 걸려서 정지 먹었어요. 조건만남할 때는 버디버디로 구해요. 대화걸어줘(버디버디). 이 아이디가 오래되면 안 구해져서 계속 아이디 몇 개씩 바꿨어요. 말 그대로 대화 잘걸리라고.	8. 단영이랑 관련된 숫자 같은 것.. 할 게 특별히 없으니까.
4. 하면 매일 바뀌는데. 아이디는 시플기아봉. 좋아하는 오토바이 이름이에요.	9. 제 이름 따서 ‘유하’ 하던가 아니면, ‘아이 큐큐 호’ 하던가. 나는 똑똑하다에 호하는거예요
5. 이걸 좀 아니잖아요.. 맨날 바뀌는데. 잘 안 써요. 야한거 그런 것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별로로 할 때도 있고, 대화명 아예 안 뜨게 할 때도 있고.	10. 이름도 많이 쓰고요, 08rose. 이유는 없는데요.
	11. 대화명 없어요. 아이디는 제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냥 이름이니깐요.
	12. 그냥 ㅋㅋㅋ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곰 할 때도 있고. ㅋㅋㅋ는 아무렇게나 한거고요, 곰은 남자친구가 애칭으로 해준거.
	13. 채팅할 때, 만약에 목동역에 있으

<p>면 목동만남 이렇게 써놓고. 그냥 만남이라고 하면 서울인지 부산인지 경기도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지역을 얘기하면 근처사람들이 쉽게 오고 더 빨리 오고 그러니까.</p> <p>14. 의왕만남. 거기 사는 사람 밖에 안 해서. 의왕이나, 안양, 군포 그런 데.</p> <p>15. 채팅 할때요 대화명은 신경 안 쓰고 하는 데요.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는데 실명 이름은 안 쓸 거잖아? 영어나 메일 아이디요. 메일 아이디는 뭐예요? sera0912 옛날에 그냥 한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네</p> <p>16. 아니 없어요. 저는 항상 똑 같아요 착하게 살기 그 이유는? 없어요.</p> <p>17. 그거 할 때 만요 대화명은 뭐 제가 성수동에 살면 독섬에 살면 독섬여 그런 거요. 네가 있는 지역 이름에 여자를 붙이는 거야? 네. 네가 있는 위치를 밝히는 이유는? 그래야지 그 남자가 보지요. 가까운 데 있는 남자가 보거나 그 남자가 아내가 독섬까지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깐? 네</p> <p>18. 내 이름으로요.</p> <p>19. 아이디는 제 이름. 대화명은 그냥 어느 게임이든지 쌤 같은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요</p> <p>20. 아이디는 제 이름 넣어서 하고, 대화명은 기분에 따라. 아 기분 안 좋다, 화난다, 열 받는다. 이런 식으로.</p> <p>21. 그냥 ㅋㅋ요. 그냥 쓸 대화명도 없고요 그냥 자주 쓰는 내용이 웃는 표시니까요.</p> <p>22. 저는 그냥 친구들 밖에 대화 안 하는데요 대화명은 없어요.</p> <p>23. ㅇ기으로 쓰면 요즘은 걸리니깐 안 되고요, ㅈ을 써요 기 한자로 누르면 기호로 바뀌잖아요, 가로되는 거 기호로 써요. 조건이 아니니깐</p>	<p>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가출해서 어디 가 있는 동안 지역 이름을 써요.</p> <p>24. 좀 그런데요 쉬운 거요. 이름에 관한 거? 네. 그런 거요.</p> <p>25. 놀이. 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대화.</p> <p>26. 제 이름 쓰는데 대화명은 귀찮아서 안해요.</p> <p>27. 게임이나 채팅은 안해요. 그냥 이름.</p> <p>28. 오마다. 그냥 예전에 클럽에서 나눠줘서 그거 쓰는 거예요</p> <p>29. 없어요. 제 기분에 따라 달라요. 그냥 ㅋㅋㅋ요.</p> <p>30. 거의 아이디가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이트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일되게 만들어요. 한글 같은 경우는 주로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넣어서 만들고, 아니면 생각이 없으면 아무거나 써서 손이 가는대로 그냥 써요.</p> <p>31. 이름밖에 없는 데요. 이유는? 네이트는 아는 사람이니깐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 건 가명으로 해요. 가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p> <p>32. 전화번호 뒷자리 대부분 쓰잖아요. 저는 할머니 집 전화번호 쓰고 앞에 거는 아빠가 해주셔서 아이디는 바꾸지 않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간편하니까요.</p> <p>33. 나이 쓰고, 이름 쓰고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날 알라고요.</p> <p>34. 그냥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로 사용한다면 생각이 안 나는 데, 이름은 안 쓰고 가명 같은 거요. 지극히 여자이름 같은 거 수진이 이런 거요. 그 이유는? 제 이름이 나와 있</p>
--	--

<p>는 거 이상하잖아요.</p> <p>35. 꼴에부엉이족이요. 그러니까요 꼴에 밤에 활동하는 거요.</p> <p>36. 반영하고 설영하고 아이디어가 이름이잖아요. 그냥 내 이름 못 알아보게요.</p> <p>37. 몇 대 몇 ㅋㅋ 조건 때문예요</p> <p>38. 게임할 때는 골초고요. 왜 골초야? 할 게 없어요. 버디버디는? 예전 아이디어는 정지당했는데 오빠 딱 걸렸</p>	<p>어 왜 이렇게 썼어? 그냥 할 게 없어요. 친구랑 맞췄어요.</p> <p>39. 안양. 안양에 사니까요.</p> <p>40. 영어로 jtjtp. 의미 없어요.</p> <p>41. 어디 어디에서 만날 분.</p> <p>42. 언니 좀 잘 나가 그런 거요. 멋있어 보이려고.</p> <p>43. 겸댕.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요. 별명 이에요? 네.</p>
---	---

#### 다. 인터넷사이트 접속 목적

인터넷성매매 청소년들이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는 목적은 친구들과의 연락 및 대화, 성매매, 흡피꾸미기나 친구흡피 방문, 게임 등을 하기 위해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핸드폰 다음으로 연결수단이죠.”, “약속 잡으려고요.”, “그냥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냥 애들 지냈던 얘기.”

둘째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버디버디는 조건만남으로 돈벌라구요.”, “돈이 필요하니까. 버디버디는 주로 돈이 필요해서.”

셋째로 흡피꾸미기나 친구흡피 방문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싸이가 재밌잖아요. 애들 흡피 돌아다니는 게.”, “싸이 같은 경우는 싸이는 홈페이지 꾸미는 거잖아요. 애들 사진 올린 거 펴가고요.”

그 외에 “그냥 게임하려고.”, “폭주 펄 때 들어가요.”, “다음 카페활동.”, “사이트는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보고, 정보 검색요.”, “글 남기려는 목적으로 들어가요. 연예인 좋아해요.” 등과 같이 응답하였다.



**□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대화하기 위해**

1. 네이트온 하려고, 버디버디는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에 할 때는 친구들과 이랑 대화하려고
2.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있고
5. 싸이월드는 애들이랑 연락하려고
6. 애들하고 얘기 할라고
7. 싸이는 친구 만나려고.
8. 싸이는 친구들 소식 들으려고
9. 버디버디는 옛날에는 버디를 통해서 친구사귄 것도 있고요
10. 싸이는 친구들이랑 연락하려고, 버디버디는 친구들이랑 연락하려고.
11. 그냥 그 연락 안 되는 애들 핸드폰 번호 불러구요. 친구들하고 얘기 할려고요.
12. 그냥 친구들하고 연락망으로요.
13.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핸드폰 다 음으로 연결수단이죠.
14. 싸이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런 것.
17. 원래 맨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연락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18. 싸이월드는 친구들 연락하고
19. 네이트온은 실제로 아는 애들이 있으니까 개네랑 연락하려고. 싸이월드는 애들이 방명록 남긴 것 보고.
22. 약속 잡으려고요.
24. 그냥 심심하니깐 사람들 만나는 거요. 싸이월드에도 사진 검색인가 그런 게 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25. 놀려고요. 심심해서. 뭐하고 놀아요? 그냥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냥 애들 지냈던 얘기.
26. 친구들하고 대화하려고요.
28. 지금은 안하는데요, 막 인맥을 늘리고요. 궁금했거든요. 친구도 만나구요.
30. 그냥 사람들이 어떤 걸 올렸나 보려고요. 카페 같은 경우예요. 제 친

구들이 올린 글이나 친목이나 게임에 관한 글을 봐요.

31. 애들이랑 얘기하고요.
32. 친구들이랑 연락하려고. 아이들 연락 온 거 확인하러 가고. 세이는? 남자친구 때문예요. 가끔 연락 안 될 경우에 제가 인터넷 세이에 들어가면 개가 게임 들어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요.
33. 친구들이랑 연락이나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카페도 만들잖아요.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요.
36. 친구들이랑 채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막 남자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그런 거 있다고 파일 보내고요 했는데 딱 보니까 야동 사이트예요. 미국 그런 야동 사이트 보고 채팅 하면서 조건하는 거 같아요.
37. 버디버디는 애들이랑 얘기 하거나 채팅하려고요.
39. 친구들하고 친목을 모으려고요.
41. 친구들이랑 얘기하려고요.
43. 지금은 아는 애들이랑 연락하려고요.

**□ 성매매를 하기 위해**

6. 채팅사이트는 조건 할라고 들어가요. 근데 그거 할 생각 없는데도 음악방 같은데 들어가면 쪽지오고 해요. 안 한다고 하면, 페이지 올려드린다고 막 그래요.
7. 채팅은 조건 하려고 들어가고
9. 요즘은 성매매 그런 것.
14. 조건만남 하려고
15. 조건 만남 할려고요.
16. 그냥 심심하다고 그 채팅방 개설

<p>하고요</p> <p>18. 버디버디는 조건만남으로 돈벌라구요.</p> <p>21. 돈이 필요하니깐. 버디버디는 주로 돈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잠 잘 곳 요. 그렇지 않으면 버디버디는 잘 들어가지 않는 구나? 네 아예 안 하지요.</p> <p>31. 돈 벌려고요.</p> <p>34. 아무래도 가출하거나 갈 때 없으니깐 남자 만나는 거 때문예요.</p> <p>43. 가출 했을 때는요 처음에 같이 다닐 사람 구하려고 들어갔는데</p> <p><b>□ 흠피 꾸미거나 친구 흠피 방문</b></p> <p>1. 싸이월드는 흠피꾸미고</p> <p>2. 싸이가 재밌잖아요. 애들 흠피 돌아다니는 게.</p> <p>13. 사진 올리고.</p> <p>23. 홈페이지 관리해요.</p> <p>32. 싸이 같은 경우는 싸이는 홈페이지 꾸미는 거잖아요. 애들 사진 올린 거 퍼가고요.</p> <p><b>□ 게임을 하기위해</b></p> <p>5. 다음카페는 게임이나 팬카페.</p> <p>6. 싸이는 게임하고</p> <p>8. 게임하는거나</p> <p>18. 한게임은 게임할려구요.</p> <p>19. 그냥 게임하려고.</p>	<p><b>□ 기타</b></p> <p>1. 카페 들어가려고.</p> <p>3. 지금은 폭주 안 편지 한 달 됐거든요. 그전에는 폭주하러 가면 헛걸음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 가까워서 좋긴 한데 헛걸음하면 짜증나잖아요. 가기 전에 한번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 많나..</p> <p>4. 폭주 떨 때 들어가요.</p> <p>10. 다음 카페활동.</p> <p>12. 네이버는 심심하거나 연예인들 사건 떼었을 때 뉴스 보려고요.</p> <p>20. 카페는 모임의 일정을 보기위해서. 플라이클럽이라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있는 애들이 모임을 해요. 그 모임이 일정이 잡히면 짝 나와요 그럼 애기도 많이 하고, 교육도 받고. 방학 때는 성교육, 경제교육도 있고 문화 활동도 있는데 그거는 여름엔 바닷가 아니면, 한탄강 놀러도 가고 겨울엔 롯데월드 주로 가고요.</p> <p>27. 사이트는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보고, 정보 검색요.</p> <p>29. 글 남길려는 목적으로 들어가요. 연예인 좋아해요.</p> <p>35. 그냥 검색하고 그럴 때요</p> <p>38. 그냥 심심해서, 출책하고 그래요.</p> <p>40. 그냥 지식인 이런 거, 연예인들 보려고요.</p> <p>42. 심심해서 놀 사람 찾으려고요.</p>
--	---

라.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하루 평균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43명 중 23명의 청소년은 5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여기 오기 전에 돈 있을 때 10시간 정도.”, “24시간하는 데요... 어떤 때는 못 구할 때도 있으니깐 그냥

PC방에 하루 짱 박혀 있어야 해요.” 와 같이 거의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43명 중 18명의 청소년은 1시간 이상한다고 응답하였다. “많이 하면 5시간 정도 했어요. 보통은 3~4시간요.” , “2~3시간요. 컴퓨터를 계속 켜 놔요.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인터넷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한 명도 없었으며, 하루에 30분정도만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명 중 2명에 불과했다. “30분밖에 안해요.”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기 오기 전에 돈 있을 때 10시간 정도, 돈 없을 때는 몇 천원.. 있는 만큼만 해요</li> <li>4. 24시간 한 적도 있어요</li> <li>5. 아무리 못해도 5시간은 하는 것 같은데. 풀로 들어가요. (하루 한 번..)</li> <li>6. PC방 한 번 가면 5시간은 기본이고, 못해도 3시간. 하루에 3~4번은 하는 것 같은데.</li> <li>7. 5시간에서 10시간</li> <li>9. 4시간. 한번에. 언젠는 밤 새운적도 있어요.</li> <li>10.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2시간도 그냥 하고 있는데, 적게 할 때는 아예 안 하기도 하고, 10분 15분 정도.</li> <li>14. 요즘은 안 해요. 24시간 내내 했었어요. 어떤 언니한테 감금된 채로 24시간 내내 컴퓨터 했어요. 구하고 (조건). 그래서 그 언니 신고하고, 지금은 조건 한 남자애들 알아보는 중이에요. 경찰에서. 그 언니이름이랑 엄마이름이랑, 동생이름이랑 다 찾았나봐요. 동생사진 보여줬는데 맞더라고요. 요즘은 한 시간씩. 하루에 한 번이요.</li> <li>16. 5시간 이상요. 그냥 계속 켜놔요</li> <li>18. 하루에 6시간 정도. 3~4번</li> <li>19. 그냥 돈 있으면 좀 오래해요. 갈데 없고 하나까 한 10시간. 하루에 한번.</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24시간하는 데요. 만약 자유롭게 하라면 24시간 다 하는 거야 밥도 안 먹고? 밥은 안 먹는데 하루에? 네. 횟수는? 계속이네? 네. 어떨 때는 못 구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PC방에 하루 짱 박혀 있어야 해요.</li> <li>26. 아침 9시에 켜요. 저녁 10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7시간 반 정도요.</li> <li>29. 컴퓨터가 집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한 시간은 기본이고 오래 붙잡고 있으면 10시간. 수십번.</li> <li>30. 거의 6~7시간요. 한번에.</li> <li>31. 하루에 8시간요. 하루에 세 번요.</li> <li>33. 하루에 6~7시간요. 2회요.</li> <li>34. 지금은 컴퓨터를 못 하는데요, 원래 밖에 있었을 때는 게임 중독이 심해서 pc방에 10시간씩 끊어서 밤새고 해요. 게임 매일 했어요. 거의 맨날 맨날 가서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이요.</li> <li>35. 많이 해야 열 시간 정도요. 하루에? 횟수는? 네. 계속이요.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li> <li>36. 컴퓨터는 빠지면 계속하고 시간은 새벽6시 넘은 적도 있어요. 하루에 열 시간 넘게 하네? 네 매일? 매일은 아니에요. 횟수는 수시로 들어가서 해요? 네</li> <li>37. 하루 만나절을 다 할 걸요.</li> </ol> |
|--|---|

<p>39. 평균 거의 5시간정도요. 하루에 2~3번 정도</p> <p>42. 하루에 3시간요. 더할 때는 게임 할 때는 밤 센 적도 있어요. 요새는 컴퓨터 아예 손도 안대요. 가끔 심심할 때 하고요.</p> <p>2. 안해요 거의. 잠깐 잠깐해요. 안하는 날도 있고. 친구들이 옆에서 하면 저도 하고. PC방가서 게임하면 오래하죠.</p> <p>3. 인터넷 잘 안 해요. 조건 구할 때랑, 오샵보는 것도 5분도 안되고. 하루에 한 두시간 정도. 켜다켰다 그러는데. 한 세네번.</p> <p>8. 하루에 한 번, 거의 두 시간, 세 시간.</p> <p>13. 저는 컴퓨터를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제일 많이 해봤지 한시간. 한 시간을 죽 하는게 아니고, 잠깐 들어가서 홈페이지 확인하고 글 있으면 거기에 댓글 써주고, 애들 홈페이지 보고, 밤에 다시한번 들어가보고. 하루에 2~3번 정도.</p> <p>15. 두시간 정도요. 한 번</p> <p>17. 한두시간요. 조건이 구해질 때가 지요. 시간은 대략 얼마정도 걸려? 2~3시간요</p> <p>20. 저는 많이 안 해요. 많으면 1시간 반이구요, 적으면 10분. 하루에 두세번.</p> <p>22. PC방 갔을 때 3~4시간요.</p> <p>23. 진짜 하려고만 하면요 밤새도 할</p>	<p>수 있고 피곤해서 그렇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요 하루에 3시간 정도요. 아빠도 PC방 갔다 온다면 3천원 컷어요 근데 담배 살까봐 2천원 줘요. 아 못 믿는 구나. 아빠가 못 믿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섭섭하지 않아? 섭섭하죠. 솔직히 성인 안에 담배를 피는 건 잘 못 된 건데 집을 나가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깐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니 안돼 그러면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삼차삼차 주다가 안주니깐 답답하죠.</p> <p>24. 많이 하면 5시간 정도 했어요. 보통은 3~4시간요.</p> <p>25. 2~3시간요. 컴퓨터를 계속 켜놔요.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p> <p>27. 하루 3시간이상. 내가 하고 싶을 때요. 10번은 안 넘어요.</p> <p>28. 1~2시간. 많으면 3번이요.</p> <p>32. 한 두시간정도요. 하루에 한번요.</p> <p>38. 잘 모르겠어요. 그냥 끌리는 데로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네. 횟수는? 몰라요.</p> <p>40. 3~4시간, 두 번 정도요.</p> <p>41. 2~3시간 정도요. 하루에 두 번 정도요.</p> <p>43. 3~4시간요. 하루에 얼마나 컴퓨터를 자주 켜요? 자주요.</p> <p>11. 30분밖에 안해요. 한번요.</p> <p>12. 30분이요. 1~2번.</p>
---	--

#### 마. 인터넷 이용의 문제점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으로, 익명성이나 비대면성에 의한 피해, 성매매 등의 비행으로의 노출, 중독성 등을 꼽았다.

첫째로 43명 중 13명의 청소년은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메신저를 하면 애들이 얼굴이 안 보인다고, 말을 막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은 그런 악플들.”

둘째로 43명 중 13명의 청소년이 성매매나 비행으로의 노출이 쉽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너무 애들이 나쁜 쪽으로 빠질 길이 많잖아요. 인터넷으로 다들 집나가고 하니까.”, “그냥 학생들이 채팅으로 인해서 조건 만남을 알게 되는 거 같아요.”

셋째로 43명 중 6명의 청소년이 중독성을 인터넷 이용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너무 오래 하는 거,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하고 싶고,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인터넷 중독이죠. 할 건 없는데 켜놓고 하는 거요.”

그 외의 기타응답으로는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바이러스 치료하는 것 쓰는 것. 게임하다가 그거 뜨면 꺼져요.”, “피로요 목아파요 허리도요.” 등과 같은 응답이 있었고, 3명의 청소년은 인터넷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들을 검토해볼 때, 인터넷 이용의 문제점들에 대해 인터넷성매매를 하는 여자청소년들 스스로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익명과 비대면에 의한 피해	
2. 메신저를 하면 애들이 얼굴이 안 보인다고, 말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요.	5. 얼굴 안 보인다고 막 그런 것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죠. 솔직히. 악플도 그렇고, 연예인들이 왜 죽겠어요.
3. 지금은 안하지만 예전에 조건 했잖아요. 안한지 한달 정도 됐거든요. 버디버디로 구하면서, 실명을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불편했어요. 이 옷입고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사기먹은 적도 있고 그래서.. 버디버디는 채팅방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채팅방 계속 있으면, 돈이 없을 때도 조건만남하면 돈도 많이 생기고 솔직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10. 익명이요. 익명으로 하면, IP도 잘 안 뜨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악플. 11.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얼굴 안보니까 말을 막 한다든지 욕하는 거요. 12. 욕설. 그냥 게임 같은 데서는 욕하면 욕이 안 나오는데, 채팅메신저 같은 건 바로 나와서 정신적 피해가 있을 거 같아요. 15. 익명 막 이런 거요. 익명성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막 욕하는 거요. 사람들이 욕하는 거? 네 19. 문제점? 그런건 있어요. 오디션에

서도 채팅도 하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주로 서버마다 다 있는 건 아닌데요, 서버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 애들은 다 욕을 하고, 좀 막말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만나는 애들도 있어요. 싸우다가 열 받아서.

- 24.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은 그런 악플들.
- 29. 익명성. 익명성 때문에 욕하는 애들도 있고, 익명성 보장 하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욕설 같은 거고 성에 관련된 그런 것도 툭툭 내 뱉고.
- 33. 얼굴이 안 보이는데 캐릭터 같은 거 예쁘게 꾸며 놓으면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안 좋은 거 같아요.
- 34. 저는 유용하게 잘 쓰니까 문제점은 없는데 도용하는 거요. 아이디 도용이나 네이트온 같은데서 자기네들끼리 친구 등록하잖아요. 얼굴 모르고 대화하는 거니까 나이도 속이고 대화하는 거요.
- 39. 익명이요. 상대방이 예의 없게 굴 때도 있고 욕하는 것도 있고요.

#### □ 성매매에 쉽게 노출

- 5. 조건 쪽으로 보면요, 그런 쪽으로 노출이 많이 되어있고.
- 7. 채팅이요. 채팅으로 만나자하고 하니까.
- 13. 너무 애들이 나쁜 쪽으로 빠질 길이 많잖아요. 인터넷으로 다들 집나가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그런 것도 알게 되니까 맛 들어서 하게 되면. 조건만남도 그렇고, 번개라던가.
- 14. 버디 들어가는 것. 조건남자애들 막 쪽지 오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나쁜친구 등록해요 쪽지 못 오게.

17. 몸 파는 거요. 성매매 하게 되는 거 인터넷을 통해서? 네

- 20. 인터넷 문제점이 많죠. 특히 채팅방이 켈 많죠. 만약에 그냥 음악을 들으러 갔는데 번개하자, 미팅을 하자고 그런게 날아오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꺼버리고 싶고. 또 다른 건 제 친구가 문제예요 제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면 제 친구는 채팅방에 들어가요. 19살 여자랑 사귄 사람? 하고 쪽 쪽지를 보내요. 제 친구 버디 친구목록에는 다 채팅해서 만난 애들이예요. 그러면 15살에서 25살까지 와요. 부산에 사는 사람 광주에 사는 사람 전국에서 다 와요 근데 거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친구의 버디에는 조건만남 오빠들이 연락이 와요. 제가 아는 애 형하고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학교에 소문을 냈어요. 학교에서 맨날 걸레라는 소리 듣고, 그래서 약도 먹고 응급실도 갔어요. 그 친구 때문에 가출도 엄청 많이 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애가 가출했는데 애네 엄마 제발 애 좀 찾아 달래요. 연락했더니 수원에 있대요. 밖에서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들어왔어요.
- 21. 성인과 미성년자가 만나서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문제 인 거 같아요. 나눠지지 않는 주민등록 생성기라고요 그런 거 때문에 생성해서 버디버디 아이디를 만들면 성인하고 같이 얘기 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선 사용할 수 없는데 인터넷에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 거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그게 더 쉬운 거 같아요. 주민등록 생성기가 뭐야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생성기는 저희가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인데 주민등록 생성기를 사용해요 내가 원하는 나이로 원하는 날짜에 생년월일로 다 쓰고 여자를 선택을 하고 생성을 눌러요 그러면 지금 제가 92년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86년생을 원하고 23살인가 24살이잖아요 1986년 1월10일생이라고 해요 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요 인터넷에 상에서는 그게 제 나이인거예요 그걸로 대개..

23. 애들이 버디버디로 대화하고 쪽지를 주고받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을 주고받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채팅도 좋은 사람이란 같이 얘기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안 좋아져서 어른들이 집 나온 애들이 채팅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 걸 어른들이 알게 되서 조건도 하고 여자 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조건도 하고 어른이나 애들이 다 문제인 거 같고 가출이 문제인 거 같아요.
28. 버디같은거 하면 야한 거 나오고 조건하자고 쪽지도 오고요.
37. 채팅도 문제 인 거 같아요. 자꾸 나쁜 길로 빠지니까요.
40. 그냥 학생들이 채팅으로 인해서 조건 만남을 알게 되는 거 같아요.
42. 애들이 너무 이상한 방에 많이 들어가고, 나갔을 때 유혹이 되잖아요. 돈을 주니까. 그런 걸 보고 많이 들어가는게 문제예요. 걱정하고 들어가는 친구들 말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유입이 된 다는 거죠? 네.
43. 가출카페도 들어가고 조건도 인터

넷으로 구하잖아요. 그런 게 나빠요? 가출카페도 혹시 조건이란 게 있어요? 그런 건 없는 데요 성인들이 들어와서 어린애들 따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가출카페에서 친구들끼리 조건에 대한 정보 주고받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거 때문에 들어 간 거예요.

#### □ 중독성

1. 너무 오래 하는거,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하고 싶고,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4. 너무 오래하니까.. 중독되는 것 같아요.
25. 중독. 채팅중독 아니면 게임중독. 그런 거 같아요.
26. 특별히 없는데 인터넷 중독이죠. 할 건 없는데 켜놓고 하는 거요.
35. 인터넷 중독이요.
36. 인터넷 중독이요. 소셜 보는데 엄마가 뭐라고 해요. 인터넷 중독 있다고 소셜 보는 것도 중독 아닌데 계속 그런 생각해요. 인터넷 소셜 책? 게임은 안하고? 게임은 안 하고 소셜이나 채팅해요. 자기가 인터넷 중독이라고 생각해? 네.
37. 게임 중독도 있고

#### □ 기타

6.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8. 바이러스 치료하는 것 뜨는 것. 게임하다가 그거 뜨면 꺼져요.
16. 피로요 목아파요 허리도요
22.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할 게 없잖아요
27. 속도요. 느려서요. 다운되는 것 있

<p>잡아요. 렉 걸려서.</p> <p>30. 악성코드 같은 거요. 바이러스 퍼트리는 거요. 이상한 프로그램이 갑자기 깔리는 경우도 있고.</p> <p>31. 야한동영상 그 사이트 미성년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고요. 못 들어가는 게 안 좋아요? 왜? 네.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거 안 본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막는다고 해서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p> <p>32. 딱히 그렇게는 없는데, 솔직히 요즘에 야동 애들 많이 보잖아요. 전 아직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엄마 아빠 걸로 인증해서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보는 건 되게 수위가 높고.</p> <p>38. 버디버디 채팅 그거 인증해야 되는게 문제예요. 요즘 복잡해졌어요. 왜 인증 하면 실명 인증되니까</p>	<p>깨끗하잖아? 그러니깐 성인 채널 가서 우리가 낚시를 많이 해요 심심할 때요. 그냥 여기까지 불러내고 안 나가고 씹는 거예요. 조건하자고 해놓고 안나가? 네 불러요 일단 아무나 불러요 안나가 심심할 때 낚시하는 거 처럼요. 그럼 사람들 낚여? 낚이는 사람도 있고 안 낚이는 사람도 있고요. 요새는 인증해서 들어가야 하나까 심심할 때는 못하겠네요? 네.</p> <p>□ 없음</p> <p>9. 모르겠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없는 것 같은데</p> <p>18. 별로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p> <p>41. 없어요.</p>
--	---

바. 청소년 인터넷성매매를 하는 이유

여자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에 빠지는 이유는 크게 6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인터넷성매매를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점이다. 43명 중 19명의 청소년이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솔직히 돈 벌기 쉬워서요. 다 그러니까 돈 하나 때문에 하는 거 같아요.” 와 같이 돈벌기 쉽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쉽고 편리하다는 점이다. 43명 중 20명의 청소년이 “그게 제일 쉽고 빠르잖아요.”, “편하니까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빠르잖아요. 인터넷은 다들 즐기는 거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쉽고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만나서 바로바로요.”, “남자를 구하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요.” 와 같은 응답이 응답하였다.



셋째는 상대를 파악하고 조건을 맞춰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43명 중 10명의 청소년이 “더 많은 남자들이 있고 더 좋은 조건이 있고,” “상대가 많아요. 그리고 조건이나 시간을 조절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인터넷으로 조금이라도 대화를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잖아요. 몇 살이고, 어디살고, 핸드폰번호도 몇 명은 아니까. 그게 편했어요,” “조건을 따져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와 같이 응답하였다.

넷째는 인터넷 채팅 이외에 성매매를 하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점이다. 43명 중 15명의 청소년이 “인터넷 아니면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방법을 몰라서요.” 와 같이 응답하였다.

다섯째는 심심할 때 언제든지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43명 중 3명의 청소년이 “심심할 때는 사람들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것. 불러가지고 노는 거요,” “생각이 안나요. 남자가 끌리니까요 같이 즐기는 거 같아요.” 와 같이 응답하였다.

여섯째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편리성이다. 43명 중 3명의 청소년이 “실제적으로 길거리 가다가 조건만남 하나고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인터넷에 얼굴 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안 띄니까요. 스틸. 서로 얼굴 같은 거 모르잖아요. 상상하는 게 좋던데요.” 와 같이 응답하였다.

그 외 기타의 응답으로는 “한번 만나고 끝이니까. 상대방이랑 서로 잘 모르는 것,” “보도는요, 한번 들어가면 못나오잖아요. 인터넷은 했다가 하기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등과 같은 응답이 있었고, “전화나 보도방은 무섭기도 하고, PC방에서 PC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면 그 때 구하니까.” 처럼 PC방비를 내기 위해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또한 “친구하는 거 보고 처음 인터넷 하는거 보고.” 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와 같이 여자청소년들이 인터넷이용의 문제점으로 언급했던 내용들이 모순되게도 인터넷성매매를 하는 이유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 □ 돈

1. 돈.
5. 돈을 벌수가 있잖아요.
7.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8. 빠르잖아요. 돈이 급할 때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9. 빠르고, 많아요. 돈 벌 수 있는게 많죠.
14. 돈이 많이 생기니까.
15. 돈을 쉽게 벌잖아요.
16. 돈이요.
18. 돈 버는 거. 그렇게 하면요(알선자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돈 빼가니까요.
21. 그냥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거요.
22. 돈을 쉽게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쁘다 생각 안하는 데요. 왜냐하면 서로 둘 다 한 사람은 욕구 때문에 하고 한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정해져 있고 월급 기다리려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한 시간 정도 30분 정도면 되니까요.
23.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거요.
26. 돈 벌기 쉽죠. 급할 때는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요.
27. 솔직히 돈 벌기 쉬워서요. 다 그러니깐 돈 하나 때문에 하는 거 같아요.
31.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빠르다. 사람을 찾는 거, 돈을 버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요.
33. 쉽게 만나고 돈을 많이 받고 진짜 쉬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실제적으로 만나서는 얼마 주신다고 말을 못 해요. 인터넷에서는 타자를 치는 거 쉽잖아요. 인터넷에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직접 만나서는 돈을 적게 주는데 많이

달라고 말을 못 할 거 같아요.

35.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요.
39.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조건해서 만났어도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오빠 동생 사이로요.
40. 금방 쉽게 돈을 벌어서요.

## □ 상대를 만나는 것이 쉽고 편리함

1. 버디채팅만큼 쉬운데 없어요.
5. 그게 제일 쉽고 빠르잖아요.
6. 빠르잖아요. 무서운 것도 있긴 있어요. 왜? 어떤 애를 만났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따 먹을까 다 따먹고, 돈도 안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만난 거예요. 안한다고 그랬는데 돈 더 준다고. 순진해서 또 넘어갔어요. 또 그렇게 된 거예요. 한참 지나고 또 했는데, 또 만난 거예요. 빨리 튀어가지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성매매 했었는데, 피해 입었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성매매 했냐면서. 성매매를 했으면 그쪽도 한 것 아니냐면서. 신고하는 동안 개는 다 도망가고 있는데. (경찰이)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7.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8. 빠르잖아요. 인터넷은 다들 즐기는 거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10. 인터넷이 구하기 편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고.
13. 일단 쉽게 만나고 그런것 통해서 편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조건하실래요?’ 이럴순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에는 조건만남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조건만남 하실 분’ 하면, 하는 사람은 쪽지를 보내니까.

- 14. 쉽게 구해져서.
- 17. 그게 가장 쉽고 간단하니까요. 구하기 쉽다.
- 19. 빨리빨리 만날 수 있는 거. 그냥 자기네들이 정말 하고 싶은데 적당한 여자가 없잖아요. 근데 돈 좀 들더라도 오는 것. 지네가 원하는 여자랑 하는거니까.
- 24. 인터넷이 만나기 쉬우니까. 어떤 조건 만남이나 어떤 성매매를 하든 솔직히 업소 이런데 들어가지 않으면 구하기 힘들잖아요. 모르는 핸드폰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런 거요.
- 27. 상대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요.
- 29. 글썄요. 금방금방 만날 수 있잖아요. 제일 정보가 빨라요. 얻을 수 있는 게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면 너무 입소문이 빨라서 재어찼다 저찼다 욕먹을 필요도 없고 소리 소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 33.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 34. 인터넷이 가장 쉬운데 돌아다니면서 차에 명함 꽂을 수도 없고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 할 수 없잖아요.
- 36. 편하잖아요. 돈 구하는게요.
- 37. 편하니까요. 쉽고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만나서 바로바로요.
- 38. 남자를 구하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요.
- 39. 편하니까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 42. 쉽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그게 제일 편하다고 했어요.

**□ 상대를 파악하고 조건을 맞춰서 만날 수 있음**

- 3. 일단 인터넷으로 조금이라도 대화

- 를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잖아요. 몇 살이고, 어디살고, 핸드폰번호도 몇 명은 아니니까. 그게 편했어요.
- 6. 조건을 따져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 22. 인터넷에서 잡아야 상대를 더 잘 고를 수 있죠.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밖에서 만나면 위험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 사람에 대해 파악을 다 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만나는 거죠.
- 23. 보도는 술 마셔야 해서 싫었고, 전화방 같은 데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안한 거고, 조건은 그냥 조건 맞다 치면 한번 하고 돈 받고 바로 가는 거잖아요. 조건하는 남자들은 여자가 싸가지 없게 대해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별로 말하지 않는단 말예요. 그래서 한 거 같아요.
- 24. 내가 프리랜서처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자유롭다는 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 25. 상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요.
- 28. 더 많은 남자들이 있고 더 좋은 조건이 있고.
- 30. 상대가 많아요. 그리고 조건이나 시간을 조절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지역별로 만날 수도 있고, 근처에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빨리 만날 수도 있고.
- 31. 인터넷은 사람이 많고, 조건 하려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다양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 하나 잘 고르면 진짜 스폰서 말 그대로 돈 대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한 번 보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나요? 그런 사람은 한 번 만나고 나서 또 만나고 나중에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말을 해요. 내가

너 스폰서해주겠다 내가 한 달에 600만원을 줄때니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자고 해요. 만났어요? 당연 하죠 돈인데. 저는 400정도 받았어요. 한 달에. 무리한 요구해도 우선 내가 돈을 받은 입장이니깐 언제라도 거절할 수 있으니까. 무리한 요구나 변태적인 거는 거절하고 일반적인 성관계는 하고요.

43. 대화하다보면 애는 변태 갔다 애는 착한 거 같다 그런 게 보여요. 대화를 미리 하고 만나니까 내가 안 하는 거 다 말하니깐 강제로 시키는 일은 없어요.

#### □ 다른 방법은 알지 못하거나 어려움

2. 인터넷이 아니면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3. 버디버디 말고는 다른 채팅사이트는 찾아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몰라서 버디버디로만 구하는 거예요.  
 9.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1. 핸드폰으로 구하는 거는 번호가 발신자 번호니깐 신고할까봐, 그리고 번호를 모르니깐 인터넷으로 구하는 거예요.  
 12. 그냥 인터넷 아니면 네이버를 쳐도 미성년자가 아니면 19세가 아니면 못 들어가니깐 다른 곳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13. 그게 아니면 조건을 할 일이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15. 인터넷 말고는요 그런 거 구할 때가 없잖아요.  
 18. 그냥 구할 방법이 그것 밖에 없는데.  
 19.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조건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디

나 그런 곳은 알려진 곳이고 거의 다 거기서 하니까.

20. 그게 더 빠르고 다른 방법도 몰랐어요.  
 21. 마땅히 만날 곳이 없으니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 할 수는 없잖아요.  
 32. 인터넷 아니면 거의 못 구하니까요.  
 35.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방법을 몰라서요.  
 41. 다른 방법으로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43. 인터넷밖에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 □ 심심할 때 즐길 수 있음

25. 심심할 때는 사람들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것. 불러가지고 노는 거요.  
 36. 생각이 안나요. 남자가 끌리니까요 같이 즐기는 거 같아요. 아무 남자나 다 괜찮아? 네. 돈도 못 받았잖아? 몰라요. 괜찮아요.  
 40. 심심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시간도 빨리 가는 거 같고

#### □ 익명성과 비대면성

10. 일단 익명이니까 아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 할만한게 없잖아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는 외모를 별로 안 따지잖아요.  
 34. 사람들에게 눈에 안 띄니까요. 스틸. 서로 얼굴 같은 거 모르잖아요. 상상하는 게 좋던데요.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해서 하잖아요. 남자는 물건을 사는 상태라 개네들은 오면서 상상을 한데요. 제가 어떤 모습일지 물어봤어요. 사진도 보내주죠. 싸이월드에 올린 거요.

40. 실제적으로 길거리 가다가 조건만 남 하나고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인터넷에 얼굴 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 기타

- 4. 한번 만나고 끝이니까. 상대방이랑 서로 잘 모르는 것, 전화나 보도방은 무섭기도 하고, PC방에서 PC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면 그 때 구하니까.
- 11. 보도는요, 한번 들어가면 못나오잖아요. 인터넷은 했다가 하기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 12. 오로지 버디버디해요. 보도방 같은 곳은 술도 마시면서 그거도 하잖아요. 간이 망가지고 술을 마신

- 상태에서 하면 남자가 안애다 사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 16. 다 버디버디 하잖아요.
- 17. 남자 어른이 업소에 가는 것보다 가격이 싸다.
- 20. 그냥 뭐 버디버디는 나이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애들이 중 3 고1 애들이 어른 걸로 가입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이 돈을 구하거나. 채팅에서도 노래방도우미 하실래요? 이런 것도 와요.
- 25. 전화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위의 어른들. 전화로 말하면 아무거나 누르면 어떻게 알겠어요.
- 26. 친구하는 거 보고 처음 인터넷 하는거 보고.
- 38. 조건만남 해야 되니까 채팅으로요.

사. 채팅사이트 접속 후 성매매관련 쪽지나 대화가 오는 시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채팅방을 개설 한 후 성매매관련 쪽지가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나 지나면 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3초 지나면 대화가 10개 넘게 쌓여 있어요.”, “2시간 동안 걸리는데 200개가 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만들자마자 바로 와요. 진짜 몇 십통 주루룩 와요.” 와 같이 응답하였다.

이같은 응답들을 살펴볼 때,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성매매가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접근용이한 지를 알 수 있으며, 성매수자의 수요가 매우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 |                             |  |
|-----------------------------|--|
| 1. 3초지나면 대화가 10개 넘게 쌓여 있어요. | 2. 바로요. 기다릴 틈이 없어요. 이상한게요 아이디어 따라 달라요. |
|-----------------------------|--|

3. 만들자 마자요. 2시간 동안 구한다고 했잖아요. 2시간 동안 걸리는 게 200개가 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요.
4. 만들자마자 바로와요.
5. 채팅방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대화가 장난 아니게 와요. 5분 안에 와요.
6. 한 5분.
7. 거의 바로
8. 바로. 세이클럽은 방 제목을 그냥 일반으로 해도 쪽지가 막 와요. 만납이세요? 이렇게.
9. 바로 올 때도 있고, 좀 늦게 올 때도 있고.
10. 들어가서 5분도 안 돼서 와요.
11. 개설하고 5분도 안 되서 다 와요. 쪽지 아니고 대화로 와요.
12. 방을 딱 만들잖아요. 1~2분 안에 바로 여러 개 창이 와요.
13. 만들자마자 바로 와요.
14. 막 와요. 바로. 2분 지나서 막 엄청 많이 와요.
15. 거의 안 올 때도 있는 데요 30분 정도요.
16. 30초도 안돼서요.
17. 네가 먼저 버디버디 들어가서 성인 남자한테 쪽지 받은 경험은 없는 거야? 네.
18. 방 만들자마자 바로 와요. 수없이 계속 와요.
19. 쪽지 보내자마자 바로와요.
20. 거의 한 10분정도 지나면 외장창 와요.
21. 5분이요. 5분도 안돼서 와요.
22. 5분도 안돼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많이 와? 되게 많이 와요. 문자 올 때는 7명까지도 문자가 와요. 그 중에서 내가 고르면 되겠네? 네 명 건진다고 하면 제일 괜찮은 애는 오늘 만나고 그 다음 괜찮은 애는 며칠 있다 만나고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해도 개네들이 연락을 하니까. 돈이 없을 때쯤이면 알아서 연락이 오네? 네.
23. 들어가서 한 10초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화면에 대화가 짹 나와요. 안 올 거다 같은 애들은 지우고 장난일 거 같은 애들은 지우고 나이 보고 지우고 형사 같은 거 지우고. 어디야 어디야 물어봐요. 그런 거는 안하고. 그렇게 해서 안하고. 안 올 거 같다는 느낌은 어떻게 알아? 말을 해요. 말이 안 통하거나 개도 조건을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는 조건 불만이고 저도 개가 하자는 조건에 불만이면 그것도 끄고 남는 애들 중에 가까운 애들이랑 해요.
24. 그 버디버디 메신저 이런 거는 바로 와요. 10분도 안돼서 와요. 제목을 야하게 써놓고. 애인대행 써 놓고 '오늘 밤 만나 실 분' 그러면 바로 오거든요. 대행은 저녁에 올려놓으면 거의 아침 11, 12시면 와요. 일찍 만날 때도 있으니까. 애인대행은 꾸준히 계속 오는 편이요. 하루에 한 개씩 주면 맨 날 할 수 있는 그 정도요.
25. 5분 있다 들어오고 거의 쪽지로 와요. 방이 뜨잖아요. 그럼 쪽지가 와요 HI로요.
26. 금방와요. 막 들어와요. 한게임은 채팅방에 인원이 5명이 제한이에요. 그럼 금방 짹 차요. 한게임은 장난이 별로 없어요.
27. 셀 수 없을 정도로요. 채팅방 열자마자 막 쏟아져요. 10건 정도요.
28. 채팅들어가면 곧바로 와요. 내가 방을 안 만들어도 계속 쪽지가 와요.
29. 없어요. 회원 가입을 해야 볼 수

<p>있는 게 아니라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카페는 다 열려 있어요. 글 올리는 거는 회원 가입을 해야 했어요.</p> <p>30. 그런 건 채팅방 들어오면 바로. 방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쪽지가 우르르 오거든요. 10~15개 정도.</p> <p>31. 셰이클럽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고, 버디버디는 만들고 나서 3분 정도 뒤에요.</p> <p>32. 네. 여자가 만들면요 들어오는 인원수를 무제한으로 해놓고 일단 다 받아요. 방 만들자마자 애들이 폭주해서 와요. 제 친구도 한 번 했었던데요. 컴퓨터가 다운 됐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정도야? 네. 그 사람들은 솔직히 나이든 사람보다 나이 적은 영계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애들이 가출한 애들 가출한 애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네들이 잡혀 가는 거 아니깐 집</p>	<p>에 알리지도 못하잖아요. 제 친구도 조건만남 하다 잡혀 갔었어요. 집으로 끌려가서 맞고 그랬어요.</p> <p>33. 1분? 10초? 30초 그 정도요.</p> <p>34. 그냥 채팅 켜면 몇 초정도면 몇십통 와요.</p> <p>35. 5분 안에 열 개 이상 와요.</p> <p>36. 1분 안에 35개요.</p> <p>37. 1분도 안 되서 50개가 와요.</p> <p>38. 방 만들자마자 거의 1분도 안 돼서요.</p> <p>39. 바로 와요. 오면 진짜 많이 와요. 바탕화면 깔릴 정도로요.</p> <p>40. 방 만들자마자 쪽지가 날아와요.</p> <p>41. 1분이면 와요. 엄청 와요.</p> <p>42. 만들자마자 바로 와요. 진짜 몇 십통 주루룩 와요. 지금은 심하지 않은데 예전에는 장난 아니었어요.</p> <p>43. 만들자마자 바로요. 바로 몇 개나 와? 그냥 두두두 뜨던데요.</p>
---	--

#### 아. 성인이 청소년에게 인터넷성매매를 위해 접근하는 방식

성인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위해 접근하는 방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쪽지나 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조건만남을 하자고 물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화방 들어가면 쪽지가 와요.”, “그냥 사이트 들어가면 쪽지오요. 어디 살아? 너 몇 살이니? 너 아저씨랑 얘기 할래?”, “‘조건만남하세요?’ 하고 대화 걸어와요.”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자 보낸 다니까요. 어떤 대행 사이트에서 봤다고 오늘 시간이 되냐고요.” 와 같이 대행 사이트에 등록되어있는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어디, 얼마냐고 물어보고, 사진 달라고 해요.
2. 그럼 남자가 먼저 접근한 적은 없었어? 네 없었어요. 그럼 방을 만들고, 남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 얼마? 아니면 안녕하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남자도 복사내용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변태인데, 오줌 좀 싸달라고, 그러면 15만원인가 20만원 주겠다고. 그리고 똥 묻은 팬티를 자기한테 팔아 달래요. 3만원에 산다고.
3. 하이 이렇게 인사하고, 조건구하세요?, 지금 만나실래요? 이런 식으로 대화 걸어요.
4. 채팅방 만들면 알아서 대화가 걸려요.
5. 그냥 채팅으로.
6. 어디사세요?, 비건 하세요?, 페이는 어떻게 되요? 이런 거 물어봐요.
7. 대화방 들어가면 쪽지가 와요.
8. 얼마예요. 이렇게 말을 걸어요. 가격이 안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9. 같이 놀 사람. 술 먹을 사람, 얼마 줄 테니까 키스알바. 오는 방법은? 쪽지 아니면, 제가 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대화를 요청해요.
11. 처음 해보는 사람은 '저 차있는데요' 이렇게 말 걸고. 좀 많이 해본 사람은요 '다른 것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12. 어떤 사람은 '하이' 로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만날 거냐고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건만남이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13. 제가 만약 목동에 있으면, 나 강서구인데 가깝네. 만나자. 조건 제시 좀. 조건이 어떻게 돼? 그렇게 물어보고 얼마니? 키는? 몸무게는? 사진 좀. 안 되는건? 되는건? 그렇게 물어보고. 대부분 다 그래요.
14. 나이랑, 육구 그런 것 하자고. 입사 이런 것 다 되냐고 물어봐요.
15. 직설적으로요 지금 어디세요? 만날 수 있으세요? 네 어디예요? 그러면 은평구요 오늘 몇 시에 만날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뭐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입사는 안 되고. 입에 사정하는 거요. 후장은 안 되고. 똥꼬에 하는 거요. 십질 안 되고. 손 넣다 뺏다 하는 거요. 또? 여자마다 달라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조건은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괜찮다 그러면. 그런 걸 채팅으로 쪽지로? 채팅으로 먼저 걸려 와서 시작하면 채팅으로 끝내고 핸드폰으로 가고 있어요.
16. 알바 하실래요?
18. 조건만남이냐고 물어보고 키랑 몸무게, 나이랑 물어보고 얼마냐고 물어보고.
19. 그냥 뭐 나이 물어보고 그냥 어디서 만날 거냐고 그러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이름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가명 알려줘요.
20. 처음에는 돈 필요하세요? 조건 하실래요? 사진 보내 달라 조건 사항들 얘기하고, 금액을 물어봐요.
21. 뭐하냐고 물어봐요. 어디 사냐고 물어봐요.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말 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날래? 조건 할래?
22. 오늘 만남 괜찮냐고. 돈 필요하냐고 선불 먼저 해줄 테니까 만나자고요.
23. 조건만남? 네. 그러면 얘기 하는 거고, 아니요. 그러면 씹는 거구요. 조건만남? 네 하면 그다음에 그 남자가 뭐라고 해? 나이가 몇이냐 키가 몇이냐 몸무게가 몇이냐 물어보고 조건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 돈이 얼마인지 시간이 얼마인지 물어봐요. 네가 있는 그대로 청소년 나이 얘기 했니? 아니죠. 주로 몇 살이라고 얘기 했어? 18살이요. 그거 청소년 나이잖아? 너무 많아도 싫어하고 너무 어려도 싫어해요.
24. 문자 보낸 다니까요. 어떤 대형 사이트에서 봤다고 오늘 시간이 되냐고요. 거의 만나는 편이에요.
25. HI. 술한잔 하실래요. 같이 노실래요. 드라이브 하실래요. 조건 어때요. 그렇게 들어와요.
26. 채팅방 만들면 제 아이디가 떠요. 제가 친구로 추가해서 대화해요.
27. 그냥 한번 하려고 하는 거겠죠. 방 이름을 보고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아는 사람은 이거 조건이야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바로 몇 살이야? 몇몇은 사진 보내준 적도 있어요.
28. 쪽지가 와요 조건? 용돈 줄까? 외로워?
30. 조건 하실래요. 물어봐요.
31. 먼저 대화도 걸고 먼저 쪽지 보냈다가 대화 할 수 있냐 바쁘지 않냐 물어봐요. 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대화하고요. 뭐라고 하면서 접근해요? 조건.
32. 방으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지금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예전 거는 방 회원 수 몇 명 들어오는지 보기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방을 만들었으면 제가 방장이라고 하고 제 닉네임이라든지 뜨잖아요. 그쪽으로 쪽지를 보내요. 쪽지를 하고 대답이 없으면 대화로 넘어가요.
33. 그냥 사이트 들어가면 쪽지오고요. 어디 살아? 너 몇 살 이니? 너 아저씨랑 얘기 할래?
34.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여자를 사겠다고 그런 거죠 하이? 이러면 서요.
35. 하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답하는데요.
36. 안녕하세요. 그러면 몇 살 그러면 제가 18살이요. 자기가 오빠라고 그래요. 아저씨 아닌가. 그러면 20살이 아저씨인가 그래요. ㅎㅎㅎ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번호 찍어주고 저도 찍어 주고 어디로 와라. 돈은 얘기 안하고? 15만원이요. 통장 보여주고 편의점에서 돈 빼서 사람들 안 보이게 줘요.
37. 자기가 조건 제시하는 거 다 알겠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돈 조절하고 만나요. 만나서 그 사람이 말 바꾸면 우리는 안 한다고 해요.
38. 조건 만나요? 이렇게 하고 조건 내용 보내요.
39. 조건만남? 이렇게 쪽지가 와요 근데 이렇게 안 오고요 ㅎㅎ, ㅋㅋ 이렇게 와요 걸리까봐요.
40. '조건만남 하세요?' 하고 대화 걸어와요.
41. 하이? 처음에 대화를 걸어요. 같이 인사하다가 나이가 어떻게 되요 물어봐요. 그러면 대 놓고 조건 하자 그렇게는 안 해요? "조건" 이렇게 물어봐요. 조건 맞냐고 물어봐요.
42. 나 혼자 사는데 갈 때 없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테니까 한 번 와보라고 돈도 많고 우리집 되게 괜찮다고 네가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해요. 처음엔 못 믿어요. 처음엔 믿었다가 아니었어요.
43. 대화 쳐서요. 조건 하나고 물어보면 한다고 하면 조건 내용을 물어봐요.

자. 성인에게 인터넷성매매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먼저 접근한 경험

상대방에게 인터넷성매매를 목적으로 먼저 접근한 경험에 대해서는 43명 중 16명의 청소년이 채팅사이트나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먼저 남성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채팅목록 보고 먼저 쪽지 보낸 적 있어요.”, “그냥 그런 비슷한 방이 있어요.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걸어요.”, “거기 방이 만들어지면 들어가서 얼마에 가능하시냐고 대화해요.”

또한 먼저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도 채팅방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남성들이 알아서 대화를 걸어오거나, 쪽지를 보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명 중 14명이었다. “아니요. 그냥 방 만들어 놓고, 게임하고 있다가 들어가 보면 대화가 와 있어서.”, “방을 만든 적은 있는데 쪽지는 먼저 안 보냈어요. 쪽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와 같이 응답하였다.

“그런 적은 없어요. 원래 쪽지가 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와 같이 채팅방도 만들지 않고 먼저 남성에게 성매매를 위해 접근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43명 중 9명이었다.

<p><b>□ 먼저 쪽지를 보내거나 대화 시도</b></p> <p>2. 네. 버디버디에서요.</p> <p>7. 채팅목록 보고 먼저 쪽지 보낸 적 있어요.</p> <p>11. 제가요? 그 등록 막하는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디를 등록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아이디를 등록 해요. 그 아이디가 접속해 있으면 다시 만나요. 먼저 대화를 걸어서.</p> <p>13. 쪽지를요? 네. 그런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곡역 만남이라고 해놔서 제가 저 목동인데 가까운데 조건 하실래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채팅방을 만들었죠.</p> <p>14. 네. 어떻게 했어요? 조건만남 하자고. 어디에서? 버디. 싸게 해줄테</p>	<p>니까. 왜? 이때 너무 안 구해졌어요? 네. 죽을 뻔했어요. 졸려서. 그 언니랑 같이 있는데. 졸잖아요, 그럼 막 깨워요.</p> <p>15. 네. 사이트 보고 핸드폰 보고 연락해요.</p> <p>24. 대행 사이트 올려놓으면 거기가 연락 오거나 문자로 보내는 게 있어요. 쪽지 같은 건데 문자 비슷하게 써 있어요. 보내거나 오늘밤 누구누구 나이는 몇 살인데 몸매는 어떻고 보내잖아요. 쪽지가 와요. 사이트 안에서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고 옛날 만났던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요. 예전에 만났던 누구인데 오빠 시간 되냐고? 그러는데요.</p>
--	--

27. 있어요. 그냥 그런 비슷한 방이 있어요.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걸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28. 네. 제가 술마시자고. 오빠 몇 살이야? 나이가 많은 거 같아요. 아 그럼 대화 걸어.
29. 제가 룸메이트 연락처 보고 전화했어요.
30. 네. 친구 도와 줄때요. 방에 들어가면 쪽지를 먼저 날려요. 쪽지가 오면 거의 5명에서 2명 빼고 3명이 답장이 와요.
31. 거기 방이 만들어 지면 들어가서 얼마에 가능하시냐고 대화해요.
32. 여기에 온 애들 전부다 세이나 버디해서 했을 걸요. 경찰에서 그 운영자한테 뭐라고 했을 거잖아요. 지금은 세이는 방 인원수를 확인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옛날에는 자유분방 했죠. 채팅방에 들어 간적 있어요. 조건 하려고. 제가 방 만드는 건 안 되니까. 제목도 바꾸려면 돈이 들고, 제목도 제한이 있어요. 남자가 만들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서로 인사하고, "조건"이라고 물어봐요. 그럼 조건이면 '응' 이라고 대답 해죠. 그렇게 해서 만나요.
36. 네. 채팅사이트에 들어가요. 그 오빠가 19살이에요. 여친이랑 깨졌는데 그 여친이랑 했는데 그 여친이랑 살려고 했는데 그 여친이 아프다고 해서 자기가 방을 만들었대요. 제가 먼저 말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랑 사귀실래요? 그랬더니 바로 승낙하시네요. 너 정말 마음에 든다고 나랑 오늘 만날래?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남친 만난다고 하고 그 남자 집으로 갔어요. 방

도 깔끔하고 음료수도 줬는데 거기에 뭘 탄거예요. 제가 눈치가 빨라요 거기에 왜 가루가 있어요. 제가 안 먹고 쏟아 버렸어요. 제가 물 먹고 있는데 허리를 감싸 안는 거예요 강제로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옷 벗기고 했어요.

39. 네. 안 걸렸을 때요. 방을 남자도 만들어요. 방을 만든 그 남자한테 쪽지를 보내요.
40. 네. 조건하세요 채팅방에 방제가 있어요. 조건만남 매너만남 이런 거요. 그러면 먼저 물어봐서 의견 맞으면 해요.

#### □ 성매매를 위한 채팅방 개설

3. 제가 먼저 접근한 적은 없어요. 저는 대화방 만든 것 밖에 없어요. 대화방 만들고, 남자가 올 때 까지 기다려요. 한번은 길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와요, 술 취한 것 같았는데, 오늘 시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알잖아 이러면서 30줄게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오면서. 그래서 택시타고 집에 갔어요. 그런적 5~6번 정도 있었어요.
4. 채팅방 만들면 알아서 대화가 걸려요.
5. 저는 있죠. 채팅으로. 채팅방 만들어서 조건 하실 분. 이런 식으로.
6. 대행사이트에 사진 이런거 다는 안 올리고, 쪽지 남겨주세요, 이렇게만 올린 적 있어요.
12. 먼저 방을 만든 적은 있어요.
18. 아니요. 그냥 방 만들어 놓고, 게임하고 있다가 들어가 보면 대화와와있어서.
21. 아니요 전 기다려요. 그때 아는 언니가 하라고 했을 때 네가 먼저 한

<p>적은 없어? 네. 켜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하는 것도 무서운데 그냥 게임하고 있어요.</p> <p>25. 없어요. 그냥 쪽지가 와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방을 만들면 자기들이 와서, HI 어때요? 그래요.</p> <p>34. 제가 먼저 접근한 적은 없어요. 방을 만들어요.</p> <p>35. 아니요. 방을 만든 적은 있는데 쪽지는 먼저 안 보냈어요. 쪽지 올 때까지 기다려요.</p> <p>37. 아니요. 저는 그냥 방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p> <p>38. 먼저 방을 만들고 기다리는 거예요.</p> <p>42. 아니요. 방은 만들어 봤는데 먼저 말은 건 적은 없어요.</p> <p>43. 아니요. 그냥 방만 만들어 놓는데요.</p> <p><b>□ 기타</b></p>	<p>26. 불쌍한 척 하죠.</p> <p><b>□ 없음</b></p> <p>1. 아니요.</p> <p>9. 이상한 대화가 와요. 그럼 키스알바. 아니면 대화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있으면 그런 쪽지가 와요.</p> <p>10. 아니요. 알아서 오니까요 제가 힘들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p> <p>17. 없어요.</p> <p>19. 아니요.</p> <p>20. 그런 적은 없어요. 원래 쪽지가 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p> <p>23. 없어요. 언니들이 구해서 같이 했어요.</p> <p>33. 없어요.</p> <p>41. 아니요 없어요.</p>
--	--

#### 차. 인터넷성매매 암호와 신호

인터넷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채팅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성매매용어에는 ‘zz, o2, z1, 1z, ss, hz, 건조, 몇 대 몇 zzz, 입사(o2), 열사(o2), 질사(zs), 후장(hz), 69, 노콘, 비건, 일, 알바, 조건, 번개, 만남, 10(액수), 1시간10, 오늘밤20, 한번에 10, 지역이름, 심심한데놀아줄 사람, \*여자만, \* 갈 곳 없는 여자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1 이려고 하는 거 용어 말 못 하잖아요. 모음을 안 하는 거, 약자로 해요.” 와 같이 주로 단어를 다 쓰지 않고, 자음만 사용하여 약자로 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많았다.

이렇듯 인터넷성매매 접근시 직접적인 용어표현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암호나 신호를 이용하고 있었다.

2. 일단 방을 만들 때 대 놓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자자를 쓰거든요. 그걸로 방제를 쓰고요. 조건만남 할 때 쓰는 말인데, 원래 자기 이잖아요. 근데 못 쓰게 되어 있나 그럴걸요.
3. 자자하면 조건만남 하는거고, 다른 암호는 없고, 남자들이 안 걸리려고 공중전화 쓰고, 자기들이 먼저 나간다고 하고, 걸려도 서로 안 불기로 하고, 만약 걸리면 그냥 아는 오빠라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등포매너 이렇게 방 만들고, 또 섹스할오빠를 다 띄어서 쓰면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급만남 급매너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5. 가명 쓰잖아요. 가명으로 해놓고, 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하는 거죠.
6. 자기, 으리
7. 자기, 1시간 10, 지역이름 쓰면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8. 애인대행 사이트 들어가면 비건은 성관계 하는거고, 건전은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렇게 애인처럼 만나서 돈 받는 걸 건전이라고 해요. 쪽지 오면 비건이세요 건전이세요 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일 나간다' 하면 조건하는 거예요.
9.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 없는 쪽으로 PC방으로 가던가.
10. '으리', '입사' 는 입에 사정, '얼사' 는 얼굴에 사정.
11. 거의 차 있는 분들은요, 심심한데 몇 시간 놀아줄 사람? 그렇게 만들어요.
12. 버디 창에다 조건이라고 쓰면 아예 아이디가 삭제되니깐 '자기' 으로 해요. 그거만 해도 아니까.
13. 그런 것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조건이긴 한데 그 중에서 그냥 만나서 놀자고 하는 쪽지도 와요. 그럼 저 조건이라고 말하면, 저랑 조건하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도 있고.
15. 없어요. 아예 그냥 대화방에 써 봤기 때문에.
16. 없어요. 옷 그냥 뭐 입고 있어? 차 번호 뭐야?
18. 없어요. 요즘은 자기도 걸려요. 그래서 그냥 조건이나 만남이라고 해요.
19. 그냥 뭐 질사, 열사, 후장, 입사, 오랄 이런 것.
20. 만남, 번개, 아니면 술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술 한잔 하실래요. 이거는 대가가 돈이 아니고 술이에요. 술을 마시는 대신에 몸을 주는 거예요.
21. 만남. 그냥 만남이 조건이에요.
22. 자기 하거나 건조, 만남이요.
23. 한동안 "자자" 이잖아요. 쪽 써요 그거 조건으로 알아요. 자자, 건조라고 해서 조건이라고 알아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만약에 여기가 목동이라면 목동 무슨동 지금 만나실분 하면 조건이줄 알고 와요.
24. 근데 그런 거 딱히 없는 거 같은데, 애인대행 이렇게 써 놓으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노는 거로 알고. 20 써놓고 오늘밤20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이렇게 20하면 눈치 가게 되죠.
25. 자기, 사사
26. 내 방이 이제 조건방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 사는 지역 쓰고 여자면 알아요.

27. 그냥 인천이면, 충남이면, 대전이면 이런 식으로 방을 만들어요.	37. ㅈㅈㅈ요. 제가 구리에 있으면 ‘구리 ㅈㅈㅈㅈ’, ‘몇 대 몇 ㅈㅈㅈㅈ’ ‘요. 몇 대 몇은 뭐야? 저랑 상대방 남자랑 1대1일 할 수도 있고요. 제 친구랑 저랑 그 남자랑 1대 2방식으로 두 번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사정을 두 번 하는 거요.
28. 전 잘 모르겠어요.	38. 그러니까 매너아찌들 그러고요
29. 버디버디 채팅 보고서 다 거절했어요.	39. 한번에 10, 이런 것도 많고 노콤, 질사.
30. 용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약자는 거의 69가 있거든요. 아니면 알바하실래요? 물어봐요. 알바가 조건이야? 네.	40. 몇 살이야?
31. ㄱㅇ 이런 식으로 해서요, ㅇㅈ 이런 거 써 놓고요. ㅇㅈ는 뭐예요? 하자요. 열사, 입사, 질사 그런 거 이런 거 다 약자로 써요.	41. 아니요 없어요.
32. ㅇㄹ, 육구.	42. 방은요 * 여자만, * 갈 곳 없는 여자만
34. ㅈㅇ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막아놨어요.	43. ㅈㅇ 이려고 하는 거 용어 말 못 하잖아요. 모음을 안 하는 거, 약자로 해요.
35. 딱 보면 알아요. ㅈㅇ으로 아는 거예요.	
36. 건조	

## (2) 혼돈단계

### ① 인터넷성매매의 계기

인터넷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가출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응답한 청소년 43명 중 23명의 청소년이 “가출해서, 돈이 필요해서, 근데 그 돈이요, 생활하는데 써야 되는데 머리하는데 다 썼어요.”, “집 나와서 생활해야 되니까요.”, “잘 데 필요하고 돈 필요해서요. 애들이 가출하면 돈이 없잖아요. 거의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보도 뛰는 애들도 있고.” 와 같이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는 용돈이나 유희비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이다. 43명 중 8명의 청소년이 “PC방비가 없어서요. 화장품도 사고.”, “돈이 필요했어요. 용돈이요. 집에서 용돈을 잘 안주니까요.”, “돈 벌고 싶었고,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화장품도 사고 싶고.” 등과 같이 응답하였다.

셋째는 친구의 권유나 친구의 압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이다. 43명 중 5명의 청소년이 “친구 때문에 친구 권유로.”, “(친구가)그냥 막 욕하면서. 할 때는 자세한 내용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뭐 자기가 조건남을 구해 줄 테니깐 조건남 오면 하라고 했어요. 그 돈은 개가 다 가지고 갔어요.”, “친구가 시켜서요.” 등으로 응답하여 친구의 권유나 압력으로 인터넷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출을 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 외의 기타 응답으로는 “친구가 사고 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처음에 돈 때문에 제가 쓸 곳이 있어서. 되게 급했어요. 친구랑 돈 얘기하다가 조건만남 얘기가 나와서 친구가 알려 줬어요. 그렇게 했어요.”, “야동 보고 호기심 때문이에요.” 와 같은 응답이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이 인터넷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계기는 가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생활비, 유흥비 마련)의 해결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었다.

□ 가출	서요.
1. 가출해서 갈 곳도 없고, 배고파서요.	22. 집 나와서 생활해야 되니까요.
2. 가출해서. 네 돈이 필요해서. 근데 그 돈이요, 생활하는데 써야 되는 데 머리하는데 다 썼어요.	23. 가출해서 용돈이 필요해서요.
5. 그날 잘 데가 없었어요.	24. 생활비요.
7. 가출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친구가 알려줬어요.	25. 잘 데 필요하고 돈 필요해서요. 애들이 가출하면 돈이 없잖아요. 거의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보도 뛰는 애들도 있고.
8. 그때 가출해서 돈이 없어서. 저랑 네 명이 있었는데요, 방도 구해야 되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26. 친구 하는 거 보고요. 애가 나갔다 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도 가출해서 돈이 없고, 친구한테 계속 신세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요.
9. 집을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요.	27. 가출해서 돈 없어서요.
11. 가출 때문에 했죠.	28. 제가 집을 나왔거든요. 말 안 듣고 답답함밖에 없었어요. 담배도 다 피고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인터넷에서 만나서 모텔에서
13. 친구가 4명 있었는데 1명만 조건만남을 했는데. 그게 미안해서 다 같이 조건만남해서 먹고 자고 했어요.	
16. 가출해서요.	
18. 집 나와서 돈 없고 갈 데가 없어	

잠만 자면 된대요. 10년 된 친구예요. 그 친구랑 같이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29. 가출하려고 룸메이트를 알아 보려고 했었어요. 그때 알아 봤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상관안하고 미성년자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심심해서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예요.
37. 가출 때문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38.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돈도 필요 했고 잘 때도 필요 했어요. 가출했어? 네
39. 가출해서 돈이 없었죠. 돈이 왜 필요했어? 먹기도 해야 하고 잘 때도 있어야 하고 옷도 사야하고 솔직히 집에 들어가서도 했어요. 돈 쉽게 버니까요.
41. 가출해서 돈이 필요해서요.
42. 가출해서 돈 필요해서요.
43. 언니들이 돈 벌려고 하는데 난 안 하고 그러니까 같이 돈 벌려고요. 그 돈이 어디에 필요 했어요? 모텔 방 잡고 밥 먹고요.

#### □ 용돈 및 유희비 마련

3. 생활비도 그렇고 친구랑 엄마한테 미안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렵고.
4. PC방비가 없어서요. 화장품도 사고.
10. 돈이 필요했어요. 용돈이요. 집에서 용돈을 잘 안주니까요.
14. 돈 벌고 싶었고,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화장품도 사고 싶고.
15. 돈 좀 많이 벌려고요. 돈 좀 많이 벌어서 뭐하게? 아니요. 제가 17살

때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그러다 알바만 하다가 알바는 한달에 한번씩 월급 받고 그러잖아요. 제가 돈도 막 쓰고 그랬는데 그 월급도 부족하고 그래서요.

31. 처음엔 용돈 별이요.
33. 돈이 없어서요. 집이 잘 못 살았거든요. 엄마가 돈을 안 주는데, 한번이면 3.40만원씩 준다고 하니깐 후 하잖아요 그래서요.
40. 돈 때문이에요. 용돈도 부족하고 사고 싶은 물건 있는데 용돈이 부족해서요. 옷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요 제가 꾸미는 거요.

#### □ 친구의 권유 또는 압력

12. 친구 때문에 친구 권유로.
17. (친구가)그냥 막 욕하면서. 할 때는 자세한 내용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뭐 자기가 조건남을 구해 줄 테니깐 조건남 오면 하라고 했어요. 그 돈은 개가 다 가지고 갔어요.
19. 친구가 시켜서요.
21. 권유한 그 언니가요 그걸 하면 돈을 대게 많이 벌 수 있대요. 자고 먹는 것도 다 해결되고 옷도 해결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34. 그 오빠랑 제가 동의를 해서 알선해서 하게 됐어요.

#### □ 기타

1. 그리고 호기심에.
20. 친구가 사고 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30. 친구 때문에, 친구 부탁.
32. 처음에 돈 때문에 제가 쓸 곳이



<p>있어서. 되게 급했어요. 친구랑 돈 얘기 하다가 조건만남 얘기가 나와서 친구가 알려 줬어요. 그렇게 했어요.</p>	<p>35. 번개보다는 조건이 낫다고 생각해서요. 36. 야동 보고 호기심 때문이에요.</p>
---	--

② 인터넷성매매 경험과정

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호기심에 의한 (자발적인) 인터넷성매매

인터넷성매매 자발성에 대한 질문에 43명 중 절반이 넘는 28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원해서 했다고 응답하였다. “돈 없어서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했다가 계속 하다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했어요.”, “스스로 원해서요. 야동 보다가 여자들도 흥분되고 한 번 해볼까 호기심으로 했는데” 와 같이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호기심으로 하게 되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그리고 43명 중 5명의 청소년은 강요나 압력에 의해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저한테 협박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 언니가 그걸 계속 했었어요. 전 그걸 몰랐어요. 돈을 빌려 온다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언니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내가 몸이 아프니깐 네가 한번만 하면 안 되냐고. 그건 좀 아닌 거 같다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럼 넌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계속 그렇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마지막으로 43명 중 9명의 청소년은 주위의 권유에 의해 인터넷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분위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출했는데 ..... 너도 해 왜 나만하는데.”, “친구가 임신을 했대요.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5번 정도만 해달라고.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하게 됐어요.”, “친구한테 들어서 같이 했어요. 친구가 제안 했어요.”

이처럼 인터넷성매매는 청소년 자신의 호기심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한 자발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강요를 거부하지 못하거나 거절하지 못해서 빠져드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 자발적

1. 네 돈이 없으니까.. 배고프고. 친구랑 가출했을 때라서요.
2. 자발적으로.
3. 제가 스스로 했어요. 그 때 저는 성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친구가 중1 때 처음 했어요. 개가 하면 맨날 뭐 사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돈을 못 쓰잖아요. 애들은 끝까지 저보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제가 한다고 했어요. 애들이 말렸는데도 제가 스스로 한다고 했어요.
4. 돈 없어서 스스로 한 거예요.
5. 돈 없어서.
6. 아는 언니가 하는 것 보고. 가출을 했는데 세이클럽에 접속해 있었는데, 막 그런 쪽지들이와요.
7. 스스로.
8. 전 제가 위해서 했어요.
9. 제가요. 필요해서.
10. 자발적으로요.
13. 원래는 그때 그런 것 몰랐는데, 집을 나갔는데 친구가 그걸 하길래. 혼자 하고 와서 친구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그때 4명이 있었는데 개 혼자만 했거든요. 미안해서 4명이 다 같이 한거죠.
15. 스스로요.
16. 그러니까요 제가 심심하다고 채팅방 개설하면요 대화가 와요 알바 하실래요? 꼬득여서요.
20.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한거죠. 이유가 다 있었으니까 친구가 돈이 필요하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고를 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한테

- 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빌릴 사람도 없고. 답답해서 버디버디 채팅방에 가서 돈 빌릴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몸만 원해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꾸 그 날짜는 다가오고 소년원에 가야 돼서 돈을 구하기 위해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성관계가 처음이 아니고. 그런 걸 하니깐 제 몸을 버린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2. 그냥 애들하고 자취할 때 돈이 없었어요. 6명이서요 자기가 별어서 먹을 건 해야 하는데 집 나온 상태에서 알바 구하기 힘들잖아요. 제일 빠른 게 조건만남이었어요.
23.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같이 사니깐 돈을 쉽게 버니깐 돈을 쉽게 쓰잖아요. 버는 거는 많이 버는데 쓸려고 하면 당장 없는 거예요. 가스가 끊긴 적이 있어요. 겨울에 춥잖아요. 언니들하고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그래서 다 조건해서 40만원 벌자고 했어요.
26. 한번 뭔가 해봤는데. 스스로.
27. 그땐 돈 없어서 스스로 했어요.
28. 돈이 없어서 했긴 했는데, 성관계는 아 맺었는데 하려고 강제로 하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술 먹자고 만난 건데. 친구랑 같이 나갔는데, 방을 따로 잡자는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잡겠구나 했는데, 성관계를 하려고 개네가 일부러 그렇게 한거였어요. 근데 전 안했고 제 친구는 술 먹고 돈도 안 받고 그냥 했어요.

<p>29. 스스로요.</p> <p>31. 제가 스스로 했어요.</p> <p>33. 스스로요.</p> <p>35. 스스로 원해서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했다가 계속 하다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했어요. 처음 친구가 옆에서 하는 데요 저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 했어요.</p> <p>36. 스스로 원해서요. 야동 보다가 여자들도 흥분되고 한 번 해볼까 호기심으로 했는데 제가 7번 정도 했어요. 받은 억지로 했고 받은 제가 스스로 했어요. 왜 억지로 했어요? 술 먹다가 홈플러스 뒤쪽에 술집이 있어요. 그 대학생이 저한테 몇 살이냐고 그래서 저 그때 가발 쓰고 친구들이랑 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 혼자 술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대학생이 손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 남자가 몇 살이냐고 해서 20살이라고 속였어요. 같이 술 드실래요? 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술 먹는 다음에 소맥 먹고 소주 3병이상 먹고 맥주 500c 두잔 먹고 담배 피고 같이 호텔 갔어요. 그 남자한테 돈은 받았어요? 4만원이요.</p> <p>37. 스스로요. 친구 때문에 알게 되서 하게 됐어요.</p> <p>38. 스스로요.</p> <p>40. 친구랑 지내다 보니깐 돈이 필요해서 호기심에 하게 됐어요.</p> <p>41. 제 스스로 했어요.</p> <p><b>□ 강요</b></p> <p>11. 강제로 했어요.</p> <p>14. 강제로. 일 같은 것 했었어요. 자랑 여자애들 두 명 있었고, 사장 있었고, 남자를 부르는 그런 직업이</p>	<p>있었어요.</p> <p>17. 친구 때문이에요. 친구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협박해서 하게 된 거예요.</p> <p>19. 시켜서요. 그러니까 서울컴터에 있을 때 하루 외박하고 노는게 좋아서 일주일 안들어 갔어요. 강제 퇴소를 당해서 갈 때가 없었는데 컴퓨터에서 아는 친구가 자기 집에 오라고 했어요. 개네 집에도 엄마가 없어요. 아빠랑 남동생 이렇게 지내는데. 근데 거기서 계속 지낼 수가 없잖아요. 신도림인가 그 친구가 아는 언니랑 얘기해서 그 언니가 저한테, 재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 줄 아냐고,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네 집에서 잔건 이틀인가 밖에 안돼요. 모텔비로도 많아야 8만원에 차비 이런 것 쓴 거 1만원이에요. 그러면 9만원, 10만원도 채 안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건을 잡았어요. 그때 조건이 뭔지도 몰랐어요. 셋이서 PC방에 갔어요. 저보고는 그냥 게임을 하래요. 둘이서 뭘 해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더니 나가재요. 나갔더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갈테니까 저보고는 그 남자랑 가서 그 남자가 씻을 때 도망을 나오래요. 차음엔 뭘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진짜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돈을 먼저 주고, 돈을 받고 둘이서 먼저 갔어요. 가고 나는 그 아저씨 차를 타고 모텔에 갔는데. 그 때부터 전 무서운 거예요. 몸이 떨리고 다리 후덜덜 거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씻으러 갔을 때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막 뛰어 나왔거든요. 막 떨렸어요. 나왔어요. 처음에 15만원 있었는데 그 돈이면 제가 빚진 돈 다 갚</p>
---	--

고도 남는 거 같아요. 근데 나왔는데 또 다른 곳 가야하는데요. 이번엔 젊은 아저씨인데 20만원 주고, 가고 (친구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모텔을 샀어요. 아저씨가 들어가고, 원래 20만원 이었는데, 10만원은 먼저주고, 10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오래요. 그 아저씨 씻으러 가는 동안 제가 바지 뒤져가지고 10만원을 빼냈어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딱 나온 거예요. 저보고 씻으래요.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통에 앉아있는데, 아저씨가 문 두드려요. 문을 열었는데, 돈을 내놓으래요.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하려고, 이거 원래 나 줄 거 아니냐고. 끝나고 줄테니까 그 돈을 다시 주래요. 다시 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씻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보고 저한테 옷 벗고, 누우라고 했어요. 못 벗고 있으니까 막 벗겨서, 근데 제가 생리중이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왜 말 안했냐고, 2만원 주면서 찜질방이라도 가래요. 제가 떨면서 울고 있으니까 개 친구랑 언니가 제가 신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서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친구가 언니 나서 지내기 불편하지 하면서 나가자고. 그래서 친구랑 나와서 그 돈으로 여인숙을 잡고 방을 잡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했어요. 친구가 해야 된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17만원을 받고 왔어요. 도망치려면 잘 쳤는데, 걸릴 때가 더 많았어요. 한 번은 도망치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빼면 불이 꺼진다는 걸 몰랐어요.

키를 빼니까 불이 꺼지니까 그 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런 적도 있고. 거기가 제물포예요. 제가 제물포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거기서 친구를 만났는데, 개 말고 남자가 2명 더 있었거든요. 거기서 술을 먹고, 집에 안 들어갔다고 잠만 재워 달래요. 우리는 밖에서 놀고 들어갔는데 아직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고맙다고 하고 갔어요. 근데 새벽에 누가 와서 창문에서 불러요. 봤더니 낮에 왔던 애 한 명이랑 2명은 다른 애가 왔어요. 왜 왔냐고 하니까 놀재요. 비도 오고 하니까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개네가 자꾸 술을 먹자고 해서 술을 사와서 개네끼리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잠들려고 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남자가 제 친구한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고 했어요. 제 친구는 남자들이랑 좀 그래요 원래. 그 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개네는 없고 친구가 저를 췌려보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저 때문에 왔던 애들이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제 남자가 무서워서 못하겠대요. 원래 하지도 않았는데. 알았다고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조건 잡는 건 그 친구가 하고 내가 조건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취방으로 옮겼어요, 돈을 모아서. 한번은 경찰이었는데 친구가 10만원 가져가고, 경찰이 팔을 잡고 지갑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찰이라고. 친구를 불러오래요. 돈 받아간

애를. 불러서 같이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받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하고 친구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대로 말한 게 아니라 지어서 돌려서 말을 해요. 한번 또 걸렸어요. 거기서도 친구가 말했어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알바를 하겠다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살자고. 그랬더니 알바하는 건 좋은데 그럼 한달 동안 뭐 먹고 살거냐고 그래요. 제 핸드폰도 개가 다 써요. 핸드폰비는 제가 제 몸 팔아서 개가 다 쓰고, 방세내고, 전기세 내고, 밥 사먹고, 개 옷 사주고, 제 옷은 안 사고, 친구랑 노는 것 대주고 한 70만원인가 있었는데 그걸 달래요. 그 친구들 옷사주고 속옷 같은 것도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술 사주고. 그렇게 70만원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안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같이 살자고 했었는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오빠한테 연락해서 오빠 집에 친구랑 같이 간 거예요. 오빠가 왜 친구랑 같이 왔냐고 언제 갈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확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옆에 나갈 수 있는 현관문이 있어요.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그 상태로 친구를 두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친구가 포주였던 거잖아요. 근데 누구 형사인데, 내가 포주라고 수배가 났는데, 잡으면 얼마를 주겠다고 문자를 다 보낸 거예요. 싸이를 들어갔는데 방명록이 난리가 난거예요. 몇 년 동안 알던 친구들이 저를 잡으려고 수소문하고 난리가 난거예요. 쉼터 들어가서 웃지도 않고 그냥 마네킹처럼 그

렇게 지냈어요. 우울증도 걸렸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웃는 연습도 하고. 쉼터에서 치료 받자고 해서 갔는데, 우울증이랑 애정결핍이 심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제가 진짜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약도 다 버리고 쉼터 그냥 뛰쳐나오고.. 근데 어떤 친구랑 연락이 됐어요. 그 친구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개도 문자가 갔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애를 믿고 나갔어요. 계속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그 동안 뭐했냐, 어디에 있었냐, 그런 것 물어봐서 이것저것 말해주고 있는데, 제 친구 뒤에서 오는 애들이 보여요. 제 뒤에서 왔으면 몰랐을텐데. 진짜 그러는 것 아니라고 하고 막 도망을 왔어요. 사람 만나기도 되게 무서웠고, 믿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21. 그때는 아는 언니가 한 번 하라고 해서요. 그 언니가 그걸 계속 했어요. 전 그걸 몰랐어요. 돈을 빌려 온다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언니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한번만 하면 안 되냐고. 그건 좀 아닌 거 같다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럼 넌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계속 그렇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 □ 친구의 권유에 의한 자발성

12. 처음에는 그냥 지금은 아예 인연 끊어졌는데 친구 한명이 있었어요. 제가 집 나온 상태였고요. 친구랑 연락하면서 돈도 없고 친구한테 말한 번 해봤어요. 그 친구가 버디버디 채팅방 해갖고 하면 조건남님이

<p>라는 거 있다고 그런걸로 하면 돈 번다고 방법을 알려 줬어요.</p> <p>18. 친구랑 같이 집 나와서 지냈는데, 돈 벌고 싶다고 하니까 친구가 알려 줬어요.</p> <p>24. 분위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출 했는데 나만 안할 수는 없잖아요. 반강제? 그럼 친구들이 권했어? 장난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안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너도 해 왜 나만하는데.</p> <p>30.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친구가 남자친구랑 관계를 했대요. 근데 친구가 임신을 했대요. 부모님한테 말하기 그렇잖아요. 저한테 도와달라는거예요. 제가 임신경험이 있거든요. 낙태를 했는데. 임신경험을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저랑 개랑 같은 경험, 환경이 똑같고 비슷하고 개도 부모님도 없고, 저도 엄마랑 살고, 불쌍하니까. 5번 정도만 해달라고.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 지우려면 130만원 정도 든대요. 산부인과를 가봤대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하게 됐어요.</p> <p>32. 친구가 저한테 조건만남이라고 처음에 알려 줬어요. 저는 그 때 생각이 없었고 일단 그 나이 때는 아무</p>	<p>것도 없이 돈만 받는 게 좋다. 이런 생각으로 채팅을 했고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는 안 했어요. 제 친구가 제 핸드폰번호를 알려 준거예요. 연락이 왔고 하기 싫었는데 제 친구가 가격을 15만원 불렀어요. 솔직히 어디서 15살이 15만원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친구가 같이 따라 가준대요. 뒤에서 따라 가준다고 일단 가보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강제인거 같아 스스로라고 생각해? 반반이요.</p> <p>34. 설득 받아서 했어요. 아는 오빠요. 별로 친하지는 않은데 어쩌다 알게 됐어요. 그 오빠가 여자를 시키는데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설득 당해서 했어요. 같이 돈 벌어보자 속여가지고요. 어디서 그랬어요? 구리요. 그 오빠 나이는? 지금은 23살이에요. 그게 재작년 작년이요. 강제네? 반강제죠. 저도 동의를 했으니깐.</p> <p>39. 친구한테 들어서 같이 했어요. 친구가 제안 했어요.</p> <p>42. 가출 했는데 갈 데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소개 받았어요 가출 같이 한 애들한테요.</p> <p>43. 처음에는 언니들이 하라고 해서요. 가출카페 언니들이요. 자기들도 하니깐 저도 하라고 하는 식으로요.</p>
---	---

#### 나. 첫 인터넷성매매 연령

첫 인터넷성매매 연령은 응답 청소년 43명 중 16세와 17세라는 응답이 각각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9명, 18세 5명, 14세 3명, 13세와 19세가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첫 인터넷성매매에 빠져드는 청소년의 연령이 대부분 저연령인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p><b>□ 13세</b></p> <p>34. 13살 말이요.</p>	<p>29. 16살.</p> <p>33. 16살.</p> <p>36. 중 3때요.</p> <p>38. 16살이요.</p> <p>39. 16살이요.</p>
<p><b>□ 14세</b></p> <p>2. 14살 때요.</p> <p>6. 14살 정도.</p> <p>42. 중1이요.</p>	<p><b>□17세</b></p> <p>8. 17살 말에요.</p> <p>10. 17살 12월말에요.</p> <p>13. 17살때요. 딱 일년전이에요.</p> <p>15. 17살요</p> <p>19. 17살요.</p> <p>28. 17살.</p> <p>30. 17살이요.</p> <p>31. 17살.</p> <p>35. 고1이요.</p> <p>37. 17살이요.</p> <p>41. 17살이요.</p> <p>43. 17살이요.</p>
<p><b>□ 15세</b></p> <p>3. 15살.</p> <p>7. 15살</p> <p>9. 중2요.</p> <p>12. 중2요. 15살.</p> <p>17. 15살요</p> <p>23. 15살요.</p> <p>25. 근데요 아저씨들이랑은 안 해봤어요. 그냥 학생 남자친구랑. 14살 때 아니면 15살 때.</p> <p>32. 15세요.</p> <p>40. 중학교 2학년 때요</p>	<p><b>□ 18세</b></p> <p>5. 작년에 처음 했는데. 18살. 겨울</p> <p>21. 18살요</p> <p>22. 고2요 18살요</p> <p>26. 18살.</p> <p>27. 18살.</p>
<p><b>□ 16세</b></p> <p>1. 작년 겨울이요. 16살.</p> <p>4. 중3, 16살 때요.</p> <p>11. 16살요.</p> <p>14. 중3 2학기 때. 16살.</p> <p>16. 중 3때 후반요</p> <p>18. 16살.</p> <p>24. 16살 1월.</p>	<p><b>□ 19세</b></p> <p>20. 19살. 올해 처음이었어요.</p>

#### 다. 인터넷성매매 첫 접촉경로

인터넷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촉한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43명 중 24

명의 청소년이 “채팅방에서 있으면 쪽지가 와요.”, “채팅하다가 알게 됐어요.”, “버디버디 채팅 하다가요.” 등의 내용처럼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를 접촉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는 친구나 주위사람을 통해 성매매사이트를 처음 접촉하게 되었다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43명 중 16명의 청소년은 “가출카페 언니들이 알려줬어요. 그거 버디로 구했어요.”, “친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건만남 해봐라. 어디 사이트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셋째는 43명 중 3명의 청소년이 채팅사이트 외에 다른 애인대행사이트나, 일반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처음 접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대행이라는 사이트가 나왔어요.”, “헬프몬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어요.”, “룸메이트 구하는 사이트요.”

여자청소년이 인터넷성매매를 처음 접하는 경로는 주로 채팅사이트가 가장 많았고, 친구나 주위 사람의 권유로 접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 □ 채팅을 통해

1. 버디버디쵸.
3. 버디버디 채팅이요.
4. 버디버디 채팅이요.
5. 버디버디 채팅방.
6. 사이트에서 쪽지로.
7. 채팅방에서 있으면 쪽지가 와요.
9. 처음에는 채팅을 버디버디를 몰랐단 말이에요. 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그냥 채팅들어가서 놀았는데, 그런 쪽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10. 세이클럽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메신저 타키 많이 이용했어요.
13. 채팅하다가요.
16. 버디버디랑 세이클럽요.
18. 버디버디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친구가 거기서 조건구한다고 알려

줬어요.

20. 버디버디에서. 사람 많은데 노래 듣고 하는 데. 근데 쪽지가 막 와요. 저는 그냥 인천방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21. PC방 들어갔다가 인터넷을 켜고 버디버디를 깔아요. 채팅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연락을 해요.
25. 채팅하면요, 사람들이 쪽지가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살 몇 살인데 드라이브 어떠세요? 그럼 얼마 주실 건데요?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되고요.
27. 버디버디 채팅하다가요.
28. 버디. 조건이라고 오잖아요(채팅).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뭐냐고, 계속 온다고 그랬더니 그거 안 좋은 거라고 단으래요. 근데 채팅을 해서 남자를 구해가지고, 만나



서 술 먹고.. 처음엔 재미있었어요. 술 사주니까.

- 30. 버디버디하고, 세이클럽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 세이클럽은 제 친구가 알려줬고요, 버디버디는 하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쪽지가 날아와요. 처음에 조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조건이 뭐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 33. 인터넷에 채팅사이트가 있는데 친구들이랑 놀려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쪽지가 와서 했어요.
- 35. 버디버디요.
- 36. 버디버디 채팅 하다가요.
- 37. 버디버디 채팅 하다가요.
- 38. 그냥 방을 찾아 보다가요. 버디에서? 네 우연히 알게 된 거야? 네
- 39. 채팅하다가 알게 됐어요.
- 40. 찜질방에서 친구랑 채팅방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가 대화를 갑자기 거는 거예요. 이거 해볼래? 그래서 그때부터요.

#### □ 친구나 주위사람을 통해

- 2. 저희 동네 어떤 여자애가 했어요. 그게 중1 여름쯤이었는데, 제가 중1 겨울에 가출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돈 벌게 이거밖에 없어서 했어요.
- 8. 사이트요. 조건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는 언니들이 알려줬어요.
- 11. 버디채팅이요? 그거요 저랑 가출한 친구랑 학교도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걔가 먼저 가출했었는데 키알을 쫓대요. 첨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걔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 12. 처음엔 친구 때문에 했는데요. 하다보면 제가 스스로 버디해서 채팅했어요

14. 그 여자애들. 개네가 알려줬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걸 하면 돈 벌 수 있겠구나 해서.

- 17. 그 남자애 때문이에요. 그 남자애가 다 가르쳐 준 거야? 저는 제가 구한 적은 없어요. 그때 맨 처음 했을 때 그 남자애가 버디버디 들어가서 구하는 방법까지 다 걔가 떠운 거야? 구하는 방법까지는 모르고 하는 거 옆에서 봤어요.
- 19. 언니가 버디로 처음 작업을 했어요.
- 23. 같이 사는 언니들이요.
- 24. 옛날 예는 버디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때는 별로 안했고, 제가 직접 할 때는 조건만남 사이트가 있거든요. 애인대행 사이트요.
- 26. 친구가 하는 것 보고. 한게임 하는 것 보고.
- 31. 그거는 친구들. 친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건만남 해봐라. 어디 사이트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
- 32. 친구 통해서요.
- 34. 아는 사람 소개죠.
- 41. 친구로
- 42. 버디버디를 처음엔 알지 못했는데 친구가 알려줘서 채팅방에 들어가면 조건만남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야 해보라고 해서 알게 됐어요.
- 43. 가출카페 언니들이 알려줬어요. 그거 버디로 구했어요.

#### □ 애인대행 사이트 및 일반 인터넷 사이트

- 15. 아르바이트 구하려다가요. 알바 구하다 어떻게? 그냥 아르바이트를 찾는데요, 대행이라는 사이트가 나왔어요. 처음엔 애인 대행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객대행 이런 거. 하객대행이 뭐예요? 예를 들어

<p>누구랑 결혼하는데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 있길래 그걸 하려고 생각 없이 글을 올렸는데 너무 안 걸리는 거예요 애인 대행 이라는 게 있어 서요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15만원 준다고 써 있고 20만원 준다고 써 있고. 그럼 그 거 보</p>	<p>고 한 거예요? 네</p> <p>22. 헬프몬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어요.</p> <p>29. 룸메이트 구하는 사이트요. 네이버 검색창에 찾고 사이트가 없으면 지식인 들어가서 그런 사이트 있나 찾아 봤어요.</p>
--	--

## 라. 인터넷성매매를 위해 접속한 인터넷사이트

인터넷성매매를 위해 접속했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질문에는 43명의 응답한 청소년 중 34명이 버디버디를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요. 고등학생 방인가 중학생방요.”, “버디버디 말고는 몰라요.” 또한 버디버디와 비슷하게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43명 중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클럽이요.”, “세이클럽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의 응답으로는 “헬프몬이 애인대행사사이트예요.”와 같이 성인들만 접속할 수 있는 애인대행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도 있었고, “한게임.”, “네이버를 통해서 룸메이트를 구함을 했어요.”, “넷마블 캐릭챗이요.”와 같은 기타 응답도 있었다.

이들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터넷성매매를 위해 활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주로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이며, ‘세이클럽’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b>□ 버디버디</b></p> <p>1. 버디버디죠</p> <p>3. 버디버디 채팅이요. 한 번 다른 채팅방 들어갔었는데. 버디버디는 방을 만들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방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p>	<p>말걸고 했는데, 대답이 없길래 그냥 탈퇴했어요. 그리고 조건만남을 버디에서 구했잖아요. 근데 그 때는 일주일 정도 조건을 안했어요. 분명히 나는 안 구했는데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요. 다 모르는 사람이어서, 제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여담인가 그런 사이트가</p>
---	---

<p>있대요. 들어가긴 힘들대요. 저도 검색해봤는데 그냥은 안 나와요. 거기에 제 신상이랑 사진이랑 조건 내용이 다 있대요. 들어가서 보니 까 다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제 걸 올린 거예요. 버디에서 제가 올린 거 보고 거기에 올렸나봐요.</p> <p>6. 버디 7. 버디. 12. 버디버디 밖에 없어요. 14. 버디요. 버디밖에 안 해요. 17.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요. 고등학생 방인가 중학생방요. 21. 버디버디 말고는 몰라요. 30. 버디버디하고 31. 버디하고 34. 버디버디 같은 거요. 38. 버디버디 채팅이요. 39. 버디버디 메신저요. 43. 버디요. 11명. 버디버디요. 그 외 9명. 버디버디.</p> <p><b>□ 세이클럽</b></p> <p>6. 세이클럽이요. 10. 세이클럽이요</p>	<p>16. 세이클럽이요. 22. 세이클럽이요. 25. 세이클럽 채팅. 30. 세이클럽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31. 세이클럽이요. 32. 다 세이클럽이요.</p> <p><b>□ 애인대행 사이트 및 기타</b></p> <p>4. playlove도 있어요. 6. 플레이메이트하고, 맨 처음엔 여우와 늑대예요. 거기는 가입절차 뭐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완전 급만남을 위한 사이트예요. 8. 애인대행.. 헬프몬이 애인대행사이트예요. 15. 대행천국, 플레이메이트, 오렌지메이트. 22. 헬프몬 24.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26. 한게임. 29. 네이버를 통해서 룸메이트를 구함을 했어요. 33. 넷마블 캐릭챗이요. 그 곳이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34. 한게임이나</p>
---	---

마. 인터넷 접속 장소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접속한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43명 중 37명의 청소년이 “PC방이요” 와 같이 응답했고, 11명의 청소년은 “주로 집이요.”, “가끔 집에서.” 와 같이 집에서 성매매 상대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네 집. 집에선 엄마가 볼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해요.”, “모텔에 있는 컴퓨터.” 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성매매를 위해 인터넷 접속장소로 이용되는 곳은 PC방

이 대부분이었고, 자신의 집이나 친구집에서도 다수 접속하고 있었다.

<p><b>□ PC방</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PC방</li> <li>3. PC방. 집에선 엄마가 볼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해요.</li> <li>4. 가출 하고 나서 PC방에서요.</li> <li>5. PC방, 모텔, 그리고 집에서.</li> <li>6. 주로 PC방</li> <li>7. PC방.</li> <li>8. PC방</li> <li>9. PC방이요.</li> <li>10. PC방에서.</li> <li>11. PC방</li> <li>12. PC방.</li> <li>13. PC방이요.</li> <li>14. PC방</li> <li>16. PC방이요.</li> <li>17. 다 PC방이요.</li> <li>18. PC방.</li> <li>19. PC방.</li> <li>21. PC방이요.</li> <li>22. PC방이요.</li> <li>23. 거의 PC방이요.</li> <li>24. PC방이죠. 가출했으니까.</li> <li>25. PC방.</li> <li>26. PC방.</li> <li>27. PC방이요.</li> <li>28. PC방.</li> <li>29. PC방.</li> <li>30. 거의 PC방이에요.</li> <li>31. 집이랑 PC방이랑 친구 집이요.</li> <li>33. 주로 PC방이요.</li> <li>36. PC방</li> <li>37. PC방이요.</li> <li>38. PC방이요.</li> <li>39. PC방</li> <li>40. PC방이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PC방</li> <li>42. PC방</li> <li>43. PC방이요.</li> </ol> <p><b>□ 집</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그리고 집에서.</li> <li>15. 집이요.</li> <li>20. 집.</li> <li>23. 아니면 의정부 집이요.</li> <li>30. 가끔 집에서.</li> <li>25. 아니면 저희집요.</li> <li>31. 집</li> <li>32. 그때는 집에서 했어요.</li> <li>33. 집에서도 하고요.</li> <li>35. 저희 집이요.</li> <li>40. 주로 집이요.</li> </ol> <p><b>□ 친구 집 또는 모텔</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친구네 집. 집에선 엄마가 볼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해요.</li> <li>5. 모텔.</li> <li>13. 모텔에 있는 컴퓨터.</li> <li>14. 그 언니네 집.</li> <li>25. 아니면 그 친구집.</li> <li>31. 친구 집이요.</li> <li>34. 그 오빠랑 같이 있을 때는 그 오빠 집에서요. 왜 그 오빠랑 같이 있어? 그 오빠한테 설득 당해서 그 오빠랑 돈을 가지고 오면 반반해서 가지자 설득 당한 거니까요. 그 오빠랑 같이 살았어? 같이 살았죠. 한 보름정도 살다가 그 오빠는 안할 거면 하지 말라고 그러다 안하다가 가출해서 돈이 필요하니까요.</li> <li>36. 친구 집이요.</li> <li>39. 친구 집이요.</li> </ol>
---	--

바. 인터넷성매매 횟수

인터넷성매매를 한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세 번요.”, “4~5번이요.”와 같이 10회 미만으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이 응답한 청소년 43명 중 16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3명은 1회의 경험만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0회 이상 또는 셀 수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43명 중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0번, 100번, 100번 이상, 100-200번, 200번, 200-250번, 2500만원, 300번 이상, 1400만원, 반년간 거의 매일). “셀 수가 없어요. 대충 지금까지 벌었던게 2500만원 정도.”, “셀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요 엄청 많은 남자를 만났거든요. 몇 백 명은 아니고 한 달에 30명이요.” 10회 이상 50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40~50번이요.”, “30~40번.”

인터넷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성매매 횟수를 회상에 의해 기억해 내도록 한다는 것이 다수 무리일 수 있고, 그 수치를 그대로 믿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인터넷성매매 경험이 놀라울 정도로 매우 많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심지어 하루에도 다수의 성매수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1. 세 번요.                                       | 10. 3번이요.                              |
| 2. 200번~250번. 한 2500만원 정도 벌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 11. 한 번                                |
| 3. 셀 수가 없어요. 대충 지금까지 벌었던게 2500만원 정도.           | 12. 5번이요.                              |
| 4. 15번 정도요.                                    | 13.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30, 40번.        |
| 5. 20번은 안 될걸요.                                 | 14. 30번은 넘게 했죠. 그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40, 50. |
| 6. 잘 모르겠는데.. 한 200번.                           | 15. 15~20번사이요.                         |
| 7. 처음 15번 정도 했다가 나중에 강제로 했을 때는 100~200번 정도.    | 16. 3번이요.                              |
| 8. 4명이요. 한 사람을 몇 번 만났는데,, 거의 10번 정도.           | 17. 20번 정도요.                           |
| 9. 일곱 번 정도.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 18. 7~8번.                              |
|  | 19. 모르겠어요. 조금 많아요. 100번은 넘을걸요.         |
|  | 20. 2번이요.                              |

- |   |  |
|---|--|
| 21. 4~5번이요.   | 32. 10번에서 15번사이일 거예요.  |
| 22. 횡수는 잘 모르고 돈은 1400(만원).  | 33. 3회요.   |
| 23. 12번 정도요.  | 34. 셀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요 엄청 많은 남자를 만났거든요. 몇 백명은 아니고 한 달에 30명이요. 거의 똑같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했던 사람이 많으니까요. 반년정도요. 근데 제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쉬는 날이 많았거든요. 저는요 누구 강제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오늘 하지 말자 그런 식이었어요. |
| 24. 세어보진 않았는데, 10번 이상이요.  | 35.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15번이요.   |
| 25. 10번 넘었어요. 같이 술 마셔주고, 같이 자주고.  | 36. 8번이요.  |
| 26. 50번 정도요.  | 37. 40~50번이요.  |
| 27. 30~40번.   | 38. 4~5번이요.  |
| 28. 친구랑 같이 가서 4~5번 전 혼자서 못해요. 무서워서요. 그 남자한테 어디서 만나자고 해요. 모텔 가서 하자고 해요. 우린 민증 없잖아요. 그 남자들이 아줌마한테 알아서 한다고 들어갔고요. 한 오빠들은 먼저 들어가고 우리는 숨어서 들어갔어요.        | 39. 많이 했는데요. 3~4개월 정도했어요. 매일 했어? 매일은 아니고 이틀이나 삼일씩이요. 일주일에 한번 빠졌어요.   |
| 29. 통 털어서 한번이요.   | 40. 60번 정도요.   |
| 30. 친구들이 강요한건 하루에 3,4번. 매일. 4개월동안? 네. 그러면 17살 때 5번하고, 그동안 계속 안 하다가 이번에 한거였어? 네. 3, 4번. 많으면 5번. 하루도 안 쉬고. 그리고 생리기간에는 잠깐 안 하고. 생리하면 남자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 41. 한 번밖에 안 했어요.   |
| 31. 50번 정도요.  | 42. 한 30번 될 걸요.  |
|   | 43. 10번 조금 안돼요.  |

#### 사. 인터넷성매매 상대 연령

인터넷성매매 상대연령은 10대~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27~40까지.”, “정확히 20대부터 40대까지 다 있어요. 30대가 주로요.” 와 같이 20대에서 40대를 만났다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다. “저보다 어린애들도 있었어요. 중학생, 16살, 17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몇 살이었어요.” 와 같이 아주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과 만난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성매매에 접근하는 성매수자의 연령층은 매우 다양하여, 어느 특정 연령층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나이는 다 다르죠. 20대, 40대.
2. 친차만별이죠. 18~19살부터 시작 해서. 근데 저는 그런 애들은 안 만났어요. 어린애들은 싸가지 없고, 말 섞고 싶지도 않고요, 어린애들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사기 칠 것 같기도 하고. 어린애들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속여서 20살짜리 몇 번 만난 적 있는데. 25 아래로는 안 만나요. 제가 만난사람들은 20살~38살까지 있어요.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20대 중반도 많았어요. 대학생도 많이 만났어요. 어디회사 사장도 만나고, 별 사람 다 만나요.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하고.
3. 평균 28~30이요. 젊은 사람들이랑은 안 해요. 기분 나빠요. 어린애들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하고, 개념이 없다고 해야 하나, 돈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 믿기 힘들어요.
4. 25살에서 30대 중반 정도.
5. 되게 다양했는데. 저보다 어린애들도 있었어요. 중학생, 16살, 17살, 19살, 20살, 24살, 27살, 32살.
6. 다양해요. 주로 한 30대~50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몇 살이었어요.
7. 30대나 40대.
8. 나이는 잘 안 알려주는데 30대 2명, 40대 2명.
9. 한명은 30대 정도, 아니면 20대.
10. 28인가 29, 31살 있었고, 35~6 정도.
11. 그 아저씨가요 40대 초반이었어요.
12. 15살 때는 고등학교 오빠들이었고, 지금은 스물 몇 살.
13. 저는 평균연령이 30살 정도. 42살이 쯤 많았어요. 어린 사람은? 25살이요.
14. 27~40까지. 어린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구할 때 만약에 26살이면, '수고' 하고, 나쁜친구 등록하고. 30살이면 하겠다고 하고.
15. 30, 40대요.
16. 30초반이나 중반이요.
17. 거의 23~24살이요.
18. 30대, 21살도 있었어요.
19. 30초, 40초, 20대 한명이요.
20. 30대후반요.
21. 20대 초반은 2명인가 3명이고 나머지는 중반이요.
22. 거의 30, 40대가 많았어요.
23. 19살이요.
24. 20대 후반부터 3, 40대까지요.
25. 24, 25, 26살.
26. 정확히 20대부터 40대까지 다 있어요. 30대가 주로요.
27. 30대 초반이요.
28. 19~20살.
29. 32살이요.
30. 거의 20대중반부터 많으면 50. 주로 30대중후반이예요.
31. 20대도 있었고 거의 다 40대요. 일부러 40대를 구한 거예요?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왜? 젊은 애들은 돈도 없고 솔직히 모르는 사람 만나서 들어가면 불안하잖아요. 돈 다시 가져갈까 봐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좋겠다 생각했어요.
32. 40대에서 20대사이요. 적어야 20대요. 제일 많은 건? 많으면 44, 45살이요. 거의 30대중반 그 정도예요.
33. 거의 40대 중반이요.
34. 대충 평균적으로 20대 초반은 드물고, 20대 후반 28, 29살이요. 회

사 다니거나 사업하는 사람 돈 많으신 분들이요. 오히려 30대 대기업 다니는 사람 많아요.	39. 20대 후반 부터 30대 초반이요.
35. 25살 이상 30살 이하 만났어요.	40. 거의 30대요.
36. 25살이요.	41. 30대 아저씨였어요.
37. 30대 중반정도요. 20대는 젊어서 좀 쪽 팔리고 그래서요	42. 거의 19살이요. 너무 어린데? 그 오빠도 거의 23살? 21살 됐을 거예요. 그리고 30대 초요.
38. 28에서 33요 걸린 나이는 40대요.	43. 20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40대요.

### 아. 인터넷성매매 장소

인터넷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40명의 청소년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모텔이요.**”, “**거의 모텔이죠.**” 와 같이 모텔에서 성매매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43명 중 13명의 청소년은 “**차에서도 해봤고.**”, “**차. 미성년자라고 차에서 밖에 안 해요.**” 와 같이 차 안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3명 중 11명의 청소년은 “**중학교 때는 그냥 오빠들 혼자 자취한다고 자취집에서 했고.**”, “**그 사람 집에서요.**” 와 같이 응답하여 상대남성의 집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응답으로는 “**DVD 방.**”, “**화장실. 거의 간단하게 입으로.**”, “**주차장에서도 했었고.**”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성매매의 장소로 주로 이용되는 곳은 모텔이었으며, 차와 개인의 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b>□ 모텔</b>	14. 모텔이나 여관,
3.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모텔이요.	15. 모텔이요.
4. 모텔, 여관이요.	16. 모텔이요.
5. 모텔이죠.	17. 거의 모텔에서 했고요
10. 모텔이요.	22. 모텔이요.
12.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화장도 하고 옷도 입으니깐 모텔도 가고요.	23. 모텔이요.
13. 모텔이요.	24. 대형은 어디로 나와라 하면 차에서 만나고 모텔로 가고. 네. 거의 다 모텔.



25. 모텔 아니면 호프집에서요. 주로 어디서 많이 했어요? 모텔이요. 둘이? 아니요. 셋이요. 어쩔 땐 둘이 들어가면 친구가 와요. 왜? 다 끝내고 친구 불러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 잘하냐고 물어봐요. 개는 성관계까지 해요. 갠 돈 대가도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남자가 못 참을 텐데. 아니 거기까지요. 강제로 안 해요? 아니 전 강제로 하면 신고한다고 했어요. 신고하면 남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청소년 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불법인데 그것까지 걸리면 전 징역 간다고 그쪽이 정한대로 약속 지키겠다고 해요, 약속을 지켜요, 막 대하는 사람 말구요.

- 30. 거의 모텔이죠.
- 32. 처음에는 제가 가출했을 때는요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알려줬거든요. 그쪽에서도 만날 거면 서로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그쪽에서 핸드폰 번호 알려 달려고 해요. 없다고 하면 거의 받은 거절이에요. 그냥 믿어보자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자 쪽이 장소를 정하죠. 그쪽이 오면 모텔로 가는 거예요. 모텔일 때도 있고요 저는 다 모텔이었고 제 친구는 차에서도 했었어요.
- 34. 모텔이요.
- 35. 모텔이요.
- 36. 모텔에서도 했었고
- 37. 모텔이요.
- 39. 여관이요.
- 42. 모텔이나
- 43. 모텔에서도 하고 그 외 17명. 모텔.

□ 차안

- 2. 차안.
- 6. 차에서도 해봤고.
- 9. 차.
- 11. 차안.
- 14. 차안.
- 17. 두 번은 차안에서 했어요.
- 21. 차안이요.
- 31. 차.
- 35. 차나
- 36. 차에서도 했고요.
- 39. 차. 미성년자라고 차에서 밖에 안 해요.
- 40. 차요.
- 43. 차 안에서도 하고

□ 상대 남성의 집

- 3. 개인 집에서 해본적은 없어? 있었어요. 한번. 무섭지 않았어?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사람 집이어서. 집도 알면 나중에 허튼 수작하면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집으로 갔어요.
- 5. 아니면 그 사람 집.
- 8. 그 사람 집에도 갔었어요.
- 12. 중학교 때는 그냥 오빠들 혼자 자취한다고 자취집에서 했고
- 13. 그 사람 집에서도.
- 14. 그 남자 집.
- 15. 개네 집.
- 19. 한번은 그 사람 집.
- 29. 그 사람집이요.
- 40. 그 사람 집이라든지? 있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어? 네
- 42. 그 사람 집이요. 그 사람 집에 가면 며칠씩 있었어요. 길게는 한 달, 두 달도 있었고 짧게는 일주일이요.

<p><b>□ 기타</b></p> <p>25. 아니면 호프집에서요.</p> <p>30. DVD방.</p> <p>31. 화장실.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했어? 거의 간단하게 입으로. 노래방 화장실. 노래방 근처에 건물에서 만나서. 그럼 화장실만 이용한 거네? 네.</p> <p>36. 주차장에서도 했었고. 주차장에서 어떻게? 차 안에서? 아니요. 문 여는데 계단쪽에서도 했어요. 화장실에서 했었어요. 왜 남자들이 모텔에 안 간데? 모텔 잘 안 가요. 거기서 어떻게 해? 사람이 없는 곳에</p>	<p>동암역 가면요 거기 모텔이 많아요. 그 쪽에 사람 안 다니는 곳 찾아서 하던데요. 근데 거기서 눕지를 못 하잖아? 서서 했어요. 얼마 받았어? 받지는 않았어요. 돈 안 받고 했어 왜? 안 줘요.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채팅은 했는데 돈 받고 하기로 한 거잖아 왜? 안 줬어요. 8번 중에 돈 받은 거 몇 번이에요? 5번이요. 그리고 나머진 썩이예요. 그럼 개들은 성폭행이네? 왜 안 준거 같아요? 일부러 꼬득이면서 돈 준다고 해놓고 안 준 거 같아요.</p> <p>43. DVD방에서도 했어요.</p>
---	---

자. 인터넷성매매 대가

인터넷성매매의 대가로 돈만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돈이요. 다른 건? 먹을 거나.. 더러워서 안 먹어요.”, “돈. 조건만남으로 받은 대가는 돈 말고 다른 건 없어? 아뇨. 다른걸 뭐하러 조건만남을 구해요.” 와 같이 돈만 받은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돈 대신 잠자리나 선물 등을 받은 청소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나 가끔 자주 오시는 분은 선물 같은 거 주고 그래요.”, “잠자리랑, 음식 그리고 돈이요.” 한 청소년은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돈은 안 받았어요.” 라고 응답하여 돈을 받지 않은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성매매의 대가는 주로 돈거래로 이루어지며, 정서적 부분의 교류는 거의 개입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p><b>□ 돈</b></p> <p>1. 돈. 조건만남으로 받은 대가는 돈 말고 다른 건 없어? 아뇨. 다른걸</p>	<p>뭐하러 조건만남을 구해요.</p> <p>2. 돈.</p> <p>3. 잠자리는 필요 없고, 돈 받았어요.</p> <p>4. 돈 받아요.</p> <p>5. 돈.</p>
--	--

- 6. 돈이요.
- 7. 돈이요.
- 10. 돈 받았어요.
- 11. 돈이요.
- 12. 돈.
- 16. 돈.
- 17. 돈이요.
- 18. 돈.
- 19. 돈.
- 20. 돈.
- 21. 돈이요.
- 22. 선불로 받아요.(돈)
- 25. 돈.
- 26. 돈.
- 27. 돈.
- 30. 돈.
- 31. 돈이요. 다른 건? 먹을 거나.. 더러워서 안 먹어요.
- 32. 다 돈이죠.
- 33. 돈.
- 35. 돈
- 36. 돈이요.
- 37. 돈이요.
- 39. 돈이죠.
- 43. 돈이요.

**□ 돈과 그 외의 것**

- 8. 돈, 선물도 받았고, 밥 사주고.
- 9. 잠자리랑, 음식 그리고 돈이요.
- 13. 돈이죠. 돈도 받고, 담배도 사주시고, 밥 사주신 분들도 있었고.
- 14. 돈, 잠자리.
- 15. 돈 받고 밥 얻어먹고 이런 거요
- 23. 돈이요. 조건만남 해서 돈 말고 다른 거 받아 본 적 있니? 단순히 잠자리만 얻어 자거나 밥만 얻어먹거나 한 적 있어? 네. 그래 본 적 있구요. 그 사람이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핸드폰 준 적 있어요. 그

럼 핸드폰 몇 달 정도 쓴 거야? 많이 안 썼어요. 한 달 정도요. 명이는 누구 이름으로 하고? 그 사람이요. 그럼 그 아저씨가 그 걸로 계속 연락 했을 거 아니야? 안 받았어요. 처음엔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난다고 했어요. 게임 받고 다 쓰고 메니큐어로 고장 내고 던져서 부셨어요.

- 24. 돈이랑 먹을 거 잠깐 사주는 거요. 나 이거 먹고 싶다고 하면서 집에 동생들이 있는데 밥을 못 먹고 있다고 애들 뭐 좀 사가지고 가자고 하면서 나도 뭐 좀 사줄까? 집에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아는 언니는 집에 필요한 물건도 받아오기도 했어요. 생필품? 네. 생필품만 받아오기도 하고 돈이랑 생필품 받아오기도 해도 근데 거의 다 돈요. 거의 돈만 주는데 생필품은 덤으로 사주는데 가끔 돈 없다고 하면서 15만원이면 10만원 주고 5만원은 현금이 없으니깐 물건으로 사주겠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 28.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돈은 안 받았어요. 저는 성관계는 안했고 제 친구는 해서 몇 만원 받았어요. 방을 2개 잡아요. 제 친구랑 남자는 들어가고 전 안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화내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범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친구가 다 끝나면 옆방으로 와요. 그러면 둘이 모텔에서 자요. 자고 나오면 또 pc방 가서 채팅하고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친구였어요.
- 29. 차비 같은 거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줬어요. 사고 싶은 거 사줬어요. 허리띠요. 인터넷에서 산거라 만원 정도. 다른 것도 사준다고 했는데

<p>mp3, 핸드폰이요. 근데 아직 안 사줬어요.</p> <p>34. 돈이나 가끔가다 자주 오시는 분은 선물 같은 거 주고 그래요.</p> <p>38. 돈이요. 담배, 밥 사주고요.</p> <p>40. 돈. 담배도 사주고 먹는 것도 사줬어요.</p> <p>41. 돈이랑 담배랑 먹을 거도 사줬어요.</p> <p>42. 잠자리 제공 하고요 옷 사주거나 먹을 거 사주고 담배 사주고요. 돈 받는 적도 있어요? 네. 돈 받는 적도 몇 번 있어요.</p> <p><b>□ 돈은 받지 않음</b></p>	<p>28.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돈은 안 받았어요. 저는 성관계는 안했고 제 친구는 해서 몇 만원 받았어요. 방을 2개 잡아요. 제 친구랑 남자는 들어가고 전 안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화내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범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친구가 다 끝나면 옆방으로 와요. 그러면 둘이 모텔에서 자요. 자고 나오면 또 pc방 가서 채팅하고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친구였어요.</p>
--	--

#### 차. 인터넷성매매 대가 액수

인터넷성매매를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그 액수는 대체적으로 10만원 안팎에서 2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10만원 아니면 20만원.”, “10만원으로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받은 거는 30만원.”, “아예 잠까지 자면 15만원. 두 번은 8~10만원. 1시간.” 와 같이 응답하였다.

<p>1. 10만원에서 17만원. 아니다 7만원 부터요.</p> <p>2. 10만원으로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받은 거는 30만원. 젤 처음 했을 때 30만원 받은 걸로 머리한 거예요.</p> <p>3. 보통 10만원 아니면 20만원.</p> <p>4. 10만원~15만원.</p> <p>5. 중학생 이런 애들은 가끔가다가 어떤 애는 결혼식장을 갔다 와서 돈이 많대요. 그래서 십 얼마 준 애 있었고, 10만원 아래로 받은 애들도 있었어요. 어린애들은.</p> <p>6. 평균 20만원. 제일 많이 받은게 한</p>	<p>번에 50만원.</p> <p>7. 10~15만원.</p> <p>8. 많이 받은 거는 30만원 받았고, 보통 한번에 20만원.. 적게는 10만원 받아요.</p> <p>9. 한 번 그때 했을 때 8만원. 키스알 바였어요.</p> <p>10. 15만원이요.</p> <p>11. 5만원.</p> <p>12. 중학교 때는 5만원 정도 받았고 고등학교 때는 10~15만원 정도.</p> <p>13. 10~15 사이.</p> <p>14. 10만원~15만원 까지. 아니 8만원~15만원.</p>
--	---

- |  |  |
|--|--|
| <p>15. 최하가 10이고요, 최고가 30이요.<br/> 16. 15만원 정도요.<br/> 17. 평균은 거의 8~10만원이요.<br/> 18. 9~10만원.<br/> 19. 15~20.<br/> 20. 10만원.<br/> 21. 10~15만원이요.<br/> 22. 제일 많이 받은 게 30이고, 제일 적게 받은 건 15요.<br/> 23. 2대2 해서 20만원이요. 한 사람 당 10만원.<br/> 24. 애인대행은 20정도 적으면 15요. 근데 메신저 같은 데는 10이요. 근데 메신저 잘 고르면 40 많이 받는 데도 있어요. 메신저는 적게 받거나 아예 많이 받아요.<br/> 25. 6만원. 어디 까지가 6만원이예요? 가슴이요. 키스만 하면요? 3만원이요.<br/> 26. 아예 잠까지 자면 15만원. 두 번은 8~10만원. 1시간. 남자가 8만원 주기로 하고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뒤졌는데 6만원밖에 없어서 6만원 받은 적은 있어요.<br/> 27. 들어가자마자 선불이요. 10~20만원 최대 20만원까지 받았어요. 20만원 시간은 좀 길었어요. 2시간이요.<br/> 28. 없어요. 술, 담배<br/> 29. 차비 정도요.<br/> 30. 그때도 친구가 10만원씩 받았어요. 착한 아저씨는 15만원씩 주더라고요.</p> | <p>31. 15만원 있었고 10만원도 있었고요. 나이든 사람들은 용돈 하라고 15만원 줘요.<br/> 32. 15만원이요. 기억 잘 안 나는데 친구랑 같이 했을 때는 10~8만원이었어요. 회당 8만원으로 해서 두 번하면 16만원이었어요.<br/> 33. 20~30만원이요.<br/> 34. 한 시간 단위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요.<br/> 35. 10만원이요. 더 적게 받은 적은 있어? 딱 한번 있는데 2만원이요. 그때요 개가 차도 없고 모텔 갈 줄 알았는데 제가 돈이 급했는데요 저희 집 근처 학교에서 했는데 제 바지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끝났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만원 받고 그 남자한테 8만원 줬어요. 그 남자가 준 돈? 네. 그 남자한테 선불로 받은 돈이요. 보통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은 적은 없어? 15만원이요. 가끔 만난 사람이요.<br/> 36. 4만원에서부터 30만원이요.<br/> 37. 10만원이요.<br/> 38. 10만원이요.<br/> 39. 10만원에서 15만원이요.<br/> 40. 10~15만원 사이요.<br/> 41. 15만원이요.<br/> 42. 8만원, 10만원이요.<br/> 43. 15, 16이요.</p> |
|--|--|

### 카. 인터넷성매매 만남과정

청소년들이 인터넷성매매를 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일반채팅사이트(버디버디, 세

이클럽 등)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이다. “버디버디를 들어가요. 일단 엄마나 어른들 것으로 만들어요. 채팅에 들어가서 방을 만들어요. 조건만남이라고 쓰면 아이디 정지 먹으니까 ‘ㅈㅈ’ 이라고 써놔요. 방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 대화가 알아서 걸려요. 그러면 복사내용을 다 줘요. 번호 달라면 안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신길역 다 왔으니까 나오라고 해요, 제가 길 설명을 해줘요. 약속장소 딱 왔을 때 나가요. 원래 저 혼자 나갔었거든요. 전에는 겁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돈만 받고 안하고 도망가고 사기 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거예요. 친구랑 같이 나가서 제가 들어가는 것 까지 보고, 들어가서 친구한테 나 몇 초야 40분 뒤에 올라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40분 뒤에 친구가 와서 저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친구랑 뭐 사먹고, 노래방가고 그런 식으로 썼어요.” 와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성인들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주로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애인대행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이다. “PC방을 가요, 가서 헬프폰을 들어가요. 남자들 프로필이 떠요. 여자가 문자를 보내요. 장소 알리고, 핸드폰 번호 알려주면 답장이 와요. 조건을 서로 얘기해서 맞으면 만나서 모텔 가서 해요. 끝나면 차로 태워다 줘요.” 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들과 만났다.

일반 채팅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접속을 하여 채팅방을 만들면 남성들이 주로 쪽지나 대화를 거는 형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애인대행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접속하면 미리 등록되어 있는 성인들의 연락처를 보고 주로 청소년들이 먼저 연락을 하는 형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채팅사이트**

3. 버디버디를 들어가요. 일단 엄마나 어른들 것으로 만들어요. 채팅에 들어가서 방을 만들어요. 조건만남이라고 쓰면 아이디 정지 먹으니까 ㅈㅈ이라고 써놔요. 방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 대화가 알아서 걸려요. 그러면 복사내용을 다 줘요. 사

진 이쁘네. 몇 시에 만나? 이런 사람들 있어요. 지금 올거냐고 물어 보고, 번호 달라면 안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신길역 다 왔으니까 나오라고 해요, 제가 길 설명을 해줘요. 어디서 꺾으면 대신시장이 있는데 거기로 오라고 해서 만나요. 약속장소 딱 왔을 때 나가요. 원래 저

혼자 나갔었거든요. 전에는 겁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돈만 받고 안하고 도망가고 사기 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거예요. 친구랑 같이 나가서 제가 들어가는 것 까지 보고, 들어가서 친구한테 나 몇 호야 40분 뒤에 올라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40분 뒤에 친구가 와서 저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친구랑 뭐 사먹고, 노래방 가고 그런 식으로 썼어요.

9. 처음에는 잠자리 필요하다고, 채팅방에다가 잠잘 곳 구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술을 먹자고 해요. 그럼 하룻밤 지낼 수 있는거예요. 어디서 만나자고 공중전화로 연락을 해요. 갈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데리러 오거나 차로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단으로 지하철타고 가요. 만나서 술 마시고 모텔 가서 남자는 먼저가고 저는 하룻밤 자고 나와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일대일이 아니고, 여러명 대 여러명이네. 네. 3:3 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와서 모텔방은 각자 잡는거야? 아니면 하나만 잡는거야? 각자 잡을 때도 있고, 하나만 잡을 때도 있어요. 하나만 잡으면 구분이 안되어 있잖아. 네 그냥 불 끄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았어? 아니면 각자 잡는 경우가 더 많았어? 같이 방 쓰는거요.
13. 처음 만나면 나이가 많아도 따뜻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웬지 모르게 재수 없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재수 없는 사람이랑은 말도 안하고, 2, 30분 만에 빨리 하고 돈만 받고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또 마음이 맞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계

속 만나고, 연락하고, 뭐 계속 사주 시고. 그러면 인터넷을 해서 어떻게 만나요? 채팅방을 만들어요? 네. 방을 만들면 알아서 쪽지가 다 날아와요. 방은 어떻게 만들어요? ‘목동만남’, ‘만남’ 이런 식으로 만들면 쪽지가 엄청 많이 와요. 한 50, 60개가 와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 대화를 하나하나 해요. 조건 제시를 하면 왜 이렇게 안하는게 많냐, 비싸냐, 얼굴 못생겼네, 그런 얘기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안하면 그만이니까, 또 다른 사람이라도 얘기해서 맞으면 전화번호 교환해서. 제가 핸드폰 없을 때는 전화번호 받고, 제가 전화를 하거나, 시간이랑 약속장소를 정해서 옷 색깔이랑 그런 것 다 말해서 만나요.

#### □ 애인대행 사이트

8. PC방을 가요, 가서 헬프몬을 들어가요. 남자들 프로필이 떠요. 여자가 문자를 보내요. 장소 알리고, 핸드폰 번호 알려주면 답장이 와요. 조건을 서로 얘기해서 맞으면 만나서 모텔 가서 해요. 끝나면 차로 태워다 줘요.
22. 그냥 PC방 가서 헬프몬에다 쪽지에다 돌려요. 문자 같은 거 그러면 제 번호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 문자가 와요. 문자가 와서 조건이 맞으면 만나는 거고 뭔가 안맞으면 안 만나고. 근데 처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못했을 땐 애들이 잡아 줬는데 퇴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여러 보인다고 하고 퇴짜를 많이 먹다가 한 번 딱 한 이유로 되는 거예요. 못할 때는요 애들이 핸드폰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어

디 앞으로 몇 시까지 나오겠다 하고 만나고 그랬어요. 저는 주로 장기만남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 이렇게 조건만남 사람하고 다시 연락해서?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해서 만날 수 있냐고 솔직히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한번 만났던 사람이 낫잖아요. 3명 정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몇 번 정도 만났던 거 같아요? 20짜리는 네 번 정도 만나고 10짜리는 다섯 번 정도 만나고 30 짜리는 두 번이요.

## □ 기타

29. 룸메이트에 전화를 했어요. 저 거기서 살아도 되냐고 물어 봤어요. 그 남자가 거기에 써 있었어 연락 처가? 네. 그 남자는 뭐라고 썼어? 룸메이트에 구한다고 했고 사진만 올려와 있고 나이 그런 거 안 올라와 있고 연락처 있고요. 근데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거기서 살고 싶었어? 그때 처음에는 나이도 몰랐어요. 그래도 사진 보면 대충 알잖아? 사진 얼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나와 있어? 그냥 그 방만요. 문자했을 때도 나이를 안 물어 봤거든요. 그 남자한테 문자해서 같이 살자 근데 왜 안 살고 집에 왔다 갔다 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미성년자라고. 같이 사는 건 안 되고 어찌다 만나는 건 된데? 그런 말도 안하고 자체가 안 된대요 같이 사는 것도 썩끄러운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아예 안 된대요.

그리고 문자가 끊겼죠. 다음날 제가 심심해서 문자를 했어요.. 답장이 오더라고요. 심심해서 아저씨한테 뭐라고 문자했어? 심심하다고 놀아주세요. 문자로 친해져서 만났는데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어요. 얼굴 익히고 나서 나이를 알았죠. 그럼 그 남자가 만나자고 했어?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디로 데리러 왔어 오라고 했어? 네. 그래서 차타고 어디 갔어? 제가 집에 가자고 했어요. 궁금해서요. 뭐가 궁금해서? 갈 때도 없고. 가서 뭐했어? 누웠어요. 침대에 처음엔 TV보고 뭐 먹고 하다가 제가 졸립다고 해서 술 마셨거든요. 침대에서 자다가 너무 심심하다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이긴 사람 소원 들어 주지요. 소원 들어 주기 했어 근데 졌어? 네. 그 남자 소원이 뭔데? 안아주기였어요. 처음엔 남자가 안아주다가 제가 기분이 묘하다 그랬더니 할래? 물어 보지는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했죠. 그런데 괜찮았어? 기분이 나쁜진 않았어? 네 제가 허락해서 한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났고 그 다음엔? 계속 연락해서 만났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났어?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도 대충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났겠죠. 그 사람은 잘 살아 오피스텔 아니면 원룸? 아니요. 방이 4개였어요. 몇 억한다고 했어요. 2억인가. 결혼은? 안 했어요. 가족들하고는 안살아? 네 엄마랑 떨어져서 산다고 했어요.



타. 성매매 시 피임여부

성매매를 할 때 피임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피임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43명 중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응답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상대 남성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뇨. 가끔 할 때도 있죠. 귀찮아서.... 무조건 끼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안 끼는 사람도 있어요.”, “콘돔이요.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분들 있고 안하는 사람은 안에다 짜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명 중 7명에 불과했다. “해야죠. 콘돔 같은 거 끼고 했어요. 안하면 안 만난다고 했어요.”, “네. 콘돔 다 껴어요.” 또한 성매매를 하면서 피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요. 그때 피임할 줄 몰랐고요, 제 친구가 피임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아니요. 밖에다 했어요.” 와 같이 응답하였다.

이처럼 인터넷성매매로 연결되는 성관계에서 청소년들이 피임의식이 매우 낮아, 거의 성관련 문제에 대해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끔 하기도 함	
<p>2. 아뇨. 가끔 할 때도 있죠. 귀찮아서. 콘돔을 끼는 건요.. 끼는 사람은 끼라고 하는데 안 끼고 싶으면 안 끼라 그래요. 무조건 끼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안 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 재수가 좋은가봐요. 임신한 번도 안했어요.</p> <p>3. 콘돔 끼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안 껴요. 거의 질외 사정. 아니면 제가 하고나서 빼요. 배에 힘주면 정액이 빠져요.</p> <p>6.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거 아예 몰랐잖아요. 그런거 안 했는데. 나</p>	<p>중에는 그 쪽 남자에도 콘돔 끼고.</p> <p>7. 콘돔이요. 근데 받은 하고 받은 안해요.</p> <p>8. 피임약을 먹을 줄을 몰라서 안 먹었어요. 콘돔사용하거나 콘돔 안하고 질외 사정하는 사람도 많아요.</p> <p>10. 네. 콘돔이요. 한명은 콘돔 안하고 질외사정 했어요.</p> <p>12. 콘돔은 껴어요. 1~2번은 껴고 다른 때는 그냥 했어요.</p> <p>13. 콘돔은 했어요. 안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p> <p>14. 아니요. 생리했을 때만 콘돔하고. 왜 안 했어요? 질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위험하잖아. 그래도 임신 한 번도 안 됐어요.</p>

15. 콘돔이요? 거의 안 해요.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콘돔을 끼잖아요. 그럼 빨리 사정을 안 하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콘돔 거의 대부분 끼기 싫어하는데도 불안하다고 하면 지가 조절 못한다고 하면 껴요
19. 몇 번 안 했어요. 콘돔 한 적도 있고
21. 아니요. 콘돔만 사용해요. 남자가? 네. 근데 사용을 안 한다면 전 아예 안 해요.
24. 피임 거의 안 해요. 남자가 별로 원하지 않아요. 콘돔 해야 한다고 하면 5만원 더 줄 테니깐 콘돔 안 한다고 콘돔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10명에서 한 두 명정도요.
26. 조건 시작할 때는 임신도 모르고 피임도 모르고 성병도 모르고 했어요. 한참 콘돔도 안 끼고 했어요. 근데 컴퓨터에서 성교육 받고 콘돔 끼고 했어요.
27. 네. 콘돔을 낀다던가 안에 사정 안 하는거요. 콘돔 끼면 돈 안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에다 싸지만 말라고 했어요.
30. 피임은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남자들한테 콘돔 끼라고 했어요. 제가 약은 안 먹고요, 콘돔 끼라고 얘기 했어요.
34. 콘돔이요.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분들 있고 안하는 사람은 안에다 싸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36. 콘돔 한 5번 정도 했나
38. 콘돔. 안 한 적은 없어요? 있어요.
40. 콘돔 낀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어요.
42. 안 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콘돔 껴요.

#### □ 항상 피임을 함

4. 콘돔이요.
9. 약은 안 먹고요, 콘돔은 했어요.
16. 콘돔은 끼고 했어요.
20. 네. 남자가 콘돔을 끼던데요.
22. 해야죠. 콘돔 같은 거 끼고 했어요. 안하면 안 만난다고 했어요. 피임약도 먹고 콘돔 하고요. 제가 무조건 차에 타고 꼭 끼라고 안 그러면 지금 나갈 거라고요.
32. 네. 콘돔 다 썼어요.
33. 네. 콘돔 끼고요.

#### □ 하지 않음

5. 안해요.
17. 아니요. 그때 피임할 줄 몰랐고요, 제 친구가 피임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18. 안했어요.
23. 아니요.
25. 예들 들어서 한다면요? 콘돔을 끼고 하겠죠. 해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남자친구랑은 해봤고.
28. 없어요.
29. 다 안 했어요.
31. 임신이 안돼요. 그냥 질내에 사정 했는데도? 네. 피임 한 번도 안했어? 네. 콘돔 낀 사람도 없었어? 네.
35. 아니요. 임신 한 적 있어요. 한번이요. 몇 개월인데? 9주요. 몰랐는데 속이 계속 안 좋고 생리도 안 해서 병원에 갔어요.
37. 아니요. 밖에다 했어요.
39. 안했어요.
41. 안했어요.
43. 안해요.

③ 촉진요인 : 경제적 의존 또는 성중독

성매매의 중독성에 대한 질문에는 43명 중 32명의 청소년이 하기 싫어도 돈 때문에 그만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아무래도 있죠.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한두 시간 누워있으면 20만원이 쌓이니까요.”, “네. 돈을 쉽게 벌 수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43명 중 2명의 청소년은 성관계 욕구 때문에 계속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성적으로도 중독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관계를 해야 하니까요. 야동, 야설 보면 저 혼자 자위하게 돼요. 미친 짓인데 잠 잘 때 남자랑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자 불러서 왕 게임도 해요. 술 먹고 하는 거요. 제가 왕이면 막 시켜요. 섹스 하라 팬티 벗어라.”

그 외의 응답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재미있는 거 같아요.” 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성매매를 계속 하게 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 돈	
<p>3. 네.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매일 택시타고 다니다가 돈이 없으면 지하철타고 힘들게 다녀야 되니까 불편해요. 옷도 제 나이 또래에서는 옷 잘 입고 다니던 애가 조건안하고 돈이 없으면 거지 같이 입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화장품도 비싼 것 쓰다가 싼 것 쓰는 것도 이상하고.</p> <p>5. 아무래도 있죠.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한두 시간 누워있으면 20만원이 쌓이니까요.</p> <p>6. 네. 좀만 하면 몇십만원씩 들어오고. 하는 것에 비해서 돈 들어오는 게 많다고 생각해? 아니요.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쉬운건 아니에요.</p> <p>7. 네. 돈 때문에.</p>	<p>8. 네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돈이 들어 오잖아요. 두시간 정도에 20만원 들어오는 거잖아요.</p> <p>10. 아니요. 중독성은 없고요,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돈이 떨어지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중독처럼 이걸로 돈 벌어야지 하는 건 아니고요.</p> <p>11. 네. 돈 버는 재미요. 돈 벌고 자기가 원하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하는 거 같아요.</p> <p>13. 중독성 있죠. 쉽게 돈 버는데. 솔직히 30분 안에 10만원 벌면 빨리 벌고, 많이 버는거잖아요. 10만원 벌려면 며칠, 몇 시간을 고생해야 되는데. 저희는 PC방에 앉아서 두들기고, 사진 몇 장 보내서 30분만 투자하면 10만원, 20만원을 버는 건데. 중독되죠. 당연히. 거기다 쉽게 버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것 다</p>

- 살 수 있는고.
14. 돈 때문에.
15. 네. 돈을 쉽게 벌 수 있잖아요. 그 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19. 일단 돈을 빨리 벌잖아요. 나 자신을 봤을 때 더럽고, 나 같아도 멀리하고 싶고, 어디다가 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그런데, 돈을 빨리 모으니까요.
20. 네. 있는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니까. 왜 돈이 없으면 그쪽으로 갈까? 다른 돈 버는 방법도 많은데. 가출을 했거나 그런 사람은 학력이 부족하면 알바를 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조건은 학력제한이 없잖아요.
21. 네. 돈을 쉽게 벌고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돈이 없고 필요 할 때마다 만나는 거 같아요. 성적인 경험을 했었잖아 또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까? 네. 전 없어요.
22. 중독이요? 아쉬울 때만. 돈 벌으면, 아 절대 안 해야지 하는데 돈 다 떨어지면 또 이번만 하자. 그러면서 또 하게 되요.
23. 네.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요.
24.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다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60만원 버는거 대형 3번만 뛰면 되니까. 대형 한번 하면 20만원이 너무 쉬우니까. 내가 한 시간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 게 벌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죠.
25. 조금요. 돈 없으면 그런 짓 하니까요.
26. 네. 맘만 먹으면 하루에 5만원 버는데 8만원도 버는데 돈 때문에 하는거 같아요.
30. 네. 왜냐하면 돈을 빨리 구하고, 한 시간만 해도 10만원을 벌 수 있잖아요. 잠깐만 하면 10만원이 딱
- 딱하고 생기니까.
31. 네. 무조건 다 돈 때문예요. 돈 제일 많이 벌수 있고 제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어차피 이곳에 들어온 몸 챙길 필요도 없으니까요.
32. 있긴 있죠. 돈을 손쉽게 벌 수 있으니까,
33. 네. 그 거 한 번 받잖아요. 한 번 받고 싶고 또 쓰고 싶으니까요.
34. 담배랑 똑 같아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담배 피면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게임도 그렇고 성매매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쉽죠. 만약에 편의점 같은 데서 한 시간 벌어도 4천원도 못 벌잖아요. 근데 성매매 한 시간 해도 15만원 나오는데 일단 시간 아끼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돈을 벌기가 쉽다는 거죠 돈을 흥청망청 쓰니까 돈을 다 써도 돈을 벌기 쉬우니까 또 돈 걱정 안하고 살다보면 그게 생활이 돼버려요. 돈 때문도 그렇고 이 걸 딱 시작하면 돈이 필요하고 빠르고 쉽고 모든 게 처음에만 힘들지 두세 번 해보면 힘든 거 없던데요.
35. 네 돈 때문예요.
36. 네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해야 하니까요.
37. 네. 돈이 쉽게 벌 수 있으니까요.
38. 네. 돈 버는 재미 돈을 쉽게 버니까요.
39. 네. 돈을 쉽게 번다는 거요.
40. 네. 돈이 금방 모아지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도요.
41. 네. 돈을 쉽게 버니까 다른 알바하면 힘들잖아요. 이걸 누워있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벌 수 있잖아요. 10분만 누워있으면 15만원 벌 수 있잖아요.
42. 네 쉬우니까요. 돈 벌기 쉽고요.

잠 때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쉽잖아요. 인터넷에서 만나서 한 번 해주면요.

43. 중독성은 아닌데요. 돈이 필요하니까 하게 되죠. 싫어도요. 싫어도 하는 게 중독이 아닐까? 중독은 아니에요. 울면서 해요. 하기 싫은데 돈 때문이에요.

#### □ 성중독

19. 성적으로도 중독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친구를 제가 버리고 왔어도 일단 제가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잡았던 걸 기억해서 제가 잡았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친구네서 한 달 지내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다시 나왔거든요.
36. 네. 관계를 해야 하니까요. 야동, 야설 보면 저 혼자 자위하게 돼요. 미친 짓인데 잠 잘 때 남자랑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자 불러서 왕 게임도 해요. 술 먹고 하는 거요. 제가 왕이면 막 시켜요. 섹스 하라 팬티 벗어라.

#### □ 기타

27. 조금요.
28. 네. 손쉽잖아요. 남자가 잠자는거 먹을거도 다해주니까.
34.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요.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 모

아서 얘기하는 건 못하는데 제가 내향이라서 사람을 한 명 대화할 사람이 생겼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럼 아저씨하고 성관계 맺고 얘기도 해요? 네. 서로 얘기 하죠. 뭐하고 지내냐 갑자기 친해지면 정도 붙고 그런 거 때문에 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남자들도 조건만남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알고 있죠? 당연히 알죠.

39. 네. 돈도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재미있는 거 같아요. 새로운 느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스킬 같은 거요 경찰이 왔을까? 돈 때문에 계속 하게 돼요. 알바하다가도 뛰쳐나가요. 하고 싶다고요.

#### □ 없음

9. 아니요. 저는 계속하고 싶다는 안 들어요. 그냥 더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12. 아직 잘 모르겠어요.
16. 개네는요, 돈 벌고 하고 싶고 일석이조죠. 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요.
17. 아니요.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8. 아니요.
29. 아니요. 그러면 그 남자랑 왜 계속 만났어? 그 남자가 잘 해줬어? 그냥 좋았어요. 이유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외3명. 무응답

#### ④ 인터넷성매매 후 변화

##### 가. 달라진 생활

청소년들의 인터넷성매매 후 변화된 생활은 건강, 소비습관, 성격, 가치관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로 응답한 청소년 43명 중 25명의 청소년들이 성매매 후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중에는 성병에 걸렸다는 청소년도 상당수였다.

“몸도 많이 상하고, 산부인과 자주 다녔어요. 자궁경부암 있잖아요. 그 암 세포도 있었어요.”, “건강도 많이 변했어요. 많이 허약해 졌어요. 원래 허리가 아픈데 조건만남하고 허리도 더 아프게 됐고, 조금만 걸어 다니면 현기증 나고, 생리통도 심해졌어요.”, “성병에 걸려서 수술까지 했어요. 임신 했을 때 바로 수술 했거든요 흑이 라고 해서요.”

둘째로 성매매를 하게 된 후 소비습관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명 중 22명이었다. “쓸데없는데 돈 쓰고, 그 동안에 갖고 싶었던 것 돈이 있으니까 그런거 사고. 처음에는 쇼핑하는 걸로 풀었어요.”, “돈 생기면 흥청망청 쓰죠. 귀한지도 모르고 웬만한 건 다 사죠.”

셋째로 성격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명 중 13명이었다. “다혈질이 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으면 성질나요. 돈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것 바로 먹으러 갈 수 있었는데 돈이 없는데 피자먹고 싶으면 못시켜 먹잖아요. 그럼 막 성질나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성격이 다혈질로 변했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돈을 꼭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내 자신이 싫고 부정적으로 생각도 되고 우울증에도 걸렸어요.”

넷째로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청소년은 43명 중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남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구분되었다. “예전에는 돈을 땀 흘려서 열심히 벌면 그게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쉽게 버는 방법들도 많고.”, “돈의 소중함을 잃어 버렸어요.” 와 같이 돈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가 있다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남자들을 기피하게 되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더 싫어 할 수 있죠. 다 그래

보여요. 남자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 몰랐으니까 동갑 애들 보면 순수한 것 같고, 그런 것 모를 것 같고. ....그런 것 보니까 남자들도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애네들도 결국은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죠.” 와 같이 남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일단 밤에 외출하는 게 많아져서 엄마랑 많이 싸우고.”, “막 밤에 주로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가, 보통 때보다 잠자는 거나, 시간문제요.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세 네시간 걸려요.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하면 쉽죠.” 와 같은 응답이 있었다.

#### □ 건강악화

2. 몸도 많이 상하고. 산부인과 자주 다녔어요. 자궁경부암 있잖아요. 그 암세포도 있었어요. 치료 며칠 받았는데, 병원 안 가다가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근데 없어졌대요. 근데 잡균이 남아있대요. 치료를 깨끗하게 아니라서. 병원 이틀 더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갔어요. 옛날엔 돈 없어도 잘 돌아다녔어요. 요새는 택시안타면 다리 터질 것 같고, 부러질 것 같고.
3. 건강도 많이 변했어요. 많이 허약해졌어요. 원래 허리가 아픈데 조건 만남하고 허리도 더 아프게 됐고, 조금만 걸어 다니면 현기증 나고, 생리통도 심해졌어요.
4. 아픈 적 있었어요.
5. 여러 사람이랑 하잖아요. 저는 콘돔 낀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아프더라고요.
6. 성병이요.
7. 근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9. 약간 하니까 아프잖아요. 그 했던 생각이 자꾸 나오.
13. 냄새나고 그런 것은 있었어요. 냄새

새나고 물 나오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병원은 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소변 못 참는 병 있잖아요. 그거 걸린 줄 알았어요.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병 걸렸나 어떻게 하지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안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하면 되게 아프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병원은 안 가봤어? 병원을 못 가는 게요, 집 나오면 병원 가기도 그렇고, 돈도 없고. 언젠간 낫겠지 하면서 거의 약 사먹고 말아요.

14. 몸이 망가진 것.
15. 병원 다닌 적 있어요. 성병 임질 걸린 적 있어요. 간지럽다는 거요.
16. 저 하고 나서요 조금 아파서 산부인과에 갔는데요, 성병이 3개나 나왔어요. 임질이랑 애 못 낳는 거 하나랑 임질 그 다음 단계요.
18. 몸이 지쳐요.
19. 건강은 크게 한번 아팠어요. 열이 많이 나서 열이 39.4도 까지 올라갔었어요. 물이라도 먹으면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21. 면역성이 약해지니깐 아픈 것들 쉽게 아프고요.

25. 별로 없어요. 조건으로 한 거 말고요, 남자친구랑 많이 해서, 산부인과 가서 병원 갔어요. 그냥 간지럽고 그래서 이제 안하는 거예요. 약 먹어서 치료 했어요.
26. 산부인과에 다니죠. 병 걸렸으니까 질염이요.
29. 성병에 걸려서 수술까지 했어요. 임신 했을 때 바로 수술 했거든요. 후이 라고 해서요.
30. 임질. 염증이 있대요. 이번 최근에 컴퓨터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이거 다 나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32. 네. 건강도 좀 그렇고요. 냉이 좀 많이 나오고 엄마한테 냉 많이 나와서 병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35. 몸이죠. 그냥 힘이 없고 기운도 없어요.
37.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38. 정신은 멀쩡한데 몸만 지쳐 있는 거 있잖아요.
39. 중간에 성병 한 번 걸렸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가야 돼요.
42. 많이 하다보니까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거의 매독 걸릴 정도까지 심했던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치료해서 나왔어요. 또 나중에 해가지고 염증이 생겼어요. 남자 때문이에요 다 치료 했어요.
43. 네. 제가 세균 옮아서 병원에 다녔어요.

## □ 소비습관

1. 돈 욕심이 많아지고, 돈이 생기면 막 써요.
2. 돈이 없으면 못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어느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건

- 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놀러가고 싶은데 돈을 벌러 가기는 좀 그렇고. 내 손에 돈이 없다는게 불안해요. 담배를 중1때부터 피킨 했는데, 그때는 학교에 있고 그러면 못 피울 때가 많잖아요. 돈도 없고, 잘 뚫리지도 않고. 근데 요즘엔 담배도 잘 뚫리고, 돈도 있고, 담배가 없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게 변했어요.
3. 옷도 예전 같으면 영등포지하상가 같이 싼데서 살텐데, 요즘은 좀 비싼데서 사고, 구두도 예전엔 하나만 댔는데 지금은 3~4개 사고, 화장품도 예전엔 별로 없었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화장품도 더 비싼거 사게 되고. 택시 없으면 못살겠고, 조금이라도 못 걸어요. 여기 와서도 흥대 걸어갔었거든요. 다 같이 걸어가는데 너무 택시타고 싶었어요.
  5. 돈을 정말 계속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6. 쓸데없는데 돈 쓰고, 그 동안에 갖고 싶었던 것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 사고. 처음에는 쇼핑하는 걸로 풀었어요.
  7. 생활이 편해졌어요. 옷도 사고, 밥도 먹고.
  8. 썩 변한 건 없는데.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었어요. 고기를. 그리고 여유 있게 PC방 갈 수 있고.
  10. 어디 갈 때 절대 버스를 안타요. 돈이 있으니까 택시타고, 옷도 예쁜 것 야하게 입고 다니고, 택시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 은근히 즐기고. 그런 건 있어요.
  13. 그죠. 부유해지죠. 밥 못 먹다가 밥 잘 먹고, 매일 씻지도 못하다가 모텔 가서 편하게 자고 씻고, 담배도 없는데, 담배도 잘 사고. 그리고



- 일단 돈이 있으니깐 안심이 되죠. 무슨 일이 생겨도 대처할 방법이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져서.
15.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요.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편해요 그게.
  18. 돈은 내가 몸 버려서 벌었으니깐 계속 모아 뒀요. 잘 때 쓰는 것 빼고.
  19. 하기 전에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잘 데 없고, 먹을 것 없고. 하고 나면 돈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니깐 기본적으로 60만원 정도 생기니까.
  21. 밥을 제때 챙겨 먹을 수 있고요. 잠자는 것도 제때 잘 수 있고요. 옷도 제대로 갈아입을 수가 있고요. 돈이 있어서 편한 거요. 돈도 그 전에는 되게 아껴 쓰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흥청망청 쓰는 거 같아요. 돈이 생기니까요.
  23. 조건 했을 때는 제가 돈 아무렇게 다 써도 또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깐 배고프면 먹고 담배 사고 담배 부족한 날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니까 용돈을 잘 받지 못하니깐 그거 때문에도 그렇고 언니들한테 담배 빌리고 돈 쓰는 것도 줄어들고 비싸 보이는데싼 거 좋아 하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24. 당연히 소비가 많아지죠. 막 쓰고 막 사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가족들한테도 일 한다고 해도 어떤 일 하는지 모르잖아요. 뭐라고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해야 하고 좀 그렇죠.
  26. 돈 생기면 흥청망청 쓰죠. 귀한지도 모르고 웬만한 건 다 사죠.
  29. 돈이 많아 졌다는 거요.
  30. 우선 돈이 생기니깐 애들하고 약속도 지킬 수 있고, 그 전에는 가끔

가다 친구들하고 쇼핑가자고 하면요 돈이 없으니깐.

31. 사람들이 애 돈 좀 있구나. 그래서 애들도 돈 있는 애들만 만나게 되고. 돈 있는 애들 만나니까 내가 해준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고요.
33. 돈을 쓰는데 통이 커졌다는 거. 돈을 막 쓰게 되는 거요.
34. 돈을 막 쓰는 거나
38. 그러니까 조건만남 할 때는 돈을 막 썼어요. 조건만남 접고서 부터는 돈의 소중함을 알고 아끼게 됐죠. 사고 싶은거 사고, 여태까지 못 샀던거 사고요. 근데 좋긴 좋은 데요 그만큼 돈이 쉽게 벌린다는 거죠.

#### □ 성격 : 분노, 마음의 상처

1. 다혈질이 되고, 아빠가 말이 없어졌어요.
2. 먹고 싶은 것 안 먹으면 성질나요. 돈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것 바로 먹으러 갈 수 있었는데 돈이 없는데 피자먹고 싶으면 못시켜 먹잖아요. 그럼 막 성질나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성격이 다혈질로 변했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돈을 꼭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6. 그냥 심리적인 것들. 단어 몇 개로 표현 할 수 없는데, 자기비하하게 되고, 힘들고.
17. 맨 처음에 했을 때는요 자살 같은 거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제가 해 돈을 받았다면 털 억울했을 텐데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사랑한 사람과도 한 게 아니잖아요.
20. 후회하고, 방황도 하고, 짜증만 늘어나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생각

-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22. 신경질이 너무 많아 진 거 같아요.
23. 부모님이랑 더 멀어지고 무슨 말만 하면은 아빠는 다방 얘기만 꺼내고 다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우울해지고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아빠가 무관심 했으면 좋겠어요.
27. 내 자신이 싫고 부정적으로 생각도 되고 우울증에도 걸렸어요.
28. 사람도 못 믿겠고 절 더럽게 볼까 봐 신경이 쓰여요.
36. 사람들 눈을 피한다고 말해야 되나. 두려워요. 제 인생 이제 좇됐다. 가수 하고 싶어서 춤도 끊었어요. 오디션도 보고요.
41. 막 부끄럽고 후회되고 그래요.
42. 되게 우울해 하고 자신을 너무 내리 뭉개는 거 같아요. 한심하다고요.
43. 그냥 내가 더러워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 가치관의 변화 : 돈, 남자

5. 예전에는 돈을 맘 흘려서 열심히 벌면 그게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쉽게 버는 방법들도 많고.
11. 조건할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일일 조건이요 안 좋게 느껴졌는데 하고 나면 돈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럼 오히려 조건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네? 네.
12. 그냥 집에 있을 때, 만약에 조건만 남 했으면 돈이 주머니 속에 있잖아요. 그럴 때 기쁘고, 몸 버렸다는 생각을 쉽게 잊어요. 돈이 있으니까.
13.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 몰랐으니까 동갑 애들 보면 순수한 것 같고, 그런 것 모를 것 같고. 저는 솔직히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 보니까 남자들도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애네들도 결국은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죠.

21. 좀 어렵죠. 전에는 만나는 게 괜찮았는데 그런 생각만으로도 괜찮았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후에는 이런 걸 했으니까 싫어하겠고 솔직히 나쁜 거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내 몸이 좀 더러워 보인다. 꺼릴 거 같고. 조건 하기 전에는 이걸 불법이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 해도 안 걸리고 내 몸 가지고 한다는데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24. 남자들을 기피하게 돼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더 싫어 할 수 있죠. 다 그래 보여요. 남자들이..
37. 돈의 소중함을 잃어 버렸어요.
39. 그렇게 바뀐 건 없는데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어요. 남자요.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남자는 다 저럴 것이다.

#### □ 기타

10. 일단 밤에 외출하는 게 많아져서 엄마랑 많이 싸우고.
34. 막 밤에 주로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가, 보통 때보다 잠자는 거나, 시간문제요.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세 네시간 걸려요.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하면 쉽죠.

## 나. 인터넷성매매의 피해

청소년들이 인터넷성매매로 인해 받은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첫째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한 액수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있었다. 43명의 청소년 중 20명이 “돈 조금 받은 적은 있어요. 처음에 한 사람이 15로 하고 만났는데 방값을 계산하고 들어가서 돈을 받았는데, 8만원 밖에 없대요.”, “한 두 번은 있었어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도망가고.” 등과 같이 응답하였다.

둘째는 폭행, 성폭행, 변태적 행위를 강요받은 경우이다. 43명 중 15명의 청소년이 “맞은 적 있어요. 만났는데 때리고, 성관계도 안하고, 시간만 끌고.”, “맞은 거요. 변태 행위인지 모르는데 카메라 가지고 와요. 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겠대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 먼저 달라고 했는데 하고 나서 준대요 근데 웬지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더니 때렸어요.” 등과 같이 응답하였다.

셋째는 성매매로 인해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을 한 경우이다. 43명 중 6명의 청소년이 “산부인과 자주 다녔어요. 자궁경부암 있잖아요. 그 암세포도 있었어요.”, “성병 걸린 것. 헤르페스 걸렸어요.”, “임신 한 적 있어요.” 등과 같이 응답하였다.

기타의 피해경험으로는 “이번에 걸린 거요.” 와 같이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걸린 것을 피해라고 생각한 청소년들도 있었고, “그 만남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강요를 받았어요.” 와 같이 성매매를 강요받은 청소년, “키스 알바만 하기로 했는데,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와 같이 성관계를 강요받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었다. 피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명 중 7명에 불과했다.

### □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음

10. 돈 조금 받은 적은 있어요. 처음에 한 사람이 15로 하고 만났는데 방값을 계산하고 들어가서 돈을 받

았는데, 8만원 밖에 없대요. 자기 이름하고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려 준대요.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면 내일 계좌로 돈을 넣어주겠다. 그랬는데 안 줬어요. 연락을 피하던

데요. 경찰아저씨한테 다 일렸어요. 이거 친구나 주변사람한테 얘기 해 봤어? 친구한테요. 미친놈이래요.

12. 한 두 번은 있었어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도망가고. 돈 못 받았을 때 도움 받은 적 있어요? 도움을 받고 싶어도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잖아요. 쪽팔리니까. 아무리 가출했다 해도 그런 짓 하면서 생활 했다는게.
13. 돈 못 받은 적 한 번 있어요. 제가 아는 언니랑 PC방에 있었는데, 그 언니가 잠깐 집에 갔다 오는데 그때 PC방비가 엄청 밀렸었어요.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급하니까 생각나는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구해서 하루를 같이 있는 거예요. 50만원을 준대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PC방 주인한테 짐 다 맡기고, 돈 받아서 오겠다고 하고 갔는데, 제가 하루 있는 동안 횡수를 제한을 안 한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잠도 못자고 눈뜨고 밤 썼거든요. 그날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었어요. 은행문이 안 열잖아요. 제가 잘못하고 침에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 남자가 돈 좀 빼올게 하면서 5만원을 주고 갔어요. 핸드폰도 있어가지고 전 믿었죠. 근데 그게 대포폰이었어요. 돈도 다 못 받고 그냥. 그럼 횡수제한을 안 해서 그 사람이 많이 하자고 요구했어? 근데 전 거기서 말을 못하는게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하루 같이 있기로 했는데 때릴지도 모르잖아요.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이렇게 피해를 받고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피해를 받고 도움을 받았어? 제

가 아는 오빠가 그런 것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50만원에 했다고. 지금 돈 뽑으러 갔다고 하니까 너 미친거 아니냐고, 개가 돈을 뽑아서 줄 것 같냐고. 그래서 핸드폰 번호 안다고 전화 해보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 오빠가 전화했는데, 처음엔 받더라요. 막 뭐라고 했나봐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애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돈 내놓고 가라고 그랬는데. 모텔에 전화가 있었는데, 거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때 거기가 일산이었거든요. 자기 원래 일산에 안 산다고, 이거 핸드폰도 대포폰이라고, 그 전화 온 순간 뺏쳐가지고 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돈 주고 가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영등포가서 아이디 쪽지로 보내라고 그걸로 주겠다고 그래서 믿고 갔죠. 근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쪽지 보내 봐도 씹히고.

15. 헤어질 때 봉투에 넣어서 돈 주길래, 안 세어 봤는데 오만원 비었어요. 15만원 줘야 하는데 10만원밖에 없었어요. 한번? 네 딱 한번이요.
17. 개가 준다고 했거든요. 그때 2대1 일 했는데 그 새끼가 안한다고 했어요. 하긴 했는데 돈 없다고 했어요. 돈 있는 걸 제가 확인 했거든요. 왜 이렇게 못하냐면서 안 줬어요. 그때 도움 요청 해 본 적 있어요.
18. 돈도 못 받고, 맞은 적도 있어요. 자기 것 빨아달라고 하고 가슴 빨아달라고 해서 해주는 척 하다가 입 아프다고 안 했어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 먼저 달라고 했는데 하고 나서 준대요 근데 웬지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더니 때렸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어요. 도움을 받은 적 있어요? 아니요. 도움 요청한 적도 없어요? 네. 경찰서에 끌려 갈까봐.

21. 돈 안 받은 거요.
23. 돈 못 받은 적은 2번이요. 제가 돈을 못 받았던 이유는 하나가 그 남자가 사카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 진짜 싫은 거예요. 조건 했던 내용하고 다르다고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한 번 할 걸 두 번 했는데 싸웠어요. 다 풀렸어요.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고 배가 고프대요. 모텔 안에서 TV보고 있었는데 그 언니랑 나가서 그 오빠가 돈을 준 거예요. 3만원을요. 저는 사카시 안 해준다고 그 오빠가 안준다고 했대요. 그 언니가 대신 해주고 3만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한 거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돈 한 번 못 받은 적 있어요.
24. 돈 못 받았어요. 도움은? 누구한테 받아요. 받을 사람이 없죠. 누구인지 모르고 대행하고 튜 애들이 었거든요. 버디 같은 애들은 아이디 지우면 그만이고 찾기도 어려운 거고 딱히 도움 받을 때가 없어요.
25. 남자가 사기 친 적 있어요. 친구랑 있었는데, 그 남자가 5만원씩 주기로 했었어요. 친구랑 저한테 3만원씩 주고 4만원 더 뽑아온대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모텔비가 2만원에 술 먹은 거 2만원 썼거든요. 3만원씩 준다고 하고 갔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2-30분. 거짓 말치고 간 거예요. 피해 받았을 때 주의 사람한테 얘기한적 있어요?

없어요. 도움을 못 받았어요.

26.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가 많죠. 영업 방해하려고 시비거는 애들도 있고. 미친년 ㅋㅋㅋ 속았지 그런 말하고. 차에서 했어요. 하고 준대요. 그래서 억지로 했어요. PC방비 만원만 주고 계산하고 오래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신고는 안돼죠.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또라이라고 쓰고 다녔어요.
27. 바람 맞은 적도 있고, 돈도 못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후불로 준다고 조르다가 하고 나서 안주고 도망갔어요.
30. 돈을 못 받았어요. 맨 처음에 선불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저씨가 주는 걸 마셨는데, 졸리니까 잠깐 자야지 아저씨 그냥 가겠지 생각했는데, 돈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수면제인거예요. 그 아저씨가 30대 초반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선불로 주겠다고, 있다가 주겠다고, 하고 나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같이 가는데, 갑자기 택시를 잡아요. 딱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 받은 적은 있어요? 한번도 없어요.
34. 있긴 있겠죠. 돈 못 받은 것도 있고 잡은 것도 있지만 놓친 적도 있죠. 3~4번이요. 저는 오던 사람이 오니까 한 번 하고 나서 연락 계속 오는 경우가 많아요. 폭행이나 변태행위는 없었어? 발이 예쁜 사람을 좋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발이 예쁜 편이 아닌데 스타킹 자기가 사 왔다고 스타킹 신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안 신는다고 하면 안 할게 뻔한데 제가 스타킹 신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키가

크다고 안 맞을 거라고 했는데 큰 거 사왔다고 어쩔 수 없이 신고하는데 그 남자가 스타킹 찢어서 한 적도 있고 제 팬티를 팔라고 한 적도 있어요. 얼마 주고? 거의 5만원이요. 그래서 팔았어? 판적은 없어요.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입던 팬티를 왜 팔아요. 제가 아는 동생이 제가 입던 팬티를요 몸은 안 팔아 봐서 무섭다고 제 팬티 입고 빨려고 내놓은 팬티를 팔은 적은 있어요. 피해를 받았을 때 주위에서 도움 받은 적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저 아는 오빠한테 도움 받은 적은 있어요.

35. 그때요 개가 차도 없고 모텔 갈 줄 알았는데 제가 돈이 급했는데요 저희 집 근처 학교에서 했는데 제 바지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끝났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만원 받고 그 남자한테 8만원 줬어요. 그 남자한테 선불로 받은 돈이요.
36. 돈 못 받은 거요. 친구랑 선배랑 엄마 친구가 그 새끼 잡아서 줄라 뭐라고 하고요. 제가 경찰한테 가 출해서 잡혔거든요. 그 남자한테 돈 받아 냈어? 네 150만원이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친구한테 다 말했어요. 번호도요. 경찰한테 이 번호 좀 추적해 달라고 해서 잡혔어요.
37. 돈 못 받은 적도 있고요.
39. 10만원에 하기로 해서 나갔는데 다하고 나서 보니까 5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5만원에 주고 간 사람도 있었고.
40. 돈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모르고요 제가 씻고 선불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찾아왔다고 다 벗

은 상태였거든요. 다 벗은 상태라 나갈 수가 없다고 있다가 나가서 준다고 했어요. 같이 나가서 은행에 갔거든요. 근데 그 카드가 정지 돼서 다음날 준대요. 연락이 없었어요. 이때 도움 받았어? 도움 못 받았어요.

43. 네 있었어요. 4만원밖에 없다고 돈 빼러 간다고 은행에 간다고 해 놓고 뒷문으로 도망 가놓고 안 오고 4만원 받고 한 적도 있었어요. 원래 15만원 받기로 하고 했었는데? 네. 아예 못 받은 적은 없고? 있었어요. 샤워하고 나왔는데 옷 입고 짐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는 어때요? 화나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어요? 못 했어요. 자랑도 아닌데 말하기 그렇잖아요.

#### □ 폭행, 성폭행, 변태행위

2. 네. 15살 겨울쯤이예요. 돈을 벌려고 또 나갔어요. 제가 그 때 겁이 없었어요. 차에 탔는데 저를 갑자기 막 때려요. 일단 남자랑 둘이 차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 핸드폰은 차에 타자마자 뒤로 던져버리고. 아무 것도 못하는데 욕을 하면서 계속 때려요. 그리고 강제로 뭐 시켜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양시 산골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길 올라가더니 저 보고, 제가 차 안에서 옷을 다 벗었거든요. 여기서 버려줄까 자기네 집에 갈래 이래요. 근데 버려달라고 하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갔다가 맞으면서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

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원래 변태 취향이라고, 여자가 무서워해야 자기가 흥분이 된대요. 그래서 때린 거라고 미안하대요. 개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무도 안 믿을걸요. 이런 얘기하면. 그 이후로 저는 죽는다는 말을 쉽게 안해요. 저는 그 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조금만 힘들면 나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니까 죽기가 싫어요. 어디다 판다고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신고는 안했어요. 왜 신고 안했어? 보복이 무서워서. 나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내 핸드폰 번호도 알고. 핸드폰번호 바꾼다고 끝날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집 앞도 아는데. 그래서 그냥 신고 안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주변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구나. 친구는 알아요.

3. 스타킹사와서 스타킹 신고하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발가락 빠는 사람도 있고. 더러워요. 정액 입에 다 싸는 사람도 있고. 바로 빨고 화내요. 원래 그런거 안하니까. 그럼 구강성교도 하는 거야? 조건 내용에 구강성교도 들어있어? 아뇨.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럼 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도움을 못 받았어? 친구나 부모님이나 이런 기관들 있잖아. 솔직히 저도 조건만남 한건 잘못했잖아요. 저도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만 말하고 친구한테 위로 받았어요.
5.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런 건 좀 있었다. 제가 막 말렸어요. 후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세요. 뒤로

하는 것.. 싫잖아요. 애들이 그건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하자고 해서 달라고 막 그래서 안하고, 아니면 말타는거, 69있잖아요. 그런거. 돈 더 준다고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경찰이나 지구대에 있는 아저씨들은 당했다고 가서 얘기하면 귀찮아하고, 어디서 당했는데 그러고, 그 지구대가 아니예요. 그러면 그 지구대에 가서 너가 얘기해야지, 막 그래요.

7. 네. 맞은 적 있어요. 만났는데 때리고, 성관계도 안하고, 시간만 끌고.
15. 돈 30 준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는게 아니고 개는 때리는 거예요. 제가 침대에 엎드려 있으면요 그냥 때로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거예요 혼자서 이래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야. 너는 지각을 한 거야. 때릴 때마다 죄송하다고 해. 그 사람은 옷을 벗었어? 아니요 그냥 때릴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200대를 때리겠대요. 얼마나 걸렸어? 한 시간 반 정도요. 30주고 갔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스타킹 자기가 주는 스타킹을 신고서 자기가 찢게 해 달래요. 그렇게 해서 시간당 얼마를 줄게 하는 거예요. 그건 미친 것 인 거 같아요. 돈 못 받았을 때 도움 받은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18. 돈도 못 받고, 맞은 적도 있어요. 자기 것 빨아달라고 하고 가슴 빨아달라고 해서 해주는 척 하다가 입 아프다고 안 했어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 먼저 달라고 했는데 하고 나서 준대요 근데 웬지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더니 때렸어요. 그래서 경

찰한테 신고한다고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어요. 도움을 받은 적 있어요? 아니요. 도움 요청한 적도 없어요? 네. 경찰서에 끌려 갈까봐.

19. 보통 사까시라고 하죠. 친구가 조건 잡을 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했었나봐요. 그래서 다 된다고 했나봐요. 전 몰랐어요, 제가 잡은 게 아니니까. 갔는데, 친구가 25만원을 먼저 받아서 가고, 50만원을 받는 거였어요. 샤워를 하고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샤워실이 유리벽인거예요. 사까시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다 해주기로 했으면서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내가 말한 것 아니고 친구가 말한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를 데리고 오래요. 그 친구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친구를 팔 수가 없으니까. 그 남자가 화가 나서 저를 때렸어요. 침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제 위에서 얼굴을 때렸어요. 제가 문신을 했는데 이거를 지우고 싶었거든요. 지우는 방법이 담배로 지우는 거래요. 그래서 담배 한 갑을 피워서 제가 제 손을 지웠어요. 그래서 그 때 굶기도 하고, 피가 막 날 때였어요. (그 남자를)막다가 살짝 스쳤는데, 피가 막 나는 거예요. 남자가 피를 봤나봐요. 손 왜 이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맞았으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손을 보더니 좀 그랬는지 잘해주는 거예요. 이거 굶으면 손 잘라야 된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시켰냐고 물어봐요. 자기가

그러면 사까시, 열사, 이런 것 안 할 테니까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냥 하고, 돈을 25만원을 줬어요. 그렇게 받아간 적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적 있어요. 끝나고 왔는데 번개를 잡은 거예요. 술을 마시고 싶어서. 그 때 처음에 그 언니랑 있을 때. 그 언니랑 친구는 잘 안 마시려고 하고 다 나한테 마셔달라고 하고. 안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짭으로. 제가 다 마시고. 그 때 처음으로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 때 언니랑 친구는 자기네끼리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었고, 나는 헤롱헤롱한 상태에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파에 누웠는데. 누가 옷 벗기려고 하는 것 까지 기억나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떴는데 버스정류장인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아저씨가 재워줄까?’ 그러면서 모텔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나한테 했어요. 먹을 거라도 사줄게 하고 안 돌아왔어요. 그 아저씨는 왜 따라갔어? 몸에 힘이 없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부축을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 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왜 도움요청을 안했어? 어디에 요청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몰랐고.

21. 맞은 거요. 변태 행위인지 모르는데 카메라 가지고 와요. 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겠대요. 되게 불쾌했어요.
27. 돈을 빼긴 적도 있어요. 때리고 칼로 위협한 적도 있어요. 10만원 정도요. 자기가 준 것을 빼어갔어요. 학생이었어요. 21살인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칼로 위협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다 하려고 (항문섹스)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뛰쳐나갔어요. 아픈 걸 아니까.그냥 돈도 못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성매매 때문에 성폭행 당한 적도 있었어요. 조건만남 하려고 서대전역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끌고 가서 그 안에 허름한 여관이 있었는데 장기 기간에 있는 여관인데 위협당하고 등 뒤에 칼 대고, 사람들 안보이게 당했어요. 당하긴 당했는데 안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사달라고 해서 그 남자가 밖에 나간 사이에 신고 했어요. 어떻게든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법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젠 남자를 못 믿어요.

- 28. 안한다고 맞을 뻔 한 거, 욕먹은 거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도움요청은 안 했어요.
- 30. 돈을 못 받았어요. 맨 처음에 선불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저씨가 주는 걸 마셨는데, 줄리니까 잠깐 자야지 아저씨 그냥 가겠지 생각했는데, 돈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수면제인거예요. 그 아저씨가 30대 초반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선불로 주겠다, 있다가 주겠다, 하고 나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같이 가는데, 갑자기 택시를 잡아요. 딱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 받은 적은 있어요? 한번도 없어요.
- 33. 욕한 적 있어요.
- 37. 칼로 위협 받은 적도 있고요.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차타고 한

바퀴 돌세요. 갑자기 양쪽에서 남자 둘이 타고 앞 자석에서 타고 공짜로 하자고 해서 안 한다고 했더니 맞고 칼로 위협 받고요. 모텔 가서 하고 2만원 받고요. 제 친구하고 남자 둘하고 하고, 저하고 남자 둘 하고요. 하얀 소나타였나 그 좁은 곳에서 위협 받고 죽고 싶지 않으면 말대로 들으라고요. 개네들 경찰에 신고했어 안 했어? 개네들은 못 했어요. 그럼 혹시 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 받은 적 있어요? 이번에 신고한 사람ियो. 제가 의정부에 상담 선생님이 계셔서 그 일 있고 아침에 바로 가야지 해서 오늘 신고하고.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야? 유통업 하는 사람ियो. 왜 신고 했어? 저희가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닌데 괜히 도망갈 거 같다고 때리고요. 지금은 잡혀서 구치소에 갔어요. 많이 맞았어? 좀 많이 맞았어요. 맞은 거 보다 당했다는 게 상처가 더 커요. 제가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어서 하기 쉬웠나 봐요. 저 먼저하고 친구 벗으라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친구가 바지 벗으면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는 줄 알고 도망갔어요. 옷 벗고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요.

- 39. 애무 안하기로 했는데 애무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냥 간 남자도 있었고요. 얘기 했는데 그런데도 해달라는 사람 있었어요. 그리고 차 스타렉스였어요. 탔는데 한명인줄 알았는데 외진 곳에 갔는데 제 뒤에서 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안에 3명이나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되게 울었대요. 저는 안 울었어요. 억울한 거예요. 하자고 해서 두명이

랑 했어요. 한명은 빼고요. 한명은 왜 안했어? 제가 하기 싫다고 했어요. 거기 중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애가 많다고 이런 카페가 있다고 지역마다 우리 말고도 많다고 번호 안 바꾸고 만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돈 준다고요. 개네는 몇 살이었어? 제일 나이 많은 애가 28이고 어린 애는 21요. 미성년자도 몰려 있네요. 그런쪽에. 돈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많죠. 전화 하죠. 미안하다고. 다시 받긴 받았어? 네.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도움 청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이런 거 한다고 말 할 수 없잖아요. 친구한테만 말했어요.

42. 변태같이 말하는 거요. 그거 하기 싫다는데 계속 하는 거요. 힘으로 제압하고요.

### □ 성병, 임신

2. 산부인과 자주 다녔어요. 자궁경부암 있잖아요. 그 암세포도 있었어요.
3. 성병 걸린 것. 헤르페스 걸렸어요. 그거는 완치가 안 되니까 생각하면 열 받아요. 걸리고 1주일 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피곤하면 재발해요. 돈도 깨지고 짜증나잖아요. 10만원 받고, 그것보다 더 돈 많이 들여서 고치는 건데. 한 번 성병 걸리면 안 하려고 해요. 그것도 모르고 아무 때나 전화하는 게 짜증나요. 여기 와서도 핸드폰을 켜았는데 조건남한테 만나자고 계속 전화 왔어요.
14. 성병 옮았어요.
15. 성병인 임질 걸린 적 있어요. 간지러워서 병원 다닌 적 있어요.
30. 임질. 염증이 있대요. 최근에 컴퓨터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35. 임신 한 적 있어요. 한번요. 조건 만남으로 임신한 적 있잖아 그 남자 누구인지 모르죠? 알아요. 신고 했어요. 경찰한테 걸려서 제 핸드폰으로 아저씨라고 저장 해놨는데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 임신 시킨 사람이라고 경찰이 알아내서 찾아냈어요. 그럼 그 남자한테 돈도 못 받았어? 수술비는? 아는 오빠한테요 처음에 그 오빠 애 인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어요. 그 오빠가 내줬어요. 얼마? 45만원이요.

### □ 기타

1. 조건남이 나와서 도망가다가 걸렸는데, 오빠들은 수배중이어서 경찰에 걸리면 안 되니까 먼저 가고. 오빠들이 사라지니까. 무섭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사기 당했던 애가 또 채팅하다가 만나서, 돈 찾으러 왔어요. 돈 안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밤새도록 10만원 구해서 줬어요.
4. 예전에 조건만남은 안하고 조건사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PC방비가 장난 아니어서 조건 구하고, 친구가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나갔다가 오더니 그 사람 경찰이라고, 친구가 먼저 피하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는데, 나만 잡혔어요. 양천경찰서에서.
9.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키스알바를 했잖아요. 키스알바만 하기로 했는데,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거부를 해요. 그럼 그만두던데요.
20. 그 만남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강요를 받았어요. 그 후배가 저의 집

에 가방을 놓고 갔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고 그 짐을 다른 친구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며칠 뒤 개네가 너 때문에 옷이 없어서 노래방도우미를 못해서 돈을 못 벌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빌릴 곳이 없어서 PC방에 가게요. 가서 조건만남을 지가 방을 만들더니 막 구하는 거예요. 15만원인가? 강요 받았어요. 그 짐 때문에. 그 남자한테 말했어요. 저 안한다고 근데 안하고 개네들 여관으로 갔는데 너 민증이랑 화장품 가방 맡기라고 했어요. 맡겼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널 아침에 학교 가지 말래요. 그래서 답답해서 일단 나갔는데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 여관 영업정지 되고, 할머니가 너네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후배가 하는 말이 그럼 언니 내가 신고해버린다는 거예요. 난 시킨 적이 없는데. 조건만남 한 걸로 한다고 했어요.

29. 지금요 그렇게 조건만남을 하고 나니깐 학교에서 가출 한 걸 들었어요.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오니깐 고모랑 고모부가 학교로 전화했어요. 학교에 갔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일을 아셨어요.

38. 이번에 걸린 거요.

#### □ 피해경험 없음

8. 저는 없는데.

11. 피해요? 없어요.

16. 없어요.

22. 없어요.

31. 그런 건 없었어요.

32.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41. 없어요.

#### 다. 인터넷성매매의 단점

인터넷성매매의 단점은 크게 4가지로 상대를 신뢰할 수 없음, 단속에 걸릴 위험이 있음, 성매매로의 접근이 용이함, 건강이 나빠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상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43명 중 19명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이 사람이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지 모르잖아요. 위험부담이 커요.”,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란 거요. 많이 조심하죠.”

둘째로 단속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43명 중 5명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경찰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고.”,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니깐 경찰일 수 있잖아요. 경찰한테 걸릴 수 있으니까요.”

셋째로 성매매로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43명 중 4명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그게 너무 많다는 거요. 그렇게 빠질 수 있겠끔 만드는 거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 이에요.”, “너무 쉽게 그쪽으로 빠지는 거 같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만 해도 쪽지가 10초도 안 되서 들어오니깐 우리가 노출이 되잖아요.”

넷째로 건강이 나빠진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43명 중 5명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좀 살짝 걱정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임신을 했다 이런 거요 모르잖아요. 많이 했다면 내가.”, “이상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 같아요. 힘들고요.”

기타의 응답으로는 “마음의 상처도 남고 한번 하면 그걸 끊기가 힘들어요. 쉽게 벌고 쉽게 쓰니깐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여자가 봤을 때는 자격이 일단 너무 썩 게 안 좋고요.” 등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 상대를 신뢰할 수 없음	
2. 이 사람이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지 모르잖아요. 위험부담이 커요.	정확히 할 수 없으니까. 저는 한번도 안 당했는데, 친구는 진짜 많이 당했어요. 모텔 들어가자마자 옷 벗어 이러면서. 밤에 성관계를 세 번인가 네 번 했대요. 하룻밤에. 많이 받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오고 그 사람이 계속 전화를 안 받았어요. 우리는 일을 같이 하잖아요. 너 이거가고 너는 이거가 이렇게 얘기해서 가면 애는 꼭 사기를 당해요.
3.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성병이 걸렸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돼지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근데 성병이나, 큰 사람 짜증나요. 하기 싫은데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많았어요. 수술한 사람도 있었어요. 구슬 박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구슬 박은 사람이랑 하다가 아파서 울었어요. 그냥 돈 주고 갔어요. 크게 수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놀래서 그냥 집에 갔어요. 그때는 별로 안 급했으니까.	13. 일단 그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처음 보는 사람에다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제 친구는 만나서 차를 탔는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두운 곳에 멈춰가지고, 묶어 놓고 협박하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술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약 타가지고 애를 팔거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니면 사진 찍어서 야동 같은데 올리고. 저
6. 위험하잖아요.	
8. 사기 치는 사람이 많아요. 신분을	

는 그런 적 없었는데 제 친구가 같이 PC방에 있었는데 구했대요. 갔다 오겠대요. 근데 4~5시간이 지나도 애가 안 와요.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을 못하잖아요. 왜 안 오나 하고 있는데 울면서 들어 오더라고요. 손이 다 빨개져가지고. 그래도 개는 다행히 나중에 남자가 돈도 주고, 다시 데려다 준 것 만으로도 다행인데.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팔리거나 집에 감금시켜놓거나. 그런 애들 많아요. 인터넷이 그래요. 인터넷에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4개월 동안 조건 할 때 그런 무서움은 없었어? 저는 솔직히 그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꺾어 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들어 본 적도 없어서. 괜찮겠지, 항상 똑 같으니까 그냥 만났는데, 제 친구가 딱 그러고 오니까 그 순간부터 좀 무서웠어요. 티비 보거나 주변에서도 보면 다방에 팔려가거나 그런 것 많아요.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하니까 안 무서웠는데, 지금은 애는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18. 인터넷으로 하면 돈을 먼저 안 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하고나서 돈 안주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20. 좋은 사람, 정직하고 착한 사람보다 별로 안 좋고, 변태들, 사기꾼들,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21. 그리고 대개 만나는 게 나이를 속이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되게 불쾌한 게 많아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만나서 뭐 하나 잘못 했다고 때렸어요. 콘돔을 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했다고 때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울었죠. 우니

간 솔직히 그 사람은 성인이니깐 다섯 대를 연속으로 때렸어요. 너무 아프니깐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고 갔어요.

24.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란 거요. 많이 조심하죠.
26. 장난이 너무 많고요. 변태도 많고 어린년이 이 나이에 뭐하는 거야 하면서 신체 포함해서 욕설도 많아요.
28. 그 사람의 성격을 모르니까 무서워요. 착한 사람인지 또라이인지.
30. 하지도 않는데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온다고 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약속을 깨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 사냐, 이름, 이런 것. 아저씨들이 나이를 너무 낮춰요. 제가 딱 봤을 때는 4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이라고 속이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25살이래요. 근데 저랑 동갑인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성병 있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들한테 콘돔 끼라고 얘기해요. 성병 싫다고.
31. 장난치는 사람이 많다.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대고요.
34.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거요. 안 믿는 게 당연한데요. 솔직히 남자도 여자를 못 믿는 게 가계에 일정하게 박혀있는 게 아니니깐 만약에 그 남자 샤워할 때 제가 지갑 가지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좋고 자기를 믿어 달라 해놓고 하고 돈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적도 있어? 네 제가 달려서 잡았죠. 그때는 제가 육상부였거든요. 제가 1학년 대표였는데 시대표로 나간적도 있어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

에서 잡았죠. 어디가세요?

- 37. 낚인다고 해야 하나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요.
- 39. 사기를 당하죠. 돈을 안 갖고 왔다거나 사람이 여러 명이 온다거나요.
- 40. 무섭죠. 처음 만나는데 모르는 사람 만나니까.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하는 거잖아요. 나쁜 거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 걸리겠지 그런 생각하면서요.
- 41. 모르는 사람 인터넷으로 만나니까 처음 보는 거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요.
- 43. 나이 속여 가지고 할아버지들 같은 사람도 한두명쯤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 □ 단속에 걸릴 위험

- 2. 경찰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고.
- 10. 경찰이 채팅해요.
- 11.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니까 경찰일 수 있잖아요. 경찰한테 걸릴 수 있으니까요.
- 18. 잘못하면 경찰한테도 걸리고
- 43. 짜바리도 상대하러 오고요.

#### □ 접근이 용이함

- 9. 인터넷이 너무 자유로워서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성매매 같은거.
- 27. 다 단점이죠. 거의 성매매로 이루어지니까요.
- 29. 그게 너무 많다는 거요. 그렇게 빠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 이에요.
- 33. 너무 쉽게 그쪽으로 빠지는 거 같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해

도 쪽지가 10초도 안 되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노출이 되잖아요.

#### □ 건강이 나빠짐

- 7. 몸이 망가져요.
- 12. 노래방 같은 것처럼 몸이 망가지는 거요.
- 15. 좀 살짝 걱정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임신을 했다 이런 거요 모르잖아요. 많이 했다면 내가.
- 23. 몸을 일단 버리고
- 35. 이상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 같아요. 힘들고요.

#### □ 기타

- 1. 몸 파는게 안 좋죠. 나이 많은 사람이랑 어떻게 해요. 아빠뻘이 나오는데.
- 4.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 5. 좋지도 않은데 좋은 척해야 하는 것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 14. 멀리 사는 것, 차 없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 16. 더럽죠. 징그러워요.
- 17. 여자가 봤을 때는 가격이 일단 너무 싼 게 안 좋고요.
- 18. 아저씨들하고 성관계 하는 것.
- 19. 좀 그런거 같아요. 네이트온도 대화할 수 있는데,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버디가 좀 심하잖아요. 조건이 아니더라도, 번개도 많고, 나랑 같이 살 사람 이런 것도 있고.
- 22. 불안할 때요. 왜 불안해? 콘돔 낄데도 그렇고 순결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요. 그리고 돈 못 받았을 때요.
- 23. 마음의 상처도 남고 한번 하면 그

<p>걸 끊기가 힘들어요. 쉽게 벌고 쉽게 쓰니깐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p> <p>25. 노는 거요. 그것도 조금 나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자기 몸 관리 하면서 하면 좋은데,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p> <p>32. 아저씨들 그냥 지 성 욕구 못 채우니깐 돈을 지불하고 채우려고 하니 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건 좀 그렇긴 한대요, 그쪽들이 좀 더 그렇죠. 저희한테 대부분 그래요. 처음에 딱 보고 저희는 대부분 19살, 18살 그러면 다 안 만나줘요.</p>	<p>미성년자라고 지네들이 걸리는 거 아니깐 저희는 20살이라고 말해요. 만나서 어린데. 그럼 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지네들도 좋으니까 가는 거죠. 어려 보이는데. 20살이에요 그럼 그냥 넘어가요.</p> <p>38. 재부팅 될 때요. 그리고 남자가 너무 까다롭게 굴어요. 너 너무 나이 어리다 공부나 쳐하지 이딴 거 하나.</p> <p>42. 너무 남자들이 여자들을 쉽게 보는 거 같아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요.</p>
--	---

#### 라. 인터넷성매매의 고통

인터넷성매매로 인해 힘들었던 점에 대한 질문에는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하기 싫은 사람과 해야 할 때, 상대를 만나기 힘들 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중독처럼 하게 될 때, 주위사람이 알게 됐을 때, 하루에 많은 사람을 만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43명 중 8명의 청소년은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라고 응답하였다. “임신하고 성병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요.”, “생리도 네, 다섯 번 안 했어요. 임신인 줄 알고 혼자 계속 걱정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요.”

둘째로 43명 중 5명의 청소년은 하기 싫은 사람과 해야 할 때라고 응답하였다. “술 많이 마셔야 될 때. 제정신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남자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몸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 것과 거울상으로 내 벗은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왜 이려고 있어야 되나.”

셋째로 43명 중 4명의 청소년은 상대를 만나기 힘들 때라고 응답하였다. “안 구해 질 때. 못 구하면 지구대 가잖아요. PC방비 못 내니까.”, “내 얼굴이 못 생겼다고 빠꾸 먹었을 때.”

넷째로 43명 중 4명의 청소년은 돈을 받지 못했을 때라고 응답하였다. “그때 돈은 못 받고 내 몸은 팔렸고 내 자신은 왜 이려고 있나 몸도 힘들

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 “돈 안 줄때, 강제 억지로 했을 때요.”

다섯째로 43명 중 4명의 청소년은 중독처럼 하게 될 때라고 응답하였다. “이거 할 때마다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하게 되니까요.”

여섯째로 43명 중 2명의 청소년이 주위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라고 응답하였다. “남자 친구가 알았을 때요.”

일곱째로 43명 중 2명의 청소년이 하루에 많이 할 때라고 응답하였다. “하루에 돈 많이 벌 때요. 너무 힘들어서 걸을 힘조차 없었어요.”

**□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 4. 아픈 것 있잖아요. 냉 많이 나오고, 너무 아파서 친구는 길거리에 누워 있었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1388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받고, 바르는 약 바르고 하니 까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남자애들이랑 몇 번 했는데, 휴지로 닦잖아요. 근데 물질 같은게 피랑 곁에 났어요. 안에는 모르겠어요.
- 7. 가족하고 연락하고 싶은데 못 하고, 아픈데 병원갈 수 없어서.
- 26. 내가 더럽다고 느꼈을 때 나도 그 짓하고, 산부인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사람인가 싶어요.
- 29. 임신하고 성병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요.
- 33. 좀 그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저씨 가고 나서 울었어요. 몸이 아파서요.
- 35. 임신 했을 때요. 임신하고 낙태하고 나서요.
- 38. 그리고 아플 때 감기 몸살 같은 거요.
- 43. 생리도 네, 다섯 번 안 했어요. 임신인 줄 알고 혼자 계속 걱정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요. 스트레스가 높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병 옮은 거는 깨끗이 치료 했어요? 네.

**□ 하기 싫은 사람과 해야 할 때**

- 9. 술 많이 마셔야 될 때. 안 마시면 안 돼? 제정신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 20. 그 남자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몸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 것과 거울상으로 내 벗은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왜 이려고 있어야 되나.
- 38. 하기 싫을 때
- 39. 그냥 다 힘들었는데 하면서 안 힘들었을 때가 없었던 거 같아요. 어떤 게 힘들었어요? 하기 싫은 사람 이랑 한다는 거요. 그렇게 다 힘든 데도 돈 때문에 결국은 또 하게 되요? 솔직히 지금도 하고 싫는데 참는 거예요 여기 오는 애들 다 그럴 걸요. 돈 쉽게 버는 애들 많아요. 안 되는 거 아니까 안하는 거예요.
- 42. 남자들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거요.

**□ 상대를 만나기 힘들 때**

- 1. 안 구해 질 때. 못 구하면 지구대가 잡아요. PC방비 못 내니까.



2. 뽕찌 먹었을 때. 다시 들어오려면 귀찮아요. 예전에는 제가 살이 되게 많이 찼었어요. 정신병원에 갔다 왔는데, 살이 8킬로가 찼 거예요 두달 만에. 작년 5월에 나왔어요. 살이 8킬로가 썩버려서. 제가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포토샵을 많이 했던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진이랑 나랑 다르대요. 나도 아는데.
8. 일이 잘 안 잡힐 때요. 방세가 바로 코앞인데.
28. 내 얼굴이 못 생겼다고 빠꾸 먹었을 때.

#### □ 돈 받지 못했을 때

12. 나는 대 쫓는데, 그 사람이 마땅한 돈을 안줬을 때요. 만나기로 해놓고 PC방비도 아직 한 시간 남았는데 버리고 나는 나갔는데 그 사람은 안 나왔을 때.
24. 돈 못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돈을 이렇게 쓰면서도 다시 이렇게 돌아 갈 텐데.
36. 돈 안 줄때, 강제 억지로 했을 때요.
37. 그때 돈은 못 받고 내 몸은 팔렸고 내 자신은 왜 이려고 있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 □ 강요에 의해 했을 때

14. 언니랑 살 던 것. 조건 시키니까.
19. 그 친구랑 같이 있는 거요.
23. 조건만남 하려고 PC방에 갔는데 안 구해져서 날 밤새고 그랬을 때요. 진짜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하나. 자고 싶은데 뭐라도 구해야 여길 빠져 나가니까요.
30. 최근예요. 친구들의 강요로 내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계속 시켰잖아요. 그냥 맨 처음에 한번 해주고 끝내야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하더라고요.

#### □ 중독처럼 하게 될 때

13. 힘들었던 때는 없었는데, 돈에 자꾸 중독이 되다 보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10만원 가지고 한 시간도 안돼서 다 쓸 수 있어요. 노래방가고, 술 먹고 뭐하다보면 다 쓰는 거예요. 그 친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건하고, 조건해서 돈을 쓰고, 돈 없으면 또 불안해서 또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을 때 조건만남이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학생이 아무리 일해 봤자 한달에 6~80만원이고, 보통이 3,40만원이잖아요. 그거 8번하면 80만원 금방 생기는데. 그래서 일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15. 한참 하다가 돈이 슬슬 들어오다가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안 하려고 하니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은 쉽게 버는데 알바는 하기 싫고 그럴 때요. 돈은 얼마나 벌었어? 업소가 하루에 30정도 벌었고요. 그걸 두 달 정도 했고, 일주일에 150에서 200정도 벌었다고 보면 돼요. 두 달 정도 했으니까 800정도요. 애인대행도 300~500정도요.
21. 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심리적 마음으로 힘들었어요. 이거 할 때마다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하게 되

니까요.

31. 조건만남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그 때는 좋았는데 돈 다 쓰고 나서 통장 정리하고, 아 힘들게 번 건데 잔고가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다시 조건만남 할 때요.

#### □ 주위사람이 알게 됐을 때

5. 그것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 남자 친구를 다시 사귀었어요. 나는 그 걸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개는 그 걸 몰라요. 그래서 헤어졌을 때, 그런 것도 있었고, 핸드폰번호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상한 문자 오거나, 전화오거나
32. 남자 친구가 알았을 때요.

#### □ 하루에 많은 사람과 할 때

3. 하루에 돈 많이 벌 때요. 돈 많이 버는데 왜 힘들어요? 몇 번씩 하잖아요. 하루에 12번 13번 한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걸을 힘조차 없었어요. 현기증 나서 쓰러질 뻔 한 적도 있어요.
16. 하루에 두세 번 할 때요.

#### □ 기타

6. 그것도 몸에 익숙해지니까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하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에 너무 얽매여서 살고.
10. 없는데. 마음이 괴로웠을 때는 딱 끝나고 돈을 받아서 남자랑 헤어지고 집에 오면 그 때 후회감이 밀려와요. 제가 저를 보면 괴로워요. 그

리고 지갑에 돈이 차있는걸 보면 좀 그래요. 뭐가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11. 딱 나갈 때 무서웠어요.
17. 조건만남 맨 처음에 할 때요.
18. 밤새고 나서 잘 때가 없어서 하려고 하니까 짜증났어요.
22. 그냥 횡수 원래 한번으로 하자고 했는데 두 번씩 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똑같이 주면서요. 조건 한 번 횡수 한 번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미친 새끼들이 한번 끝나고 너무 빨리 끝난 거 같다고 한 번 더 하자고 이지랄 까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 싫다고 하면서 돈 들고 나오죠. 원래 끝나면 그 사람들이 집까지 바래다주거든요. 그럴 경우는 택시비를 내야 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바보 같은 짓을 또 할 순 없죠.
25. 돈 조금 받고 그런 거 하니깐 부모님이 주신 건데 생각해보면 힘들어요. 딸랑 3만원 받고, 내 몸이 너무 아깝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7. 늘 내 몸이 더럽혀진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34.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사생활도 그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채팅하면서 제 아이디를 아니까 그 여자 어쨌다 안 좋게 말하고 다니고요.
40. 경찰서 간 거요. 자유를 박탈당하잖아요. 소년원 갈까봐 그런 게 두려웠어요.
41. 그냥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요. 요즘도 조건만남 했던 게 생각나요? 막 후회만 되고 기분이 이상해져요.

(3) 안정화단계 : 탈성매매

① 재유입

앞으로 성매매를 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43명 중 30명의 청소년은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안 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상처만 계속 생기고.”, “이제 죽어도 안해요.”

그리고 43명 중 9명의 청소년은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출하면 또 할 지도 모르는데, 가출을 안 해야죠.”, “안 할 거 같은데요, 100만원 준다고 하면 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43명 중 4명의 청소년은 다시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 할 거 같아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돈 뺏에 할 것 같아요.”, “할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와 같이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 않음

- 1. 이제 죽어도 안해요.
- 2. 솔직히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어도 싫어요. 옛날엔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만났거든요. 필요 없어도. 근데 아는 사람이어도 싫어요. 연락은 계속 오는데 제가 안하려고 해요.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 계속 연락해요. 그저께도 왔을 걸요.
- 3.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 할 거예요. 너무 싫어요. 몸도 상할 만큼 상했고. 헤르페스가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돈 관념도 사라졌어요. 그 때는 돈이 많으니까, 누가 뭐 사달라면 다 사주고 남들한테 많이 썼어요.
- 4. 안해요.
- 9. 안 할 거예요. 제가 일해서 돈 벌어서 그런 쪽으로는 안 가고 싶어요.

- 10. 절대 안 해요.
- 13. 저는 일단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 유가 사고 싶은 것은 많고, 하는 일 없이 집에 있고, 친구랑 계속 만나면 용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저는 일주일에 용돈이 1만원이거든요. 만원이면 친구 한번 만나서 밥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 조건만남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아예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기회도 없고요, 할 시간도 없어요.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 끝나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자고 그러니까. 돈 쓸 일도 없고, 돈 필요할 일도 없고.
- 14. 안 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상처만 계속 생기고.

16. 전 근데 접었어요. 안 흔들릴 마음 있어? 조금 흔들리는데 지금은 안 해요.
17. 100만원 준다고 해도 안할 거 같아요.
19. 안 해요.
20. 전 안 해요. 돈이 너무 없다고 해도, 아빠나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거나 그럴 거예요.
21. 안 할 거예요. 피해 야죠 아니면 거부하거나.
22.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안 할 거 같아요.
23. 안 만나요. 아예 버디 같은 걸 안 해요.
24.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여성은 약하잖아요. 약하고 쓰레기 취급 받고 싶지 않아요.
26. 안 해요. 돈 그렇게 중요한지 필요 한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100만원 200만원 줘도 안 해요.
27. 안하죠. 절대 이젠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28. 안 해요.
29. 안 할 거예요.
30. 무조건 안 할 거예요. 우선은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잖아요.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진짜 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번 돈은 제 돈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다면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32. 안 할 거예요.
34. 일단 안 해요. 이 교육 받으러 온 자체가 성매매 끊으려고 안 하려고 왔으니까요. 자체적으로 왔어요. 법원 수탁기관 나서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받아 보라고 해서 제가 받겠다고 해서 왔어요.
35. 아니요. 왜? 무서워요. 임신할까

봐? 그것도 그렇고 나쁜 남자들이 많을 거 같아요.

36. 이제 안 할 거예요
37. 안 할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상처도 받고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아팠던 적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까지도 싫어요.
40.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살 거 같아요. 이런 건 절대 안하고요 지금 너무 후회돼요. 그걸 느낀 지 얼마 안 된 거야 후회되는 걸? 네. 이번에 걸리고 나서 후회 했어요. 전에는 그런 걸 안 느꼈었어? 네. 기회가 와도 안하겠네? 네.
41. 안 할 거 같아요.
42. 다시는 안 할 거예요. 팔려간다고 더 이상 겁나서 못 할 거 같아요.
43. 안 해요. 이제는 진짜 안 할 거예요.

#### □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음

5. 돈이 지금은 너무 궁하니까. 다시 할까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안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더 힘들어진다면 할 것 같기도 해요. 장담할 수가 없죠.
6.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또 할 상황이 오면, 절박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 가출하면 또 할 지도 모르는데, 가출을 안 해야죠.
8. 생각해 볼 거예요. 정말 이게 필요한가. 정말 필요하다면 또 하겠죠.
12. 할 기회가 있으면 제 의사도 중요하고 우선은 남자친구 의사도 중요하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먼저 물어봐요. 내 의견도 말해주고, 내가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할 수도 있고, 안 넘어가려고 계속 생각중이에요..
18. 돈이 없으면 하게 되겠죠.

<p>25. 안 할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반반이에요. 그래도 여자 몸은 하나니까.</p> <p>33. 안 할 거 같은데요, 100만원 준다고 하면 할 거 같아요.</p> <p>38.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돈이면 하죠.</p> <p><b>□ 다시 할 것임</b></p>	<p>11. 전 할 거 같아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돈 뺏에 할 것 같아요.</p> <p>15. 솔직히요 저는 할 거 같아요. 머리에는 생각은 안해야지 하는데 돈 때문이에요. 돈이 제일 커요. 저는 돈이 좋아요</p> <p>31. 할거예요. 돈 때문이에요.</p> <p>39. 할 거 같아요. 이런 쉼터 같은데 알았잖아요. 돈 없을 때 와서 며칠 지내다 가는 게 나올 거 같아요.</p>
--	---

## ② 인터넷성매매 이후 이용시설

청소년들이 인터넷성매매 이후 이용했던 시설은 1388, 쉼터, 청소년위기교육센터, 일시보호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용했던 시설에 만족하였으며, 특히 1388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이용했던 시설의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밥은 맛이 없어요.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어요.”, “1388은 하루 정도 밖에 못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가지고, 가족처럼 대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교육하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해요.”, “아니요.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수업 내용이 좀 지루해요.”

<p><b>□ 이용시설과 기간</b></p> <p>1. 1388이랑, 의정부 십대지기, 금천 쉼터</p> <p>2. 을지로쉼터에서 하루 잤어요. 경찰서 갔다가 엄마한테 가기가 너무 미안해서 거기서 잤어요.</p> <p>3. 여기 말고는 없어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4박 5일</p>	<p>4. 금천쉼터, 1388, 의정부쉼터요. 1주일 있었던 곳도 있고, 2~3주 있었던 곳도 있어요.</p> <p>5. 돈 들고 켄 에 있잖아요. 다시 구하면 돈 벌수 있었는데 그냥 지구대로 갔어요. 가서 쉼터 연계해 달라고 했더니 1388연계를 해줘서, 거기서 또 쉼터로. 1388에서는 일주일 조금 안 되게 있었어요. 3~4일.</p>
---	--

<p>컴터는 7~8개월</p> <p>6. 새날하고, 민들레, 그리고 마산에서 로템의 집에 있었고. 새날은 1년 넘었고 여기는 따뜻한 집 같아서 좋아요. 민들레는 두 달인가 있었어요. 로템의 집에는 잠깐 있다가 적응 못하고 나왔어요.</p> <p>7. 1388, 컴터는 인턴, 새날, 성산사랑의집. 1388은 하루 있었고, 인천 1달, 새날 1달, 성산도 1달.</p> <p>8. 조건만남 이후 지금 우리 기관을 이용하고 있잖아. 여기가 처음이야? 네. 4월부터.</p> <p>9. 지금 컴터에 있죠. 9~10개월 정도 된것 같다. 네.</p> <p>10. 지금 여기 캠프요. 제가 보호관찰 1년을 받았는데, 제 담당 선생님이 여기 오라고 해서.</p> <p>11. 지금 여기 컴터(인천)에 있고 여기 오기 전에 안산 월피동에 한신 컴터. 안양1388. 여기는 3주정도 됐고요. 한신은 14일. 도망쳐 나오고 2주생활 하다가 왔어요.</p> <p>12. 하늘목장컴터 이용했었고요, 지금 여기 컴터(인천). 얼마나 이용 했어요 하늘목장은? 2009년 5월 부터 7월초요. 인천은?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왔어요.</p> <p>13. 아니요. 여기 캠프 온 것 말고는 없어요.</p> <p>14. 컴터, 일시보호소. 일시보호소는 3, 4일. 컴터는 한 달 안 됐어요.</p> <p>15. 여기가처음예요.(위기교육센터)</p> <p>16. 그런 건 없고요, 가출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청소년 상담 신청해서 한 시간씩 상담한 적 있어요. 안양 청소년상담센터? 네. 얼마정도 받았어? 두 달 정도요.</p> <p>17. 없어요.</p> <p>18. 아니요. 지금 여기 온게 처음이</p>	<p>야? 네. 화요일에 왔다고 했으니까 4일 됐네? 네.</p> <p>19. 모퉁이, 금촌, 새날, 한신 컴터. 모퉁이는 4개월, 금촌은 3개월, 새날은 한달반, 한신은 2,3개월이요. 지금은(인천) 보름 됐어요.</p> <p>20. 교육센터가 처음이에요. 5일 됐어요.</p> <p>21. 1388랑 컴터요. 1388은 5일요 컴터는 거의 2달 됐어요.</p> <p>22. 네 컴터요 여기가 처음 이예요. 거의 3달 다 되어 가요.</p> <p>23. 조건하고 나서는 없어요. 1388요.</p> <p>24. 1388은요 하루 있고 연결해주는 데 저는 7일 있었어요. 여기 컴터는 7개월 됐어요.</p> <p>25. 네 가출해서요. 컴터에 있었어요. 1주일밖에 안 있었어요.</p> <p>26. 여기가 처음예요 태어나서요. 1년 4개월.</p> <p>27. 5~6개월 넘었어요.(컴터)</p> <p>28. 컴터 2~3개월.</p> <p>29. 이틀이요.</p> <p>30. 여기 컴터(인천) 말고는 없어요. 7월 8일이나 9일에 입소했어요.(한달)</p> <p>31. 아니 없어요. 여기는 오늘 왔죠?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네. 오늘 왔어요. 오전에요.</p> <p>32. 여기 말고는 없었어요.(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p> <p>33. 없어요. 위기센터 교육 받으러 온 거요.</p> <p>34. 나사로 보호관찰이요. 6개월.</p> <p>35. 여기가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처음이에요. 6일요.</p> <p>36. 여기요.(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p> <p>37. 의정부 1388이요. 그리고 온 곳이 여기 센터요.</p> <p>38. 여기(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 받으러 온 게 처음이에요. 5박</p>
--	--

<p>6일어요.</p> <p>39. 아니요. 여기(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센터가 처음이에요. 5박 6일어요.</p> <p>40. 여기요(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센터요. 5일요</p> <p>41. 여기(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 온 거요. 5박 6일어요.</p> <p>42. 쉽터요. 이틀 있다가 나왔어요.</p> <p>43. 인천 구월동에 있는 여자청소년기 관요. 9월4일날 들어왔어요. 2주정도 됐어요.</p> <p><b>□ 만족도와 개선되어야 할 점</b></p> <p>3. 밥은 맛이 없어요.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어요.</p> <p>5. 1388은 하루 정도 밖에 못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거기서 쉽터로 안 가고 그냥 나가버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잘 설득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었으면 좋겠고.</p> <p>6.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가지고, 가족처럼 대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p> <p>7. 놀고 싶을 때는 잘 놀지 못하게 하니깐 힘들었어요. 외출제한이나 컴퓨터 사용 못하게 하는 것 너무 불편하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러게 불편했어요. 침에 가출해서 경찰서에서 여기 온 사람들은 그런게 되게 답답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p> <p>10. 짜증나요. 담배도 못 피게 하고요. 하루에 4개.. 전화도 하루에 3분 쓸 수 있고요. 핸드폰은 보내는 것 아무것도 안되고 문자 확인만 할 수 있어요. 다 뺏어가요. 담배도 다 뺏어가고 지갑도 다 뺏어갔어요.</p> <p>11. 귀가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p>	<p>면 좋겠어요.</p> <p>12. 근데 애들이 뭐 하나 잘못된 거 있으면 애들 앞에서나 다른 선생님들이나 손님들한테도 다 얘기해요. 재 남자친구 만나게 하면 안 된다고 남자 만나면 바람난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쉽터 이미지도 나빠지고 당하는 저의 이미지도 나빠지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심과 자기 자식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성격을 조금만 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도 들고 집에도 가고 싶은 생각도 들 거 같아요.</p> <p>13. 교육하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해요. 처음에는 즐겁게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쓰러지고.</p> <p>15. 아니요. 너무 답답해요. 좀 자유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두 시간 있다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수업 내용이 좀 지루해요.</p> <p>19. 우리 같은 애들이 오는 이런 쉽터 뿐만 아니라 쉽터에 안 오는 애들한테도 지원해줘야 할 거 같아요.</p> <p>20. 교육받는 애들보다 이런 것(조건 만남) 하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찾아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p> <p>21. 프로그램도 많고 컴퓨터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p> <p>25. 개선할 점은 규칙이 좀 심한거요. 담배도 시간만 피고요 외출도 못하고요 잔소리가 심해요. 학교처럼 규칙이 피곤해요 안하는게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깐 이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담배는 자유 외출도 자</p>
--	---

<p>유요.</p> <p>28. 규칙이 별로 안세요. 너무 풀어주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p> <p>30. 아침밥을 안 준다는게 좀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서 먹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서 못 먹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못해요.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연락처 남겨라 그래요. 코치코치 캐묻는 것도 싫고요. 친구 만나는데 차비를 줘도 딱 이천원만 줘요. 다른 지역 간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것 다했는데</p> <p>31. 아니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같아요.</p> <p>32. 그냥 좀 너무 가두어 놓는 거 같아요. 밖이랑 연락은 하게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선 아빠가 모르거든요. 제가 친구 때문에 재판을 대신 받는 줄 알아요. 보호관찰 대신 받은 줄 알아요. 그러면 저는 아빠랑 연락해야 하잖아요.</p> <p>34. 컴퓨터도 못 하고 규칙도 딱 정해져 있어서 지켜야 되고 전화도 부모님만 할 수 있고요.</p> <p>42.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전화도 뺏어가고 그냥 뭐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깐 힘들었어요. 애들을 너무 가두어 두는 거 같고요 자유분방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니깐 싫어요. 그걸 개선했으면 좋겠어요.</p> <p>43. 착한 선생님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고, 단기니까 아이들이 자꾸 바뀐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컴퓨터에 그런 거 말 못하잖아요.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조건 했다고 말 안했어요. 병원도 못가고 혼자 그러고 있다가 서울역에 청소년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이해 줄려고 하니깐 말</p>	<p>해가지고 거기에서 병원을 다녔어요. 여기서 안 다니고요. 센터 성격 같은 게 옥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저도 같이 옥하는 성격이고 다혈질 이거든요. 애들 이해하는 것도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거 같고요.</p> <p>1. 금천컴터가 제일 좋아요. 첫 날부터 컴퓨터 했거든요. 다른 데는 3일 이후인데. 아 1388이 더 좋았어요. 1388은 나가기 싫었어요.</p> <p>3.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거 빠고. 언니들이랑 지내는 것도 재밌어요. 다른 건 좋아요.</p> <p>4. 먹고, 자고, 쉬고, 집처럼 되어 있잖아요. 편했어요.</p> <p>5. 어느 정도. 1388은 되게 좋아요. 컴퓨터는 글썽요 잘 모르겠어요.</p> <p>7. 가출하고는 밥도 주고 하니깐 좋았는데</p> <p>8. 네 만족해요. 10점 만점에 9점. 이 정도에서 딱 좋은데, 우리는 외박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요.</p> <p>9. 네. 이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없어요. 다른 컴퓨터보다 우리 컴퓨터가 쥔 좋은 것 같아요.</p> <p>11. 네. 보호해주니까 좋았어요.</p> <p>12. 하늘목장은 별로. 애들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 걸 처음 느꼈거든요.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았는데, 중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애들하고는 트러블 한 번 없이 잘 지냈어요. 지금 새로 온데는 얼마 안 됐지만 어떤 것 같아? 애들도 똑같이 괜찮아요. 자기들 자식처럼 잘 대해 주세요. 애들은 문제점이 없어요.</p>
--	--



13. 시설이나 그런 것은 다 괜찮은데, 일단 여기 온 애들이 저랑 같은 이유로 온 거잖아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 조건해서 이리이러했다고 말 못해요. 여기 애들은 저처럼 조건 해서 온 애들이니까, 이런 남자 정말 싫다, 얼마 받았다, 정말 짜증났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서 좋아요.
14. 좋았어요. 신고도 하고, 엄마랑도 갑자기 보고. 컴퓨터도 좋아요. 엄마도 자주 놀러오고. 저번에 경찰서 갔다가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온 거예요. 그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시설의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어요? 없어요.
16. 딱히 없어요.
17. 없어요.
18.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조건만남 안 해도 잘 데 있고, 밥 주고.
19. 금촌은 그런게 있어요. 애들이 좋아해요. 거기는 입소를 하자마자 외출을 할 수 있고, 외출했다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도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옥상에서도 담배를 필 수 있는 곳도 2군데가 있는데, 밤에는 문을 닫잖아요. 새벽에도 재떨이를 만들어서 새벽에도 올라가서 필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 일 할게. 선생님들이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놀러 잘 가고 선생님들이 그냥 풀어놔요. 모퉁이는 보통 적응기간이 있잖아요. 길어야 3일 이런데. 2년 전에는 2주일이었어요. 지금은 1주일로 줄었는데. 그걸 애들이 많이 답답해하죠. 적응기간에는 전화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외박도 없고요.
20. 제 성격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밀가루 반죽이 있어요. 그걸 떼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드는거예요. 그래서 막 던지고 그랬어요.
21. 그냥 학원도 가고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 희망을 준다는 거,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는 거요.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요? 새날은 자유로운데요, 다른 쉼터 같은 데는 그 다지 자유롭지가 않아요.
22. 선생님들이 애들도 많은 데 한명 한명씩 귀를 기울여 주고 애기도 잘 들어 주고 좋아요.
23. 없음.
24. 여기는 개선될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다른 기관에 가서 보면요, 자활센터도 있고 쉼터도 있는 거예요.
25. 만족했어요.
26. 만족했어요. 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 자주 놀러갔으면 하는 생각도 했어요.
27. 언니들이나 동생들도 너무 좋았어요. 편하고 좋았어요. 아기도 거기에서 낳았어요.
28. 네 문제점 없는데. 개선점도 없는데.
29. 네.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는 거 같아요.
30. 만족 하는데
34. 네 처음에 갔을 때는 별로였는데요, 개선점은 없어요.
35. 네. 불만 없어? 선생님들 다 괜찮아? 네
37. 네 많이 만족해요. 개선점은 없어요.
38. 아쉽죠. 그러니깐 다 친해졌는데 헤어져야 하니까요.
39. 네. 규칙적인 생활이요. 컴퓨터도 안하고 버디버디도 안해요. 아예 끊어버렸어요. 개선점 없어요.
40. 괜찮은 거 같아요. 좋아요. 개선점

은 없는 거 같아요. 이 곳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요? 없었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이 교육에서요? 선생님들이 성매매 예시 같은 거 해주는 거요. 그런 거 듣고 위험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41. 좋은 거 같아요. 힘든 건 없었어요?	

### ③ 탈성매매를 위한 노력

응답청소년 43명 중 39명은 탈성매매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네. 몸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서 쉼터에 들어왔어요.”, “네. 힘들고 아저씨들이랑 한다는 게.”, “이거 내가 왜 해야 하지? 이거 안 해도 잘 살텐데.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와 같이 응답하였다.

또한 43명 중 4명은 탈성매매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노력은 안 해봤죠. 어차피 망가졌는데 지금부터 다시 생활하기에는 늦었고, 언젠가 크면 이 짓은 그만 안하겠지 이러면서요.”, “아니요. 중독성 매문이에요.” 와 같이 응답하였다.

<p><b>□ 긍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네. 언니가 너무 때려서 그 이후로.</li> <li>2. 네. 전 그래서 지금 안 해요. 2~3주 전부터 안했어요. 내 몸이 상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스트레스도 너무 쌓이는 것 같은 거예요. 어깨부터 허리까지 다 굳어버린 것 같아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런 것 생각하면. 지금 노는 것보다 나중에 커서 노는게 낫잖아요. 몸 생각하면서, 나중에 커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li> <li>3. 네. 솔직히 그렇게 돈 버는 것 싫어요. 돈은 많아서 좋은데. 만약 알바하면 50만원 정도 받잖아요. 그 돈은 아껴 쓰는 모습이 제 눈에 좋아 보였어요. 부러웠어요. 학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li> </ol>	<p>데 알바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아껴 쓰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요즘은 조건만남 같이 한 친구랑은 서로 하려고 하면 말려주고 그랬어요. 여기 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셋이서 하루씩 돈을 벌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예전에 임신을 한 번 하고 나서는 돈을 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낙태도 저희가 해줬거든요. 너무 양심이 없어요. 많이 싸우기도 했고, 개랑은 못 다니겠다 해서 이제 같이 안 다녀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네. 조건하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li> <li>5. 네. 아파서. 짜증나서. 매일 하는 것도 재미없잖아요. 계속 비위맞춰주기도 질렸고.</li> <li>6. 네. 너무 힘드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제가 동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li> </ol>
--	---

7. 네. 몸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서 쉼터에 들어왔어요.
8. 있었어요. 친구가 못하게 해서요. 친구가 권유한 것 말고 내 스스로 그만뒀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만하고 싶었어요. 만나러 가는게 귀찮아서.
9. 그런 건 아니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것 밖에 생각 안 났는데. 배고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야? 그때는 그게 저한테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10. 네. 두 번째 까지 하고서요, 새해 1월1일에도 했어요. 진짜 이걸 아닌 것 같다고 진짜 하면 안 되겠다고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지 말고 아르바이트를 구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했어요. 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 제가 더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11. 네. 도망 왔잖아요. 무서웠어요. 계속 조건하다 보면 보도까지 할 것 같아서요.
12. 아예 버디 자체를 아예 몇 달 동안 안 한적 있어요. 중2때 두 번하고 중3때 한번 하고 나서, 중3때 이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달 동안 버디 아예 안 했어요. 몸이 망가지고, 남자들은 한번하고 나면 쉽게 잊혀지는데 여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쉽게 잊혀지지 않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임신했을까 봐, 아니면 무슨 병이라도 걸렸을까 봐. 그 걱정도 되고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안 멈추면 성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에이즈에도 걸릴지도 모르고 매독에 걸릴지도 모르고.
13. 네. 그때 경찰한테 걸렸을 때. 전 솔직히 집에 들어와서 조건만남 하는 것 진짜 이해 안 갔거든요. 집 나갔을 때는 돈도 없고 하니까 하지만. 집 들어오면 엄마아빠가 용돈 주시고, 먹을 것 다 사주시고, 필요한 것 다 사주시는데, 딱히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걸렸을 때도 집 들어갔을 때여서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친구가 걸려서 저도 했었으니까 걸린 건데. 6월에 어쩌다가 조건사기를 한 번 하는 바람에 걸렸어요. 그것도. 그 남자가 범 죄자였나봐요. 저랑 하고 나서 통화내역에 제 번호가 있잖아요. 애 누구냐 해서 걸린거예요. 벗어나려고 한 이유가 있어? 그것 때문에 돈을 쉽게 쓰고, 10만원이 되게 큰돈이잖아요. 1만원도 큰돈인데, 그게 크게 안 보이고 5백원, 천원짜리로 보이니까. 돈을 너무 험하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쓸데없이 막 쓰잖아요. 그리고 제 몸을 팔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분이 되게 안 좋았고. 일단 집도 들어왔고, 버디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거잖아요. 버디 자체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14. 네.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었어요. 생리했을 때도 시켰잖아요. 지금은 한결 편해요. 근데 제일 무서운게 그 언니가 나를 계속 보는 것 같고, 얼굴도 계속 생각나요. 제가 은정이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혼내준대요. 마음이 편해요. 쉼터에 있는 언니들은 다 친언니 같고, 친구 같고. 한마디로 가족이죠.
15.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오래 만났는데 그 남자친

- 구한테 걸린 거예요. 핸드폰 문자, 통화 그런 걸 깜빡하고 못 지운 거예요. 그거 때문에 개가 힘들어하다가 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는 안하겠다고 결심했어요.
16. 네. 힘들고 아저씨들이랑 한다는 게.
19. 네. 그랬으니까 친구도 버리고 나왔죠. 일단 모든 게 지치고 모든 게 힘들고. 그 친구를 버리고 온게 친구들이 내가 그런 걸 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더럽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0. 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은 헤프게 쓰게 되고. 몸만 망가지니까. 잘 못하면 성병 걸릴 수도 있고, 임신할 수도 있잖아요.
21. 네. 그거 자꾸 하면 제 몸도 망가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불법이니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막상 돈이 필요하니깐 그게 안 되더라고요.
23. 있죠. 제가 집에 나와서 진짜 조건하지 말아야 생각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거잖아요. 하면서도 안 좋은 건데 줄여 보려고 했던 거 같아요.
24. 네. 이건 너무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려고 살 순 없고 난 겨우 17살인데. 힘들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창피해서 이렇게 산다는 게. 남들은 다들 멋있게 잘 사는데, 내가 돈을 받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게 싫어서 컴퓨터에 온 거예요.
25. 네. 여자는 몸이 상하잖아요. 여자니깐 주의해야 해요. 성관계 많이 하면 임신 못 하잖아요. 자궁 자꾸 벌어지고 남자 친구랑도 안 해요. 가슴만 만지게 하고 손가락으로도 못 만지게 해요.
26. 네. 순간적으로 너무 그 채팅방에 있는 남자들이 더러운 거 같았어요. 여기 컴퓨터에서 성교육 받고는요. 근데 심심해서 다시 한게임에 등록하고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 선생님들 때문에 못 했어요.
27. 하기 싫어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아예 pc방도 안가고 컴퓨터도 안 했어요.
28. 이거 내가 왜 해야 하지? 이거 안 해도 잘 살텐데.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29. 네. 항상 이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관계를 하면 쾌락 느끼려고 하고, 돈을 성관계로 하는 거는 아닌거 같아서요.
30. 우선은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즐리기도 하니까 집에 가려고 했었어요. 집에 가면 밥도 먹고 싶고 컴퓨터도 실컷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PC방이나 모텔은 못 하니까요.
31. 노력해 본 다고 해봤자, 그냥 채팅만 안하는 거뿐이지 머릿속은 조금이라도 돈이 필요하면 해볼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노력은 해봤는데 절대 안 돼요. 이득이 없어요. 괜히 내가 억제한 만큼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채팅을 해서 단 돈 얼마라도 더 벌어야겠다. 그것 때문에 한 번 하고 돈 벌고 그 시간에 내가 고민 안했으면 더 벌었을 텐데 고민하고요. 그래도 벗어나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창녀 같고 돈 만 밝히고요.
32. 지금이요. 좋아해서 서로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싫었어요.
33. 그냥 세 번 하고 나서 경찰에 알려져서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고,

<p>PC방도 안 갔어요.</p> <p>34. 솔직히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하기 싫으면 끊어야겠다가 아니고 저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끊을 수도 없지만 돈이 필요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나쁜 거 알면서 한 번쯤이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기 싫으니까 일단 좋지도 않고 당당하지 못 하고 법적으로도 걸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남자 만난다는 게 자체가 안 좋으니까요.</p> <p>35. 네. 그냥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다가 못 벗어났어요.</p> <p>36. 네.</p> <p>37. 네. 아프니까요. 걸음도 못 걷고 술을 안마시면 잠을 못 할 정도였어요. 수면제도 안 통하고요. 그거 고치는데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치료했어요.</p> <p>39. 네. 병 걸리고 나서요.</p> <p>40. 네. 상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니 까 힘들어요. 나중에 미래 같은 걸 생각하면 앞으로 내 자신이 초라한 거 같아요.</p> <p>41. 네. 몸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조건</p>	<p>만남하면 한 번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랬거든요.</p> <p>42. 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집 나가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그냥 아무나 하면 그렇잖아요. 기분도 더럽고 뭔가 찝찝하고 잘못해서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해요</p> <p>43. 엄마하고 연락을 했어요. 싫어서요. 엄마한테 도움을 받으니까요.</p> <p><b>□ 부정</b></p> <p>17. 아니요.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갈 상황이잖아요. 그 남자에 때문이에요.</p> <p>18. 아니요. 마땅히 돈 벌 데가 없어서.</p> <p>22. 노력은 안 해봤죠. 어차피 망가졌는데 지금부터 다시 생활하기에는 늦었고, 언젠가 크면 이 짓은 그만 안하겠지 이러면서요.</p> <p>38. 아니요. 중독성 때문이에요. 솔직히 알바하는 거는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성매매는 불법이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했었어요.</p>
--	--

#### ④ 도움

청소년들이 인터넷성매매로부터 벗어나는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로 43명 중 13명의 청소년이 시설에 입소한 것과 상담선생님의 도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쉼터 들어와서 안전한 집이 있다는 게 좋고, 마음도 좀 안정되고.”, “쉼터 선생님들이요. 여기 선생님들이 잘 아껴주고 속상해하고 저도 잘못된 걸 느끼고 해서요.”, “상담 선생님들이요.” 와 같이 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상담을 통해 심적인 안정을 찾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43명 중 12명의 청소년이 가족이나 친구 등 주위사람의 도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친구랑 가족이요. 엄마가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게 미안했어요. 친구는 하려고 할 때마다 말려줬어요.”, “남자친구 때문이에요.”

셋째로 43명 중 4명의 청소년이 건강상의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몸이 상한 걸 느끼고 결심을 하게 된거죠.”, “그때 되게 아팠어요. 많이 해서. 아픈게 켈 커요.”

넷째로 43명 중 4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 거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경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괴로워요. 하기 싫어도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자기 의지요.”, “제가 깨달았어요.”

다섯째로 43명 중 3명의 청소년이 꿈을 가지게 되면서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응답이었다. “꿈이 생겼어요. 검정고시도 보고, 바리스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꿈을 가진거. 사회복지사 되는 것.”

여섯째로 43명 중 2명의 청소년이 단속에 걸려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경찰한테 걸린 거요.”

기타의 응답으로는 “주변 친구들을 정리한거죠. 조건만남하는 친구들이요.”, “없어요.”, “못 벗어나요.” 등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 시설 및 상담선생님

- 6. 쉼터 들어와서 안전한 집이 있다는 게 좋고. 마음도 좀 안정되고.
- 8. 쉼터 어떤 면에서? 그냥 여기 오면요, 하면 안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했니 안 했니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안 하잖아. 여기는 용돈이 나오잖아요.
- 21. 쉼터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고요 다시 꿈을 꿀

- 수 있게 하는 곳 이에요.
- 22. 다시 활발해 지고요 몸도 잘 안 아프고 짜증도 별로 안 나니깐 그거를 도움 준 사람이나 그거를 벗어난 이유가 있어? 쉼터라는 곳에 있으니깐 여기는 보호 받는 곳이잖아요. 그거 때문에 제일 의지가 돼요. 쉼터가 도움이 많이 됐구나? 네
- 24. 근데 쉼터에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고 쉼터 들어와서 엄마아빠랑 연락 하거든요. 화해하

<p>고 지지해 주고 자신이 깨닫는 게 중요 한 거 같아요.</p> <p>26. 쉼터 선생님들이요 여기 선생님들이 절 아껴주고 속상해하고 저도 잘못 된 걸 느끼고 해서요.</p> <p>27. 시설이요. 미혼모일 때 인천에 있었 어요. 몸도 마음도 편하게 됐어요.</p> <p>28.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쉼터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줬어요.</p> <p>30. 우선은 억지로 안 하는게 너무 좋 았어요. 쉼터에서 쉴 수도 있어서 좋았고 밥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 어요. 거기선 맨날 라면만 먹었거 든요. 한 4개월만에 밥을 처음 먹 었거든요.</p> <p>35. 여기 와서요. 성매매 지원센터 캠프 교육 받으면서? 네</p> <p>37. 상담 선생님들이요.</p> <p>38. 이번에 걸린 걸 계기로 상담 받고 나서요. 상담 받으니까 마음이 바 꾸어요? 조금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요.</p> <p>40. 상담 선생님들이요.</p> <p><b>□ 주위사람의 도움</b></p> <p>3. 친구랑 가족이요. 엄마가 하는거 뻔 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게 미 안했어요. 친구는 하려고 할 때마 다 말려줬어요.</p> <p>10. 부모님이요. 제가 그때 부모님을 진짜 싫어했어요.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말만하면 짜증내고 욕하고 화만 냈어요. 근 데 걸려가지고 엄마아빠가 데리러 와서(경찰서), 평소에는 조금만 잘 못해도 화내던 분들인데 아빠가 손 잡고 집에 가자고.</p> <p>12.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알았어? 알 지는 못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 사</p>	<p>귀는 동안도 조건만남을 했었던 말 예요. 데이트 비용 때문에. 그 돈을 쓰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는 나 밖에 몰라주는데, 나는 딴 남자 하고 잠자리도 하고. 그게 너무 미 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줘야 하는데 못해주고 되고. 그래서 안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안하게 됐어요.</p> <p>14. 그 사람 때문에.</p> <p>15. 한 동안 그만 났을 때요 개(남자 친구) 때문예요.</p> <p>16. 엄마아빠요</p> <p>17. 엄마한테 제가 솔직하게 다 말했 어요. 제가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그 남자애 만난 거예요 제 친구한 데 엄마한테 말해라 저 있는 장소 까지 엄마가 이모하고 이모부하고 경찰서에 갔어요.</p> <p>23. 도와 준 사람은 없고요, 제가 일찍 15살 때부터 나와서 남자에 대한 것도 금방 알게 되고 남자가 마지 막엔 어떻다는 걸 알게 돼서 처음 엔 충격이었는데, 알면서도 그때는 성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 는데..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사 귀면서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어 봤 자 몇 백일 가도 성관계를 해도 깨 질 텐데. 남자를 사귀지도 않고 그 렸었던 거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 했던 오빠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건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좋아했던 오빠한테 알 게 된 거잖아요. 그 오빠한테 창피 하고 여자로서 걸레 된 느낌을 받 았어요.</p> <p>32. 남자친구 때문예요.</p> <p>33. 엄마. 하지 말라고 하고 경찰에 신 고도 했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 서요.</p>
--	--

39. 가족이요. 할머니가 아시는 거 같은데 좀 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저한테 돈을 더 주시고 학교도 다시 가라고 해서 다시 다니고 있어요.

42. 엄마 가족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나쁘다고 해서요.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깐 이걸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 했어요. 점점 더 나이는 먹어 가는데 후회할 짓이라고 깨달았어요.

#### □ 건강상의 이유

2. 전 여기 오기 전부터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특별히 그런 것은 없던 것 같아요. 몸이 상한 걸 느끼고 결심을 하게 된거죠.

5. 그때 되게 아팠어요. 많이 해서. 아픈게 썰 커요.

9. 이제 그런 것을 안 하니깐 그런 병이 안 걸리니까 안전하고, 여러 명의 남자하고 이제 안 하니깐 몸이 나아지죠. 그런걸 많이 하면 정신이 이상해 질 것 같아요.

25. 그때는 돈 조금 받고 조건만남 했는데 몸 버릴까봐 생각이 중요해졌어요.

#### □ 스스로 깨달음

24. 자신의 의지 의지인데 집이 없잖아요.

34. 그런 거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경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괴로워요. 하기 싫어도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자기 의지요.

42. 제가 깨달았어요.

43. 조건하면서 그 돈을 하루 만에 다 썼어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거든

요. 근데 안 하니깐 돈도 아끼게 되고 조건 안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하게 되니깐 학교 복학하게 되었고 생각이 좋은 쪽으로 변했어요.

#### □ 꿈이 생김

7. 꿈이 생겼어요. 검정고시도 보고, 바리스타 되는 것이 꿈이에요.

19. 꿈을 가진거. 사회복지사 되는 것. 이거 프로그램 하기 전에 18살 쉼터에 있을 때 홈베이킹을 해봤는데 재미있었어요. 좀 있으면 뉴스타트를 하거든요. 뭘 하고 싶냐고 해서 제가 홈베이킹을 애기했어요. 재미삼아 해보고 싶어서 한다고 했다가, 이 교육을 하면서 노경자선생님 있잖아요. 일 하는 선생님 보면 멋있기도 하고 애들 마음도 잘 알아주는 것 같고, 엄마 같기도 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랬으니까 나중에 애들한테 힘이 돼주고 싶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꿈이 됐어요.

36. 제 꿈을 가져야죠. 컴퓨터 자격증 다 따고 요리사도 다 따왔으니까. 가수되려면 연습도 하고 목소리 관리도 해야 되고요.

#### □ 단속에 걸린 것

40. 경찰서 걸린 일이라

41. 경찰한테 걸린 거요. 그럼 경찰한테 걸린 거 재판도 받아야 되요? 아니요 이 교육만 받으면 끝나요 원래 가출해서 집도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거 걸려 가지고 집도 들어가고 걸린 게 다행인 거 같아요.

#### □ 기타



<p>1. 갑자기 우울해지고.</p> <p>4. 집에 있으면 필요한 것도 없고, 필요한 거 살려고 조건 한거니까요. 그리고 몇 명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밥이나 필요한 것 사주고 그런 사람 계속 만나서 끔찍해 되고 조건 생각 안하다가, 점점 아예 생각 안하게 된 것 같아요.</p> <p>5. 그냥 어떤 사람을 봤는데 열심히 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보면서 나는 되게 한심해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그런 것도 있었고,</p> <p>11. 택시요. 아저씨의 도움을 받은 거요 그때 도움 요청을 안했거나 도움을 못 받았다면? 계속 했겠죠. 개네가 못 도망가게 개네 핸드폰을 저한테 줬거든요. 제 핸드폰은 뺏고. 택시기사아저씨가 택시에 놓고</p>	<p>내렸다고 해주겠다고요.</p> <p>13. 일단 버디를 계속 안 하니깐 쓸데 없는 생각 안 하게 되고, 버디를 하다보면 자꾸 집을 나가게 되고, 돈이 있으면 자꾸 밖으로 돌게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흥청망청 쓰고.</p> <p>14. 용기.</p> <p>20. 주변 친구들을 정리한거죠. 조건 만남하는 친구들이요.</p> <p>29. 없어요. 분명 다른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변사람들이. 저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p> <p>31. 언제 마지막으로 조건 했었어요? 여기 오기 3일전이에요. 3일 동안 왜 안했어? 어차피 여기 오는 건데 돈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럼 벗어 난 건 아니네? 못 벗어나요.</p>
---	---

## 2)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원방안

### (1) 청소년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지원

청소년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원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에 대한 지원, 주거지원, 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학업지원으로 구분되었다.

첫째로 43명 중 12명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알선을 원했다. “일하는 곳에서 청소년 알바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직업.”

둘째로 43명 중 9명의 청소년이 주거지원을 원했다. “집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살고 싶어요. 고시원 같은 데 말고 원룸 같은 거요.”

셋째로 43명 중 8명의 청소년은 심리적 지원이나 교육을 받기 원했다. “꿈 꿀 수 있는 기회, 상담이요.”, “상담이요.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상담 받고 싶어요.”

넷째로 43명 중 7명의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희망했다. “저희 집이 쌀이 없거든요. 쌀이나 생활용품 같은 거요.”, “약간의 돈을 지원 받고 싶어요.”

다섯째로 43명 중 5명의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원했다. “검정고시학원비지원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사회복지사 하고 싶잖아요.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타의 응답으로는 “동성애에 관한 것. 인정해주는거요. 나라에서 동성애 인정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 봐도 아무렇지 않을 걸요. 나라에서 그 말 한마디 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할텐데.”, “조건하게 되면 임신 같은 거 하게 되잖아요. 별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진단서 끊어오라고. 시설에서 낙태비용으로 서류를 원하는데 병원에서도 낙태비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안 해준다고 돈이 나오는데 1~2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안 됐어요.” 등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또한 3명의 청소년은 현재 필요한 도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아르바이트 확대 및 취업지원

- 2. 취업알선이요.
- 4. 우리 나이가 일 할 곳이 많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별로 없잖아요. 이력서 같은 것 필요하고 면접에 걸리는 것도 많고, 학생증 가져오라는데, 학교 안 다니면 학생증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일하는 곳에서 청소년 알바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이력서 이런 것도 없으면 좋겠고. 너무 이것저것 힘들게 해놨어요. 가출했을 때 알바하려고 인터넷을 뒤졌거든요. 할 수 있는 알바가 없었어요. 친구도 알바 잘 못 구하니까, 바깥에서 일하고 그랬어요.
- 6. 저는 교육시켜주고 그런 것 다 좋은데요,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면

- 좋겠어요. 직업.
- 7. 일자리요.
- 9. 일자리요. 일자리를 받으면 뭐하고 싶어? 일해야죠. 일해서 돈 모아서, 집을 구해야죠.
- 10. 학생들 최저임금도 안 해주는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 확실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 알바하는 것 보면 시간당 2500원 받는 애들도 있고요, 3200원 받아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부모님 동의서 있어야 할 수 있는거지? 그냥 알바한다고 하면 시켜줘요. 은행동에 되게 많아요. 학생알바 하는 애들은 거의 다 그럴걸요.
- 15.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취업이요.
- 24. 취업지원이요. 기술이요. 패션 디

- 자이니 되고 싶어요.
27. 직장이에요.
28.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싶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만 민증을 만드는 게 불편해요.
40. 그냥 직업에 대해서요. 저희 집안이 조금 어렵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데 요리하는 거요. 학원 같은 걸 못 다녀요. 무료로 배우고 자격증 같은 거 딸 수 있는 거요.
43. 알바요. 어리니깐 주유소밖에 안 되잖아요. 주유소는 진짜 힘들고 어리니깐 알바에 나이제한 없는 거요. 왜 알바가 필요해? 저희 가족이 진짜 많아요. 여섯명이에요. 엄마아빠 애기들 그리고 저랑 언니요. 나라에서 돈도 안 대주고 언니도 바쁘고 부모님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 □ 주거지원

1. 집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5. 주거지원.
6. 집이나.
17. 저 혼자 살고 싶어요. 고시원 같은 데 말고 원룸 같은 거요.
21. 컴퓨터에서 잘 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없는 거 같아요. 주거.
24. 자립 할 수 있는 거요. 주거랑
25. 자취요 혼자 사는 집이요.
37. 주거요.
38.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서로 잘 살면 도와 줄 수도 있는 거구요. 집이요. 자취방

#### □ 심리적 지원 및 교육

3. 학교. 중학생들은 꾸미고 싶은 나이인데, 학교에서 그런거 처벌하는게 싫어요. 머리 붙이는거랑 화장하는 거 가지고 처벌하는거 기분 나빠요. 그리고 이런 기관 같은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그램. 여기 캠프 오기 전에는 컴퓨터 밖에 몰랐어요. 1388에서도 상담 받았었는데, 받고 나서 기분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요, 성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성지식이 부족한 것도 알게 됐고, 조건만남 하는 것 완전 싫어졌어요.
13. 저는 그냥 계속 너는 이거 해야 돼, 이런 것 보다는 잘했어. 저는 누가 시키면 하기 싫거든요. 혼내는 것보다는 보듬어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엄마아빠는 이해해주는 걸 떠나서 화부터 내니까. 핸드폰 뺏고, 지갑 뺏고. 옛날에 집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빠가 핸드폰 부수고, 옷을 욕조에 다 넣고 물을 부어놨어요. 입지 못하게. 이 정도까지 나한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집나가서 재밌긴 재밌어도 힘든 일도 많았거든요. 한 번은 PC방비가 없어서 어떤 남자를 불렀는데, 제 친구가 PC방에 우연찮게 있었어요. 그 남자한테 부탁해서 PC방비만 내고 썰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그 남자한테 핸드폰 빌리기로 하고, 그 때 저보고 짜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모텔까지 가게 됐어요. 억지로 하려는 거예요. 싫다고. 그 남자가 덩치가 진짜 크고 2~30분 씨름하다가 겨우 밀치고 나왔는데 너무

슬프고 길거리에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친구들이랑 싸웠는데 대판 싸웠어요. 애들한테 막 맞고 그러니까. 솔직히 집나가서 재밌긴 재밌었는데 너무 힘든 기억도 많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싹 다 돌아가진 못해도, 반 정도는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담배 피다가 갑자기 끊을 수도 없고, 술 마시는데 안 마실 수도 없고, 친구들이랑 안 놀 수도 없고, 애네랑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못 변한다고 해도 옛날에 엄마아빠랑 안 싸우고 학교 잘 다니고 그 정도는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착했으니까.

- 14. 성매매를 안 하는 것. 용기 낼 수 있게.
- 16. 이것 저것요. 딱 생각은 안 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상담 시간을 늘리고 싶어요.
- 21. 꿈 꿀 수 있는 기회, 상담요.
- 33. 성교육이요. 학교에서 받아 본 적 없어요? 학교에서 몇 번 받았는데요. 체계적으로 1대1로 받아 보고 싶어요.
- 36. 상담이요.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상담 받고 싶어요.
- 42. 조울증 약 먹는데요, 자꾸 멍하고 남이 했던 말도 잘 잊어 먹고 그거 때문에 치료 받고 있어요. 약 먹는 거부터요. 살 좀 빨리 빠졌으면 좋겠어요. 약 먹고 20kg 쪼뻤어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자살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걸로 도움 받고 싶어요? 네

**□ 경제적 지원**

- 8. 물질적인 것.

11. 저요? 그거 하고 싶어요. 전 원래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안 해줘요. 부모님 계시잖아. 아빠만요. 아빠는 일하셔? 일용직 있잖아요. 그런 것 해요. 한신에 있을 때는요 거기 선생님이 저 잘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신에서 나온거라서. 되면 고등학교 학비 지원받고 해야죠.

- 15. 돈요. 저 쓰고 싶은 거.
- 20. 저희 집이 쌀이 없거든요. 쌀이나 생활용품 같은 거요.
- 29. 약간의 돈을 지원 받고 싶어요.
- 31. 돈이요. 뭐하는데 필요해서? 똑같이 유흥비요. 그럼 사회에서 유흥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좀 아니죠.
- 39. 돈이요. 생활비 지원은 되는데 3명이 쓰기에는 적은 거 같아요. 지금은 얼마 받아요? 50~60만원이요. 친구랑 할머니랑 또 누구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살았었는데 아빠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도 돈을 넣어줘야 해요. 한달에 한번씩이요. 아빠가 병원 들어가면 병원비는 안 내는데 그 대신 돈이 적게 나온 데요 병원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한 번씩 간식 넣어 줘야 돼요.

**□ 학업지원**

- 1. 검정고시학원비지원해주면 좋겠어요.
- 10. 공부랑.
- 18. 학교 다니고 엄마아빠 같이 살 수 있는거요. 지금 엄마아빠랑 같이 못 살아요?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고 연락도 안 하고요, 아빠는요, 연락도 없이 집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연락이 안돼요.
- 19. 내가 사회복지사 하고 싶잖아요.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제가 갈 데는 없지만 센터에서 이렇게 해주면 제가 배울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또 안 빠지고.

29.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대학 가고 싶어요. 근데 꿈이 불분명해요. 꿈도 바뀔 것 같고 과외 선생님이나 취미 같은 거 하고 싶고.

#### □ 기타

8. 동성애에 관한 것.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인정해주는거요. 나라에서 동성애 인정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 봐도 아무렇지 않을 걸요. 나라에서 그 말 한마디 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할텐데. 동성애에 관한 것 말고 또 다른 도움 받고 싶은 거는?
12. 좀 걱정되는 게 주민등록증. 제가 4월 30일부터 주민등록증 만드는 날이에요. 청소년증은 있기는 한데.. 제가 만들러 일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만들고 싶어요.
23. 딱히 잘 모르겠어요. 받은 거 같아요.
30. 왜냐하면 조건하게 되면 임신 같은

거 하게 되잖아요. 별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진단서 끊어오라고. 시설에서 낙태비용으로 서류를 원하는데 병원에서도 낙태비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안 해준다고 돈이 나오는데 1~2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안 됐어요.

32. 있어요. 엄마아빠는요 잘 해주시는데요, 미국이랑 저희랑 틀리잖아요. 미국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스스로 운전면허를 딸 수도 있고 저희는 많이 개방 됐다 해도 그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엄마아빠는요 개방은 해주시는데 남자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요. 남자친구랑 엄마아빠랑 술도 먹고 그래도 너는 20살까지는 안 돼. 그래요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34. 청소년들이 담배 같은 거 많이 피잖아요. 담배 연령을 낮추어 줬으면 좋겠어요.

#### □ 없음

26. 저요? 전 없는데요.
35. 아무 것도 없어요.
41. 없어요.

### (2) 앞으로 사회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

청소년들이 앞으로 사회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주거지원, 취업지원, 학업지원, 심리적 지원 및 교육, 경제적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첫째로 43명 중 13명의 청소년이 주거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복지아파트요.”, “집이요. 집은 있는데 재개발이 될 곳이에요. 근데 언제 될지 몰라요.”

둘째로 43명 중 9명이 취업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일자리요. 가출청소년한테도 일할 권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미용 배우는 거요.” 와 같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셋째로 43명 중 7명의 청소년이 학업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검정고시 학원. 중학교 졸업도 못했거든요.”, “대학등록금.”

넷째로 43명 중 3명의 청소년이 상담이라고 응답하였다. “힘들 때 상담 받는 것. 가출 청소년들 뭐 때문에 가출했는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도 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거 상담해줄 사람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깐 꿈을 포기하게 돼요.”

다섯째로 43명 중 3명의 청소년이 경제적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돈 좀 아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좀 잘 살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외의 기타응답으로는 “가게 같은 거 단속 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술이나 담배 파는 가게요.”, “남녀차별 안하고 학년차별 안하는 거요.” 등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또한 6명의 청소년은 필요한 도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 주거지원

1. 자취방이요.
4. 복지아파트요.
5. 주거지원.
8. 몇 년 동안 쉼터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낼 수 있는 방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안 쥐도 되고요, 쉼터에서 나가면 6개월이라도 지낼 수 있는데 있으면 그런 것 안 하고도 생활 할 수 있으니까요.
9. 집이 없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 작은 집 주고.
11.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제적지원이든지 주거지원이든지. 주거요.
19. 법에서는 24살까지가 청소년이잖아

- 요. 법에 있는 24살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주면 다른데 쓰잖아요. 주거지나
24. 집이랑 그 거 두 개만 되면 다 되잖아요. 월에 돈으로 나오면 금방 써버려요.
25. 자취방 하나만 얻어주면서
26. 나 혼자 살 집이 필요한데 국가 해주시는지 기숙사 말고 혼자 살 집 기숙사도 좋은데 혼자 살 방요 너무 불편해요.
27. 돈이 있어야 집도 구하고.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집.
37. 주거요.
39. 집이요. 집은 있는데 재개발이 될 곳이에요. 근데 언제 될지 몰라요.

### □ 취업지원

- 2. 취업알선. 어떤 일자리 갖고 싶어? 서빙이나 그런 간단한 것도 괜찮은데, 커피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커피숍이나, 미용실. 네일아트 그런 것 되게 좋아해요.
- 6. 일자리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실제로 필요한 것들. 도움이 되는 것.
- 7. 그것도 일자리요. 가출청소년한테도 일할 권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 12. 취업 지원을 받고 싶어요.
- 21. 일자리요
- 23. 미용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 24. 안정적인 일자리요.
- 25. 미용 배우는 거요.
- 28. 그냥 아르바이트요.

### □ 학업지원

- 10. 대학 들어가는 것. 학비. 저희가 언니 둘 다 대학생이라서 학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학비지원 해주는 것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안 사정을 다 보고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12.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경제에 이끌려 안 살고 걱정 없이 살게끔 물가를 낮추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학원이나 그냥 인터넷 강의 지원도 되고
- 14. 검정고시 학원. 중학교 졸업도 못했거든요.
- 19. 학원을 다닐 수 있게 연결을 해줘서 돈 안 받고 할 수 있게요.
- 20. 대학등록금.

- 21. 대학교 학비 지원요.
- 42. 대학 등록금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모자가정이거든요. 동생들이 2명이나 있어서 제가 꼭 대학에 가야 동생들이 도움 받을 수 있데요.

### □ 심리적 지원 및 교육

- 14. 힘들 때 상담 받는 것. 가출 청소년들 뭐 때문에 가출했는지.
- 36. 상담이요.
- 43. 이게요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도 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거 상담해줄 사람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깐 꿈을 포기하게 돼요. 지루하게 연설하는 거 말고 모든 일에서 높은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재미있게요.

### □ 경제적 지원

- 15. 돈 좀 아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 31. 먹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돈요.
- 33. 저희 집 좀 잘 살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 기타

- 3.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센 것 같아서 싫어요. 야간 보호관찰 받는 친구 보면 옆에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요. 원래 밤에 나가면 안 되는거 알지만 슈퍼도 못 가게하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처벌 안했으면 좋겠어요? 보호관찰 같은 것? 보호관찰 야간외출이 제일 맘에 안 들어요. 소년원은 잘못하면 들어가야 되는

<p>것 맞아요, 근데 야간외출은 밤에 자다가 전화 못 받았는데, 감독 실패했다고, 경고장 주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건 잘못된 것 같아요.</p> <p>9. 잘살게. 세금 같은 것 조금 줄여주고.</p> <p>13. 집 나왔을 때였는데, 집 나와서 컴퓨터가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는 친구랑 같이 못 가잖아요.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친구랑 왜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금방 못 친해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집 나왔는데 갈 데는 없고, 컴퓨터를 가자니 친구랑 못 가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p> <p>16. 없어요. 부자랑 거지 차별 안하는 거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p> <p>17. 가게 같은 거 단속 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술이나 담배 파는 가게요.</p> <p>29. 그런 거 똑같아요.(현재 지원 받고 싶은 것)</p> <p>32. 지금 그런 거는 없고요 제가 아기</p>	<p>한 번 지운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아기를 어떻게 죽이냐고요. 아기는 낳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요, 고아원 같은 데라도 보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낙태하지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5개월 정도면 못 지우지 않나요?</p> <p>38. 남녀차별 안하고 학년차별 안하는 거요.</p> <p><b>□ 없음</b></p> <p>18. 없어요.</p> <p>30. 제가 벌어서 하고 싶어요. 직장도 제가 구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거 같아요.</p> <p>34. 그런 건 없어요.</p> <p>35.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아요.</p> <p>40. 없는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p> <p>41. 없어요.</p>
---	--

### 3) 피해청소년이 생각하는 인터넷성매매 방지대책

#### (1) 인터넷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인터넷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은 채팅사이트의 폐쇄 또는 차단, 인터넷실명제, 처벌 및 단속 강화, 실질적인 성교육, 신고제도 개선 및 강화, 쉼터 개선 및 홍보, 가정교육 및 환경 등을 꼽았다.

첫째로 43명 중 24명의 청소년이 채팅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차라리 채팅을 아예 없애던가, 버디를 없애던가. 채팅만 남을 할 수 있는 걸 다 없애면 좋지 않을까. 100% 중에 80%는 다 버디로 만나는 거니까.”, “채팅방을 19세 미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요.”



둘째로 43명 중 15명의 청소년이 인터넷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실명제요 솔직히 자기 이름 걸고 할 수 없잖아요.”

셋째로 43명 중 14명의 청소년이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매매 법을 세게 하던가, 그냥 무조건 벌금을 세게 하던가, 법을 세게 하던가. 그것 밖에 없잖아요.”, “일단 어떤 조건만남에 대한 단어 같은 거 모두 다 금지어로요. 단속을 더 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단속하고 어른도 단속하는 거요.”

넷째로 43명 중 11명의 청소년이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교육 같은 건데 연극 같은 성교육 있잖아요. 직접 조건만남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이해해서 보고 느껴서 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교육도 솔직히 말하면요 .... 막상 하면 모르는 용어도 나오고 지루하고 그런 거 말고 안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강조하면서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섯째로 43명 중 5명의 청소년이 신고제도를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신고센터 만들어서 더 강화시키는 거요.”, “채팅 할 때요 누가 그런 말 하면 누르면 바로 신고 될 수 있게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섯째로 43명 중 5명의 청소년이 쉼터를 확대하거나 개선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쉼터를 1388처럼 좋게 만들어야 되요.”, “1388이나 쉼터 같은 곳을 많이 알려야 할 것 같고요,”, “기출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애들을 위해서 그런 애들 조건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쉼터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43명 중 5명의 청소년이 가정교육이나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꼽았다.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뭐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부모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일단 부모님이 잘 해야겠죠. 거의 집 나온 애들은 부모님이 때리거나.”, “가족하고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 □ 채팅사이트 폐쇄 또는 차단

3. 채팅방 다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팅사이트 들어갈 때 주민번호 쳐 봤자 애들은 엄마 꼴로 다 들어가니까 소용없고, 사이버수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6. 채팅사이트 차단하고.
7. 사이트를 없애고,
8. 사이트가 없어져야 되요.
11. 채팅방을요 폐쇄 해야죠.
13. 차라리 채팅을 아예 없애던가, 버디를 없애던가. 채팅만남을 할 수 있는걸 다 없애면 좋지 않을까. 100% 중에 80%는 다 버디로 만나는 거니까.
14. 버디를, 채팅 같은 걸 다 없애는 것.
18. 그냥 채팅사이트를 없애면 되죠.
19. 버디 채팅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도 쪽지하고 하겠지만 제일 좋은 건 버디 자체를 없애는 거고.
20. 실명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일 좋은 것은 아예 채팅방을 없애버리는 것. 아예 못 들어가게. 어른꼴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되요.
21. 버디버디나 세이클럽을 없애야죠.
23. 버디 채팅을 없애는 거요.
25. 그러니깐 조건을 없애야죠. 채팅을 그냥 그런 사이트를 없애는 게 나을 거 같아요.
26. 채팅사이트를 없애야죠. 대놓고 사이트에 광고하는 애들 언니들이요. 그런데 다 없어지고 채팅 싹 없애줘야 돼요.
27. 채팅방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30. 버디버디 채팅서비스를 아예 중지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33. 무조건 채팅방 사이트를 아예 없

애야 해요.

35. 채팅 사이트부터 없애야 할 거 같아요.
36. 채팅 사이트를 없애 버려야 되요.
37. 채팅방을 없애야 할 거 같아요. 일부 조건을 하다 걸리면 대개 큰 벌을 줘야 할 거 같아요.
39. 버디 채팅을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없앤다는 얘기 나왔는데 안 없애고 바뀌기만 했어요. 그리고 주민 도용되는 것도 안 좋은 거 같고요. 나이를 짧게 짧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채팅방에) 들어가는 범위를요. 연령대가 크니깐 거기에서 어른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만나니까? 네.
41. 채팅방을 19세 미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요.
42. 아예 버디버디 그런 사이트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43. 채팅을 막아요. 그럼 아예 없어질 거 같아요. 애들 거의 버디로 구하는데요 버디하면 번개 아니면 조건하고 키알(키스알바)한단말예요. 채팅방 없어지면 안 만날 거 같아요.

### □ 인터넷실명제

1. 인터넷 실명제요.
11. 실명제요.
15. 인터넷실명제는 괜찮고? 그건 요즘 다 하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16. 인터넷 실명제요.
21. 인터넷 실명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23. 인터넷 실명제가 좋은 거 같아요. 주민등록 생성기가 생겨서 더 이상해진 거 같아요.
24. 실명제요 솔직히 자기 이름 걸고 할 수 없잖아요 대행 사이트들 교묘

- 하게 하는 걸 막았으면 좋겠어요.
26. 실명제로 해야 할 거 같아요. 채팅 사이트 아이디 말고 이름으로 해야 해요 실명제로도 해요 아예 없애야 해요 저요 조건만남으로 한게 아니고 심심해서 했는데 중학생인데 너 이거 왜하나 물어봤는데 쌍꺼풀 수술한다고 한데요.
  28. 실명제도.
  29. 인터넷 실명제도 좋은 거 같아요. 실명이 안 될 때도 있는데 나이 제한으로요.
  30. 실명제 같은 거나 아이디 만들 때 정보 같은 거에 실제 나이나 주소 자기 거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주민등록 생성기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용하더라고요.
  36. 인터넷실명제랑
  39. 그리고 자기 이름도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사는지 나이랑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친구도 만약에 조건이 하고 싶어요. 내 이름 나이 다 나와 그럼 못 구할 거 같아요? 당연하죠. 집 주소가 나오는데 쪽 팔려서요.
  40. 인터넷 실명제 하면 어떨까? 안 할까 사람들이? 좋은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41. 실명제요.
- 처벌 및 단속 강화**
5.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여자 다 나쁜데, 남자들은 법이 더 강화가 되면, 겁먹고 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자한테 벌이 좀 강화되면 좋겠어요.
  6. 근데 우긴게 남자들 잡히면, 교육 며칠하고 풀어줘요. 잘못된 거 알면서 그러는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세계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7. 주민번호생성기도 없애야 되요. 버디에서 나이만 치면, 주민번호가 짝 뜬단 말이에요. 내 아이디도 아는데 그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다 들어가요. 다른 사이트는 그런 것 다 막아놨거든요. 근데 버디는 안 막아놨어요. 주민생성기라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여자남자 있고, 연도 있고, 여자 찍고, 90년생 찍으면, 90년생 여자 주민번호가 짝 떠요. 그럼 버디 들어가서 그 주민번호 찍고 이름 아무거나 하면 그게 다 맞는 단 말이에요. 그걸로 가입하는 거예요.
  9. 경찰이 버디버디를 싹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있으면 딱 잡아내는 거예요.
  10. 모니터링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ㄹ’, ‘열사’ 이런 것들 채팅 금지어 좀 시켜요. 그리고 채팅방 가입해서 채팅방 만드는 것이 유료인게 있거든요. 채팅방 제목을 바꾸는 게 유료예요. 그걸 유료로 가입해서 바꾸는 사람들 ID를 찾아내서 한다거나 그런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세이클럽 얘기인거지? 방제를 바꾸는데 돈이 들어? 네. 지금 만날 사람 이런 식으로 방제를 바꾼단 말이에요.
  11. 경찰이요 채팅방에 들어가서 개네를 다 잡아야죠.
  13. 성매매 법을 세계 하던가, 그냥 무조건 벌금을 세계 하던가, 법을 세계 하던가. 그것 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는 애들은 다 해요. 돈이 필요해서 하고, 남자애들

<p>은 성욕구 때문에 하고.</p> <p>17. 일단 어떤 조건만남에 대한 단어 같은 거 모두 다 금지어예요. 단속을 더 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단속하고 어른도 단속하는 거요.</p> <p>18. 걸리면 평생 감방에서 살게 해요.</p> <p>20. 일단은 사이버상에서 대화를 할 때 조건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써도 그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조건을 하던 안 하던 간에. 그리고 그런 방도 못 만들게 해야죠.</p> <p>21. 주민등록 생성기를 없애야죠.</p> <p>23. 단속을 철저히 하는거요. 그 다음에 채팅을 하더라도 조건 하는 알바생 만들어서 단속하는 거요.</p> <p>29. 벌금을 엄청 부과한다든지 우리나라 문제점이 벌금이 적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사람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벌금을 심하게 하면.</p> <p>42. 게임도 이상한 단어 나오면 아이디 조회해서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말 아예 안 나오게 이렇게 병신하면 점 붙이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예 못하게요. 애들이 가출을 많이 하잖아요. 조건이 쉬운 줄 알잖아요. 그런 법을 더 개선해가지고 조건 같은 걸 아예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격히 처벌을 여자는요 조건 했다면 둘 다 피해 받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둘 다 다시는 못하게 처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처벌을 강하게? 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요.</p> <p><b>□ 성교육</b></p> <p>5. 성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건 진짜 쓰레기예요. 맨날 정자 난자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똑같은 것만 해요. 어떻게 착상되고 이런 건 진</p>	<p>짜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솔직히 초등학교도 하는 시대인데, 피임법이나 제대로 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알려줬으면 좋겠고.</p> <p>12. 성교육 같은 건데 연극 같은 성교육 있잖아요. 직접 조건만남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이해해서 보고 느껴서 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p> <p>15. 성교육이요. 학교에서 하잖아? 그런 별로 진짜 안 좋다는 걸 세계요. 그런 캠페인 한다고 안하는 거 아니잖아? 성교육은 들으면서 알아가잖아요 조건 만남도 되면 이걸 안 좋고 강력하게요 담배 같은 건 하잖아요. 이게 정말 안 좋다는 걸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성교육처럼요. 조건만남이 안 좋다는 걸 캠페인처럼? 아이부터 성인까지? 네</p> <p>21. 성교육은 미리 필요할 거 같아요. 아는 거라도 계속 들으면 쇠뇌가 될 거 같아요. 어떤 성교육? 하면 나쁘다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여주는 거요.</p> <p>25. 몸관리, 성교육요. 나쁜 애들도 있었어요. 애들이 원하지 않는데 15살이 13살 원조 시키는 거요. 계속 쫓아 다닌 데요 3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 돈도 뺏고요.</p> <p>29. 애들한테 애초부터 교육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교육은 성관계는 친구로 통해 알아요.</p> <p>32. 그냥 성교육도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성교육을 학교에서 받았었거든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애들 관심 없거든요. 막상 하면 모르는 용어도 나오고 지루하고 그런 거 말고 안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강조하면서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p> <p>33. 인터넷 조건만남이 나이가 어리잖</p>
---	--

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지 말자 어른들이 먼저 하지 안 하면 우리도 안 할 거 같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교육을 시켜야 할 거 같아요. 성교육이요. 청소년들은? 부모들이요 안에서든 밖에서든 교육을 시켜야 할 거 같아요. 관심을 보여야 할 거 같아요. 인터넷실명제를 사용하면 어떨까? 그거 사용해도 마찬가지 일 거 같아요. 그거 사용하면 네가 누구인지 다 알잖아 그래도 괜찮아? 돈 벌려면 괜찮을 거 같아요.

- 34. 그런 거는요 채팅사이트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그걸로 조건만남 하잖아요? 성교육을 시키는데 평범한 거 말고 여기서 하는 것처럼 되게 강하고 2시간 되게요.
- 35. 성교육이요. 어떤 성교육 시켰으면 좋겠어? 조건만남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37. 성교육

**□ 신고제도 개선 및 강화**

- 14. 그리고 하게 되면 경찰에서 신고 같은 것 있으면 좋겠어요. 조건만남 들어오면 지역 같은 게 딱 찍혔으면 좋겠어요. PC방 이름도 알고. 그런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 19. 그냥 채팅할 때 쪽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바로 신고 할 수 있게.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했던 거 그게 바로 그 글 자체가 신고할 수 있는 거요.
- 28. 신고센터 만들어서 더 강화시키는 거요.
- 32. 세이 채팅방은 아닌 거 같아요. 채

팅방에 그런 식으로 들어간 제목은 다 신고가 들어가야 할 거 같아요.

- 40. 채팅 할 때요 누가 그런 말 하면 누르면 바로 신고 될 수 있게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 쉼터 개선 및 홍보**

- 1. 가출해서 돈에 눈을 뜨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막기 어려워요. 쉼터를 1388처럼 좋게 만들어야 되요.
- 4. 처음 가출했을 때 쉼터를 찾아봤는데, 입소하려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되고, 입소동의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가출한 애들한테 그런건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쉼터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쉼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 6. 1388이나 쉼터 같은 곳을 많이 알려야 할 것 같고요,
- 8. 가출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애들을 위해서 그런 애들 조건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쉼터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필요한 것에 맞게. 그건 가출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이고, 가출을 하지 않아도 조건만남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으면 좋겠어?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자원봉사를 하면 식권 같은 것도 주잖아요. 제 동생이 그걸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부하고 싶으면 대신 일주일에 한번씩 자원봉사를 해라 그런 것.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요. 이런거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너네 아플 때 병원이라도 갈 수 있고, 못

배운 것 학원 보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요. 조건만남을 하는 이유에 맞게 그런 지원을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아이들도 이런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원봉사나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네? 네 자아발전을 할 수 있으면서.

24. 예방하기 정말 어려운데 쉽지는 조건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오는 곳 이니깐 안 좋다고 생각하니깐 차라 리 수원에 있는 거리학교가 있는 데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집을 줘요 보증이 110, 120 그래요. 보증금이 더 싸면 애들이 가질 않을 까 싶어요. 집이 중요하니까요. 쉽지는 애들이 꺼리거든요.

### □ 가정교육 및 환경

6.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뭐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부모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21. 일단 부모님이 잘 해야 겠죠 거의 집 나온 애들은 부모님이 때리거나
22. 성교육 백날해도 애들 말 안 듣고 그냥 주변 애들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보다는 무조건 화내는 것 보다는 타이르고 이런 일 하는 애들 보면 집 나간 애들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집이 싫어도 그런 일은 안 할 거잖아요.
31. 왜 없어요?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돈 벌어서 좋고 남자는 나름대로 성욕 해결할 수 있어서 좋고 내 몸 같고 내가 하는 데요. 그래도 안 하

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어 돈 벌고 싶은데 너도 조건만남 추천 해 줄 수 있어요? 개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추천해 주고 정말 성실히 땀 빼질뻐질 흘리면서 그래도 자기 가치만큼 벌고 싶다면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 쉽게 벌고 싶으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요. 아직 유입이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거 같아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부모님한테 얼마 얼마 3만원 줘야하면 내가 학생이 뭐가 돈이 필요하냐고 말하는 거 보다 그래 오늘 준다고 하는 식으로 줘야. 그리고 가족하고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가족하고 대화 많이 하고? 네.

37. 비행 청소년을 안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가족이 행복하면 집도 안 나가고 사고도 안치고요.

### □ 기타

2. 제일 좋은 것은 인터넷을 없애는 건데 그건 안 되잖아요. 버디버디를 없앤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남자들은 버디버디 안하면 노래방이나 룸에 가잖아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모니터링을 강화 한다든지. 지금도 모니터링해요. 근데 모니터링해도 소용없던데요. 저 모니터링 한다고 한 이후에 한 30번은 했어요. 아니면 성교육을 한다든지. 성교육을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성은 당연히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돈 맛에 하다보면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별로 되지도 않는 돈 조금씩 버는데, 아르바

이트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거예요. 아르바이트는 돈을 너무 조금 주니까? 네. 이거 7번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아르바이트는 한 달에 받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하고 싶지가 않은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보람 있게 번 돈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벌고도 싶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없어 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찰서를 가도 못 끊겠고, 성교육을 받아도 못 끊겠고 그랬었어요. 근데 자기가 안 되는걸 느껴야 되요. 자기 몸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안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정책이던 할 사람은 할 것이고,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말이지? 네. 강제로 해봤자 옛날에 만났던 사람 다시 만나면 그 만이에요.

3. 조건하는 애들을 불러다가 상담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여자가 안하면, 남자는 할 사람이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안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애들 중에는 이게 뭐가 나쁜지 모르는 그런 관념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7. 싸이나 다른 사이트처럼 버디도 본인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가출 청소년들이 부모님 동의서 없이도 일자리 구할 수 있게. 그래야 애들이 조건을 안 할 것 같아요.
9. 어떤 법을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10. 길가다가 양아치 같은 여자애들 다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제 또래 애들이요, 보도 뛰고, 룸에서 일하고 그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처음 조건만남을 접하게 된 건 아는 언니가 조건만남으로 두

번 걸려가지고, 야간보호관찰을 받은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가 애기를 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 일단 걸렸던 사람들 입단속을 잘하고요,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안 좋게 생각해서 정리를 완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하러 갔는데 씻고 있는 사이에 돈도 안 주고 남자가 없어져 버린다거나, 봉투에 돈 줬는데 천원 짜리만 들어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진짜 많대요. 근데도 계속 돈 벌려고 하잖아요. 일단 잡으면, 저도 보호관찰 1년 받았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아는 언니는 두 번 걸려서 야간보호 6개월 까지 받았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걸 생각하던데요. 이제 세 번만 더 하고 돈 벌면 그만 할 수 있는데. 이러던데요.

12. 잘 모르겠어요.
16. 생각을 못 해봤어요.
17. 그런 거 해도 안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애들이 심하게 성병 걸리는 거요. 만약에 인터넷을 실명제로 해서 주민등록증 생성 못하게 하는 건 어떨 거 같아? 그래도 할 거 같아요. 채팅 사이트를 다른 외부 사람들이 몰래 감시 하는 건 어떨 거 같아? 좋을 거 같아요. 아니면 경찰서 같은데 가서 주민번호 생성하는 아이디를 받아서 조건만남 단속하는 거요. 경찰이나 너네나 우리 같은 사람이 아예 조건 남을 유인하는 거지? 경찰이 너네 단속 하듯이? 네.
21. 그러니깐 친구의 권유 같은 게 없어야겠죠.
22.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p>해야죠. 저희가 이렇게 언제까지 한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데요. 청소년들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네? 네 자기들이 힘들면 알아서 그만 하겠죠 그럼 그거 말고는 별로 예방 할 수 없는 거 같아? 막 경찰이 계속 지키고 있는 다고해도 개들이 계속 할 텐데 그렇다고 개네들 다 소년원에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피해자니까? 솔직히 우리도 피해자도 아니 예요 남자들도 피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 속여서 까지 돈 벌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p> <p>28. 애들을 이해해야죠.</p> <p>31. 그런 거 근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세워봐도 할 애들</p>	<p>은 하는 거니깐 필요 없는 말 같은데요.</p> <p>34. 저는요 솔직히 애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조건을 하는데 알바 같은 거 나이 좀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p> <p>38. 그냥 잘 모르겠어요. 성교육이나 인터넷 실명제 아니면 채팅 사이트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런 거는 어떨 거 같아? 성교육은 다 알잖아요. 누구나 초딩 때부터 했던 거라 효과 없을 거 같고 솔직히 아는 내용 반복하면 뭐 해요. 그러면 상담받아서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런 상담을 친구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면 방지가 안 될까? 아니요. 상담도 어느 정도여야죠. 그러니까 질리는 거죠. 스트레스 쌓이고요. 우리가 일단 줄여야죠.</p>
---	---

## (2)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유인행위 처벌제도에 대한 견해

### ①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유인행위 처벌법에 관한 의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 10조 제 2항)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처벌하는 것이 좋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좋지 않다고 나뉘었다.

첫째로 처벌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3명 중 30명이었고,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좋아요. 만족해요. 이래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건만남하는 여자들도 많이 줄거 같아요.”

둘째로 43명 중 9명의 청소년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징역형을 늘려야 할 거 같아요. 1년 이하는 약한 것 같아요.”, “왜 1년



밖에 안줘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10년이나 사형이요. 그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단순 장난감으로 생각하니까요.”

셋째로 43명 중 4명의 청소년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운 있는 애들은 안 걸리고, 운 없는 애들은 걸리고, 잘 보면 어린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별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을 건데요.”

**□ 처벌해야 함**

1. 처벌하고 싶어요.
2. 제가 그 때 완전히 끊었다면 신고 해야죠.
3. 좋아요. 근데 남자가 잡아떼면 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법이 오해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4. 신고 할 것 같아요.
7.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잡아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잡는다면 조건을 막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9. 괜찮은데요.
10.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잡기 되게 쉽겠다. 여자인 척 하고 잡으면 되잖아요.
11.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건 다 처벌 받기를 원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안나오게.
12. 좋아요.
13. 저는 저한테 피해 없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14. 좋아요. 왜 좋은 것 같아? 안 해도 바로 잡히잖아요.
15.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럼 할 수 없겠네? 저도 안해야죠.
17. 그런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18. 괜찮은 거 같아요.
19. 괜찮은 거 같아요.
22. 괜찮다고 생각해요.
23. 근데요 좋은 거 같은데요.
24. 좋아요.

25. 처벌 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솔직히 미성년자가 애들 하는거 보고 배우고 따라 하는 거 같아요.
26. 말로만 채팅으로만 좋아요. 대화 거는 건 건전하건 야하건 상관없는데 물질적인게 조금만 보여도 해야죠.
28. 좋은 거 같아요. 꼭 그런 남자들이 많으니까.
29.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솔직히 돈이 필요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
34. 좋은 거 같아요.
35. 좋아요. 나쁘니까요.
36. 찬성이예요. 다 지났으니까 안 하고요.
38. 좋죠. 왜 좋은 거 같아? 방지 되잖아요 성매매.
40. 좋아요. 만족해요. 이래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건만남하는 여자들도 많이 줄거 같아요.
41. 좋아요.
42.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여자도요 돈 버는 거 알잖아요. 남자도 그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둘 다 조건을 하니까 여자애들도 그런 생각을 안 먹게 교육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거. 시시한 거 말고 애들이 가슴에 와 닿게요.
43. 고소해 버려요 남자들을요.

**□ 처벌을 강화해야 함**

8.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성을 산 사람 있

<p>잡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얘기 하는 거야. 그럼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한 3년은 해야.</p> <p>16. 벌금은 안돼요. 그냥 넣어요.(감옥) 1년 정도요.</p> <p>20. 징역형을 늘려야 할 거 같아요. 1년 이하는 약한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반성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운거잖아요. 얼마나 늘렸으면 좋겠어? 한 3년. 그리고 발찌나 팔찌나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p> <p>21. 1년은 너무 짧고요 1년 반 정도는 해야 할 거 같아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요? 네 좋아요.</p> <p>27. 왜 1년밖에 안줘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10년이나 사형이요. 그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단순 장난감으로 생각하니까요.</p> <p>30. 괜찮은 거 같은데 벌이 처벌이 약한 것 같아요. 1년이면 금방 가는데 벌금을 먹이거나 징역 같은 걸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p> <p>33. 처벌이 너무 작은 거 같아요. 벌금</p>	<p>도 작고 처벌도 작아요.</p> <p>37. 더 세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2년이요. 유혹하는 거니까요.</p> <p>39. 좋은데요, 처벌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3년 이하나 3천만원으로요.</p> <p><b>□ 좋지 않음</b></p> <p>5. 그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운 있는 애들은 안 걸리고, 운 없는 애들은 걸리고. 잘 보면 어린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딱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걸리면 그때 잡아넣으면 되죠.</p> <p>6. 별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을 건데요.</p> <p>31. 그다지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이득 될 거도 없을 거 같고요.</p> <p>32. 아닌 거 같아요. 왜? 그냥 만약에 장난으로 했는데 장난으로 해서 걸렸어요. 걸려서 재판받는데 저 장난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p>
--	--

## ② 인터넷성매매 유인행위 처벌에 대한 신고의지

유인행위를 하는 사람을 신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무조건 신고하겠다는 청소년과 상황을 봐서 신고하겠다는 청소년, 무조건 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청소년으로 나뉘었다.

첫째로 무조건 신고하겠다는 청소년은 43명 중 34명으로 나타났다. “네. 다 신고하고 싶어요. 너무 싫어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30만원 줄테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해도 신고 할 것 같아요.”

둘째로 상황을 봐서 신고를 하겠다는 청소년은 43명 중 7명으로 나타났다. “저한테 한 번 만나자고 했는데 신고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자꾸 나

한테 연락하거나 싫다고 하는데 나한테 하자고 하면 신고해야죠. 내가 불쾌할 정도면.”, “돈 주면 할 것 같아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2만원만 줘도 할 것 같아요.”

셋째로 무조건 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청소년은 43명 중 2명으로 나타났다. “귀찮아서 안해요. 신고하면 경찰서 너무 왔다갔다 거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 무조건 신고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은 처벌 받아야 돼요.</li> <li>3. 네. 다 신고하고 싶어요. 너무 싫어요. 예전에는 돈을 잘 주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돈으로 주고 산 거지 착한 애로 본적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몸도 이렇게 됐고, 딸 있는 아빠가 그런다는 것도 싫고.</li> <li>4. 역겨워서.</li> <li>7. 네.</li> <li>8. 이걸 참여를 해야죠. 그래야 없어야니까. 나라에서 이만큼해주면 우리도 해야죠.</li> <li>10. 네. 꽃뱀이 되어 드릴게요. 재수 없잖아요. 나이 먹고 뭐하는 거예요.</li> <li>11. 네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하는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쌍하잖아요.</li> <li>12. 할 수는 있죠. 나하기 싫은데 상대방이 억지로 하게 만드니까.</li> <li>13. 네 전 다 할거예요. 맘에 안 드니까. 솔직히 그 나이 먹고, 그 나이면 다 결혼하잖아요. 근데 어린애랑 하고 싶어서 돈 내고.</li> <li>14. 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30만원 줄테니까 신고하지 말</li> </ol>	<p>라고 해도 신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돈만 받고 신고하던지. 신고하려는 이유는? 싫어서, 성관계 하는 것 싫어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네. 저한테 호기심 생기게 꼬득이는 거요.</li> <li>17. 신고 할 거 같아요.</li> <li>18. 네. 그러면 조건만남 그런 것 없지 않아요.</li> <li>19. 신고 당연히 해야죠.</li> <li>20. 네.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망가지죠. 그 남자들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 거지만, 청소년은 아직 미숙한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만 남을 뿐이죠.</li> <li>21. 네 전 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이 또 하나의 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나는요? 돈이 너무 필요 했고 잠 잘 곳이 너무 필요해서 했는데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니까요.</li> <li>22. 당연히 해야죠.</li> <li>23. 네 전 조건 해 봤기 때문에 신고 할 거 같아요.</li> <li>25. 네. 너무 그러니까 같은 나이끼리 사랑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어른은 아닌 거 같아요.</li> <li>26. 해야죠. 전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마음이 둘 다 있으니까</li> </ol>

- 요. 청소년이라도.
27. 네. 그런 남자들이 없어져야 하나까.
28. 네 계속 제가 들어 갈 것도 아니니까요.
29.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30. 네. 우선은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32. 네. 더러워 보여요.
33. 안했으면 처벌 안 해도 될 거 같은 데요, 마음을 준 거 잘못이 아닌 데요 행동으로 한 건 잘못인 거 같아요. 신고 할 거예요 저 같은 아이가 안 생기게요.
34. 네. 그런 거 보면 신고하고 싶어요.
36. 네. 개네들이 20대라고 치면요 어린 애들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37. 네. 나쁜놈이니까요.
39. 신고 할 거예요. 이유는?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40. 네. 나쁜잖아요.
41. 네.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니까요.
42. 해야죠. 그런 사람은 쓰레기 같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꼬시면 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예 못하게 막아 버려야 되니까요.
43. 네 잡아야죠. 그런 사람을 다 없애야 하죠. 애들은 철없어서 그런다 해도 어른들은 다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요 경찰들이 왜 애들을 잡아 구요. 조건하면은요 자기들이 애인 인척하면서 어른을 잡아야 할 거를 애들을 잡아서 뭐라고 하니깐 어른을 잡아야 하는데요.

#### □ 상황에 따라 신고 함

2. 저한테 한 번 만나자고 했는데 신고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자꾸

- 나한테 연락하거나 싫다고 하는데 나한테 하자고 하면 신고해야죠. 내가 불쾌할 정도면.
5. 돈 주면 할 것 같아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2만원만 줘도 할 것 같아요.
9. 네. 근데 신고하면 뭐 줘요? 신고하려는 이유는 뭐야? 뭐 주면.. 신고하려는 목적이 돈 받기 위해서? 네. 만약에 보상이 없다면? 없다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15. 전 그냥 무시하고 넘어 갈 거 같아요. 왜? 그냥 무시해 버릴 것 같아요. 저한테 뭐가 온다면 하겠죠.
24. 네. 근데 솔직히 이게 왔잖아요. 신고하는 게 꺼려지는 게 경찰이 내가 일부러 글을 올린 거 아니냐고 우리를 나쁘게 볼 거 같아요.
35. 있는 데요 자신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38. 아니요. 지들 인생 지들이 사는 거죠. 제가 모르는 사람은 신고 안하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나는 신고할 거예요? 네

#### □ 무조건 신고 안함

6. 귀찮아서 안해요. 신고하면 경찰서 너무 왔다갔다 거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럼 만약에 어떤 보상을 준다고 한다면? 난 안하겠어요.
31. 없어요. 난 나름대로 돈 벌어야 하는데 제가 신고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조건 만남 한다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떠벌린다고 생각해요? 신고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잖아요. 애 한번 죽여 보겠다고 나도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친구는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우선은 내가 조

<p>견만남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조금 저도 그렇죠. 경찰들은 그런 거 있</p>	<p>잖아요. 유도 심문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경찰들이 꺼려지고요.</p>
---	---

### (3) 성매수자의 처벌

#### ① 처벌

성매수자를 어떻게 처벌하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첫째로 43명 중 34명의 청소년이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무조건 교도소 들어가면 좋겠어요.”, “벌금 30배주고, 1~2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43명 중 4명의 청소년은 가족이나 주위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족한테 먼저 알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식 있는 사람들은 자식한테.”

셋째로 43명 중 2명의 청소년은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범죄자들 보면 팔찌 같은거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 했으면 좋겠어요. 벌금 이런 것 하면 돈 많은 사람만 유리하잖아요.”

넷째로 43명 중 3명의 청소년은 지금보다 더욱 강한처벌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남자들이 잡히면 일단 변명하는 게 애네 미성년자인지 몰랐 다 이런 게 싫어요. 그냥 변명할 기회도 없이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p><b>□ 징역 또는 벌금</b></p> <p>1. 어른들은 교도소가죠? 무조건 교도소 들어가면 좋겠어요.</p> <p>3. 그 다음부터는 징역 1년이나 3년 정도, 벌금 3천만원. 이렇게.</p> <p>4. 벌금 30배주고, 1~2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p> <p>8. 감옥을 보내요. 근데 무죄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거 없고, 적</p>	<p>어도 3년은 살았으면 좋겠어요.</p> <p>9. 저가 피해를 받았으니 피해보상을 받고요, 정신적으로 피해도 받았고, 병원도 가야하니까 그 사람이 돈을 주고, 벌금 내고.</p> <p>10. 그리고 징역 1년은 너무 작아요. 적어도 3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p> <p>11. 그냥 감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3년요</p> <p>12. 하기 싫은데 쪽지 보내서 억지로 한 거잖아요. 몸도 망가질 수 있고</p>
--	---

임신도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주게 되고. 이거 세 가지 합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 생활에서 잘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13. 전 무조건 감옥. 벌금보다는 감옥. 제가 19일에 재판이 있거든요. 한번 걸렸을 때는 경찰아저씨가 착해서 재판으로는 안 넘길테니까 사실대로 다 말하고,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상담만 받으면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김선아 선생님한테 상담 받은거거든요. 그 아저씨는 우리를 보듬어 주고 싶고, 남자들만 벌을 주고 싶었는데, 제가 만난 남자 중에 한 명이 일년 내내 부인을 한 거예요. 핸드폰에 연락처가 남아있었어요. 그 남자 집에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집 구조도 다 알고 차 모양까지도 다 아는데 자진 안 했다고 부인하니까, 아저씨도(경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저씨한테 욕하고 그랬대요. 처음엔 모르는 애들이라고. 근데 연락처가 남아있으니까 알긴 아는데 집에는 안 왔다고, 근데 집 구조까지 얘기 하니까 집에 왔었는데 개네가 협박하고 내 돈 뜯어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 저까지 재판서고, 아저씨가 못 막아줘서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 감옥 갔으면 좋겠어요.
14. 한 3~4년 감옥에서. 벌금도 하고. 100만원.
15. 감방 가야죠. 얼마정도? 감방만 보내면 돼? 무조건? 네. 1~2년.
16. 그냥 넣어요. 1년은 너무 작고 강하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17. 교도소에 넣는 거요. 4년 정도요.
18. 그냥 감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5년 정도.

19. 벌금을 늘리고 징역을 늘려도 나와도 또 하잖아요. 벌금보다는 징역을 늘리는 거요 벌금은 어떻게 해서든 내면 끝이잖아요.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20. 일단은 반성을 깊게 하게 해야죠. 그렇게 당한 여자애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어떤 타격을 받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감옥에 사는 것도 당연하고 포함해서 사회봉사 활동도 좋은 거 같아요.
21. 그냥 감방에 넣어야 되죠. 그 외는? 없어요. 사형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운동을 시키거나 전단지를 나눠 주는 거요 그래야 느낄 거 같아요.
23. 교도소에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벌금형은 자기가 잘 못을 해도 벌금을 내면 풀리는 거잖아요. 교도소에 넣었다가 반성을 하면 가솔한 청소년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라고요.
24. 벌금을 주거나 감옥에 넣어야죠.
25. 가둬놔야죠. 감옥에 1년~2년 반요 재판에 맡겨야죠.
26. 전적이 있는 사람은 교육 받고 감옥에 가야죠. 한 3년 정도요.
27. 솔직히요 제 친구들이 고자를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감옥 10년 이상이요.
28. 고자 만들어야 돼요. 개네들이 그거 가지고 여자들을 장난치잖아요. 1년 감옥에 보내요.
29. 벌금 많이 보다 감옥에 가야 돼요 가서 고생해 봐야 돼요. 1~2년요.
30. 법을 조금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벌은 약하니까 6개월 정도 있다 나오니까 5년 정도 길면 10년요.
31. 그냥 돈 내라고 해야죠. 벌금? 네.

벌금 얼마 정도였으면 좋겠어? 벌금 50만원 내면 될 거 같은 데요 뭐하러 그렇게 벌금을 많이 내요 벌금 많이 낸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닌 데요. 그럼 감옥 보낸다고 하면 안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니까 제 생각인데 하는 사람은 해요.

- 32. 솔직히 그 사람들 반반이에요. 용서 해주고 싶은 것도 반이고 용서 안 해주고 싶은 것도 반이에요. 솔직히 그 사람들도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한 거잖아요. 그건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청소년이랑 한 거 때문에 벌 받은 거고요.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처벌 하고 싶어? 교육 받아야겠죠. 교육 받아도 또 할 건데 그냥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감옥에? 네. 벌금 없애고 무조건 징역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안 할 거잖아요.
- 33. 징역 5년이요. 아주 강한 벌금이요.
- 34. 징역 한 1~2년이요.
- 35. 감옥에다 5년 보냈으면 좋겠어요.
- 36. 감옥 보내요. 3년 정도요.
- 39.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수백번 할 수 있는 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넘쳐나서 하는 거잖아요.
- 40. 벌금 말고요 그냥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벌금은 돈 많은 사람들은 내고 또 할 거잖아요.
- 43. 교도소에서 썩혀요. 평생.

**□ 가족이나 주위사람에게 알림**

- 3. 강하게. 다시는 조건 못할 정도로. 예를 들면 가족한테 알린다거나, 경고를 주고
- 4. 나와서도 조건 그런 것 했다고 사

람들이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 6.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어디에 들어가고 뭘 하는지 감시하고.
- 10. 지난번에 와이프 임신했다는 사람을 봤는데, 경찰에서 그 사람한테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냐? 그래서 그때 여기로 와라. 그렇게 해서 와서 지문찍고, 진술만 하고 가던데요. 가족한테 먼저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식 있는 사람들은 자식한테.

**□ 전자팔찌**

- 7. 성범죄자들 보면 팔찌 같은거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 했으면 좋겠어요. 벌금 이런 것 하면 돈 많은 사람만 유리하잖아요.
- 37. 감옥은 기본이고 전자 팔찌 채울 거예요. 평생이요.

**□ 강한처벌**

- 5. 좀 미안하긴 한데,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성폭력이라면 얼굴을 공개하고.
- 38. 남자들이 잡히면 일단 변명하는 게 애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이런 게 싫어요. 그냥 변명할 기회도 없이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 42. 아까 말했는데 다시는 못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 되요.

**□ 기타**

- 2. 유인을 했다는 것은 할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인을 했는지 강간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성매매한 사람들보다 더 강

<p>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애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그러겠죠.</p>	<p>26. 처음 걸린 사람은 간단히 교육에서 끝나고. 41. 잘 모르겠어요.</p>
--	---

② 신고 시 보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보상이 없어도 신고를 하겠다는 청소년은 43명 중 1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포상금이나 다른 보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보상이 없어도 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무런 포상금이 없어도 신고할 거예요.”, “보상 없이도 저는 신고할 건데요 문화상품권이라도 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보상이 있어야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명 중 19명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소년들이 보상으로 포상금을 원했으며, 1~2만원이라도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있는 반면, 10만원 보다 적게 준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성매매를 통해 10만원을 벌겠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돈 좀 주거나, 혜택을 주면 할텐데. 그런 것 안 해주면 나랑 상관없으니까 안 할 거 같아요.”, “한 건에 제가 조건만남 하는 액수보다 더 줘야겠죠. 보통 10만원 받으니까 10만원 이상? 네. 더 적게 준다면 안 할 거예요.”

<p><b>□ 보상이 없어도 신고 할 것임</b></p> <p>1. 신고했을 때 나도 같이 조사받아야 되면 신고 안 해요. 보상 안 해줘도, 경찰에서 귀찮게 안 하면 신고 할 거예요.</p> <p>3. 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네 보상 안 해줘도 신고해요.</p> <p>16. 아무런 포상금이 없어도 신고할 거예요.</p> <p>20. 조건만남 말고도 번개나 한번 술 만나자고 하는 거 그건 같은 또래들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막아야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p>	<p>은 돈이겠죠. 보상 안줘도 신고할 거예요.</p> <p>25. 당연히 보상금 주면 하겠죠 안주면 하는 애도 있고 안하는 애도 있고 전 그냥 할 거예요.</p> <p>26. 전 무조건 신고 할 건데요 일반 사람들은 보상 있다면 할 거 같아요.</p> <p>27. 전 보상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꼭 보상을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같은 여자입장에서 할 것 같아요. 저도 해봤잖아요.</p> <p>29. 보상 없이도 신고 할 거예요. 돈은 좀 아니고 정말 갖고 싶었던 거 사주는 거요.</p>
---	---



32. 제가 예를 들면요 여자 성기랑 남자 성기랑 하잖아요. 가끔 뒤로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도 안되는 사람은 신고하고 싶어요. 보상을 안 해줘도 신고할 거예요.
34. 보상 없이도 저는 신고할 건데요 문화상품권이라도 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35. 보상 없어도 할 거 같아요. 나쁜 남자들이니까요.
37. 보상 없이도 신고 할 거예요.
38. 보상은 필요 없어요. 신고를 하는데 보상 같은 거 왜 바라고 해요.
39. 모르겠는데요. 돈이요. 보상을 안 해준데요 그래도 신고 할 거 같아요? 네.
40. 봉사점수를 준다든가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같은 거요. 보상 안 해줘도 신고할 거예요? 신고할 거예요
41. 돈이요. 만약에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도 신고 할 거예요? 네
42. 그런 사람들의 성기를 잘라 버리는 거요. 다시는 못 하게요. 한 500만원이나 돈이요. 돈 안줘도 하겠는데.

#### □ 보상 해주면 신고 할 것임

7. 돈 좀 주거나, 혜택을 주면 할텐데. 그런 것 안 해주면 나랑 상관없으니까 안 할 거 같아요.
8. 청소년한테 혜택을 주는 법이요. 청소년을 도와주는 법들? 어떤 보상을 해주면 신고를 하겠어? 포상금. 얼마정도 주면 할 것 같아? 5만원, 10만원. 그럼 매일 사이트에서 죽치고 있을 거예요.
9. 돈을 주던가, 뭐 그런게 있으면. 그러면 애들이 난리도 아닐거예요. 얼마를 주면 신고를 하겠어? 한 90만

- 원. 5만원 준다면 안하겠어? 그래도 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그럼 애들이 진짜 난리도 아닐 거예요. 버디 들어가서 이거 잡으려고.
10. 버디버디에서 갑자기 누가 친구추가해서 파일로 야한 사진 보내고 그런 것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고할 수 있어요? 버디버디에는 신고해봤어? 아무것도 안 해주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 바꿨어요. 만약에 어떤 법이 생겼는데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어떤 보상을 해주면 신고를 하겠어? 돈이죠. 한 건당 5만원씩만 줘도 신고하겠어요.
11. 법이요? 모르겠어요. 어떤 보상해주면 신고할거예요? 사례금 한100만원 정도요.
13. 전 남자들 감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3년 정도. 그럼 정신 차리고 안 할 것 같아요. 포상금. 몇 만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500원만 해도 이득인건데, 500원은 좀 짜고요, 1~2만원만 줘도 괜찮죠. 근데 한 5만원 주면 좋겠는데.
14. 지나가다가 술 취한 남자들이 자자고 하는 사람 있으면 신고할 거예요. 돈 주면.
15.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상이 없으면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더 크겠죠 어떤 보상 돈을 얼마 주면 신고하겠다? 네 그런거요. 보상이 없으면? 그냥 무시 귀찮게.
17. 포상금밖에 없는 거 같아요.
18.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보상해주면 신고할거예요? 나한테 돈 주는 거. 한 백만원? 한 번 신고 하는데 100만원? 네. 그럼 만약에 질문:2만원 준다고 하면 신고 안 할거야? 1, 2만원 줘도 해요.

19. 나이가 어리면 잘 안 잡히니까 여자들 나이를 속이잖아요. 나이를 밝혔어요. 나이가 어린걸 알면서 할 때. 어떤 보상을 해주면 신고 할 것 같아요? 애들이 돈이 없어서 하는 거니까, 돈.
21. 돈 보상이요.
22. 그냥 그 남자들한테 벌금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성적 그런 걸 팔았으니깐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요. 교도소도 가고요. 보상은 돈을 준다면 제가 만족할 만큼요.
23. 조건할 만한 여자애들 불러서 경찰한테 여자애들을 불러서 조건 하는 남자들 불러달라고요. 6만원정도요. 5만원은 좀 그렇고 10만원은 너무 많잖아요. (보상)
30. 잘 모르겠어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나 아니면 한번 씩 하는데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1~2만원이라도.
31.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보상을 해주면 신고할 거 같아요? 돈 300만원 준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한번에 300만원? 100명이고 1000명도 잡을 수 있어요. 한 건에 얼마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한 건에 제가 조건만남 하는 액수보다 더 줘야겠죠. 보통 10만원 받으니까 10만원 이상? 네. 더 적게 준다면 신고 안 할 거 같아? 안 할 거예요. 차라리 조건만남 하고 10만원 벌겠어요? 네.
33. 한 5년 동안 썩는다든가 일을 아예 못 한다든가 나한테 돈을 주고 하면요 신고하면 얼마 줄게 찾

아서 할 거 같아요.

36. 네.
43. 애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면은요. 쉽터 말고 애들끼리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선생님들은 가끔 오고요. 간섭 많이 없는 곳이 생기면 할 거예요.

## □ 기타

2. 저 이런 것 생각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12. 친구랑 암전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대화 걸어서 갑자기 자기 성기를 보여 주거나,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내 욕을 하거나 나를 비웃는 말을 하면 신고할 것 같아요. 어떤 보상 해주면 신고 할 것 같아요? 돈은 필요 없고요. 그냥 구속을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만 알게 하고.
24. 신고를 못하는 게 자기도 성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는 무거운 처벌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했다는 걸 알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직업 교육 같은 거나 심리상담 같은 걸 받고 쉽터에 보내는 거나 쉽터도 좋은 텔 보내야 되지만 그런 걸 해주면 애들이 훨씬 안하거든요. 자기도 처벌을 받으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연락을 해요.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니까. 솔직히 신고는 하고 싶어요.

## V.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V.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

## 1. 조사개요

### 1) 전문가패널 선정

기존의 델파이 연구를 살펴보면 조사 회수율은 일반적으로 서베이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략 50%에서 70% 정도로 어떤 경우는 현저히 낮은 것도 있다. 낮은 응답률은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의 수, 즉 표본 집단의 크기를 적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Rowe, Wright & Bolger, 1991). 단 10여명 내외의 소집단 패널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Armstrong, 2002). 하지만 대다수 델파이 선행연구가 패널은 최소 15명 이상 선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Yuxiang, Donghua & Changgeng, 1990; Woudenberg, 1991; Rowe, Wright & Bolger, 1991; Jensen & Anderson, 1996)<sup>97)</sup>.

또한 델파이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대표성, 전문적인 지식, 전체 참가자의 수, 참여와 답변의 성실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Jensen & Anderson, 1996; Armstrong, 2002).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의 선정기준을 현재 청소년관련 연구나 업무 경력자(학계, 연구기관, 실무기관, 청소년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로 정하였다. 먼저 학계는

---

97) 기존 델파이 연구의 메타분석(Webler, et. al., 1991)에 의하면, 패널크기가 작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0명 이상으로 다양했다. 다만, 패널의 크기에 관한 분석적 연구는 신뢰성과 그룹의 평균오차가 패널의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이 평균 그룹(average group error)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그룹의 신뢰성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패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Birdir & Pearson, 2000).

대학교수의 경우 인터넷성매매 연구에 대한 논문을 집필한 바 있으며,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정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등의 다양한 학부 및 대학원에 재직중인 교수로 제한했다. 연구기관의 경우 인터넷성매매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행정계의 경우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관련 중앙부처의 정책담당자로 5급 이상 공무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선정하였다. 또한 현장의 경우는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쉼터 등의 현장전문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구성하였다. 이 결과 연구진 자체조사와 자문추천을 통해 전문가로 최종 판단된 분들을 개별 접촉하여 델파이 조사를 승낙한 전문가는 학계(10명), 행정계(9명), 현장전문가(1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V-1> 분야별 델파이조사 전문가

영역	델파이조사 전문가 분야	인원
학계	법학과 교수 3명, 연구원 1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1명, 경찰행정학과 교수 1명, 신문방송학과 교수 1명, 교정보호학과 교수 1명	10명
행정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안전과 1명,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과 2명, 여성부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 1명,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2명, 법무부 여성아동과 1명, 서부지방검찰청 1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1명	9명
현장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서울위기청소년 교육센터 2명, 대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부산위기 청소년교육센터 1명,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1명, 대전청소년쉼터 1명, 네오위즈 1명, 버디버디 1명	11명
합계		30명

## 2) 조사도구

앞선 이론적, 실천적 연구동향과 해외연구동향의 검토를 토대로 델파이

조사를 위한 인터넷성매매 관련 연구의 내용범주를 미리 설정해보기로 했다. 수요예측에 대한 델파이 조사는 통상 현재까지의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미래예측의 질문지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이다(Linstone & Turoff, 1975; Benaire, 1988; Tillman, 1989). 질문지를 구성하기 선행연구(이춘화·성운숙·조아미, 2008; 홍봉선·남미애, 2008)를 토대로 질문지를 만들고 인터넷성매매 관련 전문가 7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재구성하였다. 또한 질문지 내용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성매매 관련기관 현장전문가 15인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관한 질문지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V-2> 1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번호	조사영역	세부항목
1	일반적 특성	- 소속 및 부서
2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개념과 인터넷성매매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 인터넷성매매 개념 - 인터넷성매매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
3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비전과 목표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비전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
4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영역 설정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에 대한 상위영역과 각 상위영역에 따른 하위영역 - 영역구분에 대한 기준 - 각각의 하위영역에 따른 세부정책추진과제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
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규제 문제점과 한계점, 효율화 방안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규제의 문제점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규제의 한계점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효율화 방안
6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에 위한 질문	- 인터넷성매매 감시, 경로 차단, 단속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일원화 한다면 담당 부처에 대한 의견 -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해서는 불처벌주의인데

		<p>이법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몸이 성숙하여 17세 이상은 성인과 분별하기 난해함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16세로 낮추자는 학계와 법조계의 주장에 대한 의견</li> <li>- 성매수 초범에게 실행되고 있는 8시간 수강명 령(존스쿨교육)이 그들의 죄질에 대하여 처벌 이 적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처벌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li> <li>-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성매매재유입예방을 위한 '청소년성장캠프'의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이 어떠한다고 보시며 다른 대책에 대한 의견</li> <li>-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과 관련한 기 타 의견</li> </ul>
--	--	--

**<표 V-3> 2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번호	조사영역	세부항목
1	일반적 특성	- 소속 및 부서, 재직기간, 성별, 연령
2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비전	- 6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6개 항목의 우선순위
3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목표	- 6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6개 항목의 우선순위
4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영역	-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명칭 제시 - 예방(교육, 홍보, 단속) - 보호(교육, 자활, 치료) - 처벌(교육, 단속)
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예방영역 정책과제	- 교육영역의 5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홍보영역의 3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단속영역의 3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6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보호영역 정책과제	- 교육영역의 3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치료영역의 4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자활영역의 8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7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처벌영역 정책과제	- 교육영역의 2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단속영역의 17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각 영역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 3) 조사방법 및 절차

델파이 연구에서 신뢰성 확보는 1차 설문에 대한 응답을 엄격히 코딩하여 2차 설문지를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목적에 적합한 패널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Murry & Hammons, 1995; Rowe, Wright & Bolger,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회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2차 연구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에 의해 코딩, 분석된 자료에 대한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을 받는 동료검토(peer debriefing)의 방법을 자문회의로 활용하였다. 또한 2회기 도구에서는 범주화한 한 항목에 대해 패널개인의견을 요청함으로써 자료 분석의 범주를 검증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과정을 포함시켰다. 델파이방법 자체가 반복적인 설문과 이전 설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문가 집단이 다른 응답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허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은 확보된다.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수행한다. 1회기 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1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된 설문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개방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1회기 조사는 2009년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하였다. 2회기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를 분석한 이후 2차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09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에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질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3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했다. 각 델파이 회기별 조사과정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 1회기(first round)

델파이방법에서 1차 설문의 형식은 기술식(개방형) 또는 구조화된 제한 응답양식의 두가지 중 하나로 작성될 수 있다. 특히 1차 설문은 탐색단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할 경우 참가 전문가들이 발산적 지각(divergent perception)을 고찰한 다음 이것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Webler, et. al., 1991). 처음 설문지가 지나치게 구조화되어 있거나 세분되어 있으면 응답자의 반응범위가 줄어 그만큼 문제 해결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개방형태가 더 좋다(Rowe, Wright & Bolger, 1991). 즉 1차 설문부터 구조적 질문을 활용하면 연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개념적 틀을 응답자에게 주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타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Tillman, 1989), 본 연구에서는 기술식(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개발에 도움을 얻고자 자체조사를 통해 청소년인터넷성매매 연구와 관련한 학계(10명), 행정계(9명), 현장전문가(11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최초 2배수에 가까운 패널명단을 확보하여 조사에 대한 개별적인 승낙을 구한 결과였다. 사전 문헌연구 및 관계자료 및 자문을 통해 패널에게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의 개념,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무엇인지,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비전과 목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영역설정으로 상위영역과 각 상위영역에 따른 하위영역, 영역구분에 대한 기준, 하위영역에 따른 세부정책추진과제 제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점, 효율화방안,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에 관한 구체적 질문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1회기 조사결과 유효한 응답회신 30표본을 확보하였다.

## (2) 제 2회기(second round)

2차 설문지는 제 1차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참여자에게 제시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재평가 하도록 요청한다. 1차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구조화된 2차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고려할 점은 각 델파이 차수간의 시간적 간격이다(Linstone & Turoff, 1975; Linstone, 1978). 피드백의 상이한 시간적 지체는 델파이 조사과정에 있어서 응답 자료의 반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Armstrong, 2002). 그리고 구조화된 2차 설문지는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따라 항목을 평가한다(이종성, 2006

).98) 2회기 조사결과 유효한 응답회신 30표본을 확보하였다.

## 2. 조사결과

### 1)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에 대한 중요도

여성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각각 6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30명의 전문가들에게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점수는 5점 척도로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여 6문항일 경우 1위에는 6배수, 2위에는 5배수 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표 V-4>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1 여성청소년이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구축	13	8	3	4	2	0	146	4.73
2 여성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	3	8	3	11	4	1	112	4.50
3 청소년의 성과 인권이 존중·보호되는 사회구현	8	2	6	4	8	2	112	4.23
4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성의	5	5	9	1	5	5	109	4.47

98) 평균(mean), 중앙치(median), 혹은 최빈치(mode)와 같은 중앙경향값과 표준편차 혹은 사분편차 등을 구하여, 전문가 패널간의 합의 수준을 확인한다(Riggs, 1983; Benaire, 1988).

	식 함양과 인터넷 성매매 근절								
5	여성청소년의 탈성매매 도모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0	3	7	7	7	6	84	4.40
6	성에 대한 착취가 없는 세상 만들기	1	4	2	3	4	16	67	4.07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이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구축’ (4.7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여성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 (4.50),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인터넷 성매매 근절’ (4.47), ‘여성청소년의 탈성매매 도모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4.40)’, ‘청소년의 성과 인권이 존중·보호되는 사회구현’ (4.23), ‘성에 대한 착취가 없는 세상 만들기(4.07)’ 순으로 중요도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가중치에서도 ‘여성청소년이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구축’ (14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 과 ‘청소년의 성과 인권이 존중·보호되는 사회구현’ 은 112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인터넷 성매매 근절’ (109), ‘여성청소년의 탈성매매 도모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84), ‘성에 대한 착취가 없는 세상 만들기’ (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5>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1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교육 및 치료·선도함으로써 재유입 방지	13	10	6	1	0	0	155	4.93
2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의 전문성	2	8	11	6	3	0	120	4.53
3	생계형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시설 마련	4	4	6	8	8	0	108	4.50
4	처벌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수자의 재발방지	4	6	4	3	7	6	99	4.33
5	인터넷 성매매 감시체계 확립	5	1	3	9	9	3	95	4.13
6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놀이문화 형성	2	1	0	3	3	21	53	3.63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여성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교육 및 치료·선도함으로써 재유입 방지’ (4.93)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성매수 피해여성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의 전문성’ (4.53), ‘생계형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시설 마련’ (4.50), ‘처벌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수자의 재발방지’ (4.33), ‘인터넷 성매매 감시체계 확립’ (4.13),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놀이문화 형성’ (3.63)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교육 및 치료·선도함으로써 재유입 방지’ (15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수 피해여성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의 전문성’ (120), ‘생계형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시설 마련’ (108), ‘처벌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수자의 재발방지’ (99), 인터넷 성매매 감시체계 확립’ (95),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인

터넷놀이문화 형성’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수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의 영역을 예방, 보호, 처벌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 하위영역을 두어 각 하위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표 V-6>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교육)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예방 (교육)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1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시스템 체계화	15	2	5	5	3	111	4.53
2 청소년대상 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6	11	7	5	1	106	4.53
3 청소년 성 주체성 중심의 학교 교육강화	4	4	10	8	4	86	4.07
4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가 양성	4	7	5	5	9	82	4.13
5 초등학교 전 학년 성교육의 정규 과목화	1	6	3	7	13	65	3.77

예방영역의 교육차원에서의 정책과제 중 ‘청소년대상 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4.53)와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시스템 체계화’ (4.53)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가 양성’ (4.13), ‘청소년 성 주체성 중심의 학교 교육강화’ (4.07), ‘초등학교 전 학년 성교육의 정규 과목화’ (3.77)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중치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시스템 체계화’ (11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대상 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106), '청소년 성 주체성 중심의 학교 교육 강화' (86),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가 양성' (82), '초등학교 전 학년 성교육의 정규 과목화' (65)순으로 나타났다.

<표 V-7>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홍보)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예방 (홍보)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인터넷 성매매 예방·계도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16	13	1	75	4.40
2	대국민 성매매 예방 캠페인 실시	11	7	12	59	4.13
3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3	10	17	46	3.57

예방영역의 홍보차원에서의 정책과제 중 '인터넷 성매매 예방·계도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4.4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국민 성매매 예방 캠페인 실시' (4.13),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3.57)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인터넷 성매매 예방·계도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국민 성매매 예방 캠페인 실시' (59),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V-8>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예방(단속)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예방 (단속)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1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책임강화	11	12	4	3	0	121	4.50
2	가출·폭력 피해자의 긴급구호 시	15	7	1	1	6	114	4.43

	스텝 마련							
3	인터넷 실명제 확대실시	3	7	7	9	4	86	3.97
4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성인 신분 확인의무제 강화	0	3	41	9	4	74	3.97
5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차단	1	1	4	8	16	53	3.83

예방영역의 단속차원에서의 정책과제에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책임강화’ (4.5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출·폭력 피해자의 긴급구호 시스템 마련’ (4.43)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실시’ (3.97)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성인 신분확인 의무제 강화’ (3.97)는 같은 평균을 나타냈고,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차단’ (3.83)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가중치에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책임강화’ (12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출·폭력 피해자의 긴급구호 시스템 마련’ (114), ‘인터넷 실명제 확대실시’ (86),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성인 신분확인 의무제 강화’ (74),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차단’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9>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교육)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보호 (교육)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위기교육센터 확대 설치	14	12	4	70	4.40
2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10	12	8	62	4.53
3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개입 매뉴얼 개발	6	6	18	48	4.20

보호영역의 교육차원에서의 정책과제 항목 중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5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위기교육센터 확대 설치’ (4.40),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개입 매뉴얼 개발’ (4.20)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위기교육센터 확대 설치’ (7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62),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개입 매뉴얼 개발’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0>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치료)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보호 (치료)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1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재활 교육의 실시	17	8	4	1	101	4.77
2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성병 및 정신적 치료의 무상지원	5	9	10	6	73	4.43
3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치료기관 연계	3	12	8	7	71	4.33
4	3회 이상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여 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실시와 반강제적인 교육과 자활 실시	5	1	8	16	55	3.80

보호영역의 치료차원의 정책과제 항목 중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재활 교육의 실시’ (4.77)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성병 및 정신적 치료의 무상지원’ (4.43),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치료기관 연계’ (4.33), ‘3회 이상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여 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실시와 반강제적인 교육과 자활 실시’ (3.80)의 순이었다.

가중치에서도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재활 교육의 실시’ (10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성병

및 정신적 치료의 무상지원' (73),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치료기관 연계' (71), '3회 이상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여 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실시와 반강제적인 교육과 자활 실시' (55)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V-11>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보호(지활)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기준치

	정책과제 - 보호 (지활)	빈도								가중치	평균
		1	2	3	4	5	6	7	8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1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쉼터지원 확대	6	7	1	5	3	3	4	1	158	4.27
2	성매매피해청소년 재유입방지 '청소년성장 캠프' 확대	6	3	7	2	2	5	3	2	152	4.47
3	학교 - 청소년지원센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근로지원 시스템 제도화	4	4	6	3	4	6	2	1	150	4.20
4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단기보호소 확대설치	6	3	5	1	6	2	4	3	145	4.07
5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3	2	3	7	7	4	4	0	139	4.20
6	단기형 대안학교 구축	1	7	3	3	2	2	5	7	121	4.13
7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설립	2	3	4	5	0	4	2	10	112	4.13
8	'두드림프로젝트' 등의 직업탐색 프로그램 확대지원	2	1	1	4	6	4	6	6	103	4.03

보호영역의 자활차원에서의 정책과제에서는 ‘성매매피해청소년 재유입방지 ‘청소년성장캠프’ 확대’ (4.47),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쉼터지원 확대’ (4.27)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청소년지원센터-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근로지원 시스템 제도화’와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4.20), ‘단기형 대안학교 구축’과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설립’ (4.13), ‘두드림프로젝트 등의 직업탐색 프로그램 확대지원’ (4.03)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가중치에서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쉼터지원 확대’ (15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피해청소년 재유입방지 ‘청소년성장캠프’ 확대’ (152), ‘학교-청소년지원센터-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근로지원 시스템 제도화’ (150),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단기보호소 확대설치’ (145),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139), ‘단기형 대안학교 구축’ (121),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설립’ (112), ‘두드림프로젝트 등의 직업탐색 프로그램 확대지원’ (103)이 가장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2>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처벌(교육)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처벌 (교육)	빈도		가 중 치	평균
		1 순위	2 순위		
1	군인, 직장인, 대학생 대상 여성청소년 성구매자 예방교육	17	13	47	4.03
2	존스쿨 교육 40시간으로 확대 실시	13	17	43	4.00

처벌영역의 교육차원에서의 정책과제 중요도의 평균은 ‘군인, 직장인, 대학생 대상 여성청소년 성구매자 예방교육’ (4.03), ‘존스쿨 교육 40시간으로 확대 실시’ (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는 군인, 직장인, 대학생 대상 여성청소년 성구매자 예방교육’ (47), ‘존스쿨 교육 40시간으로 확대 실시’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3>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처벌(단속)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정책과제 - 처벌 (단속)	빈도																	가 중 치	평 균
	빈도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4 순 위	5 순 위	6 순 위	7 순 위	8 순 위	9 순 위	10 순 위	11 순 위	12 순 위	13 순 위	14 순 위	15 순 위	16 순 위	17 순 위		
1 인터넷성매매 사이버수사대 전담반 설치	6	5	3	1	3	1	3	0	2	3	2	0	1	0	0	0	0	386	4.57
2 인터넷성매매 관련 사이트 처벌강화	2	3	4	3	2	3	1	4	3	0	2	2	0	0	0	0	2	352	4.33
3 경찰의 단속의지와 전문인력 충원	2	6	1	1	2	1	2	3	1	2	4	3	0	1	0	1	0	336	4.43
4 청소년대상 성매매 가중처벌제도 도입	9	1	2	1	0	3	2	2	2	0	0	1	1	2	1	0	3	324	4.17
인터넷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사회가 팀으로 구성되어 인터넷 성매매를 감시하고 단속·처벌하는 대기관 협력체계 구축	5	4	2	4	1	1	0	1	0	1	2	2	0	1	1	4	2	321	4.23
6 여성청소년 신고시 보호제도 구축	1	3	2	2	2	2	3	2	4	4	0	1	1	0	2	0	0	318	4.23
7 성매매유인행위 처벌제도 정착	0	5	3	2	3	4	0	3	1	1	1	0	0	2	1	2	0	309	4.33
8 게임, 채팅사이트에 '간편 신고창' 구축	0	0	2	5	1	3	4	3	1	4	1	1	0	2	3	0	1	295	4.30
성매매유인행위 발견 시 단속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장의 예외인정	1	0	3	1	2	1	3	2	3	0	1	2	2	4	2	2	2	261	4.07

10	책임부서의 명시 및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	1	0	3	1	2	0	0	2	4	0	2	4	0	2	4	0	2	4	3	1	2	0	245	4.13
11	각 경찰청에 인터넷성매매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적발	1	0	3	3	3	0	2	0	2	0	0	3	0	0	3	4	1	2	2	2	4	239	4.27	
12	ISP(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 및 유기적 협조	1	1	1	1	2	2	2	0	0	3	3	2	2	3	2	2	2	2	2	2	5	1	226	4.07
13	신상공개제도 활용	1	0	1	2	0	1	2	3	2	3	2	2	2	3	2	2	1	1	4	3	220	3.90		
14	인터넷상의 성매매 합의를 강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단속기관에 강제열람권 부여	0	1	0	1	1	3	2	2	0	1	2	3	3	2	4	202	3.97							
15	게임, 채팅사이트에 적발과 처벌광고의 게재	0	0	0	0	2	3	3	2	1	2	0	1	4	4	1	2	198	3.97						
16	신고시 포상제도 및 파파라치제도 도입	0	1	0	1	2	2	0	1	2	3	1	0	3	2	4	196	3.67							
17	지역 권역별 단속진단팀 구성	0	0	0	1	2	0	1	0	2	0	7	3	3	2	4	1	2	175	4.07					

처벌영역의 단속차원에서의 정책과제 17개의 항목 중 ‘인터넷성매매 사이버수사대 전담반 설치’ (4.5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의 단속의지와 전문인력 충원’ (4.43), ‘인터넷성매매 관련 사이트 처벌강화’ (4.33), ‘성매매 유인행위의 처벌제도 정착’ (4.33), ‘게임, 채팅사이트에 간편신고창 구축’ (4.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도 ‘인터넷성매매 사이버수사대 전담반 설치’ (38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성매매 관련 사이트 처벌강화’ (352), ‘경찰의 단속의지와 전문인력 충원’ (336), ‘청소년대상 성매매 가중처벌제도 도입’ (324), ‘인터넷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사회가 팀으로 구성되어 인터넷 성매매를 감시하고 단속·처벌하는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 Ⅵ. 결 론

1. 요약
2. 정책제언



## VI. 결론

### 1. 요약

#### 1)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 분석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전 세계적인 공통점은 과거의 업소형 성매매보다는 인터넷의 발달로 성매수자와 아동청소년 개인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성매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은밀한 특성이 강한 채팅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성매수자와 청소년 사이의 개별 접촉에 의해 인터넷성매매는 폭증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형태도 성관계, 유사성관계, 애인대행, 키스알바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고, 처음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건강한 성의식 부재와 함께 건전한 직업관 부재로 인해 경제적·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성을 매매할 수 있다는 가치관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일반인의 성매매보다 더 파악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업소로 유입되는 전통적인 성매매와 달리 청소년성매매는 접촉경로가 다양하고, 행위자와 직접적인 비밀접촉이 가능하며, 청소년이 돈을 벌기위한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하고, 자발적 의지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은밀성과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한 접촉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부록 4> 참조)를 살펴보면, 인터넷성매매를 경험하기 전 성관계 경험 여부는 응답 여자청소년 43명 중 33명이 있다고 응답하여, 10명의 여자청소년만이 인터넷성매매를 통해 첫 성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연령은 16세가 11명, 14세와 15세가 각각 9명, 17세가 7명, 13세 3명, 12세와 18세가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43명 중 38명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명의 청소년만이 가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3명 중 15명의 청소년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28명의 청소년은 성폭행경험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는 응답 여자청소년 43명 중 절반 이상인 23명의 청소년이 가출 후 생활비가 필요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용돈이나 유희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명의 청소년은 친구의 권유나 압력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PC방비를 벌기 위해, 잘 곳이 없어서, 집안형편이 어려워져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번개보다 나올 것 같아서 등이 있었다.

첫 성매매 연령은 응답 청소년 43명 중 16세와 17세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각각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9명, 18세 5명, 14세 3명, 13세와 19세가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성매매를 한 횟수는 10회 미만인 청소년이 43명 중 16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3명은 1회의 경험만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0회 이상 또는 셀 수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회 이상 50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성매매를 하기 위해 주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는 버디버디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클럽 8명, 헬프몬 2명, 한게임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플레이러브, 플레이메이트, 오렌지메이트, 대형천국, 네이버, 넷마블 등의 사이트에서도 인터넷성매매를 위한 채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인터넷성매매를 하기 위해 사용한 암호나 신호들은 직접적인 용어사용 보다는 ‘ㅈㅈ, ㅇ리, ㅈㄱ, ㄱㅈ, 1시간 10, 지역이름’ 등 주로 단어를 완전하게 쓰지 않고, 자음만 사용하여 약자를 쓰거나 신속한 만남을 위해 지역이름을 표기하는 등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매매 암호나 신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성매매를 하면서 경험한 피해사례는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16명, 변태행위강요와 폭행이 각각 7명, 돈을 적게 받은 경우가 6명,性病 감염이 5명, 성폭행 3명, 협박 3명, 집단성행위 2명, 욕설 2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납치, 사기, 성매매 강요, 갈취, 수면제 복용, 임신, 조건사항 불이행, 키스알바 중 성관계 강요 경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직

피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7명이 있었다.

인터넷성매매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 것에 관한 질문에는 시설에 입소한 것과 상담선생님의 도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도움 12명, 쉼터 9명, 스스로 깨달아 벗어났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명, 건강악화 4명, 꿈이 생겨서 3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로 택시기사의 도움, 집으로 복귀, 주변친구 정리, 버디버디에 접속하지 않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고, 도움이 없었거나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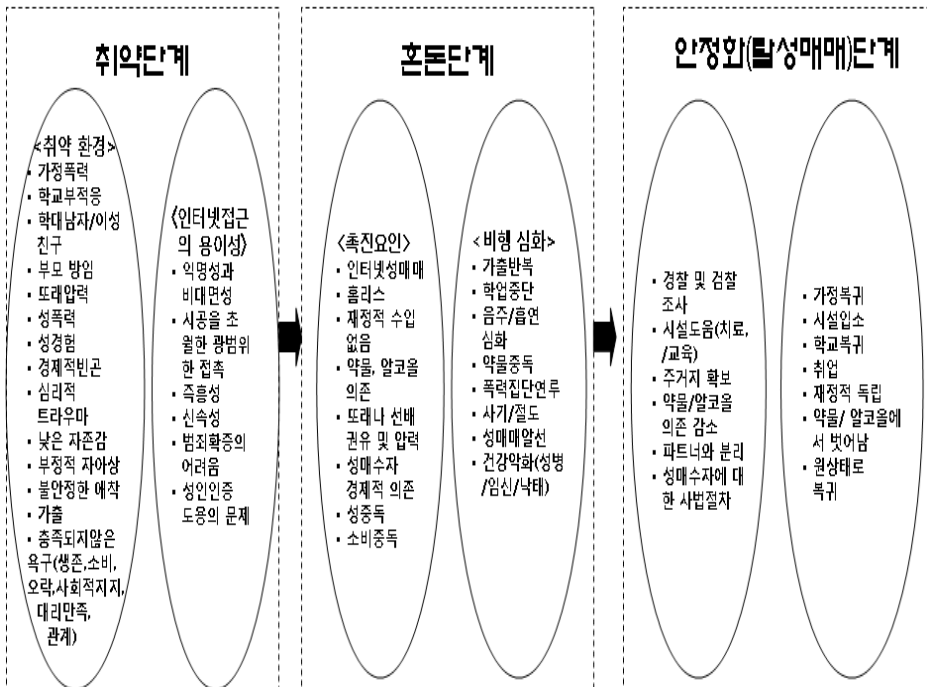
한편,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과 탈성매매 과정은 취약단계, 혼돈단계, 안정화단계(탈성매매)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단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VI-1] 참조). 3단계는 앞뒤로 이동 가능하다. 즉 취약단계에서 혼돈의 단계로 넘어가서도 다시 취약성으로 복귀될 수 있다. 혹은 개인의 대처능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기관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첫째, 취약(vulnerability)단계에서 청소년들은 가정폭력, 학교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취약환경과 인터넷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터넷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터넷성매매로의 진입방지를 위해 조기 개입과 예방이 중요하다.

둘째, 혼돈(chaos) 단계는 가출로 인해 잠자리와 재정적 수입(생활비)이 없음으로 인해 인터넷성매매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가출반복, 학업중단, 사기.절도 등 비행이 심화되며 인터넷성매매로 인해 성병, 낙태 등 건강이 악화된다. 인터넷성매매로 쉽게 큰 돈을 벌지만 생활비나 유흥비, 과소비로 돈을 쉽게 쓰게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어 혼돈에 빠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등을 통해 청소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프로젝트 수행자와 안정된 작업관계를 형성하고 청소년에 맞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안정화(stabilization) 단계로 성매매청소년들은 경찰이나 검찰조사를 통해 청소년위기센터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쉼터,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한다. 시설에서 교육·상담·치료를 받으며 정서적 안정을 조금이나마 찾게 된다. 이 시기는 성매매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정서적 안정을 찾으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가정복귀, 시설입소, 학교복귀를 통해 탈성매매를 하게 되지만 성매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존적 욕구를 드러나게 해야 하며 탈출을 위한 전단계로서 안정화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 성병치료와 정신과 치료, 주거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1대 1 맞춤형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VI-1】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과 탈성매매 과정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방지에 관한 정책으로는 채팅 사이트의 폐쇄 또는 차단, 인터넷실명제, 처벌 및 단속 강화, 실질적인 성교육,

신고제도 개선 및 강화, 쉼터 개선 및 홍보, 가정교육 및 가정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유인행위처벌에 대한 생각은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명 중 30명이었고, 9명의 청소년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지 4명의 청소년만이 처벌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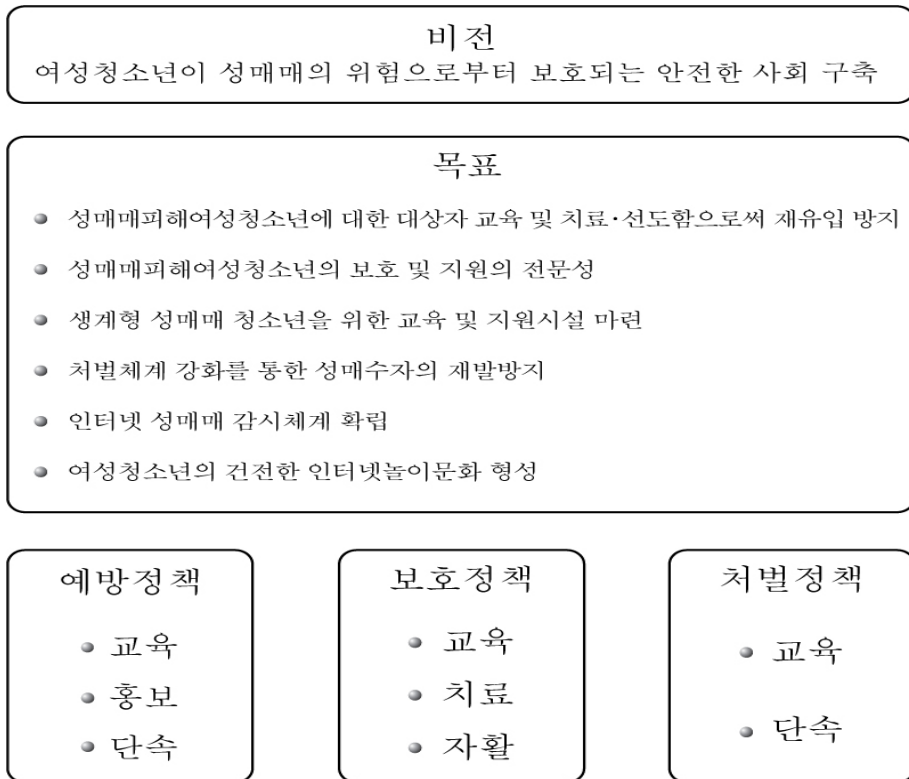
성매수자들의 처벌에 관해서는 43명 중 34명의 청소년이 징역이나 벌금 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수자 가족이나 주위사람에게 알리고(4명) 전자팔찌(2명)를 채워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매수자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보상이 없이도 신고를 하겠다는 청소년은 43명 중 17명으로 나타났고, 19명의 청소년은 보상이 있어야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보상으로 포상금을 원했으며, 1~2만원이라도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있는 반면, 10만원 보다 적게 준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성매매를 통해 10만 원을 벌겠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원은 현재 피해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원과 앞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회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원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에 대한 지원(12명), 주거지원(9명), 심리적 지원이나 교육(8명), 경제적 지원(7명), 학업지원(5명)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 원하는 사회적 지원은 주거지원(13명), 취업지원(9명), 학업지원(7명), 청소년 상담 등 심리적 지원 및 교육(3명), 경제적 지원(3명)으로 나타났다.

## 2)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의견 분석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행정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 체계적,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행정이 지향하는 관점 및 비전을 분명히 하고 바람직한 목표를 수립하며, 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을 예방하고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 재유입을 막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수립을 위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비전은 “여성청소년이 성매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구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성매매 피해여성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교육 및 치료·선도함으로써 재유입 방지’, ‘성매수 피해여성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의 전문성’, ‘생계형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시설 마련’, ‘처벌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수자의 재발방지’, 인터넷 성매매 감시체계 확립,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놀이문화 형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I-2] 참조).



**【그림 VI-2】**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비전과 목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영역을 상위영역과 하



위영역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를 정책의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VI-1> 참조).

<표 VI-1>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정책 영역에 따른 세부 정책추진과제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예방 정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시스템 체계화</li> <li>· 청소년대상 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li> <li>· 청소년 성 주체성 중심의 학교 교육강화</li> <li>·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가 양성</li> <li>· 초등학교 전 학년 성교육의 정규 과목화</li> </u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성매매 예방·계도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li> <li>· 대국민 성매매 예방 캠페인 실시</li> <li>·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li> </ul>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책임강화</li> <li>· 가출·폭력 피해자의 긴급구호 시스템 마련</li> <li>· 인터넷 실명제 확대실시</li> <li>·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성인 신분확인 의무제 강화</li> <li>·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차단</li> </ul>
보호 정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위기교육센터 확대 설치</li> <li>·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li> <li>·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개입 매뉴얼 개발</li> </ul>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재활 교육의 실시</li> <li>·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성병 및 정신적 치료의 무상지원</li> <li>·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치료기관 연계</li> <li>· 3회 이상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여 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실시와 반강제적인 교육과 재활 실시</li> </ul>
	자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쉼터지원 확대</li> <li>· 성매매피해청소년 재유입방지 ‘청소년성장캠프’ 확대</li> <li>· 학교·청소년지원센터·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근로지원 시스템 제도화</li> <li>·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단기보호소 확대설치</li> <li>·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li> <li>· 단기형 대안학교 구축</li> <li>·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설립</li> <li>· ‘두드림프로젝트’ 등의 직업탐색 프로그램 확대지원</li> </ul>
처벌 정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 직장인, 대학생 대상 여성청소년 성구매자 예방교육</li> <li>· 존스쿨 교육 40시간으로 확대 실시</li> </ul>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성매매 사이버수사대 전담반 설치</li> </ul>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성매매 관련 사이트 처벌강화</li> <li>· 경찰의 단속의지와 전문인력 충원</li> <li>· 청소년대상 성매매 가중처벌제도 도입</li> <li>· 인터넷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사회가 팀으로 구성되어 인터넷 성매매를 감시하고 단속·처벌하는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li> <li>· 여성청소년 신고시 보호제도 구축</li> <li>· 성매매유인행위 처벌제도 정착</li> <li>· 게임, 채팅사이트에 ‘간편 신고창’ 구축</li> <li>· 성매매유인행위 발견 시 단속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장의 예외인정</li> <li>· 책임부서의 명시 및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li> <li>· 각 경찰청에 인터넷성매매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적발</li> <li>· ISP(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 및 유기적 협조 산상공개제도 활용</li> <li>· 인터넷상의 성매매 합의를 강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단속기관에 강제열람권 부여</li> <li>· 게임, 채팅사이트에 적발과 처벌광고의 게재</li> <li>· 신고시 포상제도 및 파파라치제도 도입</li> <li>· 지역 권역별 단속전담팀 구성</li> </ul>

## 2. 정책 제언

최근 가출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청소년들도 버디버디, 세이클럽 등 채팅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성매매에 무차별적으로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성폭력, 사기, 납치, 변태행위강요 등의 인터넷성매매 피해경험과 사이버공간을 통한 청소년의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 인터넷성매매는 성매매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매매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되고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그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문화기술적 연구, 델파이 조사 및 국내외 정책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사회적, 기술적, 교육·홍보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법 · 제도적 대책

- (1) 긴급통신제한조치(즉, 감청) 근거조항 신설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를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법개정

긴급통신제한조치(즉, 감청)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의한 감청만을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를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제○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청소년 성 매수에 이용되었거나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기통신망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 매수를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정보통신법 제8조, 9조 및 9조의 2를 준용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3조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하 생략)

- (2) 만남사이트 사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와 별칙으로 담보하는 신고제 도입

만남사이트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별칙으로 담보하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만남사이트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어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정의로서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자」에 대해 제2조에서 정의를 내린 후, 청소년보호시책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장의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에 만

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 (정의)

13.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이란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교제를 희망하는 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를 전시하며, 그 전달을 받은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2조의4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자의 신고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정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청소년에 의한 이용 삭제 의무화

청소년에 의한 이용 삭제 의무화가 필요하다. 만남사이트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청소년의 이용은 본래 인정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며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만남사이트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유인행위와 관련된 입력 내용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삭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과 관계되는 입력내용이 신속하게 삭제될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억제력이 발휘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나 이를 위한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정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서 전항의 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전 2항의 신고를 받은 정보통신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해당 사이트에 개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사업의 정지명령 제도와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사업의 정지명령과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정지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를 규제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결격사유(예컨대 청소년, 성범죄 관련 전과자 등)를 둘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4조의2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2조의4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54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관련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3. 연 19세 미만의 청소년
4.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5) 휴대전화 사업자의 필터링 의무화

휴대전화 사업자의 필터링 의무화이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에서 만남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필터링은 청소년의 범죄피해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청소년에 의한 이용방지에도 필터링은 효과적이다. 이에 법률로 휴대전화 사업자에 의한 판매계약이나 기종을 변경할 때에 필터링 서비스의 고지 권장을 피하여 필터링 이용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휴대전화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및 무선전화를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신고 활동단체 지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와 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신고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만남사이트 사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관련된 입력의 존재를 신속히 알려서 삭제의무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1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정보의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7) 채팅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인터넷성매매 단속인원을 보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성매매수남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라는 영장을 사후영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 차원에서 청소년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책임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현재 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있고, 여성청소년계에서도 청소년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여성청소년계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성매매를 단속하는 인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방법도 인터넷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성매수 남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청소년을 만나 구호하고, 그 청소년이 성매매했던 경험이 있는지와 상대남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상대남의 휴대전화번호를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영장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환조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속방법도 매우 제한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구호 및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성매수남을 단속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단속인원을 보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성매수남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라는 영장을 사후 영장으로 바꾼다면,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전세계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성매매를 단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관은 외국사례로, 영국의 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CEOP)를 들 수 있다. 영국의 CEOP와 같은 기관을 우리나라에도 신속하게 도입하여 인터넷 성매매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8) 인터넷성매매 사이버수사대 전담반 설치

성매매청소년에 관한 전담업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여 단속과 처벌은 수사기관과 사법부, 성범죄자 등록 및 관리

는 보건복지가족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과 자활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재범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의 법률, 정책, 예산 등이 따로 수립되어 있어, 개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의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청소년 업무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영국의 총리실 산하에 아동성범죄를 전담하는 CEOP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 <전담기관의 조직 및 전담업무 >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단속 및 효과적인 처벌  
성범죄자들에 대한 추적과 재산의 몰수 등
  - ▷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성범죄자 유전자, 신원정보 등 관리, 인터넷상 열람 업무
  - ▷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피해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
  - ▷ 교육 및 제도개선업무  
재범방지 및 일반인 대상 교육, 인터넷 환경의 개선 등 제도개선

그리고 미국 법무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의 성착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소위 “안전한 어린시절 프로젝트 (Project Safe Childhood)”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연방검찰, 아동대상 인터넷 성범죄 전담반(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ICAC) Task Forces), 연방수사국(FBI), 미국 우편검사국, 이민국, 연방보안관과 같은 정부기관들과, 국립 미아 및 어린이 착취방지센터와 같은 아동권리보호기구, 그리고 주 및 지방검사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 (9) 인터넷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침해행위신고, 학원불법영업신고 등 각종 파파라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귀찮아서 또는 간섭이라고 생각하여 못 본 체



하는 인터넷성매매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시에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인터넷성매매 신고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신고센터를 통한 전화신고, 또는 신고사항입력 및 이메일, 쪽지 등을 통해 인터넷 접속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골적인 인터넷성매매 교섭행위의 근절과 신고의 우려에 대한 불안감 증대 등을 통해 자율적 규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성매매 가담자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인터넷성매매 관련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고 처벌을 감경하여 인터넷성매매를 자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10) 경찰의 단속의지와 전문인력 충원

현재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 대한 실적경쟁으로 청소년성매매보다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보도방, 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성매매는 계속 늘어나지만 단속이 되지 않아 성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방지가 사회적비용의 막대한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청소년성매매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경찰의 업무과중으로 단속이 어려우므로 민간단체의 단속권을 부여하여 조기 적발을 할 필요가 있다.

#### (11) 게임·채팅사이트에 ‘간편 신고창’ 구축 및 적발과 처벌광고 게재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적발시 신고창에 신고하면 즉시 채팅했던 상대매수자와의 채팅내용이 저장되어 사이버수사대에 전송되고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를 하여 즉시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재유입시 강력한 처벌 필요하고, 게임·채팅사이트에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적발과 처벌 광고를 게재하여 인터넷성매매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12) 숙박업소의 투숙객의 신분증 확인절차 강화

모텔, 여관 등 각종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인터넷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가 모텔이므로, 성인들 즉 모텔 주인들이 투숙객의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철저히 막는다면 청소년 성매매를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적 지원 대책

현재 인터넷성매매 청소년 사회적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중심의 지원체계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체계는 소위 ‘쉼터’ 중심의 체계이다. 보건복지가족부산하 청소년쉼터, 여성부산하 청소년지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기관(쉼터)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다. 청소년쉼터 외에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1388전화를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여성부산하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 등이 있으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성매매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는 청소년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쉼터와 상담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지원시설을 이용해야 하나, 현재의 청소년들은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밖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전문기관의 부족이다. 성인 성매매피해 여성의 경우, 본인이 상담을 받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성매매피해 상담소, 일반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우는 청소년지원시설 외에,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성인 성매매피해 여성 상담소를 이용하거나,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전화 1388

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거론한 바와 같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다소 미흡함 감이 있으며, 현재 청소년성매매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또 하나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청소년성매매 현장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이 취약한 청소년들과 남자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보호기관은 드문 편이다. 정신건강이 취약한 청소년들은 시설 내에서도 다른 생활청소년들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관계로 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 일반청소년들과 같이 보호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여자청소년들에 대해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관계로 남자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자원이 전무하여, 청소년성매매 현장에서 또 하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넷째,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성매매노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부족은 청소년성매매 전문가 부족 현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성매매현장에서 성매매노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법률지원까지 가능한 인력은 성인성매매 상담소 인력이 중심이며, 성인성매매상담소 실무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경험보다 성인여성에 대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시설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현재 전국 8개(중앙 1개, 지역센터 7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성매매노출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사례관리를 통한 재유입 예방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성매매 노출 청소년의 수에 비례해 현재의 지원체계는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2)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현실적으로 전문기관 설립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구축된 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여, 기존 기관에 투입이 되게 하거나, 기존 기관의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관련학과 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성교육 과목에 인터넷성매매 예방과 대책에 대해 비중을 두어를 다루거나, 연수과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3) 인터넷성매매 피해청소년 맞춤형지원 확대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인데, 쉼터에 입소한 경우 여러 가지 지원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쉼터 입소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생활공간을 마련하여 생활하고 친구 집을 돌아다니면 생활하는 경우와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찾아가는 서비스로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청소년의 생활공간에 찾아가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적인 치료는 청소년에게는 모든 과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넷성매매의 피해는 단순히 성병, 임신, 낙태 등 산부인과적인 질환 또는 내과적인 질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정서적 불안으로 친구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문신을 몸에 그려 넣기도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가족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기에 심리치료, 정신과치료, 피부과지원 등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지원으로 검정고시 또는 대안학교 입학과 학업지원이 필요하다. 부모님과 단절 또는 생활형편의 어려움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원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자활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넷째, 학업을 지속하기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원지원이 필요하다. 취업지원으로 전문자격을 취득하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성매매가해자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가해가 된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피해를 입었지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섯째, 가출 청소년으로 성에 노출이 되었으나, 아직 성매매피해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예방교육 및 각종 지원을 성매매피해 청소년과 똑같은 지원을 하므로 성매매피해로부터 보호를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일곱째,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 및 남자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 중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들과 남자청소년들이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전체 성매매유입 청소년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미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 더욱이 정신건강 취약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또한 남자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나 보호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 (4) 기존 지원체계의 활성화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체계는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종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체계 안에는 청소년쉼터나 의료기관,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관련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체계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도식 상으로 이 지원체계는 매우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워크가 실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일부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초기 시스템구축의 목적달성

에는 다소 미흡함 감이 있어 기존 지원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 (5) 청소년 인터넷매매 해당부처 산하 기관간의 원활한 연계 및 활성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관계기관의 연계가 소극적이다. 앞으로 기관과의 연계 부분에 있어 상위부서인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상호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각 부처산하에 있는 기관의 실무자(경찰, 검찰, 법원, 사회복지 기관인 1388, 쉼터 등)들에 대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에 관련된 교육과 연계를 의무화, 활성화함으로써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6) 성매매청소년 지원관련 기관 실무자 역할 강화

성폭력의 분야를 살펴볼 때, 상담원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실이 인지되었을 때,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성매매 역시 상담원이 신고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도에 실시 될 청소년의 유인행위 처벌제도에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면,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년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생계형성매매 청소년들의 경우 과연 얼마만큼 신고를 할 지 의문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신고를 할 경우 본인들도 조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혀 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성매매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사이버상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다가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을 마련해야 한다.

#### (7) 재유입 예방교육의 접근성 강화

현재 일반청소년 주 40시간, 정신건강 취약청소년 3주 과정으로 교육 일

정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청소년들은 5박6일이라는 기간 동안 낮선 집단과 같이 합숙으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물론 교육에 참여한 이후에는 매우 만족도가 높고, 재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에 참여하기까지 5박6일, 합숙이라는 교육형태가 청소년들에게 비호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재유입예방 교육은 교육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탈성매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 (8) 인터넷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 강화

청소년성매매가 주로 인터넷채팅을 통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 사이버 수사대, 학부모 정보감시단 같은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건전한 통신문화를 조성해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인터넷성매매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발히 하고, 인터넷성매매 근절 홍보 활동 및 네티즌들의 ON/OFF-LINE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유관기관들이 민간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축적된 피해사례, 예방법 등을 통해 침해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제도 등을 ISP가 마련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 (9) 학교·청소년지원센터·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근로지원 시스템 구축

위기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생계비 마련이며 이것이 여유롭지 않자 성매매 행위로 유입되어 근로행위로 합리화시키는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유입정도가 심할 경우 장래에 정상적 근로행위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근로욕구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시간제 근로지원은 근로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청소년에

제도 순기능이 있다. 학교(위기청소년일 경우는 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근로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자영업자 등 사업자와 근로의욕 청소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를 관리하고, 학교나 지역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근로의욕이 있는 청소년에게 이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근로의욕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에게, 위기청소년이나 실질적인 보호감독자가 없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교사나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사업체나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근로감독을 해주면 될 것이다. 현행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자가 근로를 하려면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자 등의 동의’로 완화하여 보호능력이 없거나 보호의지가 없는 친권자를 대신해 교사나 청소년지원센터가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지지 시스템을 의미한다.

#### (10)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현재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 경찰에 발견된 후 공식적으로 치료, 재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검찰단계에서 검사의 수감명령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성매수청소년에게 조기에 지원하고 종료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단계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견, 지원하는 것이 성매수 남성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주요한 업무로 간주되어 실적에 포함되거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은 발견된 청소년들을 곧바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연결하여 청소년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직원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청소년이 필요한 법적 지원은 물론 교육 및 서비스, 부모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위기교육센터에서는 경찰에서 의해 의뢰된 청소년에게 교육의 목적 및 특성을 알리고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돕고 청소년 및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수수료 후에는 교육 수수료생의 명단을 경찰에 통



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이중 처벌되어서는 안되며 청소년이 자발적이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홍봉선·남미애, 2009).

#### (11) 주거를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협약 및 기술연계프로그램 지원

가출을 했거나 집에 거주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생계를 마련하게 위해 인터넷 성매매에 노출하는 사례가 연구결과에서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이나 재학 중이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식 및 주거를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협약 및 기술연계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의 길거리 청소년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임시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보호를 받고 있는 16~18세의 청소년에게 임시 주거지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지고 이곳에서 임시보호, 사례관리, 재입학지원, 치료서비스(정신건강, 약물남용 등), 감독형 지원(취업대비)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재학 중이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식 및 주거를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협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능력을 갖고 최소한의 감시로도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약물, 성착취, 혼돈의 상황에서 살아온 청소년에게는 성공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기술연계 프로그램(Skills Link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능력 개발과 성공적인 구직 및 유지를 위한 직업체험을 돕기 위해 개별화된 접근법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15세에서 30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 중 블레이드러너(Blade Runner)프로그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전역의 7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대상은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정부보호를 거치거나 아니면 지원이 되는 취업과정에서 건설업 관련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어려운 15세에서 30세까지의 청소년이다. 첫 과정은 다양한 직업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시간 당 최소임금을 받는 과정을 수반하며, 각 프로그램 이수에 맞춰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료 증명서를 제공한다.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훈련, 정서적 지원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기관과 제휴하여 건설노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크(Peak) 프로그램은 남녀 성노동자와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비슷한 수준의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영구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직원은 모두 종전에 성적으로 착취를 당했고 그 자신이 성매매에 관계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이것은 참여자와의 신뢰구축과 유대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침과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운영직원과 피훈련자와의 연대 형성을 하고 있으며 6개월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에는 500달러의 성과급이 지급되며, 첫 석달은 성노동으로 인한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상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후 석달은 청소년의 흥미와 기술에 맞춰 개별화된 보조금 지급형 취업알선과 정기적인 멘토링 서비스가 이루어져 청소년의 탈성매매에 효과는 있었지만 현재는 재정 지원이 끊겨 더 이상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Elizabeth Saewyc, 2009).

### 3) 기술적 대책

#### (1) 인터넷실명제 확대실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실명제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1월 28일 시행당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기존에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일일평균 이용자 10만명으로 기준을 단일화하여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즉 하루 인터넷이용자 10만명 이상의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게시판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본인확인에 그칠 뿐 본인의 이름이 게재되는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명으로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되고 따라서 자율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 인터넷성매매의 경우 흔히 은밀한 교섭이 이루어지므로 10만명 이상의 포털이용자 요건을 굳이 둘 필요가 없고 전체 게시판을 대상으로 이용시 본인의 이름이 게재되는 본래 의미의 인터넷실명제의 실시가 필요하다. 인터넷실명제의 실시방법에 대하여도 모든 게시물에 자신의 실명이 따라다니도록 하고 가명을 표시할 수 있게 한 다음, 가명을 클릭하면 본명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한 대안이다. 완전 실명제를 사용할 경우 함부로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심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실명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완전 실명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완전 실명제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기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교육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2) ISP의 관련유해사이트 자정 노력 및 감시의무 등 책임 강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자정역할의 미미로 인터넷성매매의 확산방지 노력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 미비했다.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인터넷성매매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고 지능화되는 인터넷성매매 관련유해사이트와 거래수단을 효과적으로 색출·제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특성과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공조와 지원체제도 중요하다.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유해 사이트나 콘텐츠에 대한 조기경보 역할과 효율적 조치를 위한 실무적 의견을 지원하는 형태로 관련 정책, 기관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방안으로 첫째, 이용자들이 관련

인터넷 기업들의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이용약관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설정하고, 신고센터 설치 및 불만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둘째, ISP가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이용자의 위법, 일탈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ISP에 보다 적극적인 인터넷성매매 감시인력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넷째, 인터넷성매매 관련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의무화와 감시의무 불이행시 법적 책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ISP ‘사이버윤리척도’ 문항에 인터넷성매매 퇴치 노력을 반드시 삽입할 필요가 있다.

### (3) '거름장치(filter)'의 확대 활용 강화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는 '거름장치(filter)'의 확대 활용을 들 수 있다. 거름장치는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는 검색창에 특정 단어, 이를테면 '야동(야한 동영상)', '조건' 과 같은 단어를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정보검색을 차단하는 장치이다. 인터넷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거름장치를 활용할 경우, 청소년들이 인터넷성매매를 하기위해 성매매를 상징하는 단어를 입력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 성매매 관련 단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에서 이러한 단어를 '실시간으로 점검(monitoring)'하여 차단하면 인터넷성매매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 또한 방지할 수 있다.

일부 포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점검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과 실시간 점검 활동을 강화하거나, 보다 정교한 기술적 장치를 개발한다면 사람에게 의하지 않고서도 실시간 점

검이 가능하다.

#### (4) 채팅사이트에 ID등록시 인증제 실시

버디버디 등 채팅사이트에 ID등록시 인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인증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등록 가능하여 수시로 임의 작성하여 가출사이트 등에서 인터넷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출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 4) 교육 · 홍보 대책

#### (1) 인터넷성매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계도 운동 전개

CEOP 센터는 범죄자를 추적하여 기소하는 일 이외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일은 "Think You Know" 프로그램 ([www.thinkuknow.co.uk](http://www.thinkuknow.co.uk))을 기치로 작년에 시작되었으며,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안전에 대한 교육과 최신 보안조치에 대한 조언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요약하자면 CEOP 센터는 정보반/폐해최소화반/작전반을 총동원하여 아동성착취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즉 성범죄자 선정, 피해자 파악 및 구조, 사이버 보고를 통해 새로운 정보 생성, 교육과 국민계도운동을 통한 향후 성범죄 예방사업이다.

#### (2) 학교에서 실제적인 성교육 강화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체적 성장에 걸맞는 성교육 부재와 인터넷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성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성매매는 성폭력 범죄이며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성병 등을 통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교육과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은 피임방법, 성병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인터넷성매매 시 사전예방을 못해서 건강상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숙지하도록 성주체성 중심의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일본처럼 초등학교 전학년 성교육 정규과목화가 필요하며 성교육 내용 중 인터넷성매매의 위험을 알리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재유입 예방교육 대상의 확대

현재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성매매재유입예방 교육 대상자는 검찰에서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청소년성매매 재유입예방 교육 대상을 검찰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기준으로만 정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이며, 청소년이 원한다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모든 청소년들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에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VI-2> 참조).

<표 VI-2>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세부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	학교	지역사회	시설단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방	교육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시스템 체계화			○			○			○		교육 과학부	보건복지 가족부	
			청소년대상 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		○		○		보건복지 가족부	교육 과학기술부
		청소년 성 주체성 중심의 학교 교육강화	○					○				○		교육 과학기술부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가 양성		○					○					교육 과학기술부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홍보		초등학교 전 학년 성교육의 정규 과목화		○									○	교육 과학기술부	보건복지 가족부
		인터넷 성매매 예방·계도를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					○							방·통신 위원회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 적용 면	기술 적용 면	사회 적응 면	학교	지역 사회	시·도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대국민 인터넷성매매 예방 캠페인 실시	○						○	○	○	○		○	○	방송통신 위원회 여성부 공익광고 협의회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					○					○		여성부 방송통신 위원회
	단속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책임강화	○						○					○		법무부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기술·폭력 피해자의 긴급구조 시스템 마련		○						○				○		여성부 교육과학 기술부
		인터넷 실명제 확대 실시													○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 적용 면	기술 적용 면	사회 적지 원측 면	학교	지역 사회	시·도 단체	중앙 정부		
		현대진화 문자를 통한 성인 신분확인의 무체 강화	○			○							위원회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차단	○				○						방송통신 위원회	보건복지 가족부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위기교육 센터 확대 설치			○								보건복지 위원회	보건복지 가족부
	교육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보호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개입 매 뉴얼 개발		○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재활 교육의 실시		○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치료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성병 및 정신 적 치료의 무상지원	○				○						여성부	보건복지 가족부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치료기관 연계	○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 적용 면	기술 적용 면	사회 적응 면	학교	지역 사회	시·도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3회 이상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여 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실시와 반강제적인 교육과 자활 실시	○			○					○		○	○	법무부 여성부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쉼터지원 확대	○			○									보건복지가 족부
		성매매피해청소년 재유입방지 '청소년 성장캠프' 확대	○					○							여성부
	자활	학교 - 청소년지원센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근로지원 시스템 제도화			○								○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단기보호소 확대설치			○									○	보건복지가 족부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보건복지 가족부 노동부
		단기형 대안학교 구축											○		보건복지 가족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 적용 면	기술 적용 면	사회 적응 원천 면	학교	지역 사회	시·도 실체 단위	중앙 정부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설립		○	○						○	○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두드림프로젝트’ 등의 직업탐색 프로그램 확대지원		○								○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군인, 직장인, 대학생 대상 여성청소년성구매자 예방교육	○								○		여성부	국방부 보건복지가 족부
차별	교육	존스쿨 교육 40시간으로 확대 실시		○									법무부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검찰 경찰청
				○									여성부	여성부 방송통신 위원회 경찰청
	단속	인터넷성매매 사이버수사대 전담반 설치		○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방송통신 위원회 경찰청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 적용 면	기술 적용 면	사회 적응 면	학교	지역 사회	시·도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인터넷성매매 관련 사이트 처벌강화	○			○								방송통신 위원회	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 가족부 법무부
		경찰의 단속의지와 전문인력 충원		○		○								경찰청	법무부
		청소년대상 성매매 기증처벌제도 도입		○		○								법무부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인터넷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사회가 팀으로 구성되어 인터넷 성매매를 감시하고 단속·처벌하는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		○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방송통신 위원회 경찰청 검찰
		여성청소년 신고시 보호제도 구축		○		○								법무부	보건복지 가족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 적층 면	기술 적층 면	사회 적지 원층 면	학교	지역 사회	시·도 단체	중앙 정부		
														경찰청 방송통신 위원회
		성매매유인행위 처벌제도 정착	○			○						○		법무부 여성부 경찰청 방송통신 위원회
		게임, 채팅사이트에 '간편 신고창' 구축	○				○					○		법무부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방송통신 위원회
		성매매유인행위 발견 시 단속기관에 조사를 권유 부여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장의	○											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 적용 면	기술 적용 면	사회 적응 면	학교	지역 사회	시·도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예외인정													가족부 방송통신 위원회
		책임부서의 명시 및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			○					○			○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방송통신 위원회
		각 경찰청에 인터넷성매매 인력을 투입 하여 지속적인 적발	○			○									법무부 경찰청
		ISP(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 임강화 및 유기적 협조	○			○									보건복지 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신상공개제도 활용	○			○									법무부 가족부 여성부
		인터넷상의 성매매 합의를 강제로 열람할	○			○									보건복지 법무부 여성부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정책과제	추진기간별			주요추진방향			정책관련대상					주관부처	관련부처
			단기	중기	장기	법·제도 적용 면	기술 적용 면	사회 적응 면	학교	지역 사회	시·도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수 있도록 단속기관에 강제열람권 부여 게임, 채팅사이트에 적발과 처벌광고의 계제													가족부 여성부 경찰청
				○											보건복지 가족부 방송통신 위원회
		신고시 포상제도 및 파파라치제도 도입													법무부 방송통신 위원회 여성부
					○										법무부 검찰 보건복지 가족부 여성부
		지역 권역별 단속진단팀 구성													







## Ⅶ. 참고문헌



## VII. 참고문헌

- 김경제(2002).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2항의 헌법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 김기태(2007). 한국 미디어교육의 성격 분석 및 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7호, 139-167.
- 남정림(2004).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과 행위자 전략에 관한 성문화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 301-320.
- 노혁(2000). 가출여자청소년의 성상품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학교사회사업 제3호,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 모상현(2009). 2008년 경제위기에서의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86-87.
- 박미숙(2000). 성산업유인청소년의 사회복귀에 관한 법률적 검토, 향락산업에 유입된 10대청소년성문화의 사회복귀방안-제5차 연속토론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박병식(2001). 일본의 청소년 성매매 정책과 프로그램 현황. 성매매청소년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39-59.
- 박병식(2007). 온라인상 청소년성보호 관련 법적규제 도입을 위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박병식(2007b).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행위에 대한 외국의 대응. 인터넷성매매현황파악과 대책마련. 다시함께센터.
- 보건복지가족부(2008a).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1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2008b).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2008c). 청소년성매매 단속 사례집.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청소년백서.
- 성윤숙(1998). 멀티미디어 음란영상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 및 규제 실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윤숙·이춘화·유의선(2008).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엄명용·김미량(2007).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보호 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보화정책, 제14권 제1호, 123-143.
- 유문무(2005). 청소년 성매매 현상의 원인과 대책.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9권 제2호. 163-194.
- 유은주(2005). 성매매 청소년의 체험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3호. 143-163.
- 윤정희(2005). 청소년의 채팅몰입과 원가족 건강성 및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7). 청소년 사이버성매매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제65호. 239-270.
- 이민희(200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9-11.
- 이성식(2004).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건적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 22-45.
- 이세용(2000). 인터넷과 청소년의 성의식. 정보와 사회, 2, 154-183.
- 이용교(2000). 원조교제에 대한연구; 10대 청소년의 원조교제의 실태 . 원조교제의 형태와 규제대책 발표집. 43-59
- 이종성(2006). 델파이방법(연구방법21). 서울: 교육과학사. 1-140.
- 이춘화 외(2007).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춘화·성윤숙·조아미(2008).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한우(1990). 청소년의 음란매체 경험과 성적 충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해경(2002a).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폭력게임 중독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1호. 91-114.
- 이현규(1996). 영상매체가 청소년 성행동에 미치는 실태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조성연·방은령(2002).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실태조사연구 1: e-mail과 채팅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제2호. 101-123.
- 조아미(2001). 성매매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2호, 57-71.
- 조주영·김영희(2004). 영상매체 성매세지와 청소년의 성반응. 대한가정학회지, 42(3), 159-178.
- 청소년보호위원회(2005).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청소년 온라인 채팅과 성적 일탈행위와의 상관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홍봉선(2007).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효과성 검증 및 성과검증. 국가청소년위원회.
- 홍봉선·남미애(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 홍영두(2005). 일상적 전자감시와 정보통신윤리: 프라이버시, 정체성, 익명성. 시대와 철학, 제16권 제2호, 131-153.
- 황진구(200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연구.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271-275.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723(2008.11.4).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742(2008.11.5).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3621(2009.1.22).  
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판결

Armstrong, J. S.(2002). Principles of Forecasting: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New York, Kluwer Academic Publisher." 1-849.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2008). Online child grooming laws.  
High Tech Crime Brief. no. 17.

Barnardos(1998). Whose Daughter Next? Children Abused Through  
Prostitution, Essex: Barnardos.

Benaire M.(1988). Delphi and Delphi-like Approaches with Special  
Regard to Environmental Standard Setting.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3(2): 149-158.

Birdir, K. and Pearson, T. E.(2000). Research Chefs Competencies: a  
Delphi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12(3) 205-209.

Childnet International(2001). Online grooming and UK law; A submission  
by Childnet International to the Home Office.

Cusick, L.(2002). Youth prostitution. A Literature Review Child Abuse  
Review, Vol. 11. 230-251.

Danica Szarvas-Kidd(2006). Electronic Luring Statue Under Fire,  
American Prosecutors Research Institute, Volume 3, Nov.1 at Part I  
of II.

Department of Health(2000). Safeguarding children in prostitution. HMSO:  
London.

Deren, S., Sanchez, J., Shedlin, M., Davis, W.R., Beardsley, M.,  
Des-Jarlais, D., & Farley, M. & Kelly, V.(2000). Prostitution : a

- critical review of the medical and social sciences literature. *Women & Criminal Justice*, 11(4):29-64.
- ECPAT(2006).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outh Korea ECPAT International.
- Elizabeth Saewyc(2009). The Context and Challenges of Employment among Street-Involved Youth in Western Canada.
- Finkelhor, D., & Asdigian, N. L.(1996). Risk factors for youth victimization: beyond a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approach, *Violence and Victims* 11(1), 3-19.
- Finkelhor, D., Mitchell, K. J. and Wolak, J.(2000). Online victimization: A report on the nation's youth. Alexandria, Virginia: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2000, 35.
- Gold, S.(2000). Paedophiles calling a fifth of Internet Kids-Govt Report. From an article by Steve Gold for Newsbytes. 04/12/2000 [www.newsbytes.com/news/00/158922.html](http://www.newsbytes.com/news/00/158922.html)
- Home Office(2004). Paying the price. The stationery office: London.
- Jensen, C. and Anderson, L.(1996). Delphi In-depth. Osborne/McGraw-Hill: 1-811.
- Linstone, H. A. and Turoff, M.(ed).(1975).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Addison-Wesley.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621.
- Mansson, S. A. and Hedlin, U. C.(1998) Breaking the Matthew Effect on women leaving prostit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8. 67-77.
- Melrose, M., Barrett, D. and Brodie, I. (1999) *One Way Street? Retrospectives on Childhood Prostitution*, London: The Children's Society.

- Murry, J. W. and Hammons, J. O.(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436.
- O'Connell-Davidson, J.(1998) *Prostitution, Power and Freedom*, Cambridge: Polity Press.
- O'Neill, M.(1997). *Prostitute Women Now*, in G. Scambler and A. Scambler(eds.) *Rethinking Prostitution: Purchasing Sex in the 1990s*, London: Routledge.
- Pearce, J.J., Galvin, C. and Williams, M.(2000). *Finding Young Women's Voices: Researching with Young Women Exploited Through Prostitution*, Paper One presented at the Social Policy Association 33rd Annual Conference, Roehampton 18th-20th July.
- Phoenix, J.(2002). In the name of prostitution: Youth prostitution policy reforms in England and Wales. *Critical Social Policy*, 22, pp. 353-375.
- Riggs, W.(1983). The Delphi Technique: An Experimental Evalu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23(1): 89-94.
- Rowe, G. and Wright, G.(1999). The Delphi Technique as a Forecasting Tool: Issues and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15(4): 353-375.
- Rowe, G., and Wright, G. and Bolger, F.(1991). Delphi: A reevaluation of research and Theor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9(4): 235-251.
- Scamber, G. & Scambler, A. (1995). Social change and health promotion among women sex workers in London.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0(1): 17-24.
- Scott, S. & Harper, Z.(2006). Meeting the needs of sexually exploited young people: The challenge of conducting policy-relevant research.



- Child Abuse Review, 15, pp. 313-325.
- Spangenberg, M.(2001). Prostituted youth in New York City. ECPAT-USA.
- Teich, A., Frnkel, M.S., Kling, R., and Lee, Y.(1999). Anonymous communication policies for the Internet: Results and recommendations of civil liberties. SIGKDD Explorations, Vol. 4, 1-5.
- Tillmam, T. S.(1989). A Delphi Study to Identify Fundamental Competency Areas for Certification Testing of Manufacturing Technologists and Entry-Level Manufacturing Engineers“, Purdue University, W. Lafayette, 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1-210.
- Webler, T., Levine, D., Rakel, H. and Renn, O.(1991). A Novel Approach to Reducing Uncertainty: The Group Delphi.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9(4): 253-263.
- Weiner, A.(1996). Understanding the Social Needs of Adolescent Prostitutes. Social Needs of Streetwalking Prostitutes. Social Work 41(1): 97-105.
- Wolak, J., Mitchell, K. J. and Finkelhor, D.(2006). Online victimization of youth: Five years later. Alexandria, Virginia.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vii.
- Woudenberg, F.(1991). An Evaluation of Delphi.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40(2): 131-150.
- Yuxiang, C., Donghua, Z. and chaggeng, L.(1990). Applications of the Delphi Method in China.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8(4): 293-305.
- <http://www.spo.go.kr> (대검찰청)
- <http://www.117.go.kr> (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 <http://www.jikimi.or.kr>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http://www.stop.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magazine.joins.com/economist/article\\_view.asp?aid=243562](http://magazine.joins.com/economist/article_view.asp?aid=243562)(이코노미스트 783호 2005.04.11)

[www.ncmec.org](http://www.ncmec.org)(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s Website)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west\\_midlands/7317595.stm](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west_midlands/7317595.stm)(BBC . 2008.3.27)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tyne/7912485.stm](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tyne/7912485.stm)(BBC. 2009.2.26).

<http://www.stern.de/panorama/cyber-grooming-im-chat-gefaehrliche-anmache-im-internet-648531.html> (2008.12.13 기사)

[http://www.carechild.de/news/politik/kampf\\_gegen\\_sexuelle\\_ausbeutung\\_von\\_kindern\\_und\\_kinderpornographie\\_555\\_120.html](http://www.carechild.de/news/politik/kampf_gegen_sexuelle_ausbeutung_von_kindern_und_kinderpornographie_555_120.html) (2009.2.4 기사)

<http://www.webnews.de/kommentare/471847/0/Stars-und-Sex--was-Kinder-im-Internet-suchen.html> (2009.8.13 기사)

<http://www.kjm-online.de/public/>

<http://www.kurzreporter.de/internetportale-wollen-mehr-sicherheit-cyber-grooming-soll-unterbunden-werden/>

<http://www.acf.hhs.gov/programs/cse/newhire/>

<http://www.heute.de/ZDFheute/inhalt/11/0,3672,7514635,00.html>

<http://www.archive.org>

<http://www.futurezone.orf.at>

<http://www.bundespruefstelle.de>

<http://www.inhope.net>

<http://www.inach.org>

<http://www.yprt.de>

## 부 록

1.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2.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3. 독일의 형법
4.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
5.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6. 1차 델파이 설문지
7. 2차 델파이 설문지



# 부록 1.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제4관 점포형 전화 이성소개영업의 규제

제31조의12(영업 등의 신고)

① 점포형 전화 이성소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2조 제9항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식별하기 위한 전화번호
4. 여업소의 구조 및 설비(제2조 제9항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의 개요
5. 영업소의 업무 실시를 통괄 관리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27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 중 '동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는 '제31조의12 제1항 각호'로, 동조 제3항 중 '전 2항'은 '제31조의12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전항'으로, 동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은 '제31조의12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항'으로, 동항 단서 중 '제28조 제1항'은 '제31조의13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 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13(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의 금지구역 등)

① 제28조 제1항부터 제10항의 규정은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 및 제7항 중 '제27조 제1항'은 '제31조의12 제1항'으로, 동조 제5항 중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그'는 '그'로, 동조 제8항 중 '전조 및 제5항'은 '제31조의13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5항'으로, 동조 제9항 중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출입해서는 안된

다는 취지 및 18세 미만의 자가 제31조의12 제1항 제3호의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한다.

②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영업에 관한 호객행위
2. 당해 영업에 관해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신변을 막거나 주위를 맴도는 행위
3. 영업소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고객으로 접하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4. 18세 미만의 종업원을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회를 제공하는 대화의 당사자로 하는 행위
5. 18세 미만의 자를 영업소에 고객으로 출입하게 하는 행위
6. 영업소에서 20세 미만의 자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제공하는 행위
7. 18세 미만의 자로부터 제2조 제9항에 규정하는 대화의 신청을 연결하는 행위

③ 점포형 전화이성 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2조 제9항에 규정하는 대화 신청을 한 자가 18세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 두어야 한다.

제31조의14(지시) 공안위원회는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 혹은 조례의 규정(전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전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조례 규정을 제외한다)에 위반하는 때에는, 당해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 혹은 청정한 풍속환경을 해하는 행위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15(영업의 정지 등)

① 공안위원회는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이 법률에 규정하는 죄(제49조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제외한다) 혹은 제4조 제1항 ㄱ에서 ㄴ까지, ㄷ, ㄹ 혹은 ㄱ의 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끼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률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에 관하여 8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당해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공안위원회는 전항의 경우에 당해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1조의 13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제31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조례 규정에 의해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해서는 안되는 구역 또는 지역에서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대신에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의16(표장의 부착)

- ① 공안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명령 관계시설 출입구의 보이기 쉬운 곳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양식의 표장을 부착한다.
- ②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의 1이 있는 때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해 표장이 첨부된 시설에 대하여 표장을 제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안위원회는 표장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을 당해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용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
  2. 당해 시설을 부수하고자 하는 때
  3. 당해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표장이 부착된 시설에 대하여 당해 명령 관계 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을 매수한 자 기타 당해 시설의 사용에 대해 권원을 가진 제3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장을 제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안위원회는 표장을 제거하여야 한다.
- ④ 누구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착된 표장을 파괴하거나 오손해서는 아니

되며, 당해 시설 관계 전조 제1항의 명령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 제5관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의 규제

제31조의17(영업 등의 신고)

- ①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당해 영업에 대해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호칭(당해 호칭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호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식별하기 위한 전화번호
  5.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개요
- ② 제31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4항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 중 '동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는 '제31조의17 제1항 각호'로, 동조 제3항 중 '전 2항'은 '제31조의17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전항'으로, 동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은 '제31조의17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18(가두에서의 광고 및 선전의 규제)

- ① 제28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의 규정은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5항 중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그'는 '그'로, 동항 제1호 口 중 '제2항'은 '제31조의13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항'으로, 동조 제7항 중 '제5항 제1호'는 '제31조의18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5항 제1호'로, '제27조 제1항'은 '제31조의17 제1항'으로, 동조 제8항 중 '전조 및 제5항'은 '제31조의18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5항'으로, 동조 제9항 중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는 '제31조의17 제1항 제4호의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로 한다.
- ②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8세 미만의 종업원을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그 기회를 제공



하는 대화의 당사자로 하는 행위

2. 18세 미만의 자로부터의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대화의 신청을 연결시키거나, 동항에 규정하는 대화의 신청을 18세 미만의 자에게 연결시키는 행위

- ③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대화의 신청을 한 자 및 동항에 규정하는 대화의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가 18세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 두어야 한다.

제31조의19(지시 등)

- ①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 혹은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행해진 때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는 당해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 혹은 청정한 환경을 해하는 행위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전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가 행해진 때의 사무소를 알지 못하고, 또 당해 위반행위가 벽보 또는 입간판을 전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호 1의 구역에서 표시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행해진 장소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는 당해 위반행위 관련 벽보 또는 입간판을 경찰직원으로 하여금 제거시킬 수 있다.

제31조의20(영업의 정지)

- ①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그 대리인 등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이 법률에 규정하는 죄 혹은 제4조 제1항 제2호 ㄱ에서 ㄷ, ㄱ, ㄷ, ㄹ 혹은 ㄱ의 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끼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률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행위 또는 당해 위반행위가 행해진 때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는 당해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8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의21(처분이송통지서의 송부 등)

- ① 공안위원회는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31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무소를 다른 공안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 변경한 때에는 당해 처분 관계사업에 관한 변명기회 부여 또는 청문을 종료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현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처분이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이송통지서가 송부된 때에는 당해 처분이송통지서의 송부를 받은 공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처분이송통지서를 송부한 공안위원회는 제31조의19 제1항 및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안에 대해 이들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1. 당해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 혹은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선량한 풍속 또는 청정한 풍속환경을 해하는 행위 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2. 당해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그 대리인 등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이 법률에 규정하는 죄 혹은 제3조 제1항 제2호 ㄱ에서 ㄷ, ㄷ, ㄹ 혹은 ㄱ의 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 혹은 전조의 정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당해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률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8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 ③ 제1항의 규정은 공안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 부록 2.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공포: 2003년 6월 13일 법률 제83호

시행: 2003년 9월 13일(부칙 제1조 단서는 2003년 12월 1일)

<목차>

-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제2장 아동관계 유인의 규제(제6조)
- 제3장 아동에 의한 이용의 방지(제7조~제10조)
- 제4장 잡칙(제11조~제14조)
- 제5장 벌칙(제15조~제18조)
- 부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과 아울러,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에 기인하는 아동매춘(買春) 기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그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인터넷 이성소개사업 : 이성교제(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교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희망하는 자(이하 「이성교제 희망자」라 한다)의 요구에 응하여 그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 가능한 상

태로 두어 이를 전달하고, 동시에 당해 정보의 전달을 받은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 메일 기타 전기통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당해 정보와 관계되는 이성교제 희망자와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 :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 등의 책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 및 그가 행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배려하고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 방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는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 방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깊이하기 위한 교육 및 계몽에 노력하고,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방지에 기여하는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국민 또는 이들 자가 조직하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 관련활동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제2장 아동 관계 유인의 규제

제6조 누구도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성교 등(성교 혹은 성교유사행위를 하거나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성기 등(성기, 항문 또는 유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만지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2. 사람(아동을 제외한다)을 아동과의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대가를 공여할 것을 나타내고 아동을 이성교제(성교 등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대가를 받을 것을 나타내고 사람을 아동과의 이성교제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제3장 아동에 의한 이용의 방지

제7조(이용 금지의 명시 등) ①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그가 행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 대해 광고 또는 선전을 할 때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이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 외에,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행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이 이것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뜻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의 확인)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들 이성교제 희망자가 아동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는 이성교제 희망자가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성명, 연령 기타 본인을 특정하는 사항의 확인(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에 국한한다)을 받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성교제 희망자의 요구에 응하여 그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 가능한 상태에 두고 공중에 전달할 때
2.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의 요구에 응하여 전호에 규정하는 이성교제 희망자로부터의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 가능한 상태에 두어 당해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에게 전달할 때
3. 전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성교제에 고나한 정보의 전달을 받은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 메일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당해 정보와 관계되는 제1호에 규정한 이성교제 희망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때
4. 제1호에 규정하는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그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의 전달을 받은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때

제9조(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조치)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자는 그가 행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제6호 각 호의 행위 기타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명령)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이하 「공안위원회」라 한다)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1조(보고의 징수) 공안위원회는 제7조, 제8조 및 전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행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방면공안위원회에의 권한 위임) 전 2조에 규정하는 도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면공안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경과조치) 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령 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을 제정하거나 폐폐하는 경우에는 각각 정령 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그 제정 또는 폐폐에 수반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정의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절차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벌칙

제15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 또는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토) 정부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의 시행 후 3년을 경과한 경우에 이들 규정의 시행상황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소정의 조치를 강구한다.

###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2001년 10월 6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5호

제1조(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개시 신고) ①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기양식 제1호의 사업개시신고서(이하 「개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이하 「공안위원회」라 한다)에 개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본거가 되는 사무소(사무소가 없는 자는 주거. 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1통의 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7조 제1항의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서류
    - 가. 주민표의 사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원표의 사본)
    - 나. 법 제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 다.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피후견인이라고 간주되는 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좌인으로 간주되는 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준금치산자 또는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의 시읍면장의 증명서
    - 라.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혼인에 의해 성년에 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과 당해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2.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서류
    - 가.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 나. 임원에 관한 전호 가 및 다의 서류
      - 다. 임원에 관한 법 제8조 제6호 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3.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 가능한 상태에 두어 이를 전달하기 위한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권한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4.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방법이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방법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업무의 위탁을 받는 자에 관한 다음 서류
    - 가. 당해 위탁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서류
      - (1) 제1호 가 및 다의 서류
      - (2) 제5조 제2항 제1호 가에서 호까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 (3) 제5조 제2항제1호 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나. 당해 위탁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서류
      - (1)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
      - (2) 제5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자에 관한 1(1)에서 (3)까지의 서류
- ④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연락처는 다음



과 같다.

1. 사무소의 전화번호

2. 사무소의 전자메일 주소

⑤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성교제 희망자가 아동이 아니라는 확인 실시의 방법

2. 전호에 규정하는 방법이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방법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업무의 위탁을 받는 자에 관한 다음 서류

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나. 법인에 있어서는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제5조 제1항 쉼호에 규정하는 업무의 실시방법

3. 제3항 제3호의 송신원 식별부호

제2조(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폐지등 신고)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여 행한다.

1.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폐지한 경우 별기양식 제2호의 사업폐지신고서(이하 「폐지신고서」라 한다)

2.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기양식 제3호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폐지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폐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1통의 폐지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 제3항의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신고는 전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 중에 당해 변경신고와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아동에 의한 이용금지의 명시방법)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아동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광고 또는 선전을 문자, 도형 혹은 기호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에 의해 행

하는 경우(다음 경우를 제외한다) 아동이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문언을 공중이 보기 쉽게 표시할 것

2. 광고 또는 선전을 전자메일에 의해 행하는 경우(당해 전자메일의 송신을 하는 자(이하 「송신자」라 한다)가 미리 그 송신을 하도록 요구하는 취지 또는 송신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뜻을 송신자에게 통지한 자(당해 통지 후 그 송신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취지를 송신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전자메일의 수신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통신단말기기의 영상면에서 당해 전자메일 관계 표제부에 아동이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문언이 표시되거나 「18禁」이라고 표시되도록 할 것
3. 광고 또는 선전을 음성으로 행하는 경우, 아동이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공중이 알기 쉽게 음성으로 고할 것

제4조(아동에 의한 이용금지의 전달방법)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아동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하는 방법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아동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을 때에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통신단말기기의 영상면에 아동이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문언이 보기 쉽게 표시되도록 한다.

제5조(아동이 아님의 확인 방법) ① 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성교제 희망자가 아동이 아니라는 것의 확인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1. 이성교제 희망자로부터 그 운전면허증,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기타 당해 이성교제 희망자의 연령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의 당해 이성교제 희망자의 연령 또는 생년월일, 당해 서면의 명칭 및 당해 서면을 발행하거나 발급한 자의 명칭과 관계되는 부분의 제시, 당해 부분의 사본의 송부 또는 당해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의 화상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신을 받을 것
2. 이성교제 희망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기타 아동이 통상 이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금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을 것
3. 미리 전 2호의 방법에 의해 아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이성교제 희망자

에게 식별부호(부정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여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송신을 받을 것

4.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아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식별부호를 붙이는 업무(이하 「식별부호 부여업무」라고 한다)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성교제 희망자로부터 송신을 받은 식별부호에 대하여 당해 위탁을 받은 자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가 붙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

② 전항 제4호의 식별부호 부여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성년피후견인 혹은 피보좌인 또는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하여 그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다.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라. 알코올, 마약, 대마, 아편 또는 각성제의 중독자

마. 법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당해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처분과 관계되는 변명기회의 부여통지가 이루어진 날 전 60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처분일부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바. 법인에서 그 임원 또는 식별부호 부여업무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직원 혹은 사용자 기타 종업원 중에 가에서 마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 이성교제 희망자가 아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기타 식별부호 부여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있고, 식별부호 부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규정을 준수한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3.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자와의 위탁과 관계되는 계약에서 전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밝히고 있는 자일 것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제공 서비스의 제공을 받지 않는 이성교제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당해 이성교제 희망자가 아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1. 이성교제 희망자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연령 또는 생년월일을 송신하도록 요구하고, 당해 연령 또는 생년월일에 의해 당해 이성교제 희망자가 아동이 아님을 확인할 것

2. 이성교제 희망자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동이 아닌지 여부를 묻고, 그 응답에 따라 당해 이성교제 희망자가 아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것

④ 전항에 규정하는 「특정정보 제공서비스」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이성교제 희망자의 요구에 응하여 다음 정보(이하 「특정정보」라 한다)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를 전달하는 서비스

가. 이성교제 희망자와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가 만나기 위해 지정한 일시 및 장소 관련 정보

나.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기타 연락처와 관계되는 정보

2. 이성교제 희망자의 요구에 응하여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로부터의 특정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그 요구와 관련된 이성교제 희망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3.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에게 특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6조(본인을 특정하는 사항의 확인방법) ① 법 제11조 단서의 국가공안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은 이성교제 희망자로부터 운전면허증,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기타 당해 이성교제 희망자의 주소·성명 및 연령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시를 받고 그 주소, 성명 및 연령을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족하다.

1. 이성교제 희망자의 성명을 명의인의 성명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요금지불을 받는 경우: 당해 이성교제 희망자로부터 주소, 성명, 연령 또는 생년월일 및 당해 신용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의 제출을 받음

과 아울러, 당해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신용카드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것

2. 이성교제 희망자의 성명을 명의인의 성명으로 하는 예저금계좌로부터 이체의 방법에 의해 요금의 지불을 받는 경우: 당해 이성교제 희망자로부터 주소, 성명, 연령 또는 생년월일 및 계좌번호 기타 당해 계좌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제출을 받음과 아울러, 당해 계좌와 관계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계좌가 실제로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② 법 제11조 단서에 규정하는 본인을 특정하는 사항의 확인방법은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자가 전항의 확인을 받은 이성교제 희망자에 대하여 식별부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성교제 희망자로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식별부호의 송신을 받는 것으로 족하다.

제7조(제시의 방법) 법 제13조 및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지시는, 별기 약식 제4호의 지시서에 의해 행한다.

제8조(정지명령 등의 방법) 법 제14조 및 제1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명령은 별기양식 제5호의 명령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9조(처분이송 통지서의 양식) 법 제15조 제1항(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처분이송통지서의 양식은 별기양식 제6로 한다.

제10조(보고 등의 요구)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은 별기양식 제7호의 보고 등 요구서에 의해 구한다.

제11조(국가공안위원회에의 보고사항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표의 상란에 든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 동표의 하란에 든 사항으로 한다.

보고해야 하는 경우	보고 사항
1.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1.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신고 수리 연월일 3. 신고수리 번호 4.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연월일
2.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1.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관계 신고수리번호

	3.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연월일 및 폐지의 사유 4.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계되는 변경연월일, 변경사항 및 변경의 사유
3. 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	1.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계되는 신고 수리번호 3. 처분 연월일 4. 처분번호 5. 처분의 사유 6. 처분의 종류 및 내용

② 법 제17조 제2항의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계되는 신고 수리번호
3. 당해 위반행위를 하거나 당해 처분에 위반한 자에 관한 사항
4. 당해 위반행위를 하거나 당해 처분에 위반한 연월일
5. 당해 위반행위 또는 당해 처분에 위반한 행위의 내용

제12조(등록의 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등록(이하 단지 「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기양식 제8호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공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제1조 제3항 제1호 가의 서류
2.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서류
  - 가.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
  - 나. 임원과 관계되는 제1조 제3항 제1호 가의 서류
3. 법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4. 법 제18조 제4항 제2호 가에 규정하는 전임 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한 서류
5. 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나에 규정하는 문서로서 다음 서류
  - 가. 유인정보 제공의무의 적정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
  - 나. 유인정보 제공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 다. 유인정보 제공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의 누설방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 문서

라. 기타 유인정보 제공업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6.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서약하는 서면

7.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유인정보 제공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3조(등록유인정보 제공기관과 관계되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기양식 제9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제14조(유인정보 제공의무의 실시기준) 법 제21조의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인정보 제공업무에 사용하는 통신단말기의 성능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당해 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법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시 유인정보 제공업무에 종사할 것

3. 유인정보 제공업무가 전임 관리자에 의한 관리하에서 행해질 것

4. 제12조 제5호의 문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유인정보 제공업무를 실시할 것

5.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금지유인행위와 관계되는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당해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일시 및 당해 금지유인행위와 관계되는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그 송신원 식별번호의 기록을 작성하고 그 작성일로부터 1년간 보존할 것

6. 유인정보 제공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인정보 제공업무용으로 제공하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말 것

제15조(등록유인정보 제공기관과 관계되는 업무의 휴폐지의 신고)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기양식 제10호의 유인정보 제공업무 휴폐지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개선명령의 방법) 법 제24조에 규정하는 명령은 별기양식 제11호의 개선명령서에 의해 행한다.

제17조(등록취소의 통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별기양식 제12호의 등록취소통지서에 의해 당해 등록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다.

제18조(보고 등의 요구) 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은 별기양식 제13호의 보고 등요구서에 의해 요구한다.

제19조(유인정보 제공업무의 실시와 관계되는 보고) 등록유인정보 제공기관은 3개월마다 그 기간 안에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에게 제공한 금지유인행위와 관계되는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의 건수 기타 유인정보 제공업무의 실시 상황을 지체 없이 국가공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록 3. 독일의 형법

#### 제173조(근친상간)

- (1) 혈연관계에 있는 비속과 성교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직계존속과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친족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상간한 친형제자매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 (3) 행위 당시 18세에 일지 아니한 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 조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 제174조(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남용)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피 보호자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교육, 직업교육, 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된 16세 미만자
  2. 교육, 직업교육, 보호·업무·교육관계로 인한 종속성을 남용하여 교육, 직업교육, 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되거나 업무 또는 고용관계에 속하는 18세 미만자
  3. 18세 이르지 않은 친자 또는 양자
- (2) 전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건하에서 자기 또는 피보호자를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피보호자 앞에서 성적 행동을 하는 행위
  2.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행위
- (3) 미수범은 처벌한다.
- (4) 제1항 제1호의 경우 또는 이와 관련 된 제2항의 경우에서 법원은 피보호자의 행동을 고려할 때 그 불법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74a조(피구금자, 관청에 감호된 자, 시설 내 피치료자와 요부조자에 대한 성적 남용)

- (1) 교육, 직업교육, 감독 또는 보호를 위하여 위탁된 피구금자 또는 피감호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피구금자 또는 피감호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2) 치료 또는 도움을 요하는 사람을 위한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감독 또는 보호를 위하여 위탁된 자에 대하여 질병 또는 긴급구호 상태를 악용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함으로서 그들을 성적으로 남용한 자도 전 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 (3)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4b조(공무원 지위를 악용한 성적 남용)

- (1) 형사소송절차 또는 자유박탈적인 보아처분의 선고절차, 관청의 감호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그 절차의 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2)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6조(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

- (1) 14세 미만자(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2) 아동을 교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제3자의 성적 행동을 용인·유발하도록 하게 한 자도 전 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 (3)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한 자<sup>99)</sup>
  2.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

3. 행위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또는 그들 앞에서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행위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자
4. 음란도화나 음란표현물의 게시, 음란한 내용의 테이프의 상연 또는 그에 준하는 대화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자
- (5)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행동을 아동에게 제안하거나 또는 알선을 약속한 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한 행동을 약속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6)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는 제4항 제3호 및 제4호, 제5항에 의한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6a조(아동에 대한 중한 성적 남용)

- (1)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은 행위자가 지난 5년 사이에 그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경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2)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은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18세 이상인 자가 아동과 성교하거나 또는 신체침해와 관련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
  2. 다수에 의해 공동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3. 행위자가 아동에게 범죄를 통하여 중대한 건강상의 훼손위험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성장에 현저한 훼손을 가져 온 경우
- (3) 제17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176조 제6항의 경우에서 정범 또는 다른 공범으로써 고의로 제184b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유포 될 음란문서의 대상물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4) 제1항의 중하지 않은 경우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제2항의 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5) 제17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중한 남용을 하거나 또는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6) 제1항의 기간에 행위자가 당국의 신고로 시설에 감호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판결받은 행위는 독일 형법에 따라 제1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행위라면 제1항의 경우에서 국내에서 판결받은 행위와 동등하다.

제176b조(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에 의한 처사)

행위자가 성적 남용(제176 및 제176a조)을 통해 중과실로 아동의 죽음을 야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77조(성적 강요, 강간)

(1) 타인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성적 행동을 참도록 하거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도록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강요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폭행

2. 신체 또는 생명의 현재의 위험에 대한 협박

3. 피해자가 무방비상태로 행위자의 영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의 악용

(2) 특히 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중한 경우로 본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함께 성교하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수치스러운, 특히 신체침해와 관련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강간)

2. 다수에 의해 공동으로 범죄가 행해지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무기 또는 다른 위험한 물건을 지닌 자

2. 폭행 또는 폭력을 고지한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반항을 폭력으로 저해하거나 극복하기 위하여 그 밖의 물건 또는 도구를 지닌 자

3.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중한 건강상 훼손의 위험에 빠뜨린 자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행위 중에 무기 또는 다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자

2. 피해자를 행위 중에 신체적으로 중하게 빠뜨린 자 또는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에 빠뜨린 자

(5) 제1항의 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3항과 제4항의 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78조(성적 강요 및 강간치사)

행위자가 성적 강요 및 강간을 통해 중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79조(항거불능자에 대한 성적 남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타인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남용하여 타인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중독과 관련된 장애 또는 심한 의식장애로 항거불능인 자

2.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

(2) 항거불능 상태의 남용하에 제3자에 대하여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를 남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3)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4) 미수범은 처벌한다.

(5)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성교하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침해와 관련된 (강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

2. 다수에 의해 공동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3.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 중한 건강상의 훼손위험 또는 신체적·정신적인 발전에 현저한 훼손을 야기한 경우

(6) 제5항의 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7) 제177조 제4항 제2호 및 제178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80조(미성년자의 성적 행위 조장)

(1)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 앞에서 16세 미만자의 성적 행위 또는 제3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 조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중개

2. 보증 또는 기회마련

제1항 제2호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권리가 있는 자가 행위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않는다. 보호할 권리가 있는 자가 성적 행위의 조장을 통해 교육의무를 상당히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18세 미민자가 대가를 받고 제3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개를 통해 그러한 행위를 조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 교육, 직업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생활을 위탁하고 있거나 또는 임무 또는 노동관계의 범위 내에서 따르고 있는 18세 미민자를 교육관계·직업교육관계·임무관계·노동관계와 관련하여 종속되어 있는 것을 남용하여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또는 제3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0a조(매춘자 착취)

(1) 매춘자를 종사시켜 개인적 또는 경제적인 종속안에서 매춘행위를 시키는 기업을 영업적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이끈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1. 18세 미민자에게 매춘실행을 위하여 주거, 영업적인 숙소 또는 거소를 제공한 자

2. 매춘실행을 위하여 주거를 제공한 타인에 대하여 매춘을 독려하거나 매춘과 관련하여 착취한 자

제181a조(음행매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일회성을 넘어서

는 관계를 유지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윤락행위를 하는 타인을 착취하는 행위
  2. 영리를 위하여 매춘의 실행 시 타인을 감독하거나 매춘실행의 장소, 시간, 정도 또는 기타 상황을 정하거나 또는 매춘의 중지를 방해하는 처분을 하는 행위
- (2) 성교의 알선을 통해 영업적으로 타인의 매춘행위를 조장하고 그와 관련하여 일회성을 넘어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타인의 개인적 또는 경제적 독립성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된 행위 또는 제2항에 언급된 조장행위를 배우자에게 시도한 자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처벌된다.

#### 제182조(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

- (1)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남용을 한 18세 이상의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강제(궤박)상태를 악용하거나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2. 강제상태를 악용하여 16세 미만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자에 대해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 (2)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남용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음을 악용한 21세 이상인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2. 16세 미만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 (3) 제2항의 경우에서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확정되지 않는 한, 행위는 고소가 있

어야만 소추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서 법원은 행위대상의 태도를 고려하여 행위의 불법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83조(음부노출행위)

- (1) 음부노출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남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당해행위는 형사소추기고나 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확정하지 않는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 (3) 법원은 행위자가 장기 치료행위로 인해 노출행위를 더 이상 하지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행장감독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4)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해 음부노출행위로 인해 남자 또는 여자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 (법정형의) 상한을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하고 있는 기타 규정

2. 제17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 176조 제3항 제1호

제183a조(공연음란) 공연히 성적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공분을 야기시킨 자는 그 행위가 제 183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제184조(음란문서배포)

- (1) 음란문서(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 또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2. 18세 미만자가 접근하거나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또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영업장소 외에서의 소매로, 매점 또는 고객의 출입이 잦지 아니한 기타의 판매소에서, 통신판매에 의하여 또는 영업적 도서대여점이나 독서회에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여하는 행위



3a. 18세 미만자의 출입 또는 그 열람이 불가능한 점포를 제외한 영업적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적 사용보장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여하는 행위

4.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반입을 기도하는 행위

5. 18세 미만자가 출입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또는 해당 상점과의 영업거래 외에서의 문서의 반포를 통하여 양여, 광고, 선전하는 행위

6. 타인의 요청 없이 이를 타인에게 송부하는 행위

7. 그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상영을 조건으로 한 대가를 받고 필름을 공개상영하는 행위

8. 음란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1호 내지 제7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또는 수입하는 행위

9. 해당 국가의 형법법규에 위반하여 음란문서 또는 이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국외에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수출하는 행위

(2) 사람을 보호할 권한이 있는 자가 행위한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보호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제공, 양여 또는 접근하게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교육의무를 상당히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업적 대여거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1항 제3a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내지

(7) (삭제)

제184a조(동물음란물의 반포) 폭력성 또는 동물과의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배포하는 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또는 기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제184b조(아동음란물의 배포, 취득 및 소유) (1)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제176조 내지 제176조b)을 내용으로 하는(아동음란물) 음란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배포하는 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또는 기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 (2) 타인에 대하여 실제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아동음란물을 소유하도록 기도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된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당해 범죄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고 아동음란물이 실제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4) 자신이 실제로 또는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아동음란물을 소유하도록 기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문에 언급된 문서를 소유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 (5) 제2항 및 제4항은 적법한 업무·직업적 의무의 이행에 공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6) 제3항의 경우에 제73조d는 준용된다.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물은 몰수된다. 제74조a는 준용된다.

제184c조(라디오, 미디어, 전신업무를 통한 음란공연의 배포) 음란공연을 라디오, 미디어업무 또는 전신업무를 통해 배포한 자는 제184조 내지 제184조에 의해 처벌된다. 제184조 제1항의 경우 제1문은 음란상영이 기술적 또는 기타 방지책을 통해 18세 미만자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미디어 또는 전신업무를 통한 배포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99) 웹캠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한자를 동 법 조항에 의해 독일 연방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BGH 2009.4.21 선고).

## 부록 4.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

사 례	성매매 나이	성매매 연령	첫 성관계 나이	성매매 계기	가출 경험	성폭행 경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횟수	성매매 용어	성매매피해 경험	탈 성매매 도움
1	16세	유	16세	가출, 호기심	유	무	버디버디	3회	무응답	협박	심리적 변화
2	14세	유	14세 (남자친구)	가출	유	유	버디버디	200-250회	즈즈	남치, 변태행위, 성폭행, 폭행	건강악화
3	15세	유	15세 (이눈오빠)	용돈	유	무	버디버디	셀수없음 (2500만원)	즈즈	사기, 성병, 변태 행위, 폭행	친구, 가족
4	16세	유	16세	PC방비	유	무	버디버디 playlove	15회	무응답	없음	집으로 복귀 (필요한 것이 없어짐)
5	18세	유	16세	숙박해결	유	무	버디버디	20회	없음	변태행위,	건강악화, 열심 히 사는 사람을 보고
6	14세	유	13세	무응답	유	유	세이클럽	200회	즈즈,오르	무응답	쉘터
7	15세	유	15세 (남자친구)	가출	유	무	버디버디	100-200회	즈즈, 1시간10, 지역이름	폭행	꿈이 생김
8	17세	무	17세	가출 (생활비)	유	무	헬프몬	10회	비긴, 일	없음	쉘터
9	15세	무	15세	가출	유	무	버디버디	7회	없음	성관계강요 (키스 알바)	건강악화

사례	사 첫 성매매 나이	성매매 전 성경험	첫 성관계 나이	성매매 계기	가출 경험	성폭행 경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횟수	성매매 용어	성매매피해 경험	탈 성매매 도움
10	17세	유	17세 (남자친구)	용돈	무	무	셰이크클럽	3회	오르, 입사, 열사	돈 적게 받음	부모님
11	16세	유	15세 (선배)	가출	유	유	버디버디	1회	심심한데 놀아 줄 사람	없음	택시기사
12	15세	유	14세 (선배)	친구권유	유	유	버디버디	5회	즈기	돈 받지 못함	남자친구
13	17세	유	17세	가출 (친구들과 함께) 돈 벌고 싶어	유	무	버디버디	30-40회	없음	돈 받지 못함	버디를 안함
14	16세	유	13세	서(웃, 머리, 화장품)	유	유	버디버디	40-50회	없음	성병	주위사람, 용기
15	17세	유	15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	무	대행친구 플레이메이트 오렌지메이트	15-20회	없음	돈 적게 받음, 변태행위, 성병	남자친구
16	16세	유	16세	가출	유	무	버디버디 셰이크클럽	3회	즈기, 알바	성병	부모님
17	15세	유	14세 (이논오빠)	친구강요	무	무	버디버디	20회	지역이름	돈 받지 못함	엄마
18	16세	무	16세	가출	유	무	버디버디	7-8회	조건, 만남	돈 받지 못함, 폭행	무응답
19	17세	무	17세	친구강요	유	유	버디버디	100회 이상	질사, 열사, 후장, 입사, 오랄	폭행, 성폭행	꿈이 생김

사 처 성매매 나이	성매매 전 성경험	첫 성관계 나이	성매매 계기	가출 경험	성폭행 경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횟수	성매매 용어	성매매피해 경험	탈 성매매 도움
20	19세	유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유	무	버디버디	2회	만남, 번개	조건강요	주변친구들 정 리
21	18세	무	친구권유	유	무	버디버디	4-5회	만남, 10(엑수)	폭행, 돈 받지 못 함, 변태행위	쉽터
22	18세	유	가출	유	무	헬프몬 세이클럽	모름 (1400만원)	즈그, 건즈, 만 남	없음	쉽터
23	15세	무	가출	유	무	버디버디	12	즈즈, ㄱ즈, 지 역이름	돈 받지 못함	좋아하는 오빠
24	16세	유	가출 (생활 비)	유	유	모름	10회 이상	오늘밤 20	돈 받지 못함	자신의 의지, 쉽 터
25	15세	유	가출	유	유	세이클럽	10회 이상	즈그, ㄱㄱ	돈 적게 받음	건강에 대한 걱 정
26	18세	유	가출	유	유	한게임 버디버디	50회	지역이름	돈 받지 못함	쉽터 선생님들
27	18세	유	가출	유	유	버디버디	30-40회	지역이름	돈 받지 못함, 협박, 갈취, 변태 적 행위, 성폭행	쉽터, 시설
28	17세	유	가출	유	유	버디버디	4-5회	모름	욕설	쉽터 선생님들
29	16세	유	가출	유	무	네이버	1회	무응답	없음	없음

사 첫 성매매 나이	성매매 전 성격	성매매 전 나이	성매매 전 성관계 나이	성매매 계기	가출 경험	성폭행 경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횟수	성매매 용어	성매매피해 경험	탈 성매매 도움
			(남자친구)								
30	유	17세	17세 (남자친구)	친구부탁	유	무	버디버디 세이클럽	300회 이상	69, 알바	돈 받지 못함, 수 면제 복용, 폭행, 성병	탈 성매매 도움 없음
31	유	17세	14세	용돈	무	무	버디버디 세이클럽	50회	홍즈, ㅇㅈ, ㅇ ㅈ	없음	벗어나지 못함
32	무	15세	15세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유	무	세이클럽	10-15회	ㅇ르, 69	없음	남자친구
33	무	16세	16세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유	무	넷마블캐릭터	3회	없음	육설	엄마
34	유	13세	12세	친구권유	유	무	한게임, 버디 버디	셀수없음 (반년간 거의 매일)	ㅈㄱ	돈 받지 못함	자기의지
35	유	17세	14세	빈 개보 다는 조감이 낮다 고 생각	무	유	버디버디	15회	ㅈㄱ	돈 적게 받음, 임신	청소년성장캠프
36	무	16세	15세	호기심	유	유	버디버디	8회	건조	돈 받지 못함	꿈
37	유	17세	16세	가출	유	유	버디버디	40-50회	ㅈㅈㅈ, '몇 대 몇 ㅈㅈㅈㅈ ,	돈 받지 못함, 협 박, 집단성행위	상담선생님
38	유	16세	13세	가출	유	무	버디버디	4-5회	매니아씨들	없음	상담
39	유	16세	14세	가출	유	무	버디버디	3-4개월 간의 거의 매일	한번에 10, 노 푼, 질사	돈 받지 못함, 돈 적게 받음, 집	가족

사례	첫 성매매 나이	성매매 성경험	첫 성관계 나이	성매매 계기	가출 경험	성폭행 경험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횟수	성매매 용어	성매매피해 경험	탈 성매매 도움
								(약 100회)		단 성행위, 조건 사항 어긋	
40	15세	유	14세	용돈	유	유	버디버디	60회	몇 살이야?	돈 받지 못함	경찰에 걸린 것, 상담선생님
41	17세	유	16세	가출	유	무	버디버디	1회	아니오 없어요.	없음	경찰에 걸린 것
42	14세	유	14세	가출	유	무	버디버디	30회	* 여자만, * 같 곳 없는 여자만	* 여자만, * 변태행위	가족, 스스로 깨달음
43	17세	무	17세	가출	유	무	버디버디	10회	쪼기, 약자로 사용	돈 받지 못함, 돈 적게 받음	스스로 깨달음

## 부록 5.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 조건만남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인터넷 조건만남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여러분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앞으로 여러분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교총빌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자 : 성윤숙 연구위원 (☎ 02-2188-8823)



※ 인터뷰 시작 전에 인터넷성매매에 대한 설명이 필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매개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현실 공간에서 만나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 다음은 인터넷 조건만남<sup>100)</sup>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인터넷을 사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카페, 블로그 포함)
2. 채팅이나 게임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대화명은? 그 이유는?
3. 주로 들어가는 카페나 인터넷 사이트에는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나요?
4.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과 횟수는?

100) 본 질문지에서는 인터넷성매매를 인터넷 조건만남이란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

5. 인터넷 이용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6. 처음 인터넷조건만남을 한 나이는?
7. 조건만남은 강제에 의해서였나요?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였나요?
8. 조건만남 전 성경험이 있습니까?
9. 처음 성관계를 가진 나이는 언제입니까?
10. 처음 인터넷 조건만남을 하게 된 계기는? (예: 생활비, 친구권유, 잘 곳이 필요해서, 호기심 등)
11. 인터넷을 통해 처음 조건만남을 접촉한 경로는?  
(예: 인터넷서핑 중 우연히, 채팅을 하다가,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주위 사람들을 통해 등)
12. 조건만남을 위해 접속했던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이름은?  
(예: 일반채팅사이트, 성인전용채팅사이트, 조건만남사이트 등)
13. 조건만남을 위해 인터넷을 접속한 장소는? (예: PC방, 집, 학교 등)
14. 지금까지 인터넷조건만남을 한 횟수는? (      회)
15. 조건만남 상대의 나이는?
16.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예: 모텔, 차안, 그 사람집 등)

17. 조건만남으로 받는 대가는? (예: 금전, 잠자리제공 등)
18. 돈을 받는다면 그 액수는?
19. 조건만남 대가로 받은 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20. 조건만남을 할 때 피임은 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21. 조건만남 상대방과 만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2. 조건만남 관련하여 성인으로부터 쪽지나 대화를 걸어올 경우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23. 사이트 접속 후 (채팅방 개설 후) 얼마나 지나면 쪽지가 오나요?
24. 어떤 방식으로 성인이 조건만남을 위해 접근하나요?
25. 조건만남을 위한 대화에서 그들만의 암호나 신호(용어)가 있나요? (예: 부친, 1/10)
26. 상대방에게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먼저 접근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습니까?
27. 조건만남 시 인터넷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상대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돈을 더 많이 준다,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 등)
28. 인터넷 상에서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

힘이 있습니까?

29. 인터넷을 매개로 한 조건만남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30. 인터넷을 매개로 한 조건만남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31. 조건만남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예: 돈을 받지 못했거나, 폭행, 변태적 행위 강요 등)

- 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32.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는?

33. 조건만남 전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4. 조건만남이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소비패턴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서,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서 등)

**※ 다음은 조건만남 후 생활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조건만남 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건강, 가족과의 관계,  
가치관의 변화, 소비패턴 등)

2. 조건만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건강, 겁이나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주위의 권유로)

-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조건만남으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4. 앞으로 조건만남을 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5. 조건만남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6. 조건만남 이후 이용했던 시설이 있습니까? (예: 청소년상담센터, 쉼터,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등)
  - 있다면 어떤 기관이나 시설이었습니까?
  - 이용기간은?
  - 그 기관 또는 시설 서비스에 만족했습니까?
  - 그 기관 또는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다음은 여성청소년 인터넷 조건만남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우리사회에서 인터넷조건만남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2. 인터넷조건만남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성교육, 인터넷실명제, 채팅사이트 모니터링 등)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 10조 제 2항)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즉 실제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건만남을 제안한 경우 처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4. 이러한 처벌법이 생긴다면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람을 신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유는?
5. 청소년 조건만남에 대해서 어떤 법이 생기면 신고할 것입니까?  
- 어떤 보상을 해주면 신고할 것입니까?
6. 성매수자 처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7. 현재 사회로부터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주거지원, 취업알선 등)
8. 앞으로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출생년도는? (        )년
2. 최종학력은?
3. 최근까지 주로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 집, 친구집, 쉼터,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등)
4. 집에서 지낼 때 함께 살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구성)
5. 가정형편은? (상, 중, 하)
6.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7. 학교생활은 어땠습니까?
8. 장래희망은 무엇입니까?
9.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10.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 부록 6. 1차 델파이 설문지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1차)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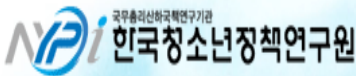
ID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간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이후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정책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대책에 대해 학계, 행정계,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질문지를 통하여 전문가이신 귀하의 의견을 폭 넓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견(1차 조사: 8월 10일 - 8월 16일, 2차 조사: 8월 31일 - 9월 6일)을 물어볼 예정입니다.

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은 8월 16일(일)까지 이메일(first1004@nypi.re.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윤숙 (02-2188-8823 / first1004@nypi.re.kr)

응답자 성명	소속 기관	부서 (학과)명
	주소	
조사응답 수당 관련	주민번호: 은행구좌번호: (      은행)	



I. 다음은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개념과 인터넷성매매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질문1】**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

**【질문2】** 귀하께서는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다섯 가지만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

- 1.
- 2.
- 3.
- 4.
- 5.

Ⅱ. 다음은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3】 귀하께서는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다섯 가지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	
비전	
목표	1. 2. 3. 4. 5.

Ⅲ. 다음은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영역설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4】 귀하께서는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에 대한 상위영역과 각 상위영역에 따라 어떠한 하위영역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귀하의 의견		
	상위영역	하위영역
① 상위영역과 각 상위영역에 따른 하위 영역		
② 영역구분에 대한 기준		

IV. 다음은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5】** 귀하께서는 각각의 하위영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세부 정책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하위영역에 따른 세부정책추진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다섯 가지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

V. 다음은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점,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질문6】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적하여 주십시오. 또한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	
①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점	
②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정책의 효율화 방안	

VI. 다음은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질문7】 귀하께서는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에 관한 구체적 질문에 관해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	
<p>① 인터넷성매매 감시, 인터넷성매매 경로 차단, 단속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p>	
<p>②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이분화 되어있는데, 일원화 한다면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③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해서는 불처벌주의인데 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귀하의 의견	
④ 청소년의 몸이 성숙하여 17세 이상은 성인과 분별하기 난해함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16세로 낮추지는 학계와 법조계의 주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⑤ 성매수 초범에게 실행되고 있는 8시간 수강명령(존스쿨교육)이 그들의 죄질에 대하여 처벌이 적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처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⑥ 한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성매매재유입예방을 위한 '청소년성장캠프'가 재유입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음. 이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이 어떠하다고 보시며 다른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⑦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7. 2차 델파이 설문지

###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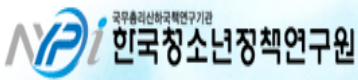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에 관한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응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학계, 행정계,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 여러분들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차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첨부한 조사지에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주셔서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9월 30일(수)까지 이메일(first1004@nypi.re.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일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윤숙 (02-2188-8823, first1004@nypi.re.kr)

응답자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재직기간	
성별		연령	만 ( )세
조사응답수당 관련	은행구좌번호 : ( )은행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리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를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의견란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질문 1】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여성청소년이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	①	②	③	④	⑤
(3)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인터넷 성매매 근절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의 성과 인권이 존중·보호되는 사회구현	①	②	③	④	⑤
(5) 성에 대한 착취가 없는 세상 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6) 여성청소년의 탈성매매 도모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input type="checkbox"/> 위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할 비전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 2】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성매매 피해여성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교육 및 치료·선도함으로써 재유입 방지	①	②	③	④	⑤
(2) 성매수 피해여성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3) 생계형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시설 마련	①	②	③	④	⑤
(4)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놀이문화 형성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 성매매 감시체계 확립	①	②	③	④	⑤
(6) 처벌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수자의 재발방지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input type="checkbox"/> 위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이 추구해야할 목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질문 3】**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영역설정에 대해 1차 델파이조사를 토대로 한 ‘가안’ 을 제시하오니 검토하신 후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 인터넷성매매 정책 영역에 대한 연구진 ‘가안’	
상위영역	하위영역
① 예방 정책	① 교육
	② 홍보
	③ 단속
② 보호 정책	① 교육
	② 자활
	③ 치료
③ 처벌 정책	① 교육
	② 단속

**【질문 3-1】** 위의 정책영역 구분 중 바뀌어야 할 명칭이나 더욱 적절한 명칭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기존 영역 명칭	===>	수정 영역 명칭
예방	===>	교육
		홍보
		단속
보호	===>	교육
		자활
		치료
처벌	===>	교육
		단속

**【질문 3-2】**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정책영역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정책영역	주요 정책 내용

**【질문 3-3】 정책영역 구분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제시해 주십시오.**

**【질문 4】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앞에서 언급한 각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각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V 체크해 주시고,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영역	정책과제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예방	교육	(1)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가 양성	①	②	③	④	⑤
		(2) 초등학교 전 학년 성교육의 정규 과목화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 성 주체성 중심의 학교교육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대상 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①	②	③	④	⑤
		(5)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시스템 체계화	①	②	③	④	⑤
	홍보	(1) 인터넷 성매매 예방·계도를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①	②	③	④	⑤
		(2)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사이트 개설	①	②	③	④	⑤
		(3) 대국민 성매매 예방 캠페인 실시	①	②	③	④	⑤

영역	정책 과제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단속	(1)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책임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인터넷 실명제 확대실시	①	②	③	④	⑤
	(3)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성인 신분확인 의무제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차단	①	②	③	④	⑤
	(5) 가출·폭력 피해자의 긴급구호 시스템 마련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input type="checkbox"/> 위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각 영역에 따른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교육						
홍보						
단속						

영역	정책 과제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보호	교육	(1)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위기교육센터 확대 설치	①	②	③	④	⑤
		(2)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개입 매뉴얼 개발	①	②	③	④	⑤
치료	(1)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치료기관 연계	①	②	③	④	⑤	

	(2)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재활 교육의 실시	①	②	③	④	⑤
	(3)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성병 및 정신적 치료의 무상지원	①	②	③	④	⑤
	(4) 3회 이상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여 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실시와 반강제적인 교육과 재활 실시	①	②	③	④	⑤
자활	(1)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단기보호소 확대설치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 청소년지원센터 - 노동부 고용지원 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근로지원 시스템 제도화	①	②	③	④	⑤
	(3)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쉼터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두드림프로젝트' 등의 직업탐색 프로그램 확대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성매매피해청소년 재유입방지 '청소년성장캠프' 확대	①	②	③	④	⑤
	(7) 단기형 대안학교 구축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설립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input type="checkbox"/> 위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각 영역에 따른 항목의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교육						
치료						
자활						

영역	정책과제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처벌	교육	(1) 존스쿨 교육 40시간으로 확대 실시	①	②	③	④	⑤
		(2) 군인, 직장인, 대학생 대상 여성청소년 성구매자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단속	(1) 청소년대상 성매매 가중처벌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2) 경찰의 단속의지와 전문인력 충원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성매매 사이버수사대 전담반 설치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성매매 관련 사이트 처벌강화	①	②	③	④	⑤
		(5) 신고시 포상제도 및 파파라치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6) 여성청소년 신고시 보호제도 구축	①	②	③	④	⑤
		(7) 게임, 채팅사이트에 ‘간편 신고창’ 구축	①	②	③	④	⑤
		(8) 신상공개제도 활용	①	②	③	④	⑤
		(9) 성매매유인행위 발견 시 단속기관에 조사를 권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장의 예외인정	①	②	③	④	⑤
		(10) 성매매유인행위 처벌제도 정착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 권역별 단속전담팀 구성	①	②	③	④	⑤
		(12) 인터넷상의 성매매 합의를 강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단속기관에 강제열람권 부여	①	②	③	④	⑤
		(13) 책임부서의 명시 및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	①	②	③	④	⑤
		(14) 게임, 채팅사이트에 적발과 처벌광고의 게재	①	②	③	④	⑤
		(15) ISP(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 및 유기적 협조	①	②	③	④	⑤
(16) 인터넷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사회가 팀으로 구성되어 인터넷 성매매를 감시하고 단속·처벌하는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17) 각 경찰청에 인터넷성매매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적발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input type="checkbox"/> 위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각 영역에 따른 항목의 번호를 <b>우선순위</b> 에 따라 모두 써주십시오.	
교육	
단속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자 문 진 ◆

- 김선옥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 관장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과 · 과장  
김선화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 단장  
노경자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 팀장  
남미애 대전대학교 · 교수  
남성우 버디버디 · 팀장  
박은정 서부지방검찰청 · 검사  
부정주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 경사  
임규철 동국대학교 · 교수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회장  
정 완 경희대학교 · 교수  
진란영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 팀장  
홍성례 우송대학교 · 교수
-

##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기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 · 김동일 · 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 · 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 · 윤옥경 · 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 · 오해섭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흥식 · 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 정대영 · 황순영 · 김영미 · 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 박현옥 · 이경숙 · 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 김원경 · 고정욱 · 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김나라 · 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윤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윤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재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Y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인 쇄 2009년 12월 22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경성 전화 (02)503-3223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ISBN 978-89-7816-807-6(93330)